Deloitte.

Audit - IFRS

IFRS 준수여부에 관한 질문서

Compliance questionnaire (November 2007)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IFRS Services Group

Audit . Tax . Consulting . Financial Advisory.

Deloitte.

IFRS 준수여부에 관한 질문서

회 사 명			
회계기간 개시일		회계기간 종료일	
작 성 자		날 짜	
검 토 자		날 짜	

주 의 사 항

이 질문서는 IASB(국제회계기준 위원회)가 공표한 국제회계기준의 인식과 측정 관련 요구사항을 요약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은 IASB 가 제정한(IASB 이전의 회계기준 제정기구가 제정한 것 중 현재 유효한 것 포함) 기준서 및 해석서를 포함한다. 이 질문서는 국제회계기준의 인식과 측정 관련 규정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그러나, 본 질문서가 이러한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회사의 이해와 실제 적용 시 회사의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

질문서 이용자는 규정을 철저히 이해하고 있다고 전제되며, 이 질문서의 특정 부분을 판단할 때 필요한 경우 규정의 원문을 참조하여야 한다. 이 질문서의 특정 부분은 국제회계기준 원문의 해당부분을 참조할 수 있도록 표시하였다.

이 질문서는 본문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2007 년 8 월 31 일 현재 공표된 국제회계기준(관련 해석서 포함)의 인식과 측정 관련된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표시 및 공시와 관련한 국제회계기준 요구사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역자 주] **본 질문서는 IASB(국제회계기준 위원회)가 공표하는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한국회계기준원이 IASB 가 공표하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시에 번역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업데이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상의 요구사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Deloitte.

본 질문서의 이용

이 질문서는 오직 회사에 의하여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개인과 기업에 배포 및 유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이 질문서는 전문가로서의 조언이나 전문적 서비스를 대체할 수 없고 회사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판단 및 행위의 근거로 이용되어서도 안된다.

따라서, 이 질문서를 사용하거나 이 질문서에 의존하여 발생한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제회계기준의 인식과 측정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때, 이용자는 필연적으로 특정 상황에 근거하여 전문적 판단을 해야만 할 것이다. 즉, 본 질문서는 단지 수단을 제공할 뿐,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으므로 본 질문서의 이용자는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세부질문은 일반적으로 “예”, “아니오”,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하도록 하고 있다. “예”라는 답이 반드시 국제회계기준과의 일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제회계기준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본 질문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의 제, 개정내용을 습득하는 것은 이용자의 책임이다.

Deloitte.

도입

IASB 는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라고 불리는 기준서를 공표한다. IASB 가 출범할 당시, IASB 는 이전 회계기준 제정기구이었던 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가 발간했던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를 국제회계기준으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본 질문서에서 언급하는 국제회계기준은 IFRS, IFRIC(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이 발간하는 해석서, IAS 그리고 SIC(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의 해석서를 포함한다.

이 질문서가 다루는 기준서 및 해석서

- 본 질문서는 회사가 국제회계기준의 인식과 측정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고안되었다. 본 질문서는 work programme 이 아니다. 이 질문서는 표시 및 공시와 관련 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별도의 P&D 체크리스트 참조)은 포함하지 않는다.

- 본 질문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2007 년 8 월 31 일 현재 공표된 국제회계기준의 인식과 측정 관련 요구사항을 다룬다. 본 질문서는 2007 년 1 월 1 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서 측정 및 인식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계기간에 대하여 본 질문서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따라서, 이전 회계기간에 대하여는 본 질문서의 이전 버전을 참고하시기 바람). 특정 기준서를 시행일 이전에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특정 기준서나 해석서를 시행일 이전에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을 일반적으로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특정 개별 기준서는 일부 인식과 측정 또는 기타 준수하여야 하는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주로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서에 대해서는 모든 요구사항을 동일한 문서에서 다루도록 하기 위해 P&D(표시 및 공시) 체크리스트에 일괄적으로 모든 요구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처리방식은 다음과 같은 기준서에 적용되었다.

  - *금융상품 . 공시*
  - *영업부문*
  - *재무제표표시*
  - *현금흐름표*
  - *특수관계자공시*
  - *퇴직급여제도에의한회계처리와보고*
  - *금융상품 표시*
  - *중간재무보고*

- 이 질문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명백히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주의하라.

Deloitte.

이 질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제안

재무제표는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서와 해석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거의 모든 상황에 있어서, 관련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면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표시된다. 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에는(즉,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재무제표의 적정한 표시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면 광범위한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본 질문서 이용자는 국제회계기준을 철저히 이해하고 있다고 전제된다. 본 질문서는 특정 회사의 상황과 관련 없는 주제 및 영역에 관한 질문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질문들이 특정 회사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예비질문(tailoring questions)이 개발되었다. 예비질문은 개별 질문서의 서두에 위치하고 있다. 개별 세부준수질문(detailed compliance questions)의 왼쪽 열에는 동 세부준수질문과 관련된 예비질문이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세부 준수질문에 예비질문 “2A, B”가 참조표시 되어있다면, 이 것은 예비질문 2A 또는 2B 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동 세부준수질문에 답을 하도록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질문서는 국제회계기준에 포함되는 실무적용지침(implementation guidance)에서 다루는 문제들을 일반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질문서 이용자는 특정 질문들에 답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관련 국제회계기준의 원문과 실무적용지침을 참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목차-기준서

Standard	Title	Effective date(*)	Page number	Completed?
IFRS 1	IFRS 의 최초채택	1 January 2004	8	
IFRS 2	주식기준보상	1 January 2005	22	
IFRS 3	사업결합	Business combinations for which the agreement date is on or after 31 March 2004	40	
IFRS 4	보험계약	1 January 2005	55	
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1 January 2005	68	
IFRS 6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1 January 2006	73	
IFRS 7	금융상품: 공시	1 January 2007	P&D Checklist 참조 (*)	
IFRS 8	영업부문	1 January 2009	P&D Checklist 참조	
IAS 1	재무제표 표시	1 January 2005	P&D Checklist 참조	
IAS 2	재고자산	1 January 2005	80	
IAS 7	현금흐름표	1 January 1994	P&D Checklist 참조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1 January 2005	87	
IAS 10	보고기간후사건	1 January 2005	93	
IAS 11	건설계약	1 January 1995	95	
IAS 12	법인세	1 January 1998	100	
IAS 14	부문별보고	1 July 1998	해당사항 없음	
IAS 16	유형자산	1 January 2005	112	
IAS 17	리스	1 January 2005	124	
IAS 18	수익	1 January 1995	135	
IAS 19	종업원급여	1 January 1999	143	
IAS 20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1 January 1984	159	
IAS 21	환율변동효과	1 January 2005	162	
IAS 23	차입원가	1 January 1995	169	
IAS 24	특수관계자 공시	1 January 2005	P&D Checklist 참조	
IAS 26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1 January 1988	해당사항 없음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1 January 2005	174	
IAS 28	관계기업 투자	1 January 2005	181	
IAS 29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1 January 1990	18	
IAS 31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1 January 2005	193	
IAS 32	금융상품: 표시	1 January 2005	P&D Checklist 참조	

Standard	Title	Effective date(*)	Page number	Completed?
IAS 33	주당이익	1 January 2005	201	
IAS 34	중간재무보고	1 January 1999	P&D Checklist 참조	
IAS 36	자산손상	First annual period beginning on or after 31 March 2004	213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1 July 1999	232	
IAS 38	무형자산	First annual period beginning on or after 31 March 2004	241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1 January 2005	256	
IAS 40	투자부동산	1 January 2005	289	
IAS 41	농림어업	1 January 2003	298	
IFRIC 12	민간투자사업	1 January 2008	302	

(*): 시행일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모태가 된 IASB 가 공표한 국제회계기준 상 시행일을 의미(일부 기준서의 경과규정은 복잡하므로 자세한 것은 해당 기준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합니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회계기준원이 번역 및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상의 시행일 규정(일반적으로 2011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을 선택한 기업은 2009 년 1 월 1 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음)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은 IASB 가 공표한 국제회계기준 상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IFRS 1 의 적용을 받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해석서

Interpretation	Title	Effective date(*)	관련기준서(**)	Completed?
IFRIC 1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	1 September 2004	IAS 16	
IFRIC 2	조합원 지분과 유사지분	1 January 2005	P&D Checklist 참조	
IFRIC 4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1 January 2006	IAS 17	
IFRIC 5	사후처리,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1 January 2006	IAS 37	
IFRIC 6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폐전기 및 전자제품	1 December 2005	IAS 37	
IFRIC 7	IAS 29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서 재작성 방법의 적용	1 March 2006	IAS 29	
IFRIC 8	IFRS 2 의 적용범위	1 May 2006	IFRS 2	
IFRIC 9	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1 June 2006	IAS 39	
IFRIC 10	중간재무보고와 손상	1 November 2006	IAS 36/ IAS 39	
IFRIC 11	주식기준보상-연결실체주식거래 및 자기주식거래	1 March 2007	IFRS 2	
IFRIC 13	고객충성제도	1 July 2008	IAS 18	
IFRIC 14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1 January 2008	IAS 19	
SIC 7	유로화의 도입	1 June 1998	해당사항 없음	
SIC 10	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	1 August 1998	IAS 20	
SIC 12	연결-특수목적기업	1 July 1999	IAS 27	
SIC 13	공동지배기업-참여자의 비화폐성 출자	1 January 1999	IAS 31	
SIC 15	운용리스-인센티브	Lease term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1999	IAS 17	
SIC 21	법인세-재평가된 비상각자산의 회수	15 July 2000	IAS 12	
SIC 25	법인세-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	15 July 2000	IAS 12	
SIC 27	법적형식을 가지고 있는 리스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	31 December 2001	IAS 17	
SIC 29	민간투자사업의 공시	31 December 2001	P&D Checklist 참조	
SIC 31	수익-광고용역의 교환거래	31 December 2001	IAS 18	
SIC 32	무형자산 웹사이트 원가	25 March 2002	IAS 38	

(**): 해석서와 관련된 질문서는 IFRIC 12 를 제외하고는 관련 기준서와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준서를 기재하였습니다.

IFRS 1 IFRS 의 최초채택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본 질문서는 기업이 IFRS 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술된 문구로서 IFRS 를 최초로 채택할 때 적용하는 IFRS 1 을 기술하고 있다. IFRS 1 은 기존 기업회계기준에서 IFRS 로의 전환과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IFRS 1 은 기업이 최초 IFRS 재무제표의 보고일에 유효한 모든 IFRSs (IFRS, IAS, IFRIC, SIC 포함)을 적용하여 개시 IFRS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IFRS 1 은 제한된 면제조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동 기준서의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적용범위	
		기업은 IFRS 1 을 다음에 적용한다. *a) 기업의 최초 IFRS 재무제표* *b) 최초 IFRS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회계기간의 일부에 대해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한다면 IAS 34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하는 중간재무보고서* *기업의 최초 IFRS 재무제표는 기업이 IFRS 를 채택하여 이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술된 문구를 기재한 최초의 연차재무제표이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IFRS 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는 최초 IFRS 재무제표이다.* *a) 최근의 과거 재무제표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모든 관점에서 IFRS 와 일관되지 않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경우* *ii) 모든 관점에서 IFRS 와 부합하지만, 재무제표에 IFRS 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술된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iii) IFRS 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포함된 경우* *iv) IFRS 와 일관되지 않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다른 기준에 존재하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IFRS 를 적용한 경우* *v)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일부 금액을 IFRS 를 적용한 금액으로 조정한 경우* *b) 기업의 소유주나 기타 외부 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IFRS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던 경우* *c) IAS 1 '재무제표 표시 ' 에서 정의한 완전한 형태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연결 목적으로 IFRS 를 적용한 재무보고자료를 작성하였던 경우* *d) 과거 기간의 재무제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이 기준서는 다음 경우에 기업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a) 과거에 다른 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IFRS 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술된 문구를 포함하여 재무제표를 제공하였으나, 다른 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경우* *b) 과거연도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제공하였으며, 그 재무제표에 IFRS 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술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c) 과거연도에 감사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한정인 경우이더라도, 그 재무제표에 IFRS 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술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기준서는 이미 IFRS 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이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변경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서를 적용한다 *a)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 ' 의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한 규정* *b) 다른 IFRS 의 특정 경과규정*	
		예비질문	
		만약 아래의 질문에 "Yes"라고 답하면, 이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라.	
1A		회사는 IFRS 1 에 따라 IFRS 를 적용하였는가? *Note: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오'이면 이 질문서의 IFRS 1 관련부분은 작성하지 않는다.*	
1B		회사는 IFRS 전환일 이전에 사업결합을 수행하였는가?	
1C		회사는 개시 IFRS 재무상태표에서 유형자산의 항목들을 인식하였는가?	
1D		회사는 개시 IFRS 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항목을 인식하였는가?	
1E		회사는 개시 IFRS 재무상태표에서 무형자산 (영업권 이외의)을 인식하였는가?	
1F		회사는 개시 IFRS 재무상태표에서 확정급여채무를 인식하였는가?	
1G		IAS 21 의 소급적용이 개시 IFRS 재무상태표에서 인식되어야 할 누적환산차이를 발생시키는가?	
1H		회사는 이전 회계기준하에서 복합금융상품을 인식하였는가?	
1I		회사는 회사의 지배기업 또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동지배하는 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었는가?	
1J		회사는 회사의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조인트 벤처투자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었는가?	
1K		회사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보다 더 일찍 또는 늦게 별도재무제표에 대해 최초도입회사가 되는가?	
1L		회사는 개시 IFRS 재무상태표에서 IAS 32 와 IAS 39 에 따른 금융상품을 인식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1M		회사는 전환일 이전에 IFRS 2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지분상품을 부여하였는가?	
1N		회사는 보험계약을 보유하고 있는가?	
1O		회사는 IFRS 의 전환일에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 복구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Note: 이러한 의무는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에 대한 IFRIC 1 을 참조하라.*	
1P		회사는 이전 회계기준에 따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제거하였는가?	
1Q		회사는 개시 IFRS 재무상태표에서 파생상품을 인식하거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였는가?	
1R		회사는 개시 IFRS 재무상태표에서 인식된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기위해 추정을 사용하였는가?	
1S		IFRS 전환일에, 기업이 리스에 법적인 형식을 취하지 않지만 어떤 지불이나 일련의 지불의 대가로 자산을 사용하는 권리를 양도하는 거래나 일련의 관련적인 거래들로 구성되는 계약에 관한 당사자인가?	
1T		IFRS 전환일에 회사는 IFRIC 12 '민간투자사업'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민간투자사업의 당사자인가? *Note: IFRIC 12 는 2008 년 1 월 1 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된다. 조기 적용이 허용된다.*	
		세부준수질문 개시 IFRS 재무상태표	
1A	IFRS 1.6	IFRS 전환일에 IFRS 1 에 따라 개시 IFRS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였는가?	
1A	IFRS 1.6	최초 IFRS 재무제표에 IFRS 에 따라 비교표시된 가장 이른기간의 개시일로 기업의 전환일을 구분하였는가?	
		Notes: 기업은 최초 IFRS 재무제표에 개시 IFRS 재무상태표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회계정책	
1A	IFRS 1.7	개시 IFRS 재무상태표와 최초 IFRS 재무제표에 표시된 모든 회계기간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였는가?	
1A	IFRS 1.7	기업의 최초 IFRS 재무제표에서 적용된 회계정책이 IFRS 1 의 문단 13 내지 34B 그리고 37 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최초 IFRS 재무제표의 보고기간말 현재 시행 중인 모든 IFRS 를 준수하고 있는가 (아래 참조)?	
	IFRS 1.8	*Notes:* *1) 표시와 공시와 관련된 IAS 1 의 문단 37 은 본 질문서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딜로이트 표시 및 공시체크리스트 참조).* *2) 아직 적용이 의무화되지는 않았지만 조기 적용이 허용된 새로운 IFRS 는 적용할 수 있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1A	IFRS 1.9	문단 25D, 25H, 25I, 34A 및 34B 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는가 (아래 참조)?	
1A	IFRS 1.10	문단 13 내지 34B 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개시 IFRS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에 회사는: a) IFRS 에서 인식을 요구하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였는가? b) IFRS 에서 인식을 허용하지 않는 항목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는가? c)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자산, 부채 또는 자본 구성요소의 한 종류로 인식되었으나, IFRS 에 따라 다른 종류의 자산, 부채 또는 자본 구성요소로 인식되는 항목들은 재분류하였는가? d) 인식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측정할 때 IFRS 를 적용하였는가?	
1A	IFRS 1.11	회사는 전환일에 개시 IFRS 재무상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이 동일한 시점에 적용한 과거 회계기준의 회계정책과 달라서 발생한 조정금액을 직접 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에서 인식하였는가?	
		Note: 이 조정금액은 IFRS 전환일 이전의 사건과 거래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처리한다.	
		다른 IFRS 에 대한 면제 ***사업결합***	
1B	IFRS 1.15	회사는 IFRS 전환일 전에 인식한 사업결합에 대하여 부록 B 의 규정을 적용하였는가?	
1B	IFRS 1.B1	회사는 과거 사업결합 (IFRS 전환일 전에 발생한 사업결합)에 대해 IFRS 3 ‘ 사업결합 ’ 을 소급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고려하였는가?	
		Note: 최초채택기업은 과거 사업결합 (IFRS 전환일 전에 발생한 사업결합) 에 대해 IFRS 3 ‘ 사업결합 ’ 을 소급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B	IFRS 1.B1	최초채택기업이 IFRS 3 에 따라 특정 사업결합을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는가? a) 이후에 발생한 모든 사업결합에 대해 재작성함. b) 그 시점부터 IAS 36 ‘ 자산손상 ’ 을 적용함. c) 그 시점부터 IAS 38 ‘ 무형자산 ’ 을 적용함.	
		Note: 예를 들면, 최초채택기업이 2002 년 6 월 30 일에 발생한 사업결합에 대해 재작성한다면 2002 년 6 월 30 일부터 IFRS 전환일까지의 모든 사업결합에 대해 재작성하여야 하며, 2002 년 6 월 30 일부터 IAS 36 과 IAS 38 을 적용하여야 한다.	
1B	IFRS 1. B1A	기업이 IAS 21 ‘ 환율변동효과 ’ 를 IFRS 전환일 전의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공정가치 조정과 영업권에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공정가치 조정과 영업권을 피취득자의 자산과 부채가 아니라 기업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 따라서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적용한 환율을 사용하여 보고된 이러한 영업권과 공정가치 조정은 이미 기업의 기능통화에 표시되었거나 비화폐성 외화항목으로 표시되어 있다.	
1B	IFRS 1. B1B	IAS 21 을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면,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IAS 21 을 소급적용하였는가? a) IFRS 전환일 전에 발생한 모든 사업결합 b) 문단 B1 에 따라 허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IFRS 3 를 적용하여 재작성하기로 선택한 모든 사업결합 *Note: 최초채택기업이 IAS 21 ' 환율변동효과 ' 를 IFRS 전환일 전의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공정가치 조정과 영업권에 소급적용할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을 소급적용하기로 선택하였다면, 문단 B1B 에 기술된 것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B	IFRS 1. B2	최초채택기업이 과거 사업결합에 대해 IFRS 3 를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결합에 대하여 다음의 논리적 결과를 가지는가? a) 최초채택기업은 과거 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와 동일한 분류(법적 취득자의 취득, 법적 피취득자의 역취득 또는 지분통합)를 유지하였는가? b) 최초채택기업은 IFRS 전환일에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과거 사업결합에서 취득하거나 인수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였는가? i)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제거한 일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문단 27 참조) ii)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자의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지 않았으며, 피취득자의 별도재무제표에서 IFRS 에 따라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산(영업권을 포함)과 부채 (문단 B2⑹~B2⑼ 참조) 최초채택기업은 이전에 영업권에 포함한 무형자산을 별도로 인식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결과적인 변동을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을 조정하여 인식하였는가 (문단 B2⑺㈎ 참조)? c) 최초채택기업은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였으나 IFRS 에 따른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을 개시 IFRS 에 따른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이로 인한 결과적인 변동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는가? (i) 최초채택기업은 과거 사업결합을 취득으로 분류하고 IAS 38 ' 무형자산 ' 에 따른 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는가? 이 경우 해당항목 (관련 이연법인세와 소수주주지분 포함)은 영업권으로 재분류하였는가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영업권을 자본에서 직접 차감한경우는 제외, 문단 B2⑺㈎와 B2⑼ 참조)? (ii) 그 밖의 모든 변동을 이익잉여금에서 인식하였는가? *Note: 영업권을 과거 회계기준에서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상기 변동에는 무형자산으로부터 또는 무형자산으로의 재분류가 포함된다. 이런 사항은 과거 회계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던 경우에 발생한다.* ● *영업권을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였던 경우* ● *사업결합을 취득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d) IFRS 에 따르면 일부 자산과 부채는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와 같이 최초의 원가에 기초하지 않은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산에는 기업이 공정가치법으로 선택한 자산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투자부동산). 최초채택기업은 자산과 부채가 과거 사업결합에서 취득하였거나 인수한 것일지라도 이러한 자산과 부채를 개시 IFRS 재무상태표에 그 기준에 따라 측정하였는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장부금액의 변동은 영업권이 아닌 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을 조정하여 인식하였는가? e) 사업결합 직후에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의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이 동 일자의 IFRS 의 간주원가인가? 추후 IFRS 에 따라 그 자산과 부채를 원가에 기초하여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간주원가가 사업결합일부터 원가에 기초한 감가상각이나 상각의 대상금액이 되는가? f) 과거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자산이나 인수한 부채를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지 않은 경우, 취득자는 IFRS 에 따라 피취득자의 재무상태표에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상태표에 그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하였는가? *Note: 취득자가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금융리스를 자본화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취득자가 IAS 17 '리스'에 따라 IFRS 재무상태표에 해당 리스를 자본화하듯이, 취득자는 연결재무제표에서 해당 금융리스를 자본화하여야 한다. 반대로 IFRS 3 에 따르면 별도로 인식하여야 하는 자산이나 부채를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 IFRS 가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에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해당 자산과 부채는 계속하여 영업권에 포함하여야 한다.* g) 개시 IFRS 재무상태표에서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IFRS 전환일에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조정한 금액인가? (i) 문단 B2(3)(가)에 따라 최초채택기업이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항목을 재분류하는 경우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증가하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문단 B2(6)에 따라 최초채택기업이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영업권에 포함된 무형자산을 별도로 인식하는 경우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감소(관련 이연법인세와 소수주주지분의 조정 포함)하는가? (ii) 과거 사업결합의 매수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우발상황이 IFRS 전환일 전에 해소되었을 수 있다. 우발상황으로 인한 조정액에 대하여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고 그 조정액의 지급가능성이 높다면, 최초채택기업은 해당 금액만큼 영업권을 조정하였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인식한 우발상황으로 인한 조정액을 더 이상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거나 그 조정액의 지급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최초채택기업은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였는가? (iii) 영업권의 손상을 나타내는 징후의 존재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채택기업은 IFRS 전환일에 IAS 36 을 적용하여 영업권의 손상을 검사하였는가? 그 결과 손상차손이 있다면 이익잉여금(또는 IAS 36 에 따른 재평가잉여금)에서 인식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 손상검사는 IFRS 전환일의 상황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h) IFRS 전환일에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상기의 사항 이외에는 조정하지 아니하였는가?	
		Note: 예를 들면, 최초채택기업은 다음 사항에는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 *(가)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진행 중인 연구와 개발 관련 금액의 제외(관련 무형자산이 IAS 38 에 따라 피취득자의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않는 경우)* ● *영업권에 대한 과거 상각의 조정* ● *사업결합일과 IFRS 전환일 사이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조정 때문에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IFRS 3 에서 인정하지 않는 영업권에 대한 조정사항의 취소*	
		i) 최초채택기업이 과거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영업권을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는가? i) 최초채택기업은 개시 IFRS 재무상태표에 해당 영업권을 인식하지 아니하였는가? 또한 전환일 이후에 종속기업을 처분하거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에 손상차손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영업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였는가? ii) 매수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우발상황의 후속적인 변동으로 발생한 조정사항을 이익잉여금에서 인식하였는가? j)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최초채택기업이 과거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았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지배기업이 해당 기업을 종속기업으로 간주하지 않았거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최초채택기업은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IFRS 가 종속기업의 재무상태표에 요구하는 금액으로 조정하였는가? IFRS 전환일에 영업권의 간주원가는 다음 두 금액의 차이와 같은가? i) 조정한 장부금액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 ii)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보고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의 원가 k) 소수주주지분과 이연법인세는 다른 자산과 부채의 측정결과에 따라 측정되었는가?	
		Note: 인식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상기 조정사항은 소수주주지분과 이연법인세에 영향을 미친다.	
1B	IFRS 1.B3	과거 사업결합에 대한 면제조항을 과거에 취득한 관계기업 투자와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대해서도 적용하였는가?	
1B	IFRS 1.B3	문단 B1 에서 선택한 일자는 이러한 모든 취득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는가 (즉, 종속기업, 관계기업, 조인트벤처에도 적용하였는가)?	
		공정가치나 간주원가로의 재측정	
1C	IFRS 1.16	기업은 IFRS 전환일에 유형자산의 개별 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그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1C	IFRS 1.17	최초채택기업은 IFRS 전환일 이전의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유형자산의 재평가액을 재평가일의 간주원가로 사용하였는가?	
1C	IFRS 1.17	만약 기업이 이전의 회계기준상 재평가액을 사용하였다면 그러한 재평가액이 재평가일의 다음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가? a) 공정가치 b) 일반물가지수 또는 개별물가지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 IFRS 에 따른 원가나 감가상각후 원가	
1D, E	IFRS 1.18	다음의 경우에 IFRS 1 의 문단 16 과 17 (위의 내용 참조)에서 설명된 면제조항을 사용하였는가? a) IAS 40 '투자부동산'의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 *Note: 만약 기업이 투자부동산에 회계정책을 공정가치모형으로 선택하였다면 이 항목은 전환일의 공정가액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b)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형자산 i) IAS 38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최초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포함) ii) IAS 38 의 재평가에 대한 기준 (활성거래시장의 존재 포함) *Note: 그 밖의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서는 간주원가 (문단 16 에서 18)의 선택을 적용할 수 없다.*	
1A	IFRS 1.19	과거 민영화나 최초 기업공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여 특정 시점에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간주원가로 정한 경우, 그러한 특정 사건에 따라 측정된 공정가치는 그 측정일의 IFRS 에 따른 간주원가로 사용하였는가?	
		종업원급여	
1F	IFRS 1.20	회사는 보험수리적손익에 대하여 범위접근법을 사용하더라도, IFRS 전환일에 누적된 보험수리적손익을 모두 인식하는 선택적면제조항을 고려하였는가?	
1F	IFRS 1.20	IFRS 1 의 문단 20 에 따라 선택적 면제사항을 적용하는 경우 회사는 모든 제도에 동 면제조항을 적용하였는가?	
1F	IFRS 1.20	만약, 회사가 IFRS 의 최초적용일에 모든 누적 보험수리적손익의 인식을 선택하지 않고 소급하여 '범위접근법'을 채택하려고 결정한다면, 제도의 시작과 전환일까지 누적된 보험수리적손익은 인식한 부분과 미인식한 부분으로 구분하였는가?	
		누적환산차이	
1G	IFRS 1.22	기업은 다음을 채택하였는가? a) IFRS 전환일에 모든 해외사업장에 대한 누적환산차이를 영 (0)으로 간주한다. b) 해외사업장의 후속적인 처분으로 인한 손익에 IFRS 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환산차이는 제외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c) 전환일 이후에 발생한 누적환산차이를 자본의 구성항목으로 포함하고 후속적으로 해외사업장을 처분할 경우 손익의 일부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IFRS 1.21	*Note: IFRS 1 의 문단 22 하에 이용가능한 면제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IAS 21 에 따라 다음이 요구된다.* • *일부 환산차이를* 자본의 별도 항목으로 분류한다. •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누적환산차이 (관련 위험회피 평가손익이 있는 경우 포함)는 처분손익의 일부로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복합금융상품	
	IFRS 1.23	과거 기준에 따라 기업이 복합금융상품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별도로분리인식하지 아니하였다면 (IAS 32 에 따라 분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환일 현재 부채요소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자본을 두 요소로 분리하지 아니하는 선택적 면제조항을 적용하였는가?	
		Note: IAS 32 '금융상품: 표시'는 복합금융상품의 발행시점에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별도로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채요소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더라도 IAS 32 를 소급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두 부분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한 부분은 부채요소로 인한 이자의 누계액으로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다른 부분은 발행시점의 자본요소이다.	
		과거 기준에 따라 기업이 복합금융상품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별도로분리인식하지 아니하였다면 (IAS 32 에 따라 분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환일 현재 부채요소가 남아있는 경우 회사는 IAS 32 에 따라 복합금융상품을 부채와 자본요소로 각각 분리하였는가?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의 자산과 부채	
1I	IFRS 1.24	종속기업이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 종속기업은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를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는가? a) 지배기업의 IFRS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한다. b) 종속기업의 IFRS 전환일에 기초하여 이 기준서의 나머지 규정에 따른 장부금액.	
		Note: 문단 24(b)의 장부금액은 다음의 경우에 24(a)에서 설명한 장부금액과 다를 수 있다. • *IFRS 1 의 면제조항을 적용한 측정치가 IFRS 전환일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 적용한 회계정책이 연결재무제표의 회계정책과 다른 경우. 예를 들면, 종속기업은 IAS 16 유형자산의 원가모형을 적용하지만 연결실체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1I	IFRS 1.24	관계기업이나 조인트벤처가 그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이 있거나 공동지배하고 있는 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에도 유사한 선택을 고려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1J	IFRS 1.25	기업이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이나 조인트벤처)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이나 조인트벤처)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기초로 연결과 지분법 조정 및 종속기업을 취득한 사업결합의 조정을 반영한 금액으로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는가?	
		Note: 이 조항은 IFRS 1 부록 B2 사업결합의 일부로서 취득한 자산과 부채의 측정에 대한 조항에 우선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결합일 이후와 전환일 전에 종속기업에 의해 취득한 자산과 부채는 위 기준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	
1K	IFRS 1.25	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투자자, 벤처투자자)이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시기가 다른 경우 연결조정을 제외하고는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자산과 부채를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하였는가?	
		과거 인식한 금융상품의 지정	
		Note: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은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매도가능으로 지정하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금융상품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IFRS 1 에서는 아래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최초인식시 지정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1L	IFRS 1.25A(a)	기업은 IFRS 전환일에 매도가능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하였는가?	
		주식기준보상거래	
1M	IFRS 1.25B	기업은 2002 년 11 월 7 일 이전에 부여한 지분상품에 대하여 IFRS 2 '주식기준보상 ' 을 적용할 것을 고려하였는가?	
		Note: 기업은 2002 년 11 월 7 일 이전에 부여한 지분상품에 대하여 IFRS 2 '주식기준보상 ' 을 반드시 적용할 의무는 없지만 적용이 권장된다. 기업이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해 IFRS 2 를 적용하는 것은 IFRS 2 의 규정에 따라 측정일에 결정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외부에 공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1M	IFRS 1.25B	기업은 2002 년 11 월 7 일 후에 부여한 지분상품이 ⑴ IFRS 전환일과 ⑵ 2005 년 1 월 1 일 중 늦은 날 전에 가득된 경우 IFRS 2 를 적용할 것을 고려하였는가?	
		Note: 기업은 2002 년 11 월 7 일 이후에 부여한 지분상품이 IFRS 전환일과 2005 년 1 월 1 일 중 늦은 날 전에 가득된 경우에 대하여 IFRS 2 '주식기준보상 ' 을 적용할 의무는 없지만 적용이 권장된다. 기업이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해 IFRS 2 를 적용하는 것은 IFRS 2 의 규정에 따라 측정일에 결정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외부에 공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1M	IFRS 1.25B	부여한 지분상품 중 IFRS 2 를 적용하지 않는 모든 지분상품 (예를 들면 2002 년 11 월 1 일 이전에 부여한 지분상품)에 대하여도 기업은 IFRS 2 의 문단 44 와 45 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였는가 (딜로이트 주석과 공시 Checklist 의 관련 Section 참조)?	
1M	IFRS 1.25B	기업이 IFRS 2 를 적용하지 않은 지분상품의 부여에 대한 조건이나 상황을 ⑴ IFRS 전환일과 ⑵ 2005 년 1 월 1 일 중 늦은 날 전에 변경하였다면 기업은 IFRS 2 의 문단 26~29 를 반드시 적용할 필요가 없음을 인지하고 고려하였는가?	
1M	IFRS 1.25C	기업은 IFRS 전환일 전에 결제된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인한 부채에 대하여 IFRS 2 를 적용할 것을 고려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 최초채택기업은 IFRS 전환일전에 결제된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인한 부채에 대하여 IFRS 2 를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권장된다.	
1M	IFRS 1.25C	기업은 2005 년 1 월 1 일 전에 결제된 부채에 대하여 IFRS 1 을 적용할 것을 고려하였는가?	
		Note: 최초채택기업은 2005 년 1 월 1 일 전에 결제된 부채에 대하여 IFRS 2 를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권장된다.	
1M	IFRS 1.25C	기업은 최초채택기업이 IFRS 2 를 적용한 부채에 대하여 2002 년 11 월 7 일 전의 기간 또는 일자와 관련된 비교재무정보를 반드시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고려하였는가?	
		보험계약	
1N	IFRS 1.25D	기업은 IFRS 4 의 경과규정을 적용할 것을 고려하였는가?	
		Note: IFRS 4 의 경과규정은 조기적용이 권장되기는 하지만 동 기준서를 2005 년 1 월 1 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기간에 적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최초채택기업은 2005 년 1 월 1 일 이후에 개시하는 최초회계기간부터만 소급적으로 IFRS 4 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조기적용이 권장된다.	
1N	IFRS 1.25D	기업은 IFRS 4 에 기술되어 있는 규정이 충족되었을 때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는가?	
		Note: IFRS 4 는 최초채택기업에 따른 변경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한한다.	
		유형자산에 포함되는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	
1Q	IFRS 1.25E	IFRIC 1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을 전환일에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가?	
		Note: IFRIC 1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은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특정 변경을 관련된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정된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의 잔여 내용연수동안 전진적으로 상각된다.	
1Q	IFRS 1.25E	최초채택기업이 IFRS 전환일 전에 발생한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에 대하여 IFRIC 1 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최초채택기업이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는가? a) IFRS 전환일을 기준으로 IAS 37 에 따라 부채를 측정한다. b) IFRIC 1 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상기 부채를 과거기간에 대해 해당 부채에 적용될 역사적 위험조정 할인율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부채의 최초 발생일까지 할인하여 부채가 최초 발생할 때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었을 금액을 추정한다. c) IFRS 에 따라 채택한 감가상각방법과 자산의 현행 추정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IFRS 전환일의 감가상각누계액을 계산한다.	
		IFRIC 4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의 결정'	
1S	IFRS 1.25F	IFRIC 4 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적용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 최초채택기업은 IFRIC 4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의 결정'의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최초채택기업은 IFRS 전환일에 존재하는 약정에 대하여 동 일자의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1L	IFRS 1.25G	IFRS 1 문단 7 과 9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AS 39 문단 AG76 의 마지막 문장과 문단 AG76A 를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는가? (a) 2002 년 10 월 25 일 후 체결된 거래부터 전진적용 (b) 2004 년 1 월 1 일 후 체결된 거래부터 전진적용	
		민간투자사업	
1T	IFRS 1.25H	기업이 IFRIC 12 '민간투자사업'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였는가?	
	IFRS 1.25H	*Note: 최초채택기업은 IFRIC 12 의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특정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운영자가 IFRIC 12 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한다.* *a)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 초에 존재하던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b)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의 종전 장부금액 (어떻게 분류되었는지 관계없이) 을 그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c) 그 시점에 인식된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의 손상여부를 검토한다. 다만, 실무적으로 그 시점에서의 손상여부를 검토할 수 없다면, 당기 초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IFRIC 12 는 2011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2009 년 1 월 1 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다른 IFRS 의 소급적용에 대한 예외	
	IFRS 1.26	*Note: 이 기준서는 다음과 관련된 다른 IFRS 의 일부 규정의 소급적용을 금지한다.* *(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제거* *(2) 위험회피회계* *(3) 추정치* *(4)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중단영업*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제거	
1P	IFRS 1.27	문단 27A 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은 2004 년 1 월 1 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IAS 39 의 제거 관련 규정을 전진적용하였는가?	
		Note: 최초채택기업이 2004 년 1 월 1 일 전에 발생한 거래의 결과로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비파생금융자산과 비파생금융부채를 제거한 경우, 그 자산과 부채는 IFRS 에 따라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후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인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	
1P	IFRS 1.27A	기업이 과거 거래의 결과로 제거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 그 거래의 최초 회계처리시점에 IAS 39 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기업이 선택한 일자부터 소급하여 IAS 39 의 제거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는가?	
		위험회피회계	
1Q	IFRS 1.28	IAS 39 의 규정에 따라 IFRS 전환일에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는가? (a) 모든 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b)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로 보고한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이연손익을 제거한다.	
1Q	IFRS 1.29	개시 IFRS 재무상태표에 IAS 39 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위험회피관계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는가?	
		Note: 예를 들면, 위험회피수단이 비파생상품이나 매도옵션인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순포지션인 경우 또는 위험회피대상이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이자위험인 경우 등의 다양한 위험회피관계	
1Q	IFRS 1.29	IFRS 전환일 이전에 기업이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순포지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순포지션 내의 개별항목을 IFRS 에 따른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는가?	
1Q	IFRS 1.30	IFRS 전환일 이전에 기업이 위험회피거래로 지정하였으나 그 거래가 IAS 39 의 위험회피회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IAS 39 의 문단 91 과 101 을 적용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였는가 (IAS 39 section 참조)?	
1Q	IFRS 1.30	IFRS 전환일 전에 체결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가 성사된 시점 (즉, 소급하여 지정하지 않음)에 위험회피관계가 적절히 지정되었는가?	
1Q	IFRS 1.30	IFRS 전환일 현재 존재하는 모든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IAS 39 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였는가?	
		추정치	
1R	IFRS 1.31	IFRS 전환일의 IFRS 에 따른 추정치는 기존의 추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동일한 시점에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추정된 추정치 (회계정책의 차이 조정 반영 후)와 일관성이 있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 기업은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추정치에 대한 정보를 IFRS 전환일 이후에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의 입수는 문단 31 에 따라 IAS 10 '보고기간후사건'의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의 IFRS 전환일이 20x5 년 1 월 1 일 이며, 20x5 년 7 월 15 일에 입수한 새로운 정보에 따르면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20x4 년 12 월 31 일의 추정치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정보를 개시 IFRS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회계정책의 차이 때문에 추정치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정치에 오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 대신 이 새로운 정보를 20X4 년 12 월 31 일에 종료되는 연도의 손익 (또는 적절하다면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	
1R	IFRS 1.33	만약 회사가 IFRS 전환일에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반드시 적용할 의무는 없었으나 IFRS 에 따라 추정을 해야 하는 경우, IFRS 에 따른 추정치는 전환일에 존재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가?	
		Note: 특히, IFRS 전환일의 시장가격, 이자율 또는 환율의 추정치는 동 일자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1R	IFRS 1.34	문단 31 내지 33 을 개시 IFRS 재무상태표에 적용하는 것과 동시에 동 문단을 최초 IFRS 재무제표의 비교표시되는 기간에도 적용하였는가?	
		Note: IFRS 전환일에 비교표시되는 기간에 문단 31 내지 33 을 적용하는 경우, 비교표시되는 기간의 종료일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IFRS 2 Share-based Payment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본 질문서는 기업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지급대가가 기업 또는 동일실체 내의 다른기업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약정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주요내용은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측정과 후속적인 비용의 인식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용범위 *IFRS 2는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하는 기업과 거래상대방(종업원 포함) 사이의 계약으로서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서 특정 가득조건이 있는 경우 그 가득조건이 충족되면 거래상대방은 기업의 지분상품을 받거나, 기업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금액만큼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식기준보상거래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거나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격에 기초한 금액만큼의 부채를 부담하는 거래이다.* *기업은 다음을 포함한 모든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IFRS 2 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a)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b)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격(또는 가치)에 기초한 금액만큼의 부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그리고* *c) 기업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의 결제방식으로, 기업 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약정에 따라 현금(또는 그 밖의 자산) 지급이나 지분상품발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래.* *IFRS2 의 목적상, 기업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종업원 포함)에게 기업의 주주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지분상품을 이전하는 경우도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한다. 다만, 지분상품 이전의 목적이 기업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지급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기업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기업의 지배기업 또는 동일한 연결실체 내에 있는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IFRS2 의 목적상, 종업원 등이 기업의 지분상품 보유자 자격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예를들어, 특정분류의 지분상품 보유자 모두에게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지분상품을 추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 이미 그 특정분류의 지분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종업원은 그 지분상품 보유자 자격으로 그러한 권리를 부여받게 되므로 당해거래에 대해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IFRS 2 는 IFRS 3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으로 재화(취득하는 순자산의 일부)를 취득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업결합으로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대가로 발행하는 지분상품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취득자의 종업원에게 종업원으로서의 자격(예: 계속 근무에 대한 대가)에 대해 부여한 지분상품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사업결합이나 그 밖의 지분구조개편 등의 이유로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도 이기준서를 적용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FRS 2 는 IAS 32 의 8~10 또는 IAS 39 의 5~7 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계약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IFRS 2 의 적용범위'를 다루고 있는 IFRS 8 해석서는 2006 년 1 월에 공표되었으며, 동 해석서는 기업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전부나 일부를 특정하여 식별할 수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IFRS 2 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특정하여 식별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이 없어도 다른 정황에 비추어 재화나 용역을 이미 제공받은(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면 IFRS 2 를 적용한다.* *IFRS 2 - '연결실체주식거래 및 자기주식거래'를 다루고 있는 IFRIC 11 해석서는 2006 년 11 월에 공표되었으며, 동 해석서는 IFRS2 를 기업의 자기지분상품(자기주식)을 포함하는 특정 주식기준보상약정과 지배기업의 지분상품을 포함하는 주식기준보상약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IFRIC 11 은 2007 년 3 월 1 일 이후에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7 년 3 월 1 일 이전에 개시되는 회계연도에도 조기적용이 가능하며, 조기적용 기업은 조기적용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예비질문	
		만약 어떠한 예비질문에 "예"라고 답한 경우에는 관련 준수질문에 답하시오.	
2A		회사는 종업원 또는 유사용역제공자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 또는 동일한 실체내의 기업의 지분을 부여하는 거래를 하였는가?	
2B		회사는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과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 또는 동일한 실체내의 기업의 지분을 부여하는 거래를 하였는가?	
2C		회사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 또는 동일한 실체내의 기업의 지분에 기초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보상을 제공하는 거래를 하였는가?	
2D		회사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가 기업의 지분 또는 동일한 실체내의 기업의 지분을 부여하거나 기업의 지분 또는 동일한 실체내의 기업의 지분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가격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는 거래를 하였는가?	
2E		회사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거래상대방이 기업의 지분 또는 동일한 실체내의 기업의 지분을 부여받거나 기업의 지분 또는 동일한 실체내의 기업의 지분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가격만큼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는 거래를 하였는가?	
2F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있어, 회사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을 변경하였는가?	
2G		회사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전부나 일부를 특정하여 식별할 수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하였는가?	
2H		회사가 종업원에게 자신의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예 :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종업원에 대한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제 3 자에게서 자기지분상품(즉, 자기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거나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가?	
2I		회사의 종업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의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예 : 주식선택권)를 회사나 주주에게서 부여받으며, 주주는 필요한 지분상품을 제공하여야 하는가?	
2J		회사의 지배기업이 직접 회사의 종업원에게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며, 지배기업(종속기업인 회사는 아님)은 회사의 종업원에게 필요한 지분상품을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2K		회사가 자신의 종업원에게 지배기업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며, 회사는 종업원에게 필요한 지분상품을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는가?	
		세부준수질문	
		인식	
2A, B, C, D, E	IFRS 2.7	회사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인식하였는가?	
2A, B	IFRS 2.7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회사는 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였는가?	
2C	IFRS 2.7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회사는 그에 상응한 부채의 증가를 인식하였는가?	
2A, B, C, D, E	IFRS 2.8	회사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하였는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2A, B	IFRS 2.10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만약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회사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하였는가?	
2A, B	IFRS 2.10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회사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하였는가?	
2A	IFRS 2.11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와의 거래에 있어, 회사는 자본의 증가를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부여일 기준으로 측정하였는가?	
		Note: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와의 거래와 관련한, 자본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제공받은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한다.	
2B	IFRS 2.13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 있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는가?	
		Note: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 있어, 반증이 없는 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2B	IFRS 2.13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 있어, 드물지만,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하였는가?	
		용역이 제공되는 거래	
2A, B	IFRS 2.14	부여한 지분상품이 즉시 가득되는 경우 (즉, 거래상대방은 지분상품에 대한 무조건부 권리를 얻기 위해 특정기간의 용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다.), 반증이 없는 한, 회사는 제공받은 용역 전부를 부여일에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 이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지분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서 이미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2A, B	IFRS 2.15	부여한 지분상품이 즉시 가득되지 않는 경우 (즉, 거래상대방이 특정기간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된 지분상품이 가득된다), 회사는 당해 용역을 가득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하며,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였는가?	
		Note: 이러한 경우에는 지분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것으로 본다. 가득기간의 결정에 대한 부분은 후반부에 좀 더 자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거래	
		<u>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결정 - 일반사항</u>	
2A, B	IFRS 2.16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거래를 측정하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적절한 측정기준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였는가? a)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부여일 기준 b)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 기준	
2A, B	IFRS 2.16, 17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경우에, 회사는 공정가치를 아래와 같이 측정하였는가? a) 지분상품의 부여조건을 고려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시장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함 b) 이용가능한 시장가격이 없다면, 측정기준일 현재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결정될 지분상품 가격을 추정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함	
2A, B	IFRS 2.17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할 경우, 그러한 가치평가기법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금융상품 가치평가방법과 일관성이 있으며,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게 될 모든 요소와 가정을 포함하고 있는가?	
		Note: 아래에서 제시되는 추가적인 질문에서는 주식 및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측정에 관하여 적용지침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공통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FRS 2 의 Appendix B 참조)	
		<u>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추정 - 주식</u>	
2A, B, D, E	IFRS 2.B2	종업원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경우, 주식의 공정가치를 기업 주식의 시장가격(만약 시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추정시장가격으로 측정)으로 측정하되, 주식의 부여조건을 고려(다만, IFRS 2.19~21 에 따라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제외하는 가득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하여 조정하였는가?	
		<u>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추정 - 주식선택권</u>	
2A, B, D, E	IFRS 2.B4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과 비슷한 조건을 갖는 시장성옵션이 없다면,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는가?	
		Note: 종업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시장가격을 이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 주식선택권에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옵션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2A, B, D, E	IFRS 2.B5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정할 때 회사는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들이 고려할 요소를 반영하였는가? *Note: 예를 들어, 상당수의 종업원 주식선택권은 만기가 장기이고 가득일과 만기일 사이에 행사가능하며 종종 조기에 행사된다. 이러한 요소는 주식선택권의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한다.*	
2A, B, D, E	IFRS 2.B6	옵션가격결정모형은 최소한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였는가? a)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 b) 주식선택권의 존속기간 c) 기초자산인 주식의 현재가격 d) 기초자산인 주식의 기대주가변동성 e) 주식선택권의 존속기간에 지급이 예상되는 배당금 f) 주식선택권의 존속기간에 적용될 무위험이자율	
2A, B, D, E	IFRS 2.B7	IFRS 2.B6 에서 정하고 있는 요소 이외에도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들이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IFRS 2.19~22 에 따라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배제되는 가득조건과 재부여특성은 제외)가 있다면 이 또한 고려하였는가?	
2A, B, D, E	IFRS 2.B10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들이 주식선택권(또는 다른 지분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을 요소들은 부여한 주식선택권(또는 다른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하였는가? *Note: 예를 들어, 종업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종업원 개인관점에서만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가격을 추정할 때는 관련성이 없다.*	
		옵션가격결정모형의 가격결정요소	
2A, B, C, D, E	IFRS 2.B11	기초주식의 기대주가변동성과 기대배당금을 추정하는 데 있어, 회사는 그 주식을 기초로 하는 옵션의 시장가격 및 합의된 교환가격에 반영될 기대치를 측정하였는가?	
2A, B, C, D, E	IFRS 2.B11	종업원 주식선택권의 조기행사 효과를 추정하는 데 있어, 회사는 외부의 제 3 자가 종업원의 주식선택권 행사행태에 관하여 부여일에 이용할 수 있는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하게 될 기대치를 측정하였는가?	
2A, B, C, D, E	IFRS 2.B12	기대주가변동성, 기대배당금 및 행사행태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치가 일정범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범위 내 각 추정치를 그 발생확률로 가중평균함으로써 단일의 기대치를 산정하였는가?	
2A, B, C, D, E	IFRS 2.B13	옵션가격결정모형의 가격결정요소를 결정함에 있어, 미래에 대한 추정치는 일반적으로 과거 경험자료에 기초하되 미래가 과거와 다를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있다면 적절히 수정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 경우에 따라서 과거 경험자료를 수정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부실한 미래 예측자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뚜렷이 구별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단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은 사업단위를 처분한다면, 과거 주가변동성은 미래의 기대주가변동성을 추정할 때 최선의 정보라고 볼 수 없다. *기업은 과거 경험자료를 통하여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기대주가변동성, 행사행태 및 기대배당금을 단순히 과거 경험자료에 기초하여 추정할 수 없다.*	
		예상되는 조기행사	
2A, B, C, D, E	IFRS 2.B18	주식선택권의 조기행사 효과를 추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였는가? a) 가득기간의 길이. 주식선택권은 일반적으로 가득기간 종료전까지는 행사될 수 없기 때문이다.	
		Note: 따라서 예상되는 조기행사가 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결정할 때에는 주식선택권이 가득될 것으로 가정할 필요가 있다.	
		b) 비슷한 주식선택권의 과거평균존속기간 c) 기초주식의 가격	
		Note: 종업원은 주가가 행사가격을 특정수준 이상 초과할 때 주식선택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	
		d) 종업원 직급	
		Note: 예를 들어, 상위직급의 종업원은 하위직급의 종업원보다 늦게 주식선택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	
		e) 기초주식의 기대주가변동성	
		Note: 평균적으로 볼 때, 종업원은 주가변동성이 낮은 주식에 비해 주가변동성이 높은 주식에 대한 주식선택권을 먼저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	
2A, B, C, D, E	IFRS 2.B20	조기행사의 효과를 추정할 경우에, 기업은 부여한 주식선택권을 행사행태가 비슷한 종업원소집단별로 구분하였는가?	
		기대주가변동성	
2A, B, C, D, E	IFRS 2.B22	옵션가격결정모형에서 사용되는 기대주가변동성은 일정기간 예상되는 주식의 연속복리투자수익률의 연환산표준편차인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 기대주가변동성은 일정한 기간에 주가가 등락하는 정도에 대한 추정치이다. 주가변동성은 계산에 사용되는 기간(예: 일, 주, 월)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비교가능한 연환산치로 표시한다. *주식의 일정기간 투자수익률(양 또는 음의 수치)은 배당금과 주식가치 상승(또는 하락)으로 주주가 얻은 효익을 측정한다.* *연환산기대주가변동성으로 주식에 대한 연속복리투자수익률이 대략 2/3 의 확률로 실현되는 범위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2%의 연속복리투자수익률이 기대되고 주가변동성이 30%인 주식이 있다면 이는 1 년 동안 이 주식의 수익률이 대략 2/3 의 확률로 -18%(12%-30%)와 42%(12%+30%) 사이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초에 주가가 100 원이고 연중에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연말의 주가는 대략 2/3 의 확률로 83.53 원(100 원×$e^{-0.18}$)과 152.20 원(100 원×$e^{0.42}$) 사이에서 실현 될 것이다.*	
2A, B, C, D, E	IFRS 2.B25	기대주가변동성을 추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였는가? a) 기업의 주식을 기초로 하는 시장성 있는 주식선택권이나 기업이 발행한 것으로서 옵션의 특성이 포함된 다른 시장성 있는 금융상품(예: 전환사채)의 내재가격변동성 b)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기간에 일반적으로 상응하는 최근 기간의 주가변동성. 이 경우 주식선택권의 잔여만기와 예상되는 조기행사의 효과를 고려한다. c) 기업의 주식이 공개되어 거래된 기간 *Note: 신규상장된 기업의 주가변동성은 오래 전에 상장된 비슷한 기업의 주가변동성 보다 높을 것이다. 신규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아래 (IFRS 2 의 AppendixB 의 B26)에서 더욱 자세한 적용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d) 변동성이 장기평균치로 회귀하는 경향과 미래의 기대주가 변동성이 과거의 주가변동성과는 다를 것임을 시사하는 다른 요소들. *Note: 예를 들어, 식별가능한 기간에 경영권인수 제안거부 또는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등락하였다면, 그 기간은 과거 연환산주가변동성을 산정할 때 제외할 수 있다.* e) 적절하고 정기적인 주가관측 주기 *Note: 주가관측치는 기간별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가관측치로는 매주의 종가 또는 최고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떤 주에는 종가를 이용하고 다른 주에는 최고가를 이용한다면 일관성이 없게 된다. 또한 주가관측치는 행사가격과 동일한 통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2A, B, C, D, E	IFRS 2.B26	신규상장기업 신규상장기업의 과거 주가변동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없더라도 해당 주식의 거래행위가 관측될 수 있는 최장의 기간에 대해 과거 주가변동성을 산정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2A, B, C, D, E	IFRS 2.B26	또한, 기업은 기대존속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에 대해 비슷한 기업의 과거 주가변동성을 고려하였는가? *Note: 예를 들어, 1 년 전에 상장한 기업이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기간이 5 년인 경우, 동종 산업에 속하는 비슷한 기업의 상장 후 최초 6 년 동안의 주가변동성 형태와 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	
2A, B, C, D, E	IFRS 2.B28	비상장기업 비상장기업이 종업원 등(또는 제 3 자)에게 정기적으로 주식선택권이나 주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기업내부에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한 내부시장에서 결정되는 주가의 변동성을 기대주가변동성을 추정할 때 고려하였는가?	
2A, B, C, D, E	IFRS 2.B29	기대주가변동성을 추정할 때 주가나 옵션가격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비슷한 상장기업의 과거 또는 내재 주가변동성을 고려하였는가? *Note: 이 방법은 기초주식의 가치를 추정할 때 비슷한 상장기업의 주가에 기초한 경우 적합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의 질문을 참고하라.*	
2A, B, C, D, E	IFRS 2.B30	기초주식의 가치를 추정할 때 비슷한 상장기업의 주가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평가방법을 이용한 경우에 기대주가변동성을 그러한 평가방법과 일관되게 추정하였는가? *Note: 예를 들어, 기초주식의 가격을 순자산이나 순이익에 기초하여 추정한 때에는 순자산이나 순이익의 기대변동성을 고려할 수 있다.* *기대배당금* *Note: 부여한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기대배당금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부여받는 상대방이 배당금 또는 배당등가물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A, B, C, D, E	IFRS 2.B33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의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종업원이 가득기간에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면 기대배당금과 관련하여 어떤 조정도 영향받지 아니하였는가?	
2A, B, C, D, E	IFRS 2.B34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의 가득기간(주식선택권의 경우 행사일 전)에 배당금 또는 배당등가물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할 경우에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기대배당금을 고려하였는가? *Note: 즉,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기대배당금을 옵션가격결정모형 내에 포함하여야 한다.*	
2A, B, C, D, E	IFRS 2.B34	종업원이 가득기간에 배당금 또는 배당등가물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할 경우, 부여한 주식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가득기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금의 현재가치를 차감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2A, B, C, D, E	IFRS 2.B35	만약 기업이 주식선택권의 가치를 추정할 때 기대배당금을 사용할 경우, 과거의 배당금 증가형태를 고려하였는가? *Note: 일반적인 옵션가격결정모형은 기대배당수익률을 가격결정요소로 한다. 그러나 그러한 모형도 기대배당수익률이 아닌 기대배당금을 가격결정요소로 하도록 수정될 수 있다. 기업은 옵션가격결정모형에 따라 주식선택권의 가치를 추정할 때 기대배당수익률 또는 기대배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배당정책이 매년 대략 3%만큼 배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면 충분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대존속기간에 고정배당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수 없다.*	
2A, B, C, D, E	IFRS 2.B36	일반적으로 기대배당금에 대한 가정은 공개된 정보에 근거하였는가?	
2A, B, C, D, E	IFRS 2.B36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계획이 없는 기업은 기대배당수익률을 영(0)으로 가정하였는가?	
2A, B, C, D, E	IFRS 2.B36	설립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의 경우 과거에 배당실적이 없더라도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기간에는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과거의 배당수익률 영(0)과 적절하게 비교가능한 유사기업들의 평균배당수익률을 평균한 값을 사용하였는가?	
		무위험이자율	
2A, B, C, D, E	IFRS 2.B37	회사는 무위험이자율로 잔여만기가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기간(주식선택권의 잔여만기에 기초하되 조기행사 효과를 고려함)과 같거나 비슷하고,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표시되는 통화권의 국가가 발행하는 무이표국공채의 이용가능한 현행의 내재수익률을 사용하였는가?	
2A, B, C, D, E	IFRS 2.B37	적절한 국공채가 없거나 무이표국공채의 내재수익률이 무위험이자율로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예: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는 적절한 대체이자율을 사용하였는가?	
2A, B, C, D, E	IFRS 2.B37	시장참여자들이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기간과 만기가 같은 옵션을 평가할 때 무이표국공채의 내재수익률 대신 다른 대체이자율을 사용할 경우, 당해 대체이자율을 사용하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였는가?	
		자본구조효과	
2A, B, C, D, E	IFRS 2.B41	회사는 부여한 주식선택권이 미래에 행사될 때 발생할 희석효과가 부여일에 추정되는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고려하였는가? *Note: 기업이 옵션을 발행한다면 옵션이 행사될 때 새로 주식이 발행된다 (실제로 신주가 발행되거나 기업이 이전에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이 사용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발행되는 경우를 들 수 있음). 이 경우, 주식은 행사일의 현행 주가가 아닌 사전에 약정된 행사가격으로 발행되므로 이러한 희석효과는 주가를 하락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주식선택권 보유자는 주가를 희석시키지 않는 비슷한 시장성옵션이 행사될 때만큼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희석효과가 주식선택권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기발행된 주식수 대비 행사일에 새로 발행될 주식수 비율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또 시장에 주식선택권이 부여되리라는 기대가 있다면, 부여일의 주가에 이미 희석효과가 반영되었을 수 있다.* *옵션가격결정모형은 이러한 잠재적인 희석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변형할 수 있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가득조건의 회계처리	
2A, B	IFRS 2.19	지분상품은 특정 가득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부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측정기준일 현재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배제하였는가?	
		Note: 시장조건은 지분상품의 행사가격, 가득 또는 행사가능성을 좌우하는 것으로 기업 지분상품의 시장가격에 관련된 조건이다. 시장조건에는 목표주가의 달성, 주식선택권의 목표내재가치 달성, 기업의 지분상품의 시장가격을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시장가격의 지수와 비교하여 지정한 목표의 달성 등이 포함된다.	
2A, B	IFRS 2.19	회사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거래금액 측정 시 포함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할 때 고려함으로써,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하였는가?	
		Note: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특정 용역제공기간을 근무하지 못하거나 성과조건(다만 IFRS 2.21 의 제약을 받음)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처럼,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2A, B	IFRS 2.20	IFRS2. 19(위 참조)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서 a) 회사는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금액을,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에 기초하여 인식하였는가? b) 만약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직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였는가? c) 회사는 IFRS 2.21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과 일치하도록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였는가?	
2A, B	IFRS 2.21	시장조건과 관련하여, 회사는: a)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였는가? b) 시장조건이 달성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모든 가득조건(예: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이 충족되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하였는가?	
		재부여특성의 회계처리	
2A, B	IFRS 2.22	주식선택권이 재부여특성을 가지는 경우, 회사는: a)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측정기준일 현재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재부여특성은 배제하였는가? b) 사후적으로 재부여주식선택권이 부여될 때 당해 재부여주식선택권을 새로운 주식선택권으로 회계처리하였는가?	
		Note: 재부여특성은 주식선택권 보유자가 이미 부여된 주식선택권을 행사하면서 행사가격 지불수단으로서 현금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기업의 주식을 이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주식선택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특성을 의미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u>가득일 후의 회계처리</u>	
2A, B	IFRS 2.23	IFRS 2.10~22(위 참조)에 따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인식한 경우, 회사는 가득일이 지난 뒤에는 자본을 수정하지 아니하였는가?	
		Note: 예를 들어, 가득된 지분상품이 추후 상실되거나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도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자본계정 간의 이체 즉, 한 자본계정에서 다른 자본계정으로 이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u>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의 회계처리</u>	
2A, B	IFRS 2.24	드물지만,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기준일 현재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드문 경우에 회사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는가? a)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지분상품을 내재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이후 매 보고기간말과 최종결제일에 내재가치를 재측정하고 내재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Note: 지분상품이 주식선택권이라면 당해 주식선택권이 행사되거나 상실(예: 고용의 중단) 또는 만기소멸(예: 주식선택권 계약기간 만료)되는 날을 주식기준보상 약정의 최종결제일로 한다.	
		b)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궁극적으로 행사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하였는가?	
		Note: 예를 들어,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IFRS 2.14 와 15(다만, IFRS 2.15(b)에서 시장조건과 관련된 규정은 제외)에 따라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하는데, 인식금액은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만약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이 직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당해 추정치를 변경한다.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과 일치하도록 당해 추정치를 변경한다. 가득일 후에 주식선택권이 상실되거나 만기소멸된다면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을 환입한다.	
2A, B	IFRS 2.25	가득기간 중에 회사가 IFRS 2.24 가 적용되는 지분상품(즉, 내재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을 중도청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a) 중도청산이 가득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여된 지분상품이 즉시 가득된 것으로 보아, 중도청산이 없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될 금액을 즉시 인식하였는가? b) 중도청산 시 지급액은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하였는가? 다만, 지급액이 재매입일 현재 지분상품의 내재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였는가?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변경 (취소 및 중도청산 포함)	
		Note: 이하에서는 종업원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전제로 조건변경에 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내용들은 종업원이 아닌 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부여일을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로 갈음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2F	IFRS 2.27	회사가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a) 지정된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 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하였는가?	
2F	IFRS 2.B43	b) 가득기간 중에 조건변경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예: 행사가격의 인하) 조건변경으로 인한 증분공정가치를 조건변경일부터 변경된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걸쳐 인식하였는가?	
		Note: 증분공정가치는 조건변경일에 추정된 변경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당초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말한다. 증분공정가치가 감소할 경우에는 최초 또는 변경된 거래의 측정 또는 인식 시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c) 만약 가득일 이후에 조건변경으로 인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종업원이 변경된 지분상품에 대한 무조건부 권리를 얻기 위해 추가적인 용역제공기간을 근무할 필요가 없는 경우, 증분공정가치를 즉시 인식하였는가?	
		d) 만약 가득일 이후에 조건변경으로 인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종업원이 변경된 지분상품에 대한 무조건부 권리를 얻기 위해 추가적인 용역제공기간을 근무해야 한다면, 증분공정가치를 추가된 가득기간에 걸쳐 인식하였는가?	
		e) 만약 가득기간 중에 조건변경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회사는 조건변경일 현재 측정된 증분공정가치를 조건변경일로부터 변경된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걸쳐 인식하였는가?	
		f) 만약 가득일 이후에 조건변경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의 수량이 증가하고, 종업원이 변경된 지분상품에 대한 무조건부 권리를 얻기 위해 추가적인 용역제공기간을 근무할 필요가 없는 경우, 조건변경일 현재 측정된 증분공정가치를 즉시 인식하였는가?	
		g) 만약 가득일 이후에 조건변경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의 수량이 증가하고, 종업원이 변경된 지분상품에 대한 무조건부 권리를 얻기 위해 추가적인 용역제공기간을 근무해야 한다면, 조건변경일 현재 측정된 증분공정가치를 조건변경일로부터 변경된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걸쳐 인식하였는가?	
		h)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가득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득조건의 영향을 고려할 때 변경된 가득조건을 고려하였는가?	
2F	IFRS 2.28	부여한 지분상품을 가득기간 중에 기업이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는가? a) 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된 것으로 보아, 취소나 중도청산이 없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될 금액을 즉시 인식하였는가? b) 취소나 중도청산 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i)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하고,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i) 다만, 지급액이 부여한 지분상품의 재매입일 현재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였는가?	
2F	IFRS 2.28	종업원에게 새 지분상품을 부여하고, 그 새 지분상품을 부여한 날에 새로 부여한 지분상품이 취소한 지분상품을 대체하는 것으로 식별하는 경우, 회사는 대체지분상품의 부여를 원래 지분상품 부여에 대한 조건변경으로 보아 회계처리(위 참조)하였는가?	
		Note: 취소한 지분상품의 순공정가치는 취소 직전의 공정가치에서 자본의 감소로 회계처리하는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액이 부여한 지분상품의 재매입일 현재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부분은 제외)	
2F	IFRS 2.28	기업이 새로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한 지분상품의 대체로 식별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새로운 지분상품을 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가?	
2F	IFRS 2.29	가득된 지분상품을 재매입하는 경우, 회사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는가? a)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하고, b) 다만, 지급액이 재매입일 현재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였는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2C	IFRS 2.30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회사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였는가?	
		Note: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격(또는 가치)에 기초한 금액만큼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정의된다.	
2C	IFRS 2.30	회사는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2C	IFRS 2.32	회사는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근무용역을 제공받는 기간에 인식하였는가?	
		Note: 예를 들어, 부여되는 즉시 가득되는 주가차액보상권의 경우, 종업원이 현금을 지급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특정 용역제공기간을 근무해야 할 의무가 없다.	
2C	IFRS 2.32	반증이 없는 경우, 회사는 종업원에게서 이미 근무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았는가?	
2C	IFRS 2.32	만약, 종업원이 특정 용역제공기간을 근무해야만 주가차액보상권이 가득된다면,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는 그 용역제공기간 동안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인식하였는가?	
2C	IFRS 2.33	회사는 주가차액보상권을 부여함에 따라 인식하는 부채에 대하여 부여일과 부채의 결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 및 결제일에 주가차액보상권의 부여조건과 측정기준일까지 종업원에게서 근무용역을 제공받은 정도를 고려하여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현금결제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2D, E	IFRS 2.34	기업이나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으로 현금(또는 그 밖의 자산) 지급이나 기업의 지분상품발행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나 거래의 일부요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는가? a) 기업이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결제해야 하는 부채를 부담하는 부분만큼만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하고, b) 그러한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한다.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2D	IFRS 2.35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현금이나 지분상품 발행으로 결제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복합금융상품(아래 참조)으로 회계처리하였는가?	
		Note: 복합금융상품은 부채요소(거래상대방의 현금결제요구권)와 자본요소(거래상대방의 지분상품결제요구권)를 포함한다.	
2D	IFRS 2.35	종업원이 아닌 자와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직접 측정하는 경우, 회사는 복합금융상품 중 자본요소는 재화나 용역이 제공되는 날 현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측정하였는가?	
2D	IFRS 2.36	종업원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포함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거래의 경우, 회사는 현금이나 지분상품에 대해 부여된 권리의 조건을 고려하여 측정기준일 현재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였는가?	
2D	IFRS 2.37	IFRS 2.36(위 참조)을 적용할 경우, 회사는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다음의 요소를 합한 금액으로 측정하였는가? a) 거래상대방이 지분상품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수취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된 부채요소의 공정가치 b) 거래상대방이 지분상품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방식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된 자본요소의 공정가치	
2D	IFRS 2.37	위에서 기술된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결정할 경우, 회사는 우선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한 다음 자본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였는가?	
		Note: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두 요소의 공정가치를 합한 금액이 된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일반적으로 각 결제방식의 공정가치가 같도록 설계된다.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이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결제방식으로 주식선택권이나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자본요소의 공정가치는 영(0)이며 따라서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와 같다. 반면에, 만약 각 결제방식의 공정가치가 다르다면 자본요소의 공정가치는 보통 영(0)보다 크고, 따라서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보다 크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2D	IFRS 2.38	회사는 부여한 복합금융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의 구성요소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였는가? a) 부채요소에 대하여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관한 규정(위의 IFRS 2.30 ~33 참조)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인식한다. b) 자본요소에 대하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관한 규정(위의 IFRS 2.10 ~29 참조)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인식한다.	
2D	IFRS 2.39	결제일에 회사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였는가?	
2D	IFRS 2.39	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공정가치로 재측정된 부채를 발행되는 지분상품의 대가로 보아 자본으로 직접 대체하였는가?	
2D	IFRS 2.40	기업이 결제 시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지급액은 모두 부채의 상환액으로 보며, 이미 인식한 자본요소는 계속 자본으로 분류한다. ***기업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2E	IFRS 2.41	기업이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회사는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위의 IFRS 2 30~33 참조)로 보아 회계처리하였는가? *Note: 기업이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결제하는 방식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예: 법률에 의한 주식발행의 금지), 현금으로 결제한 과거의 실무관행이 있거나 현금결제정책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현금결제를 요구할 때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다.*	
2E	IFRS 2.43	기업이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보아 IFRS 2.10~29(위 참조)에 따라 회계처리하였는가?	
2E	IFRS 2.43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없는 경우, 회사는 결제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는가? a) 기업이 현금결제를 선택하는 경우,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현금지급액을 자본에서 차감하였는가? b) 기업이 결제일에 더 높은 공정가치를 가진 결제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초과결제가치를 추가 비용으로 인식하였는가? **기업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전부나 일부를 특정하여 식별할 수 없는 거래**	
2G	IFRIC 8.8	기업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전부나 일부를 특정하여 식별할 수 없는 거래에도 IFRS 2 를 적용하였는가?	
2G	IFRIC 8.9	특정하여 식별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이 없는 경우, 회사는 다른 정황에 비추어 재화나 용역을 이미 제공받은(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볼 수 있는 경우에는 IFRS 2 적용함) 여부를 고려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2G	IFRIC 8.9	만약 기업이 제공받는 식별가능한 대가가 부여한 지분상품이나 부담한 부채의 공정가치보다 적어 보인다면, 회사는 이러한 상황을 다른 대가(즉, 식별불가능한 재화나 용역)를 이미 제공받았음(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것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고려하였는가?	
2G	IFRIC 8.10	회사는 제공받는 식별가능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IFRS 2 에 따라 측정하였는가?	
2G	IFRIC 8.11	회사는 이미 제공받은(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식별불가능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와 이미 제공받은(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식별가능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로 측정하였는가?	
2G	IFRIC 8.12	회사는 제공받는 식별불가능한 재화나 용역을 부여일에 측정하였는가?	
2G	IFRIC 8.12	현금결제형 거래인 경우, 회사는 식별불가능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에 재측정하였는가?	
		IFRIC 11 IFRS 2 연결실체주식거래 및 자기주식거래	
		Note: IFRIC 11 은 IFRS2 를 기업의 자기지분상품(자기주식)을 포함하는 특정 주식기준보상약정과 지배기업의 지분상품을 포함하는 주식기준보상약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지배기업의 지분상품을 포함하는 주식기준보상약정과 관련하여, 이 해석서는 종업원에게서 근무용역을 제공받는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IFRIC 11 은 2007 년 3 월 1 일 이후에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기업은 IFRIC 11 적용으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을 IFRS 2 경과규정 에 의거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하여야 한다.*	
		기업의 자기지분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기준보상약정	
2H, 2I	IFRIC 11.7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대가로 용역을 제공받는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하였는가?	
	IFRIC 11.7	*Note: 이 원칙은 기업이 종업원에 대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 3 자에게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하기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지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또한 이 원칙은 다음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 *기업의 지분상품에 대한 종업원의 권리를 그 기업이 부여하는지 아니면 주주가 부여하는지 여부; 또는* • *주식기준보상약정을 기업이 결제하는지 아니면 주주가 결제하는지 여부*	
		지배기업 지분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기준보상약정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종업원에게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2J	IFRIC 11.8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지배기업 연결재무제표에서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종속기업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측정하여 그 금액만큼 지배기업에게서 자본을 불입받은 것으로 보아 자본의 증가로 인식하였는가?	
2J	IFRIC 11.9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종업원에게 특정기간 연결실체 내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어떤 종속기업의 종업원이 특정가득기간에 당초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른 지배기업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다른 종속기업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 경우에: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2J	IFRIC 11.10	a) 각 종속기업은 당초 지배기업이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측정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전체 가득기간 중 종업원이 해당 종속기업에 근무한 기간의 비율을 고려하여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측정하였는가?	
		b) 종업원이 연결실체 내의 다른 종속기업으로 옮긴 후 IFRS 2. Appendix 의 A 에서 정의하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예를 들어, 종업원이 약정용역제공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결실체에서 퇴사하는 경우)에 각 종속기업은 IFRS 2.19(위 참조)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였는가?	
	IFRIC 11.10	*Note: 따라서, 종업원이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배기업이 부여한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가득하지 못하는 경우, 각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는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누적기준으로 어떠한 금액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지배기업 지분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기준보상약정 - 종속기업이 자신의 종업원에게 지배기업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2K	IFRIC 11.11	종속기업이 종업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분상품을 어떻게 획득하는지에 관계없이, 종속기업은 종업원과의 거래를 현금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하였는가?	
		시행일	
	IFRIC 11.12	이 해석서를 당기 중(2007 년 3 월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된다.)에 적용하는 기업은 이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을 IFRS 2 경과규정에 의거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으로 적용하였는가?	

IFRS 3 사업결합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본 질문서는 사업결합회계처리를 정하는 IFRS 3 를 다룬다. 사업결합은 별개의 기업들 또는 사업들을-예를 들어 합병, 취득, 순자산의 매수를 통하여- 하나의 보고기업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기업이 사업이 아닌 하나 이상 기업들의 지배력을 획득하면, 그러한 기업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사업결합이 아니다.* *이전된 활동이나 자산집단에 영업권이 존재하면, 이전된 집단은 사업으로 간주된다.* ***[주의] IFRS 3 은 2008 년 초에 개정되었으며, 동 개정본은 2009 년 7 월 이후 개시하는 최초 회계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취득일이 도래하는 사업결합에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적용범위 *IFRS 3 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1) 별개의 기업이나 사업이 조인트벤처의 형태로 하는 사업결합* *(2)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간의 사업결합(예를 들어 결합기업이나 사업이 궁극적으로 동일한 지배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업결합-IFRS 3 문단 10 내지 13 참조)* *(3) 둘 이상의 상호실체간 사업결합* *(4) 하나의 보고기업을 형성하기 위하여, 별개 기업이나 사업이 소유지분의 취득 없이 계약상으로만 하는 사업결합(예를 들면, 이중상장기업으로 만들기 위하여 개별기업들이 계약상으로만 통합하는 사업결합)* 예비질문 *아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 그와 관련있는 세부준수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3A	IFRS 3.4 IFRS 3.8	기업은 당기 중 사업결합을 하였는가? *주:* *1) 기업이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집단이나 순자산집단을 취득한 경우, 이것은 IFRS 3 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업결합이 아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자산과 부채집단의 원가는 그 집단내에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취득일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2) 지배력을 획득한 날(즉, 취득일)이 소유지분을 취득한 날(즉,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교환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사업결합의 경우, 그러한 거래는 사업결합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예를 들면, 피투자자가 투자자중 일부와 주식을 재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이 변동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3B		사업결합이 예를 들어 연속적인 주식매입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	
3C		당기 중이나 이전기간에 발생한 사업결합의 사업결합약정이 당기중에 발생하거나 미래기간에 발생할 미래사건에 우발적인 사업결합원가에 대한 조정을 규정했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FRS 3.33	*주: 사업결합계약이 하나 이상의 미래사건에 따른 사업결합원가의 조정을 허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래기간에 특정 이익 수준을 유지하거나 달성하는지 또는 발행되는 금융상품의 시장가격이 유지되는지에 따라 사업결합원가를 조정할 수도 있다.*	
3D		영업권이 당기나 전기 중에 인식되었는가?	
3E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한 기업의 지분이 취득원가보다 큰가?	
3F		당기나 전기중에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회계처리가 잠정적으로 결정되었는가?	
		주: 이것은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와 우발부채의 식별과 결정 또는 사업결합의 원가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회계기간말까지 잠정적으로만 결정된 경우이다.	
3G		기업은 당기 중 '역취득'으로 분류되는 사업결합을 하였는가?	
	IFRS 3.B1	*주: '역취득'은 취득자가 자신의 지분이 취득되는 기업(법적 종속기업)이고, 발행기업을 피취득자(법적 지배기업)로 하는 사업결합이다.*	
		세부준수질문	
		적용범위	
		사업결합의 식별	
3A	IFRS 3.4	모든 인식된 사업결합이 결과적으로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해 획득하는 지배력을 가져오는가?	
3A	IFRS 3.6	사업결합이 지배·종속관계를 가져오는 경우, 취득자는 연결재무제표에서 IFRS 3 를 적용하고,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계처리하기 위해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를 적용하는가?	
3A	IFRS 3.7	거래가 다른 기업의 지분을 매입하지 않고 영업권을 포함한 순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지배·종속관계를 가져오지 않지만 거래를 사업결합으로 회계처리했는가?	
		회계처리 방법	
3A	IFRS 3.14	IFRS 3 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결합을 매수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했는가?	
		매수법의 적용	
		취득자의 식별	
3A	IFRS 3.17	모든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를 식별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주:	
	IFRS 3.17	*1) 취득자는 결합에 참여하는 다른 기업이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결합참여기업이다.*	
	IFRS 3.19	*2) 지배력은 기업이나 사업의 활동으로부터 효익을 얻기 위하여 그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획득하는 경우, 당해 소유권이 지배력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없는 한 지배력을 획득했다고 본다.*	
	IFRS 3.19	*3) 의결권의 과반수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다.* •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다른 기업에 대한 의결권의 과반수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법규나 약정에 따라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다른 기업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 과반수를 임명이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다른 기업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회의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IFRS 3.20	*4) 취득자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취득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다. 이러한 지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의 공정가치가 다른 결합참여기업의 공정가치보다 중요하게 큰 경우, 공정가치가 큰 결합참여기업이 취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지분상품을 현금이나 다른 자산과 교환하는 사업결합의 경우, 현금 또는 다른 자산을 지급하는 결합참여기업이 취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사업결합에 따라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의 경영진이 결합된 기업의 경영진 선임을 통제할 수 있다면, 통제할 수 있는 경영진이 속한 기업이 취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5) 지분교환으로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분을 발행하는 기업이 취득자이다. 그러나,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효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3A	IFRS 3.22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고 이 기업이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 사업결합 전에 존재하였던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을 취득자로 식별하였는가?	
3A	IFRS 3.23	결합참여기업이 셋 이상인 사업결합의 경우, 사업결합 전에 존재하였던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을 취득자로 식별하였는가?	
		주: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결합참여기업 중 어느 기업이 결합을 선도하였는지, 결합참여기업 중 어느 기업의 자산이나 수익이 다른 결합참여기업의 자산이나 수익보다 중요하게 더 큰지를 포함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역취득	
3H	IFRS 3.21	*주: 통상적으로 역취득이라 하는 사업결합은 자신의 지분이 취득되는 기업을 취득자로 하고, 발행기업을 피취득자로 한다. 예를 들어, 비상장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자신보다 작은 상장기업에 의해 매수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에 그러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상장기업이 지배기업으로 간주되고, 비상장기업이 종속기업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법적 종속기업이 법적 지배기업의 활동으로부터 효익을 얻기 위하여 법적 지배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당해 법적 종속기업이 취득자이다. 일반적으로 취득자는 상대적으로 큰 기업이지만 사업결합과 관련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때로는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때도 있다.*	
	IFRS 3.B2	*역취득에 대한 회계처리를 할 때, 기업은 IFRS 3. B3-B15 의 지침을 적용한다 (본 질문서의 마지막 참조).*	
	IFRS 3.B3	*역취득 회계처리는 취득일에 사업결합원가를 배분할 때 적용하며, 사업결합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업결합원가	
3A	IFRS 3.24	취득자는 사업결합원가를 다음의 합계액으로 측정하였는가? (1)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과 교환하여 취득자가 제공한 자산, 인수하거나 발생시킨 부채 및 발행한 지분상품에 대한 교환일의 공정가치 (2) 사업결합에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모든 원가	
3A	IFRS 3.25	단일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업결합의 경우, 취득일은 교환일로 식별되었는가?	
	IFRS 3 부록 A	*주: 취득일은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효하게 획득한 날"로 정의된다.*	
3B	IFRS 3.25	둘 이상의 교환거래를 포함하는 사업결합에 대해 (1) 각 교환거래의 교환일이 각 개별투자가 취득자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날로 식별되었는가? (2) 취득일이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로 식별되는가? (3) 사업결합원가가 각 개별거래 원가의 총합으로 결정되는가?	
3A	IFRS 3.26	사업결합원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산이 연기될 때, 연기된 부분의 공정가치는 정산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할증 또는 할인을 고려하여 지급할 금액을 할인한 교환일의 현재가치로 결정되는가?	
3A	IFRS 3.27	상장된 지분상품은 교환일의 공표가격을 공정가치의 지표로서 신뢰할 수 없고 다른 근거와 평가방법으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더 신뢰성있게 측정한다고 취득자가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공표가격 이외의 다른 근거와 평가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는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교환일의 공표가격을 공정가치로 사용하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주: *1) 교환일의 공표가격은 시장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데서 영향을 받을 경우에만 신뢰할 수 없는 지표가 된다.* *2) 만약 교환일에 사업결합원가의 일부로 발행된 지분상품의 공표가격을 신뢰할 수 없거나 공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해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예를 들어, 취득자의 공정가치에서 취득자가 교부하는 지분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피취득자의 공정가치에서 취득자의 지분 중 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금액에 근거하여 추정할 수 있다.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과의 교환으로 지분상품을 제공하는 대신 교환일에 피취득자의 소유주에게 제공한 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는 취득자가 교환으로 제공한 총 공정가치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3) 어떤 경우라도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뿐만 아니라 사업결합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IAS 39'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서 정하고 있다.*	
3A	IFRS 3.28	사업결합원가는 사업결합의 결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손실 또는 그 밖의 원가를 제외하는가? *주: 사업결합의 결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손실 또는 그 밖의 원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과 교환하여 인수하거나 발생시킨 부채가 아니므로 사업결합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3A	IFRS 3.29	사업결합에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모든 원가는 사업결합원가에 포함되었는가? *주: 사업결합에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원가의 사례는 사업결합을 위해 회계전문가, 법률 고문, 가치평가전문가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	
3A	IFRS 3.29	사업결합담당부서를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를 포함한 일반관리원가와 특정 사업결합에 직접 귀속시킬 수 없는 그 밖의 원가는 사업결합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가?	
3A	IFRS 3.30	금융부채의 발행에 소요되는 원가는 사업결합원가에서 제외하고 IAS 39에 따라 부채의 최초측정에 포함되었는가?	
3A	IFRS 3.31	사업결합을 위하여 지분상품의 발행에 소요되는 원가는 사업결합원가에서 제외하고, 지분발행으로부터 유입되는 금액에서 차감했는가?	
		<u>미래사건을 조건으로 하는 사업결합원가의 조정</u>	
3C	IFRS 3.32	사업결합계약에서 미래사건을 조건으로 사업결합원가를 조정한다고 정한 경우 (1) 그러한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당해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취득일에 조정금액을 사업결합원가에 포함했는가?	
3C	IFRS 3.33	(2) 미래사건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사업결합원가를 이에 따라 조정하였는가?	
3C	IFRS 3.34	(3) 사업결합원가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 조정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회계처리를 할 때 사업결합원가에는 조정금액을 제외하였는가?	
3C	IFRS 3.34	(4) 이전에 조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 조정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던 조정이 향후에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당해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대가를 사업결합원가의 조정으로 처리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FRS 3.63	*주: 이러한 조정은 금액이 취득일 이후 12 개월이 지난후에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당해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루어진다.*	
3A	IFRS 3.35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과 교환하여 제공한 자산, 발행한 지분상품 또는 인수하거나 발생시킨 부채의 가치 하락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자에게 추가 지급을 해야 하는 경우 (1) 기존의 사업결합원가가 그대로 인가? 즉 증가하지 않았는가? (2) 지분상품의 경우 추가 지급된 공정가치는 최초 발행된 지분상품에 배분된 금액을 동일하게 감소시킴으로써 상쇄되었는가? (3) 채무상품의 경우도 추가 지급액은 최초 발행시 할인의 증가 또는 할증의 감소로 간주되었는가?	
		주: 이것은 취득자가 사업결합원가의 일부로 발행한 지분상품 또는 채무상품의 시장가격을 보장하고 최초에 결정한 원가를 보전하기 위해 지분상품 또는 채무상품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한 사업결합원가의 배분	
3A	IFRS 3.36	취득자는 IFRS 3.37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를 공정가치로 취득일에 인식하여 사업결합원가를 배분하였는가? (1) 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인식하였는가? (2) 위 (1)에서 언급된 자산, 부채를 제외한 기타 자산, 부채, 우발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였는가?	
3A	IFRS 3.37	취득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가 취득일 현재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별도로 인식하였는가? ⑴ 무형자산이 아닌 자산의 경우, 자산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이 취득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⑵ 우발부채가 아닌 부채의 경우,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고 당해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⑶ 무형자산 또는 우발부채의 경우, 당해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3A	IFRS 3.39	매수법은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효하게 획득한 날인 취득일부터 적용했는가?	
		주: 지배력은 기업이나 사업의 활동으로부터 효익을 얻기 위하여 그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기 전에 법률적으로 거래가 반드시 종료되거나 확정될 필요는 없다. 취득자가 언제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결합과 관련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다.	
3A	IFRS 3.38	취득자의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취득자의 사업결합원가에 근거하여 취득일 후의 피취득자 손익을 반영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주: 예를 들면, 취득일 후 피취득자의 감가상각대상 자산과 관련하여 취득자의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감가상각비는 취득일 현재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공정가치, 즉 취득자의 원가를 기초로 인식하여야 한다.	
3A	IFRS 3.40	피취득자의 소수주주지분은 IFRS 3.37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 순액에 대한 소수주주지분비율로 나타냈는가?	
		<u>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및 부채</u>	
3A	IFRS 3.41	취득자는 취득일에 존재하고 IFRS 3.37의 인식기준(위 참조)을 충족하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만을 사업결합원가 배분의 일부로서 별도로 인식했는가?	
3A	IFRS 3.41	피취득자가 취득일 현재 IAS 37'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인식한 기존의 구조조정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취득자는 피취득자의 영업을 폐쇄하거나 감축하는 데 따른 부채를 사업결합원가 배분의 일부로 인식했는가?	
3A	IFRS 3.41	사업결합원가를 배분할 때, 취득자는 사업결합의 결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손실이나 그 밖의 원가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는가?	
3A	IFRS 3.42	사업결합으로 취득될 때 피취득자가 종업원이나 거래처 등에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피취득자의 현재 의무는 취득자가 사업결합원가 배분의 일부로 인식하는가?	
		주: 상기 지급은 사업결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전까지는 피취득자의 우발부채로 간주된다. 그 계약상 의무는 사업결합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IAS 37 에 따라 부채로 인식한다.	
3A	IFRS 3.43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기업의 취득조건으로 피취득자를 구조조정하기로 한 계획에 대한 부채를 사업결합원가 배분의 일부로 인식하지 않았는가?	
		주: 피취득자가 사업결합시 계약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지급과는 대조적으로, 사업결합에서 인수되는 것을 피취득자를 구조조정하기로 한 계획은 사업결합 직전까지는 피취득자의 현재의무가 아니다. 또한 이 구조조정계획은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결합 직전까지는 피취득자의 우발부채도 아니다.	
3A	IFRS 3.44	취득원가 배분의 일부로서 인식하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는 피취득자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뿐만 아니라 취득자가 매수하거나 인수한 피취득자의 자산과 부채가 모두 포함하는가?	
3A	IFRS 3.44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는 취득전에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과거에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았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는가?	
		주: 예를 들면, 사업결합 전에 피취득자가 인식하지 않았던 피취득자의 세무상 결손금에서 기인한 법인세 효익은, 당해 미인식된 법인세 효익이 적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IFRS 3.36 에 따른 식별가능한 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한다.	
		<u>피취득자의 무형자산</u>	
3A	IFRS 3.45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을 다음의 경우에만 별도로 인식하는가? (1) IAS 38'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2)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	
	IFRS 3.46	*주: 물리적 형체가 없는 비화폐성 자산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식별가능하여야 한다. IAS 38 에 의하면, 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무형자산 정의의 식별가능성 조건을 충족한다.* ▪ *자산이 분리가능하다. 즉, (가)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나)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 계약,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이전·라이선스·임대·교환할 수 있다.* ▪ *자산이 계약상 또는 그 밖의 법적 권리에서 발생한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지, 기업이나 다른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할 수 있는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IAS 38 는 다음을 포함하여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IAS 38.33	*1)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그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다. 즉, 확률의 효과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반영된다. 따라서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IAS 38. 21(1)(이 질문서의 IAS 38 섹션 참조)의 발생가능성 인식기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음)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IAS 38.35	*2)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추정치에 대하여 각각 다른 확률을 가진 가능한 결과의 범위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불확실성은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반영된다. 만약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하다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IAS 38.38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유일한 상황은 해당 무형자산이 법적 또는 기타 계약상 권리로부터 발생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분리가능 하지 않다.* *(2)분리가능 하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에 대한 교환 거래의 과거 경험이나 증거가 없으며, 그러한 과거경험이나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가치 추정이 측정할 수 없는 변수에 의존할 수도 있다.*	
3A	IFRS 3.45	취득자는 피취득자의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당해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영업권과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했는가? <u>피취득자의 우발부채</u>	
3A	IFRS 3.47	취득자는 IFRS 3. 37에 따라 피취득자의 우발부채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업결합원가 배분의 일부로서 이를 별도로 인식했는가? *주:* *1) IFRS 3 부록 B 의 문단 B16(l2) (아래 참조). 는 우발부채의 공정가치 결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2) 만약 피취득자의 우발부채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 그 결과는 영업권으로 인식하는 금액 또는 문단 56 (아래 참조)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금액에 영향을 주며* *·취득자는 IAS 37 에 따라 우발부채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3A	IFRS 3.48	피취득자의 우발부채를 최초인식한 후에 취득자는 별도로 인식한 우발부채를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였는가? ⑴ IAS 37 에 따라 인식되어야 할 금액 ⑵ 최초 인식금액에서, 적절한 경우, IAS 18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IFRS 3.49	*주: IFRS 3.48 의 요구사항은 IAS 39 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A	IFRS 3.49	다음과 같은 IAS 39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출약정은 사업결합원가 배분의 일부로서 피취득자의 우발부채로 별도로 인식되는가? (1) 시장이자율보다 낮게 제공하기로 한 대출약정이 아니다. (2) 취득일에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또는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 (3) 우발부채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 <u>적용지침</u>	
3A	IFRS 3.B16	사업결합원가를 배분하기 위하여 취득자는 다음의 측정치를 공정가치로 처리했는가? ⑴ 활성거래시장이 있는 금융상품은 현행 시장가치 ⑵ 활성거래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기업의 비교가능한 금융상품의 주가수익비율, 배당수익률, 기대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가치 ⑶ 수취채권 및 수익계약과 그 밖의 식별가능한 자산은 받을 금액을 적절한 현행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서 대손예상액 및 회수원가를 차감한 금액 *주: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단기 수취채권 및 수익계약과 그 밖의 식별가능한 자산의 경우 그 명목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⑷ 재고자산의 경우 ㈎ 제품 및 상품은 판매가격에서 ① 처분부대원가와 ② 취득자의 판매노력에 대한 합리적 이익상당액(유사한 제품 및 상품의 이익에 근거한)을 차감한 금액 ㈏ 재공품은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① 완성하기 위한 추가 원가와 ② 제품의 처분부대원가 및 ③ 취득자의 완성 및 판매노력에 대한 합리적 이익상당액(유사한 제품의 이익에 근거한)을 차감한 금액 ㈐ 원재료는 현행대체원가 ⑸ 토지와 건물은 시장가치 ⑹ 공장시설과 설비 등 유형자산은 일반적으로 감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장가치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주: 만일 유형자산 항목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시장에서 개별 공정가치에 대한 증거를 얻을 수 없고 계속사업의 일부로 판매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별 항목이 드물게 거래되는 경우, 이익 접근법 또는 상각후 대체원가 접근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7) 무형자산의 경우 ㈎ IAS 38 에서 정의한 활성거래시장을 참고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한다. ㈏ 활성거래시장이 없다면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근거하여 거래의사와 합리적 판단력이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에 대해 지급할 금액이 반영되는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결정한다.	
		주: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결정에 관한 추가적인 지침은 IAS 38참조	
		(8)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종업원급여자산이나 순종업원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	
		주: 순종업원급여자산은 취득자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감소되는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금액까지만 인식한다.	
		(9) 법인세관련 자산과 부채는 결합된 기업의 입장에서 평가한, IAS 12에 따라 세무상 결손금에서 발생하는 법인세효익 또는 당기손익에 대한 미지급법인세	
		주: 법인세관련 자산과 부채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를 공정가치로 재평가함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후의 금액으로 결정되며, 할인하지 아니한다.	
		(10) 매입채무, 장기차입금과 미지급금 및 그 밖의 채무는 상환할 금액을 적절한 현행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주: 단기부채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 그 명목금액으로 할 수 있다.	
		(11) 손실부담계약과 피취득자의 그 밖의 식별가능한 부채는 상환할 금액을 적절한 현행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12) 피취득자의 우발부채는 제3자가 그 우발부채를 인수할 경우 청구할 금액	
		주: 그 금액은 가장 발생가능성이 높은 단일의 현금흐름이나 최대 또는 최소 예상현금흐름이 아니라, 발생가능한 현금흐름에 대한 모든 기대를 반영하여야 한다. *주: 일반적으로 위의 지침은 현재가치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항목에 대한 지침이 현재가치법을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방법을 당해 항목의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u>영업권</u>	
3D	IFRS 3.51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였는가?	
3D	IFRS 3.51	영업권은 최초에 원가로 기록되었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주: 영업권원가는 사업결합원가가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와 IFRS 3.36 에 따라 인식된 우발부채의 공정가치 순액에 대한 취득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3D	IFRS 3.54	최초인식 후,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는가?	
		주: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다.	
3D	IFRS 3.55	영업권은 매 회계연도마다 또는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더 자주 손상검사를 실시하는가?	
		주: 손상검사는 IAS 36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 순액에 대한 취득자의 지분이 사업결합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초과분)	
3E	IFRS 3.56	IFRS 3.36에 의해 인식한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 순액에 대한 취득자의 지분이 사업결합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취득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a)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한 식별 및 측정을 재검토하였는가? b) 사업결합원가에 대한 측정을 재검토하였는가? c) 재검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는 초과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IFRS 3.57	*주: 문단 56 에 따라 인식한 이익은 다음중 하나 이상의 요소로 구성된다.* • *사업결합원가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또는 우발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의 오류.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또는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지만 피취득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미래의 원가는 이러한 오류의 잠재적인 원인이 된다.* •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공정가치는 아니나 사업결합원가의 배분 목적으로 공정가치로 간주되는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요구하는 회계기준의 규정. 예를 들면,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부록B에서 법인세관련 자산과 부채에 할당된 금액은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사업결합원가를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 *염가매수*	
		<u>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u>	
3B	IFRS 3.58	사업결합은 둘 이상의 교환거래로 이루어질 수 있는 데, 예를 들면, 연속적인 주식매입에 의해 단계적으로 사업결합을 하는 것이 이러한 경우이다. 이 경우 취득자는 각 교환거래와 관련한 영업권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 교환거래일에 거래의 원가와 공정가치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각각의 교환거래를 별도로 다루었는가?	
		주: 이는 각 단계마다 개별 투자 원가와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취득자 지분을 단계적으로 비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3B	IFRS 3.59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과 관련한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우발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의 조정은 재평가로 회계처리하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주: *1) 사업결합이 둘 이상의 교환거래를 포함할 때,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 교환거래일마다 다를 수 있다.* • *각 교환거래와 관련된 영업권을 측정하기 위하여,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를 각 교환거래일의 공정가치에 따라 개념적으로 재작성한다.* • *그 후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에 대한 공정가치의 조정은 곧 재평가에 해당하고, 따라서 재평가로 회계처리한다.* *2) 이러한 재평가는 피취득자의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한 취득자의 최초인식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IAS 16'유형자산' 등에 따른 최초인식 후 당해 항목을 재평가하는 회계정책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IFRS 3.60	*3) 사업결합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의 거래가 관계기업 투자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IAS 28 '관계기업 투자'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그러한 경우 과거 교환거래일에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는 관계기업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면서 이미 결정되었을 것이다.* *주: IFRS 3 의 사례 6 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사업결합에 대한 IFRS 3 의 문단 58-60 의 지침적용을 보여준다.*	
		<u>잠정적으로 결정된 최초회계처리</u> *주: 사업결합의 최초회계처리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에 할당될 공정가치와 사업결합원가의 식별 및 결정에 대한 것이다.*	
3F	IFRS 3.6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또는 우발부채에 할당된 공정가치, 또는 사업결합원가가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사업결합이 일어난 회계기간 말까지 이를 잠정적으로 회계처리할 수밖에 없다면, 취득자는 사업결합을 당해 잠정가치를 이용하여 회계처리하는가?	
3F	IFRS 3.62	최초 회계처리가 완료되고 나면, 잠정가치에 대한 조정은 다음과 같이 인식하는가? (1) 취득일부터 12 개월 이내에 조정하여야 한다. (2) 취득일부터 조정하여야 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주: *1)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 *최초회계처리를 완료한 결과 인식되거나 조정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또는 우발부채의 장부금액은, 취득일의 공정가치가 취득일부터 인식되었을 경우의 금액으로 계산한다.* • *영업권 또는 문단 56 에 따라 인식된 이익은 최초회계처리를 완료한 결과 인식되거나 조정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또는 우발부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에 대한 조정 금액과 동일한 금액만큼 취득일부터 조정한다.* • *사업결합 최초회계처리가 완료되기 전의 기간에 대한 비교표시 정보는 최초회계처리가 취득일에 완료되었더라면 표시되었을 정보로 나타내어야 한다. 이 경우 최초회계처리의 완료에 따라 추가로 인식된 감가상각이나 상각 또는 그 밖의 당기손익효과를 포함한다.* *2) IFRS 3 사례7 은 취득자가 사업결합 후 최초회계연도말에 잠정가치를 사용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회계처리 완료에 대해 IFRS 3.62 에서 지침의 적용을 보여준다.*	
		<u>최초회계처리 완료 후 조정</u>	
3A	IFRS 3.63	우발대가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조정을 제외하고,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회계처리를 완료한 후에 사업결합 회계처리에 대한 조정은 IAS 8'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른 오류수정만을 인식했는가?	
		주: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회계처리 완료 후의 조정은 추정변경의 효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IAS 8 에 따라 추정변경의 효과는 현재와 미래 기간에 인식한다.	
3A	IFRS 3.64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회계처리의 오류수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1) 오류수정의 결과로 인식되거나 수정된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또는 우발부채의 장부금액은, 취득일의 공정가치 또는 수정된 공정가치가 취득일부터 인식되었던 것처럼 산정하였는가? (2) 영업권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 순액에 대한 취득자의 지분이 사업결합원가를 초과해서 발생한 과거기간에 인식했던 이익도 오류수정에 의해 인식된(또는 수정된)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또는 우발부채의 취득일 공정가치(취득일 공정가치에 대한 수정금액)와 동일한 금액만큼 소급하여 수정하였는가?	
		주: IAS 8 은 오류수정을 소급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오류가 발생한 과거 회계기간의 비교정보를 수정하여 당해 오류가 없었던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u>최초회계처리 완료 후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u>	
3F	IFRS 3.65	사업결합 관련 최초회계처리시 별도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피취득자의 이월결손금 또는 기타 이연법인세자산의 잠재적 효익이 사후에 실현되는 경우 (1) 취득자는 IAS 12 '법인세'에 따라 그 효익을 수익으로 인식하는가? (2) 취득자는 취득일에 이연법인세자산이 식별가능한 자산으로 인식되었더라면 인식되었을 금액만큼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가? (3) 감소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주: 이러한 회계처리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 순액에 대한 취득자의 지분의 사업결합원가 초과분을 발생시키거나 증가시키지 아니한다.	
		역취득	
	IFRS 3.B3	*주: 역취득의 회계처리는 취득일에 사업결합원가를 배분할 때 적용하며, 사업결합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업결합원가	
3G	IFRS 3.B5	사업결합원가를 결정하는 데 법적 종속기업 지분상품의 공표가격을 사용하는 경우, 법적 지배기업의 소유주가 역취득의 결과로 결합된 실체에 대하여 보유하는 것과 동일한 비율의 소유지분이 유지되도록 법적 종속기업이 법적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교부하였어야 할 지분상품의 수를 계산하는가?	
		주: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지분상품 수의 공정가치를 사업결합원가로 사용한다. 역취득에서는 법적 종속기업(회계목적의 취득자)이 법적 지배기업(회계목적의 피취득자)의 소유주에게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사업결합원가를 부담한 것으로 간주한다.	
3G	IFRS 3.B6	법적 종속기업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결합 전에 발행한 법적 지배기업의 지분상품 총 공정가치를 기초로 사업결합원가를 결정하는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3G	IFRS 3.B7	역취득 이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1) 연결재무제표는 법적 지배기업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법적 종속기업(회계목적의 취득자)의 재무제표가 계속되는 것으로 주석에 기재하는가? (2) 법적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업결합 전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측정하는가? (3)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되고 측정된 이익잉여금과 그 밖의 자본 계정 잔액은 사업결합 직전의 법적 종속기업의 이익잉여금과 그 밖의 자본 계정인가? (4) 연결재무제표에서 발행된 지분상품으로 인식된 금액은 사업결합 직전의 법적 종속기업의 납입자본에 IFRS 3 부록 B 의 문단 B4 ~ B6 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결합원가(위 참조)를 가산하여 인식하는가?	
		주: 그러나 연결재무제표에 나타나는 발행된 지분상품의 종류와 수 등 자본구조는 사업결합을 위해 법적 지배기업이 발행한 지분상품을 포함하여 법적 지배기업의 지분구조를 반영한다.	
		(5) 연결재무제표에는 법적 종속기업의 정보를 비교표시하는가?	
3G	IFRS 3.B8	법적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면, 법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는 IAS 27에서 투자자의 별도재무제표상 투자자산 회계처리에 관하여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하는가?	
		주: 역취득 회계처리는 연결재무제표에서만 적용한다.	
3G	IFRS 3.B9	역취득 이후에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에는 법적 지배기업(회계목적의 피취득자)의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를 반영하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주: 사업결합원가는 취득일에 문단 37 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법적 지배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3G	IFRS 3.B9	공정가치 순액에 대한 취득자 지분을 초과하는 사업결합원가는 IFRS 3. 51 ~ 55(위 참조)에 따라 회계처리하는가?	
3G	IFRS 3.B9	사업결합원가를 초과하는 공정가치 순액에 대한 취득자 지분은 IFRS 3.56(위 참조)에 따라 회계처리하는가?	
		소수주주지분	
3G	IFRS 3.B10	지분상품을 보유한 소유주가 속한 기업(법적 종속기업)이 다른 기업(법적 지배기업)을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상품을 법적 지배기업의 지분상품과 교환하지 아니한 법적 종속기업의 소유주는 역취득 후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에서 소수주주지분으로 간주되는가?	
		주: 위의 소수주주지분은 자신의 지분상품을 법적 지배기업의 지분상품으로 교환하지 아니한 법적 종속기업의 소유주가, 결과적으로 결합된 기업의 영업성과나 순자산이 아닌 법적 종속기업 영업성과나 순자산에 대한 지분만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법적 지배기업의 모든 소유주는 피취득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결합된 기업의 영업성과와 순자산에 대한 지분을 갖게 된다.	
3G	IFRS 3.B11	연결재무제표에 법적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사업결합 전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소수주주지분은 법적 종속기업 순자산의 사업결합 전 장부금액에 대한 소수주주의 지분을 반영하는가?	
		주당이익	
3G	IFRS 3.B13	역취득이 발생한 회계기간 동안 유통보통주식의 가중평균 주식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당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취득일까지의 유통보통주식수는 법적 지배기업이 법적 종속기업 소유주에게 발행한 보통주식수로 보는가? (2) 취득일부터 당 회계기간의 종료일까지 유통보통주식수는 법적 지배기업의 실제 유통보통주식수로 하는가?	
3G	IFRS 3.B14	역취득 이후 취득일 전의 각 비교대상 회계기간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하는 기본주당이익은 법적 종속기업의 보통주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손익을 해당 각 기간의 법적 지배기업이 역취득으로 인하여 법적 종속기업 소유주에게 발행한 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가?	
3G	IFRS 3.B15	이 기간 동안 법적 종속기업의 발행보통주식수의 변동을 고려하여 주당이익의 계산을 적절히 조정했는가?	
		주: IFRS 3 부록 B 문단 B13 과 B14 에 의한 계산은 비교대상 회계기간과 역취득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취득일까지의 기간에 법적 종속기업의 발행 보통주식수에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가정한다.	

IFRS 4 보험계약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본 질문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이하 '보험자'라 한다)의 보험계약에 관한 재무보고를 규정하는 IFRS 4 를 다루고 있다. IFRS4 는 보험계약에 대한 IASB 의 2 단계 프로젝트가 완성되기 전까지 사용될 잠정적인 규정이다.	
		예비질문	
		다음 예비질문에 하나라도 "예"라고 답한 경우 관련 일치여부 질문에 답하시오	
4A		기업이 보험계약을 발행하였거나(재보험계약 포함), 재보험계약을 보유하고 있는가? Note: *보험계약이란 계약당사자 일방(보험자)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중요한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이다. 보험위험은 계약보유자로부터 계약발행자에게 이전되는 위험으로서 금융위험 이외의 위험이다. 금융위험은 하나 이상의 특정변수, 즉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그 밖의 다른 변수(비금융변수인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않는 경우)의 미래 발생가능한 변동으로 인한 위험이다.*	
4B		기업이 임의배당요소가 포함된 금융상품을 발행하고 있는가? Note: *임의배당요소란 보증급부금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부가급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이다.* *a) 계약상 총 급부금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b) 금액이나 시기는 발행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c) 계약상 다음 중 하나 이상에 근거한다* *i) 특정 계약집단 또는 특정 계약형태에서 발생한 성과* *ii) 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자산집단에서 발생한 실현 또는 미실현 투자수익* *iii) 계약을 발행한 기업, 펀드 또는 그 밖의 기업의 당기손익*	
4C		기업이 임의배당요소(위의 정의참조)가 포함된 보험계약을 발행하고 있는가?	
4D		회사가 발행한 보험계약에는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보험계약인 파생상품 이외의 내재파생상품이 존재하는가?	
4E		회사가 발행한 보험계약 중에 보험요소와 저축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보험계약이 존재하는가? Note: *저축요소란 IAS 39 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되지 않는 계약상의 요소로서, 만일 그 계약상 요소가 별도의 금융상품이라면 IAS39 의 적용범위에 속하게 되는 계약상의 요소이다.*	
4F		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는가? Note: *이 규정은 국제회계기준을 이미 적용하고 있거나 최초로 채택하는 보험자의 회계변경에 대하여 적용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4G		회사가 사업결합(IFRS 3 에서 정의됨)으로 보험부채를 인수하거나, 보험자산을 취득하였는가? 또는 기업이 계약이전으로 보험계약을 취득하였는가?	
		세부 준수질문 적용범위 *보험계약의 정의*	
		Note: IFRS 4 의 부록 B 에서는 보험계약의 정의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부록 B 의 주요 특징은 아래에서 언급하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사건	
4A	IFRS 4.B2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개시시점에 최소한 다음 중 하나 이상이 불확실하여야 한다. a) 보험사건의 발생여부 *b)* 보험사건의 발생시기 *c)* 보험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	
		현물지급	
4A	IFRS 4.B5	보험계약을 식별할 때, 기업은 보험금을 현물로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일부 보험계약을 고려하고 있는가?	
		Note: 예를 들면, 보험자가 도난당한 물건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대신 직접 동일한 현물로 보상하는 경우이다. 또 다른 예로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의료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험자 자신이 소유하는 병원이나 의료진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4A	IFRS 4.B6	보험계약을 식별할 때, 기업은 제공될 용역의 수준이 불확실한 사건에 따라 결정되는 일부 고정수수료 용역계약은 비록 일부 국가에서는 보험계약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IFRS 4 의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있는가?	
		Note: 예를 들면, 특정 설비가 고장이 나면 용역제공자가 수리할 것을 약정한 유지보수계약이 있다, 고정용역수수료는 고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횟수에 근거하지만, 특정 설비가 고장 날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설비의 고장은 설비 소유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 의해 소유자에게 보상(현금이 아닌 현물로)된다.	
		보험위험과 그 밖의 위험의 구별	
		Note: 이와 관련한 부록 B 의 세부적인 가이드 참조 (B8 에서 B17 까지)	
		보험계약의 예시	
4A	IFRS 4.B18	기업은 이전되는 보험위험이 중요한 경우에 다음을 IFRS 4 에 따라 보험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가? a) 재산의 도난 b) 생산물배상책임, 전문직배상책임, 민사책임 또는 소송비용에 대한 보험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c) 생명보험 및 선지급장례보험 (사망이라는 사건은 확실하지만, 언제 사망이 발생할지 또는 일부 형태의 생명보험에서는 사망이 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기간 내에 발생할지 여부가 불확실함) d) 생존조건연금과 퇴직연금 (즉 연금수령자나 퇴직연금자는 이러한 연금계약이 없다면 생존에 따라 삶의 수준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연금수령자나 퇴직연금자의 생존)에 대하여 보상하는 계약) e) 장해보험 및 의료보험 f) 채무보증, 신원보증, 이행보증 및 입찰보증 (즉, 계약상대방이 건물을 건설하는 의무 등과 같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상하는 계약) g) 특정채무자가 채무상품의 최초 조건이나 변경된 조건에 따른 지급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계약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변제하기 위해 특정금액을 지급하는 신용보험 *Note: 이러한 계약은 보증, 신용장, 신용위험이전계약 또는 보험계약과 같은 다양한 법률적 형식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이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한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또한 IAS 39의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고 이 기준서가 아닌 IAS 32와 IAS 39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문단 4(4)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가 당해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간주함을 사전에 명백히 하였고 보험계약에 적용가능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그 금융보증계약에 대해 발행자의 선택에 따라 IAS 39 및 IAS 32를 적용하거나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다.* h) 제품보증 *Note: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한 상품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가 발행한 제품보증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직접 발행한 제품보증은 IAS 18과 IAS 37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므로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i) 권원보험 (즉, 보험계약이 작성될 당시 발견되지 않는 토지 소유권의 결함을 발견한 것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 *Note: 이 경우, 보험사건은 소유권의 결함 그 자체가 아니라 결함의 발견이 된다.* j) 여행자보험 (즉, 여행 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하는 보상) k) 특정한 사건이 사채 발행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원금, 이자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지급액이 감소하는 대재해채권(이자율이나 환율의 변동 등이 아닌 특정한 사건이 중요한 보험위험을 창출하는 경우) l) 보험스왑 및 계약당사자에게 특정되는 기후, 지질 또는 다른 물리적 변수의 변동에 기초하여 급부금 지급을 요구하는 계약 m) 재보험계약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4A	IFRS 4.B19	기업은 다음과 같은 계약을 IFRS 4 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있는가? a) 보험계약의 법률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보험자를 중요한 보험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는 투자계약. 예를 들면, 보험자가 중요한 사망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생명보험계약이 있다. (이러한 계약은 비보험 금융상품이거나 용역계약에 해당한다. 부록 B 의 문단 B20 과 B21 참조) b) 보험의 법률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보험 손실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보험계약자의 미래 급부금을 조정하는 취소불가능하고 강제적인 매커니즘을 통해 모든 중요한 보험위험을 보험계약자에게 전가하는 계약. 예를 들면, 일부 금융재보험계약 또는 일부 단체계약이 있다(이러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비보험 금융상품이거나 용역계약에 해당한다. 부록 B 의 문단 B20 과 B21 참조) c) 자가보험. 즉 보험에 의해 보장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보유하는 것(다른 상대방과 어떠한 합의도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d) 특정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이 발생하면 급부금을 요구하지만, 급부금 지급의 계약상 전제조건으로 그 사건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계약 (예: 도박계약) *Note:* 그러나 이것은 사망이나 사고와 같은 특정 사건에 의하여 발생된 손실을 계량화하기 위해 사전에 결정된 보상금을 특정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부록 B의 문단 B13참조) e) 일방의 당사자를 보험위험이 아닌 금융위험에 노출시키는 파생상품. 이러한 파생상품은 하나 이상의 특정변수 즉,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그 외 다른 변수(비금융변수인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않는 경우)의 변동에 의해서만 당사자에게 급부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IAS 39 참조) f) 지급일에 계약보유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입지 않더라도 급부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용 관련 보증(또는 신용장, 신용위험이전계약, 신용보험계약)(IAS 39 참조) g) 계약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않는 기후, 지질 또는 다른 물리적 변수에 기초하여 급부금을 지급하는 계약(보통 기후파생상품으로 설명됨) h) 계약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않는 기후, 지질 또는 물리적 변수에 기초하여 원금, 이자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지급액이 감소하는 대재해채권 <u>중요한 보험위험</u>	
4A	IFRS 4.B22	기업은 계약이 중요한 보험위험을 이전한 경우에만 보험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가?	
4A	IFRS 4.B23	기업은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즉, 거래의 경제적 측면에서 식별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보험사건으로 인해 보험자가 중요한 부가급부금을 지급하여야 할 때에만 보험위험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s: *1) 만약 상업적 실질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부가급부금을 지급한다면, 보험사건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예상되는 (즉, 확률로 가중평균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나머지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더라도 앞선 문장의 조건은 충족될 수 있다.* *2) 문단 B23 의 부가급부금은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한다(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상황은 제외). 이러한 부가급부금은 보험금처리원가와 보험금사정원가를 포함하지만, 다음은 제외한다.* *a) 미래용역에 대한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 예를 들면, 투자와 연계된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사망은 보험자가 더 이상 투자운용 용역을 제공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뮤츄얼펀드 운용자가 고객의 사망 가능성과 관련된 보험위험을 인수하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은 보험위험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래투자운용수수료의 잠재적 손실은 계약에 의해 얼마나 많은 보험위험이 이전되는지를 평가하는 것과 무관하다.* *b) 사망의 경우 면제되는 취소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계약으로 인해 위약금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위약금의 면제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약금은 계약에 의해 얼마나 많은 보험위험이 이전되는지를 평가하는 것과 무관하다.* *c) 계약보유자에게 중요한 손실을 유발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급액. 예를 들어 자산이 계약보유자에게 1 원의 하찮은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물리적 손상을 입게 되면, 계약발행자가 100 만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계약이 있다. 이 계약에서 계약보유자는 1 원을 잃는 것과 같은 대수롭지 않은 위험을 보험자에게 이전한다. 동시에 계약은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계약발행자가 999,999 원을 지급해야 하는 비보험위험을 창출한다. 계약발행자가 계약보유자로부터 중요한 보험위험을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보험계약이 아니다.* *d) 수령 가능한 재보험금. 보험자는 이것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4A	IFRS 4.B25	보험자는 재무제표의 중요성 기준이 아니라 각 계약별로 보험위험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있는가? *Note: 그러므로 전체 계약에서 볼 때 중요한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최소의 확률을 가진다 하더라도 보험위험은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별 평가는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분류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비교적 동질적인 소규모 계약들의 집단이 모두 보험위험을 이전하는 계약들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보험자는 중요하지 않은 보험위험을 이전하는 일부 비파생계약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계약집단 내의 각 계약들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	
4A	IFRS 4.B26	생존 시 지급하는 급부금을 초과하여 사망급부금을 지급하는 계약은 추가적인 사망급부금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 전체가 아닌 해당 계약을 참조하여 판단) 보험계약이므로 기업은 IFRS 4 를 적용하고 있는가?	
4A	IFRS 4.B28	하나의 보험계약을 저축요소와 보험요소로 분리한다면, 보험위험 이전의 중요성은 보험요소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는가? *Note: 내재파생상품에 의하여 이전된 보험위험의 중요성은 내재파생상품에 의하여 평가한다.*	
		<u>보험위험 수준의 변동</u>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4A	IFRS 4.B29	기업은 계약 단계에서는 보험위험을 이전하지 않고, 그 이후의 어떤 시점에 보험위험을 이전하는 어떤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는가? *Note: 예를 들면, 보험계약자에게 특정한 투자수익을 제공하고, 보험계약자가 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 보험자가 다른 신규 연금수령자들에게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현행연금요율로 만기 투자 성과를 사용하여 생존조건연금을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는 계약이 있다. 보험계약자의 옵션 행사시 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보험위험을 반영하여 연금가격을 책정할 수 있으므로 이 계약은 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보험위험을 이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에서 연금요율(또는 연금요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한다면 그 계약에 따라 계약단계에서 계약발행자에게 보험위험이 이전된다.*	
4A	IFRS 4.B30	보험계약의 요건을 충족한 계약에 대해서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거나 만료될 때까지 보험계약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내재파생상품	
4D	IFRS 4.7	보험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내재파생상품 자체가 보험계약인 파생상품은 제외)에 대하여 IAS 39 를 적용하고 있는가? *Note: IAS 39 에서는 특정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에서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B, D	IFRS 4.8	IAS 39 에 대한 예외로서, 보험계약자에게 고정급부금(또는 고정금액과 이자율에 의하여 결정되는 급부금)조건으로 보험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옵션의 행사가격이 주계약의 보험부채 장부금액과 다르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옵션을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할 필요가 없음을 고려하고 있는가?	
4B, D	IFRS 4.8	해약환급금이 금융변수(지분 또는 일반상품의 가격이나 지수 등)의 변동이나 계약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않는 비금융변수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험계약에 내재된 풋옵션이나 해약옵션에 대하여 IAS 39 를 적용하고 있는가?	
4B, D	IFRS 4.8	그러한 변수의 변동에 따라 풋옵션이나 해약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예: 주가지수가 특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에도 IAS 39 를 적용하고 있는가?	
4B, D	IFRS 4.9	임의배당요소를 가진 금융상품의 해약옵션에도 문단 8 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가?	
		저축요소의 분리	
		Note: 어떤 보험계약은 보험요소와 저축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두 요소를 분리해야 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계약을 분리할 경우 보험자는 • *보험요소에 대해서는 IFRS 4 를 적용하고,* • *저축요소에 대해서는 IAS 39 를 적용한다.*	
4E	IFRS 4.10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험자는 두 요소를 의무적으로 분리하고 있는가? a) 보험자가 저축요소(내재된 해약옵션 포함)를 분리하여(즉, 보험요소를 고려하지 않고)측정할 수 있다. b) 보험자의 회계정책이 저축요소에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도록 별도로 의무화하지 않는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 다음은 보험자의 회계정책이 저축요소에서 발행하는 모든 의무를 인식하도록 별도로 의무화 하지 않는 경우의 예이다. 재보험계약자가 재보험자로부터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나 미래에 그 보상금액을 상환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존재한다면, 그 이러한 의무는 저축요소에서 발생한다. 만약 재보험자의 회계정책상 상환할 의무를 인식하지 않고 보상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면 저축요소를 분리하여야 한다.	
4E	IFRS 4.10	보험자가 내재해약옵션을 포함하여 저축요소를 측정할 수 있으나 보험자의 회계정책이, 저축요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측정기준과는 관계없이, 저축요소에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도록 별도로 의무화하는 경우에, 기업은 저축요소의 분리를 고려하고 있는가? (이 경우 분리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러할 필요는 없다).	
4E	IFRS 4.10	내재해약옵션을 포함하여 저축요소를 별도로 (즉 보험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저축요소의 분리를 금지하고 있는가?	
		인식과 측정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한시적 면제	
		Note: IFRS 4 에서는 보험자가 다음의 회계정책에 대하여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문단 10-12 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면제한다. • *보험자가 발행한 보험계약 (관련 신계약비 및 무형자산 포함)* • *보험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이 문단은 특정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회계정책을 개발하는데 사용할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IAS 8 문단 10-12 에서 정한 기준이 함축하고 있는 일부 사항은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항은 다음의 질문에 포함되어 있다.*	
4A	IFRS 4.14	보험자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지 않는 보험계약으로부터 미래에 발생 가능한 보험금에 대하여 충당부채(비상위험준비금, 평준화준비금)를 인식하지 않고 있는가?	
4A	IFRS 4.14	보험자는 문단 15-19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채적정성평가를 수행하고 있는가?	
4A	IFRS 4.14	보험자는 보험부채(또는 보험부채의 일부)가 소멸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소멸된 경우)에만 보험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는가?	
4A	IFRS 4.14	보험자는 다음을 상계하지 않고 있는가? a) 관련 보험부채에 대응되는 재보험자산 b)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과 관련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수익	
4A	IFRS 4.14	보험자는 재보험자산이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가? (IFRS 4.20 참조)	
		<u>부채적정성평가</u>	
4A	IFRS 4.15	보험자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이용하여, 인식한 보험부채가 적정한지 평가하고 있는가?	
		Note: 보험자가 이미 부채적정성평가를 적용하고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IFRS 4.15 에서는 더 이상의 요구사항을 부과하지 않는다. IFRS 4.16-17 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아래 참조).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4A	IFRS 4.15	보험부채의 장부금액(이연신계약비와 무형자산이 차감된 금액)이 추정된 미래현금흐름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부족액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4A	IFRS 4.16	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부채적정성평가를 적용하고 있는가? a) 부채의 적정성평가의 수행 시, 내재된 옵션과 보증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 보험금처리원가와 같은 관련 현금흐름을 고려한다. b) 평가결과 보험부채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부족액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Note: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IFRS 4 에서는 더 이상의 요구사항을 부과하지 않는다.*	
4A	IFRS 4.17	보험자의 회계정책이 IFRS 4 문단 16 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부채적정성평가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다음 사항의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가? a) 관련 보험부채의 장부금액에서 다음 항목의 장부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결정한다. i) 관련 이연신계약비 ii) 사업결합 또는 계약이전으로 취득한 것과 같은 관련 무형자산(IFRS 4 문단 31-32 참조) b) 관련 보험부채가 IAS 37 의 적용범위에 해당된다면 인식되었을 장부금액보다 (a)에서 산정한 금액이 더 작은지를 판단한다. 만약 더 작다면, 보험자는 그 차액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이연신계약비 또는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거나 관련된 보험부채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킨다. *Notes:* *1) 해당 보험부채는 보험자의 회계정책이 IFRS 4 문단 16 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부채적정성평가를 채택하지 않은 보험부채(그리고, 관련 이연신계약비 및 무형자산) 이다.* *2) 상기 (a)(ii) 를 고려할 때, 재보험자산은 보험자가 별도로 회계처리하므로 고려하지 아니한다(IFRS 4 문단 20 참조).* *3) 문단 17(a) 의 금액에 미래투자수익이 반영된 경우에만, (b) 의 금액(즉, IAS 37 를 적용한 결과) 에도 미래투자수익(IFRS 4 문단 27-29 참조) 을 반영한다.*	
4A	IFRS 4.18	보험자의 부채적정성평가가 IFRS 4 문단 16 에서 규정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그 평가를 평가대상 보험부채의 전체 수준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4A	IFRS 4.18	부채적정성평가가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IFRS 4.17 의 금액 비교는 대체로 유사한 위험들을 부담하고 하나의 포트폴리오로서 관리되는 계약들로 구성된 각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u>재보험자산의 손상</u>	
4A	IFRS 4.20	재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재보험자산의 손상의 결과로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a) 재보험자산을 최초로 인식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재보험계약자가 계약조건상의 모든 금액을 수령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b) 재보험계약자가 재보험자로부터 수령할 금액에 대하여 당해 사건이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친다.	
4A	IFRS 4.20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회계정책의 변경	
		Note: IFRS 4 문단 22-30 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미 적용하고 있거나 최초로 채택하는 보험자의 회계변경에 적용한다.	
4F	IFRS 4.22	보험자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무제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보다 목적적합하면서 신뢰성이 유지되거나, 신뢰성이 제고되면서 목적적합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하고 있는가?	
		Notes: *1) 보험자는 IAS 8 의 기준에 따라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판단한다.* *2)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정책 변경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보험자는 회계변경으로 인해 기업의 재무제표가 IAS 8 의 기준을 보다 잘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나, 회계변경이 그러한 기준에 완전히 부합할 필요는 없다.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아래에서 논의한다.*	
		<u>현행시장이자율</u>	
4F	IFRS 4.24	보험자는 현행시장이자율을 반영하여 지정된 보험부채를 재측정하고 그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러할 필요는 없는지를 고려하고 있는가?	
		Note: 이 때 보험자는 지정된 보험부채에 대하여 다른 현행 추정치와 가정들을 반영하는 회계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이 문단에서는 모든 유사한 부채에 대하여 회계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하는 IAS 8 과 달리 지정된 부채에 대해서만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4F	IFRS 4.24	보험자가 회계정책을 변경할 부채를 지정하였다면(위의 IFRS 4문단24 참조), 지정된 모든 부채가 소멸될 때까지 모든 기간 동안 현행시장이자율(적용가능하다면 다른 현행 추정치와 가정들도 포함)을 계속 적용하고 있는가?	
		<u>기존 회계실무의 계속 적용</u>	
4F	IFRS 4.25	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회계실무를 계속 적용은 하되, 이를 새로 도입하고 있지는 않은가? a)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고 측정하는 것 b) 유사한 용역에 대하여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형성된 현재 수수료와 비교하여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미래투자운용수수료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측정하는 것 *Note: 미래투자운용수수료와 관련 원가가 시장의 비교대상금액과 다르지 않다면,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대한 최초의 공정가치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과 일치할 것이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c) IFRS 4 문단 24 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속기업의 보험부채(관련 이연신계약비와 무형자산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에 대하여 지배기업과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 *Note: 양자의 회계정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계변경으로 인해 회계정책이 보다 다양해지지 않고 이 기준서의 다른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u>신중성</u>	
4F	IFRS 4.26	보험자는 과도한 신중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가? *Note: 그러나, 보험자가 이미 충분히 신중하게 보험계약을 측정하였다면 추가적인 신중성을 도입하여서는 안된다.*	
		<u>미래투자수익</u>	
4F	IFRS 4.27	보험자는 미래투자수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가? *Note: 보험계약을 측정함에 있어 미래투자수익을 반영하는 회계정책을 도입하면 보험자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낮아질 것으로 추론된다. 미래투자수익을 반영하는 회계정책의 두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 *보험자 자산에 대한 추정수익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는 것* • *보험자 자산에 대한 추정수익률로 수익을 예측하고, 예측된 수익을 다른 이율로 할인하며, 부채의 측정에 그 결과를 포함하는 것*	
4F	IFRS 4.28	일반적으로 미래투자수익을 반영하여 보험계약을 측정하는 회계정책을 도입할 경우 미래투자수익이 계약상 지급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감소하지만, 회계정책 변경의 다른 요소들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이전보다 더 향상되어 미래투자수익을 반영하는 회계정책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는가? *Notes:* *1) 예를 들어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자의 기존 회계정책이 최초에 설정되었던 지나치게 신중한 가정을 포함하고 있고, 시장상황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감독기관이 정한 할인율을 반영하며, 일부 내재된 옵션과 보증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보험자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다음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포괄적인 투자자 중심의 회계로 전환함으로써, 동일한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더욱 목적적합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a) 현행 추정치와 가정* *b) 위험과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그러나 과도하게 신중하지 않은) 조정* *c) 내재된 옵션과 보증의 내재가치 및 시간가치를 반영하는 측정* *d) 현행시장할인율 (당해 할인율이 보험자 자산의 추정수익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2) 일부 측정방법에서 할인율은 미래이익의 현재가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 이익은 공식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기간에 귀속된다. 이러한 방법의 경우 할인율은 부채의 측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적절성이 떨어지는 할인율이 사용되어도 개시시점의 부채 측정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측정방법에서 할인율은 부채 측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후자의 경우, 자산 중심의 할인율 도입은 부채 측정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보험자가 미래투자수익을 반영하는 회계정책을 도입할 경우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u>그림자회계</u>	
4F	IFRS 4.30	보험자는 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 관련 미실현손익이 실현손익과 동일하게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보험부채(또는 이연신계약비나 무형자산)의 조정 부분은 미실현손익이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되는 경우에만 미실현손익으로 인식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가?	
		Note: 일부 회계모형에서 보험자 자산의 실현손익은 (a) 보험부채, (b) 관련 이연신계약비 및 (c) IFRS 4 문단31-32 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과 같은 관련 무형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측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금융자산의 재지정	
4F	IFRS 4.45	보험자가 보험부채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할 때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재분류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IAS 8 를 적용한다는 것을 보험자는 고려하고 있는가?	
		Note: 이러한 재분류는 보험자가 IFRS 4 를 최초로 적용하면서 회계정책을 변경하고, IFRS 4 에서 허용한 후속적인 회계정책 변경이 이루어질 때 허용된다.	
		사업결합 또는 계약이전으로 취득한 보험계약	
4G	IFRS 4.31	보험자는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보험부채와 취득한 보험자산을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는가?	
4G	IFRS 4.31	보험자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보험계약의 공정가치를 다음의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 확장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가? a)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발행한 보험자의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된 부채 b) 다음의 차이로 나타나는 무형자산 i) 취득한 계약상 보험권리 및 인수한 보험의무의 공정가치 ii) 위의 (a)에서 산정된 금액	
		Note: 이러한 자산의 후속 측정은 관련 보험부채의 측정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IFRS 4문단31-32에서 서술하는 무형자산은 IAS 36과 IAS 38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사업결합일 또는 계약이전일에 존재하는 계약상 보험권리와 계약상 보험의무가 아닌 미래 신계약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고객목록과 고객관계는 IAS 36과 IAS 38을 적용한다.*	
4G	IFRS 4.32	계약이전으로 보험계약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는 IFRS 4문단31의 확장된 표시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험자는 고려하고 있는가?(상기 참조)	
		보험계약 및 금융상품의 임의배당요소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 일부 보험계약은 보장요소뿐만 아니라 임의배당요소도 가지고 있다.	
4B, C	IFRS 4.34	보험자가 보험계약이나 금융상품의 보장요소를 임의배당요소와 분리하여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전체 계약을 부채로 분류하고 있는가?	
		Note: 이러한 계약의 발행자는 보장요소를 임의배당요소와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러할 필요는 없다.	
4B, C	IFRS 4.34	보험계약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보장요소를 임의배당요소와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우, 보장요소를 부채로 분류하고 있는가?	
4B, C	IFRS 4.34	보험계약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보장요소를 임의배당요소와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우, 임의배당요소를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는가? 또 부채나 자본이 아닌 중간 성격의 항목으로는 분류하지 않고 있는가?	
		Note: IFRS 4 에서는 임의배당요소를 부채 또는 자본으로 발행자가 어떻게 분류하여야 되는지를 규정하지 않는다. 발행자는 임의배당요소를 부채와 자본항목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리와 관련하여 일관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4B, C	IFRS 4.34	수입보험료 중 자본항목에 관련된 부분을 분리하지 않고 수입보험료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보험자는 고려하고 있는가?	
		Note: 보장요소와 부채로 분류된 임의배당요소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임의배당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 (손익의 일부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것과 동일하게) 당기손익의 일부는 임의배당요소에 귀속될 수 있다. 임의배당요소 중 자본항목에 귀속되는 손익 부분을 비용이나 수익이 아닌 당기손익의 배분으로 인식한다(IAS 1 참조).	
4B, C	IFRS 4.34	보험계약이 IAS 39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내재파생상품에는 IAS 39를 적용하고 있는가?	
4B, C	IFRS 4.34	IFRS 4문단14-20 및 IFRS 4 문단 32(1)-(4)에 서술되지 않은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IFRS 4 문단 21-30에 따른 방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지 않는 한, 기존의 회계정책을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금융상품의 임의배당요소***	
		Note: IFRS 4 문단.34 의 요구사항은 임의배당요소를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에도 적용된다. 위의 문단 34 에 추가하여 임의배당요소를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에는 문단 35 의 요구사항도 적용된다.	
4B	IFRS 4.35	발행자가 임의배당요소 전체를 부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전체 계약(보장요소와 임의배당요소 모두 포함)에 대하여 IFRS 4 문단 15-19 의 부채적정성평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Note: 발행자는 보장요소에 대하여 IAS 39 를 적용한 금액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	
4B	IFRS 4.35	발행자가 임의배당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분류하는 경우, 전체 계약에서 부채로 인식되는 금액이 보장요소에 대하여 IAS 39 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보다 작지는 않은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 이 금액은 당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옵션의 내재가치를 포함하여야 하지만, 문단 9 에서 옵션의 공정가치 측정이 면제된다면 옵션의 시간가치를 포함할 필요는 없다. 발행자는 보장요소에 대하여 IAS 39 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시할 필요가 없으며, 그 금액을 분리하여 표시할 필요도 없다. 또한 인식한 총부채가 명확히 더 큰 경우에는 그 금액을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다.	
4B	IFRS 4.35	이러한 계약은 금융상품이지만, 발행자는 그 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계속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부채 장부금액의 증가분을 계속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있는가?	

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본 질문서는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의 회계처리를 설명하는 IFRS 5 를 다룬다. 주요내용은 매각예정자산의 회계처리와 중단영업의 표시와 공시이다.	
		적용범위	
		이 기준서의 측정에 관한 규정은 아래에서 언급한 기준서를 적용하여 측정되는 자산을 제외하고, 인식된 모든 비유동자산과 모든 처분자산집단에 적용한다. 이 적용예외 규정은 대상이 개별자산인 경우뿐만이 아니라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도 해당한다. • *이연법인세자산(IAS 12 '법인세')* •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하는 자산(IAS 19 '종업원급여')* •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이 적용되는 금융자산* • *IAS 40 '투자부동산'에 따라 공정가치모형으로 회계처리되는 비유동자산* • *IAS 41 '농림어업'에 따라 공정가치에서 추정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되는 비유동자산* • *IAS 4 '보험계약'에서 정의되는 보험계약의 계약상 권리* *그러나 IFRS 5 의 분류와 표시에 관한 규정은 인식된 모든 비유동자산과 모든 처분자산집단에 적용한다.* *처분자산집단은 단일거래를 통해 매각이나 다른 방법으로 함께 처분될 예정인 자산의 집합과 당해 자산에 직접 관련되어 이전될 부채이다. 만약 처분자산집단이 IAS 36 '자산손상'의 문단 80~87 에 따라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이거나 당해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인 경우, 당해 처분자산집단은 사업결합 에서 취득한 영업권을 포함한다.*	
		예비질문	
		다음 예비질문에 하나라도 "예"라고 답한 경우 관련 세부준수질문에 답하시오.	
5A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계속사용보다 매각거래를 통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가? *Note: 위와 같이 분류하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IFRS 5 의 특정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예를 들면, 경영진의 매각계획 확약과 매각계획 이행).* *비유동자산 간의 교환거래가 IAS 16 '유형자산'에 따라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거래에 포함한다.*	
5B		처분만을 목적으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취득하였는가(위의 5A 에 대한 note 참조)?	
5C		과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던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분류요건(5A 참조)을 더 이상 충족할 수 없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세부 준수질문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예정자산 분류	
5A, B	IFRS 5.6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가?	
		Note: 세부 매각예정분류기준을 문단 7 과 8 에 언급되고 있다.	
5A, B	IFRS 5.7	위와 같이 분류하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 한가?	
5A, B	IFRS 5.7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가?	
		Note: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위해서 IFRS 5 의 문단 8 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5A, B	IFRS 5.8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가?	
5A, B	IFRS 5.8	매수자를 물색하고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진행을 이미 시작하였는가?	
5A, B	IFRS 5.8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현행 공정가치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가?	
5A, B	IFRS 5.8	IFRS 5 의 문단 9 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류시점에서 1 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5A, B	IFRS 5.8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아 그 계획이 중요하게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은가?	
5A, B	IFRS 5.9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 또는 상황 때문에 매각을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연장되어 1 년을 초과하였는가?	
5A, B	IFRS 5.9	매각을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연장되어 1 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이 여전히 해당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계획을 확약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가?	
		Note: IFRS 5 의 부록 B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1 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아래 참조).	
		매각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 연장	
5A, B	IFRS 5.B1	다음의 경우에 IFRS 5 의 문단 8 의 1 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 계획을 확약한 날에 제 3 자(구매자를 제외한 타인)가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이전에 대하여 매각완료기간을 연장하게 하는 조건을 부과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된다. i) 확정구매계약이 체결되어야 그러한 조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개시할 수 있다. ii) 확정구매계약이 1 년 이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b) 확정구매계약을 체결한 결과, 과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던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이전에 대하여 매각완료기간을 연장하는 예기치 못한 조건을 구매자나 제 3 자가 부과한다. i) 그러한 조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여 왔다. ii) 지연 요인의 긍정적인 해결이 기대된다. c) 과거에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던 상황이 최초 1 년 동안 발생하고, 그 결과 과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던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그 기간 종료시점까지 매각되지 않는다. i) 최초 1 년 동안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ii) 변화된 상황에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합리적인 가격에 적극적으로 매각하고자 한다. iii) IFRS 5 의 문단 7 과 8 의 요건이 충족되는가?	
5B	IFRS 5.11	처분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취득일에 IFRS 5 의 문단 8 의 1 년 요건을 충족하고(문단 9 에서 허용하는 경우 제외) IFRS 5 의 문단 7 과 8 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 후 빠른 기간(통상 3 개월 이내) 내에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그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취득일에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는가?	
		보고기간 후에 충족된 매각예정분류요건	
5A	IFRS 5.12	문단 7 과 8 의 요건(위를 참조)이 보고기간 후에 충족된 경우 당해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보고기간 후 발행되는 당해 재무제표에서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못하는가?	
		Note: 이들 요건이 보고기간 후 공표될 재무제표의 승인 이전에 충족된다면 IFRS 5 의 문단 41(1), (2) 및 (4)에서 정하는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표시와 공시 체크리스트 참조).	
		폐기될 비유동자산	
5A	IFRS 5.13	폐기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는가?	
		Note: 왜냐하면 해당 장부금액은 주로 계속사용을 통해 회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폐기될 처분자산집단이 IFRS 5 문단 32(1) 내지 (3)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분자산집단의 성과와 현금흐름을 문단 IFRS 5 문단 33 과 34 에 따라 사용이 중단된 날에 중단영업으로 표시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측정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측정	
5A, B	IFRS 5.15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였는가?	
5A,B	IFRS 5.16	신규로 취득한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매각예정분류기준(문단 11 참조)을 충족한다면 최초 인식 시점에 순공정가치와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예를 들면, 원가)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되는가?	
		Note: 따라서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5A, B	IFRS 5.17	1 년 이후에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매각부대원가는 현재가치로 측정하였는가	
5A, B	IFRS 5.17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매각부대원가 현재가치의 증가분은 금융원가로서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하였는가?	
5A, B	IFRS 5.18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내의 모든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적용가능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였는가?	
5A, B	IFRS 5.19	그 이후 처분자산집단을 재측정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지만 이 기준서의 측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적용가능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장부금액을 재측정하여 반영하였는가?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액의 인식	
5A,B	IFRS 5.24	문단 19 에 따라 인식한 금액은 제외하고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최초 또는 향후 순공정가치의 하락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는가?	
5A, B	IFRS 5.21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그 금액은 이 기준서 또는 IAS 36 '자산손상'에 따라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이익을 인식하였는가?	
5A, B	IFRS 5.22	처분자산집단의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이익으로 인식하였는가? 이 경우 이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다음의 (1)의 금액으로 하되, (2)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a) IFRS 5 호 문단 19 에 따라 다른 관련 기준서에 의해 인식한 금액을 제외한 순공정가치의 증가 금액 b) 이 기준서의 측정 규정을 적용받는 비유동자산에 대하여 이 기준서 또는 IAS 36 '자산손상'에 따라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누계액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5A, B	IFRS 5.23	처분자산집단에 대하여 인식한 손상차손(또는 손상차손환입)은 IAS 36 '자산손상'의 문단 104 의 (a), (b) 및 문단 122 에서 규정한 배분순서에 따라 집단에 속한 자산 중 이 기준서의 측정 규정이 적용되는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또는 증가)시켰는가?	
5A,B	IFRS 5.24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일 전에 인식되지 않은 평가손익은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되는 시점에 인식되었는가?	
5A, B	IFRS 5.25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이면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하였는가?	
5A, B	IFRS 5.25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부채와 관련된 이자와 기타 비용은 계속해서 인식하였는가?	
		매각계획의 변경	
5C	IFRS 5.26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던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IFRS 5 문단 7~9 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그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를 중단하였는가?	
5C	IFRS 5.27	더 이상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거나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에 포함할 수 없는 비유동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였는가? a)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전 장부금액에 감가상각, 상각, 또는 재평가 등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면 인식하였을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 b)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의 회수가능액	
5C	IFRS 5.28	재평가된 자산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는 조정금액은 분류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기간의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하였는가?	
5C	IFRS 5.28 (Note)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는 조정금액에서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기전에 IAS 16 또는 IAS 38 에 따라 재평가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에 해당하는 조정금액은 제외하였는가?	
5C	IFRS 5.29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서 개별 자산이나 부채를 제거하는 경우에 매각예정인 처분자산집단의 나머지 자산과 부채는 당해 집단이 IFRS 5 의 문단 7~9 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속해서 집단단위로 측정하는가?	
5C	IFRS 5.29	남겨진 처분자산집단이 분류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a) 개별적으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나머지 비유동자산은 각각 그 시점에서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는가? b) IFRS 5 의 문단 26 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던 비유동자산이 더 이상 분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가?	

IFRS 6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본 질문서는 광물자원의 탐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에서 발생한 비용에 적용되는 IFRS 6 을 다룬다. *IFRS 6 는 중간단계의 기준서이다. 이 기준서의 주요 목적은 이 주제에 대한 미래의 포괄적인 기준서가 완성될 때까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탐사와평가자산에 대한 기존의 회계처리정책을 변경할 필요를 한정하는 것이다. IFRS 6 는 추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이 탐사와평가지출에 대한 회계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IAS 8'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좀 더 엄격한 규정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일시적인 면제를 제공한다.*	
		예비질문	
		아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 그와 관련있는 세부준수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6A		기업은 당기나 전기 중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와 관련된 지출을 발생시켰는가?	
6B		기업은 모든 탐사와 평가지출을 자산으로 자본화하였는가?	
		세부준수질문	
		인식	
6A, B	IFRS 6.6	기업은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문단 10 을 적용하여 해당 자산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하였는가?	
	IAS 8.10	*주: IAS 8.10 은 특정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 회계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1)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다.* *(2)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다음의 속성을 포함한다.* *㈎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한다.* *㈏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의 단순한 법적 형태가 아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 *㈐ 중립적이다. 즉, 편의가 없다* *㈑ 신중하게 고려한다.* *㈒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고려한다.*	
	IFRS 6.7	*주: IAS 8.10(위에서 재현함)은 적절한 기준서나 해석이 없는 경우, 기업이 회계정책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IAS 8. 11 과 12 는 해당 기업회계기준의 부재로 새로운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경우에 경영진이 고려하여야 할 요건과 지침의 근거를 규정한다. 그러나 탐사평가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회계정책으로 아래 문단 9 와 10 을 적용한 경우에는(아래 참조) IAS 8. 11 과 12 의 적용을 면제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인식시점의 측정	
6B	IFRS 6.8	탐사평가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되었는가?	
		탐사평가자산의 원가 구성요소	
6B	IFRS 6.9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을 규정하는 회계정책을 정하여 이를 계속적으로 적용하였는가?	
6B	IFRS 6.9	회계정책을 결정 할 때 해당 지출이 특정 광물자원의 발견활동과 어느 정도 관련되는지를 고려했는가?	
		주: 탐사평가자산을 최초로 측정할 때 포함할 수 있는 지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모든 예를 망라한 것은 아님). *·탐사 권리의 취득* *·지형학적, 지질학적, 지구화학적 및 지구물리학적 연구* *·탐사를 위한 시추* *·굴착* *·표본추출* *·광물자산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활동*	
6B	IFRS 6.10	광물자원의 개발활동과 관련된 지출은 인식된 탐사평가자산에서 제외하였는가?	
		주: 개념체계와 IAS 38 '무형자산'이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자산의 인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6A, B	IFRS 6.11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특정기간에 제거와 복구 의무가 발생한 때에는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해당 의무를 인식하였는가?	
		인식 후 측정	
6B	IFRS 6.12	인식한 후에는 탐사평가자산에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는가?	
6B	IFRS 6.12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분류와 일관되게 IAS 16 '유형자산' 또는 IAS 38 '무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가?	
		회계정책의 변경	
6A, B	IFRS 6.13	기업이 탐사와 평가관련 지출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1) 회계정책의 변경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필요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을 증가시키면서 신뢰성은 감소시키지 아니하거나, 신뢰성을 증가시키면서 목적적합성은 감소시키지 아니하였는가? (2) (1)의 평가를 하면서, 기업은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IAS 8 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였는가?	
	IFRS 6.14	*주: 탐사와 평가 관련 지출에 대한 회계정책의 변경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경으로 재무제표가 IAS 8 의 기준을 더 충족하게 된다는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변경이 IAS 8 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탐사평가자산의 분류	
6B	IFRS 6.15	탐사평가자산은 그 성격에 따라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이 분류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가?	
	IFRS 6.16	*주: 어떤 탐사평가자산은 무형자산(예: 시추권)으로 처리되고, 어떤 탐사평가자산은 유형자산(예: 차량운반구, 시추장비)으로 처리된다.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소모된 유형자산 금액은 무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한다. 그러나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형자산을 사용하더라도 해당 유형자산이 무형자산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탐사평가자산의 재분류	
6B	IFRS 6.17	광물자원 추출에 대한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화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시점에는 (1) 관련 탐사평가자산이 재분류되는가? 즉 더 이상 탐사평가자산으로 분류하지 아니하는가? (2) 탐사평가자산을 재분류하기 전에 손상을 검토하여(아래 참조) 손상차손을 인식하는가?	
		손상	
		인식과 측정	
6B	IFRS 6.18	탐사평가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수 있는 사실이나 상황이 나타나면 손상에 대해 검토하는가?	
	IFRS 6.19 IFRS 6.20	*주:* *1) 손상가능성이 있는 탐사평가자산을 식별하는 경우에는 IAS 36. 8~17 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IFRS 6. 20 만을 적용한다.* *2) 탐사평가자산의 손상을 검토하여야 하는 사실이나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모든 예를 망라한 것은 아님).* *(1) 특정지역 탐사에 대한 권리의 보유기간이 당기 중 만료되었거나 가까운 미래에 만료될 예정이고 갱신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특정지역 광물자원의 추가적 탐사와 평가를 위한 중요한 지출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거나 계획되지 아니한 경우* *(3) 특정지역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를 통하여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한 수량의 광물자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지역에 대한 탐사와 평가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4) 특정지역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탐사평가자산의 장부금액이 개발의 성공이나 판매로 전액 회수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IAS 36 에 따라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6B	IFRS 6.18 IFRS 6.20	탐사평가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수 있는 사실이나 상황의 결과 탐사평가자산에 대한 손상을 검토할 경우 (1) 탐사평가자산의 손상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자산을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으로 배분하기 위한 회계정책을 결정했나?	
		IFRS 8 를 적용하는 기업에 대해(조기적용이 허용되면서 2009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에 적용)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FRS 6.21	(2) 탐사평가자산이 배분된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은 IFRS 8 '영업부문'에 따라 결정된 영업부문보다 크지 않는가? Note: IAS 14 '부문보고'를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상기 현금창출단위(집단)은 동 기준서에 따라 결정된 일차적 또는 이차적 보고양식에 근거한 부문보다 크지 않은가?	
	IFRS 6.20 IFRS 6.19	(3) 탐사평가자산의 회수가능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 손상차손은 IAS 36 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하는가? (4) 위 단계에서 수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IAS 36 에 따라 손상차손을 측정, 표시하고 공시하였는가? *주: IFRS 6.21 은 손상검사를 위하여 탐사평가자산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는 기본원칙을 설명한다. 부과된 한계중의 하나는 부문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되는 기업은 탐사평가자산이 배분된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은 기업이 부문정보를 보고하는것과 관련한 "부문"보다 클 수 없다는 것이다. 동 규정은 IAS 14 '부문보고'를 대신하여 IFRS 8 '영업부문'의 적용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위 (2) 참조.*	

IFRS 7 금융상품: 공시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금융상품의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IFRS 7 의 요구사항에 대해 Deloitte 의 표시와 공시 Checklist 를 참조하시오.	

IFRS 8 영업부문 [2009 년 1 월 1 일 시행]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활동의 내용 및 재무효과 그리고 영업을 영위하는 경제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보고될 정보를 설명하고 있는 Deloitte 의 표시 및 공시 체크리스트(P&D Checklist)를 참조하라. IFRS 8 을 채택시 IAS 14'부문보고'를 IFRS 8 로 대체한다.	

IAS1 재무제표 표시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전기재무제표 및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할 수 있도록 일반목적 재무제표 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IAS 1 에 대해 Deloitte 의 표시와 공시 Checklist 를 참조하시오.	

IAS 2 재고자산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본 질문서는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언급하고 있는 IAS 2 를 다루고 있다. 주요이슈는 자산으로서 자본화해야될 원가,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을 포함한 후속적 비용 인식과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이다.	
		적용범위	
		IAS 2 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재고자산에 적용한다: *a) IAS 11 '건설계약'에서 다루고 있는 건설계약 및 건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제공 계약에서 발생하는 진행 중인 공사* *b) 금융상품(IAS 32 및 39)* *c)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IAS 41) 및* *d) 수확시점의 수확물(IAS 41)* *본 기준서는 완전히 본 기준서의 적용범위 제외대상인 재고자산(위에 기술한)과 본 기준서의 측정관련 요구사항은 적용받지 않지만 이를 제외한 기타 요구사항의 적용범위 대상인 재고자산(아래에 기술한)과의 차이를 명확히하고 있다.* *본 기준서는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의 측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a) 농림어업 제품과 자연삼림, 수확시점 이후의 농림어업 수확물 및 광물자원과 광업 제품의 생산자가 해당 산업의 합리적인 관행에 따라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이 경우 순실현가능가치의 변동분은 변동이 발생한 기간의 기간손익으로 인식한다.* *b) 1 차상품 중개기업이 재고자산을 순공정가치(공정가치에서 판매원가를 차감한 금액)로 측정하는 경우, 이 경우 순공정가치의 변동분은 변동이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IAS 2 의 공시요구사항은 이러한 형태의 기업이 보유한 재고자산에 대해서 적용된다(별도의 표시 및 공시 체크리스트 참조).*	
		정의	
		재고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a)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자산* *b) 그러한 판매를 위하여 생산중인 자산, 또는* *c)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순실현가능가치란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	
		예비질문	
		다음의 예비질문에 "예"라 답한 경우 관련 세부준수질문에 답하시오.	
2A		기업은 재판매를 위해 재화를 구매하는가(예: 상품, 토지)?	
2B		기업은 재고자산을 생산 또는 제조하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2C **2D**		기업은 용역의 제공에서 사용되는 자재 또는 물품을 구입하는가? 기업은 IAS 2 에 따라 측정된 농림어업 수확물을 보유하고 있는가?	
		세부준수질문 재고자산의 측정	
2A, B, C	IAS 2.9	모든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는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2A, B, C	IAS 2.10	기업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다음을 포함하는가? a) 모든 매입원가 b) 모든 전환원가 c)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원가	
		매입원가	
2A, B, C	IAS 2.11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 매입원가는 다음을 구성하고 있는가? a) 매입가격(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항목은 차감) b) 수입관세 c) 기타 환급불가능 세금 및 d) 매입운임, 하역료 그리고 완제품, 원재료 및 용역의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	
2A, B, C	IAS 39.81	만일 재고자산의 취득원가가 위험회피회계원칙에 따라 재고자산에 가산된 파생상품손익을 포함하고 있다면 기업은 IAS 39 의 위험회피기준을 준수했는가?	
		Note: 본 질문의 IAS 39 부분을 참조할 것	
2A, B, C	IAS 21.21	만일 기업이 재고자산을 수입했거나 외화표시가격으로 재고자산을 구입했다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거래시점의 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계산하였는가?	
		Note: 외화거래는 거래시점의 현행환율과 유사한 환율로 기록될 수 있다(즉, 주단위 또는 월단위 평균환율). 그러나 만일 환율의 변동이 중요할 경우, 평균환율의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전환원가	
2B	IAS 2.12	기업이 재고자산을 생산 또는 제조할 경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 전환원가는 다음을 구성하고 있는가? a) 생산량과 직접 관련된 원가(예: 직접노무원가) b) 원재료를 완제품을 전환하는데 발생하는 고정 및 변동제조간접원가의 체계적인 배부액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 고정제조간접원가는 공장 건물이나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와 수선유지비 및 공장 관리비처럼 생산량과는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간접 제조원가를 말한다.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생산량에 완전 비례적으로 변동하는 변동하는 간접 제조원가를 말한다(예: 간접노무원가 및 간접재료원가)*	
2B	IAS 2.13	기업이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재고자산에 배부하는 경우, 기업은 다음 중 하나에 따라 배부하는가: a) 계획된 유지활동에 따른 조업도 손실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상황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량을 근거로 한 정상조업도; or b) 실제조업도가 정상조업도와 유사한 경우에는 실제조업도	
2B	IAS 2.13	기업이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재고자산에 배부할 경우, 기업은 낮은조업도나 유휴설비로 인해 발생한 원가를 기간의 용으로 인식하는가 (즉, 모든 간접원가가 배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산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을 증가시키지 않음)?	
2B	IAS 2.13	기업이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재고자산에 배부할 경우, 기업은 비정상적으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진 기간에 생산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을 감소시키는가?	
2B	IAS 2.14	하나의 생산과정을 통하여 둘 이상의 제품이 생산될 경우, 제품별 전환원가를 분리하여 식별할 수 없다면 전환원가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각 제품에 배부하는가?	
		Note: 하나의 생산과정을 통하여 둘 이상의 제품이 생산되고 그 중 하나의 생산품(부산물)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을 경우, 부산물은 종종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되고 주산물은 원가에서 부산물에 귀속되는 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된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도 주산물의 장부금액과 원가간에 중요하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u>기타원가</u>	
2A, B, C	IAS 2.15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된 기타원가는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원가만을 나타내는가?	
		Note: 예를 들어, 특정한 고객을 위한 비제조 간접원가 또는 제품 디자인원가를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수 도 있다.	
2A, B, C	IAS 2.16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원가는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가?	
		Note: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 *보관원가(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 •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 • *판매원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2A, B, C	IAS 2.17	차입원가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었다면, 기업은 IAS 23 '차입원가'의 요구사항을 준수했는가?	
		Note: 이 질문의 IAS 23 부분을 참조할 것	
2A, B, C	IAS 2.18	만일 기업이 후불조건으로 재고자산을 취득했다면(즉, 금융계약), 금융요소는 금융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하는가?	
		Note: 금융요소는 금융이 이루어지는 기간동안 정상거래조건의 매입가격과 실제지급액 간의 차이가 된다.	
		<u>용역제공기업의 재고자산 취득원가</u>	
2C	IAS 2.19	만일 기업이 용역제공기업일 경우: a) 기업을 재고자산을 생산을 위한 원가(예를 들어 용역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력에 대한 원가)로 측정했는가? b) 기업이 판매 및 일반관리인력과 관련된 노무원가 및 기타 원가를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했는가? c) 기업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이윤이나 용역과 직접관련이 없는 간접원가를 제외시켰는가?	
		<u>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의 취득원가</u>	
2D	IAS 2.20	*만일 기업의 재고자산이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러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IAS 2 에 따른 공정가치에서 예상되는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였는가?*	
	IAS 2.9	*Note: 이는 재고자산의 새로운 취득원가이다. 추후에, 이러한 재고자산은 IAS 2 의 적용범위 대상인 다른 모든 재고자산처럼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u>원가측정방법</u>	
2A, B, C	IAS 2.21	기업은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재고법 등의 원가측정방법을 실제원가와 유사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는가 ?	
2A, B, C	IAS 2.21	표준원가방법이 사용될 경우: a) 표준원가는 정상적인 재료원가, 소모품원가, 노무원가 및 효율성과 생산능력 활용도를 반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b) 표준원가법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가?	
2A, B, C	IAS 2.22	소매재고법이 사용될 경우: a) 재고자산의 원가는 재고자산의 판매가격을 적절한 총이익률을 반영하여 환원하는 방법으로 결정되는가? b) 적용되는 이익률은 최초판매가격 이하로 가격이 인하된 재고자산을 고려하는가?	
		Note: 소매재고법은 회전율이 높고 이익률이 유사한 다품종의 상품을 취득하며 실무적으로 다른 원가측정법을 사용할 수 없는 유통업에서 흔히 사용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단위원가결정방법	
2A, B, C	IAS 2.23	기업은 일반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를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하는가 ?	
		Note: 개별법은 식별되는 재고자산별로 특정한 원가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손익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항목을 결정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상호교환 가능한 대량의 재고자산 항목에 개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2A, B, C	IAS 2.25	기업은 IAS 2. 23 에서 다루고 있는 항목들을 제외하고는(상기 참조) 다음 중 하나를 근거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결정하는가? a) 선입선출법 b) 가중평균법	
		Notes: *1)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되고 결과적으로 기말에 재고로 남아있는 항목은 가장 최근에 매입 또는 생산된 항목이라고 가정하는 벙법이다..* *2) 가중평균법은 기초 재고자산과 회계기간 중에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자산의 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재고항목의 단위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평균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계산하거나 매입 또는 생산할 때마다 계산할 수 있다.*	
2A, B	IAS 2.25	기업은 성격과 용도면에서 유사한 모든 재고자신에 대해서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즉, 선입선출법 또는 가중평균법)을 사용했는가?	
		Note: 재고자산이 성격이나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서로 다른 단위원가결정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재고자산의 지역별 위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재고자산에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순실현가능가치	
2A, B, C, D	IAS 2.29	기업은 항목별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를 평가했는가, 재고자산들이 유사하거나 관련있는 항목들이 아니라면, 이러한 재고자산들은 어떠한 경우에 통합하여 평가될 수 있는가?	
		Notes: *1) 재고들이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며, 유사한 목적이나 용도(end uses)를 갖고, 동일한 지역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며, 실무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는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없다면 본 규정과 관련하여는 재고자산 항목들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본다.* *2) 다음중 하나를 근거로 재고자산항목을 통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재고자산의 분류(예: 완제품)* • *특정산업의 모든재고* • *특정영업부문의 모든 재고.* *3) 용역제공기업은 순실현가능가치를 평가할 때 용역대가가 청구되는 용역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2A, B, C, D	IAS 2.30	순실현가능가치의 추정은 재고자산의 보유목적을 고려하여 재고자산으로부터 실현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추정일 현재 사용 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였는가?	
2A, B, C, D	IAS 2.30	순실현가능가치의 추정시 대차대조표일 이후의 사건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는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여주는 경우에는 그 사건과 직접 관련된 가격이나 원가의 변동을 고려하였는가?	
2B	IAS 2.32	재고자산의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및 소모품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이하일 경우 이러한 재고자산은 제품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이하일 경우에만 평가손실을 인식하였는가?	
		Note: 원재료의 대체원가는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최선의 적용가능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	
		<u>이전의 평가손실에 대한 환입</u>	
2A, B, C, D	IAS 2.33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새로운 장부금액이 원가와 조정된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을 반영하도록 평가손실을 환입하였는가?	
		Note: 예를 들어 이러한 경우는 판매가격이 하락하여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된 재고자산항목을 추후에 계속 보유하고 판매가격이 다시 상승한 경우에 발생한다 .	
		비용의 인식	
2A, B, C, D	IAS 2.34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였는가?	
2A, B, C, D	IAS 2.35	재고자산을 일부 다른 자산계정에 배분하는 경우(예: 자가건설한 유형자산의 구성요소로 사용된 재고자산) 배분된 재고자산 원가는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인식하였는가?	
2A, B, C, D	IAS 2.34	기업은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이나 다른 모든 감모손실을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였는가?	
2A, B, C, D	IAS 2.34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환입될 경우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였는가?	

IAS7 현금흐름표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현금흐름표 작성 방법을 규정한 IAS 7 의 요구사항에 대해 Deloitte 의 표시와 공시 Checklist 를 참조하시오.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본 질문서는 계속기업의 가정하에 회사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표시하는데 있어서 특정항목의 분류와 회계처리에 대해 기술한 IAS 8 을 설명한다. 특정한 경우에 다음의 질문서는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그리고 오류의 수정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기술하고 있으며 또한 회계정책의 선택과 관련된 기준도 기술한다.	
		예비질문	
		다음 예비질문에 하나라도 "예"라고 답한 경우 관련세부준수질문에 답하시오	
8A		회계기간 동안 회계추정의 변경이 있었는가?	
8B		당기동안,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중에 전기의 오류사항을 발견했는가?	
8C		IFRS 의 채택 혹은 해석으로 회계정책이 변경되었는가?	
8D		회사가 자발적으로 회계기간 동안 회계정책을 변경하였는가?	
8E		IFRS 에 따라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는데 적용되는 특정한 원칙과 기초지식과 관습과 규칙과 실행세칙과 같은 회계정책을 개발하였는가?	
		세부준수질문	
		회계정책	
		회계정책의 채택과 적용	
8E	IAS 8 문단 7	특정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IFRS 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그 항목에 적용될 회계정책은 IFRS 를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IASB 가 발표한 관련 실무적용지침도 고려였는가?	
	IAS 8 문단 8	*Notes:* *1) 회계정책의 적용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계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또는 현금흐름을 특정한 의도대로 표시하기 위하여 IFRS 에 위배된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더라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IAS 8 문단 9	*2) IASB 에 의해 발행되는 기준서에 대한 실무적용지침은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재무제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8E	IAS 8 문단 10	특정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나 해석이 없는 경우,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한 정보를 산출하고 신뢰성있는 회계정보를 산출하는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기 위해 판단에 의존하였는가?	
		Note: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다음의 속성을 포함한다. •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한다.* •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의 단순한 법적 형태가 아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 • *중립적이다. 즉, 편의가 없다* • *신중하게 고려한다.* •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고려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8E	IAS 8.11	기준이나 해석에 언급되지 않은 특정거래, 사건, 상황에 대한 회계정책을 채택함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진은 아래의 순서대로 다음의 조건들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하고 참고하는가? a)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IFRS 의 규정과 지침 b)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개념체계 ' 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	
8E	IAS 8.12	정책을 선택함에 있어서 IAS 8 의 문단 11 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여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IASB 이외의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 기타의 회계문헌과 인정된 산업실무를 고려하였는가?	
		Note: IAS 8 의 문단 12 에서 열거된 자료(source)를 반드시 참조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회계정책의 일관성	
8E	IAS 8 문단 13	IFRS 에서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였는가?	
8E	IAS 8 문단 13	만약 IFRS 에서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각 범주에 대하여 선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였는가?	
		회계정책의 변경	
8C, D	IAS 8 문단 14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만 회계정책의 변경이 발생하는가? (1) 기준이나 해석에 따라 회계정책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2)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특정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경영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 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IAS 8 문단 16	*Note: 다음의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8D	IAS 8 문단 17	IAS 16 '유형자산' 또는 IAS 38 '무형자산'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하는 회계정책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의 회계정책 변경은 IAS 8 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련 있는 기준에 의해서 회계처리 되었는가? <u>기준 혹은 해석의 최초 적용</u>	
8C	IAS 8 문단 19	특정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과규정이 있는 IFRS 를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해당 경과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하였는가?	
8C	IAS 8 문단 19	특정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과규정이 없는 IFRS 를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적용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 소급적용이란 새로운 회계정책을 처음부터 적용한 것처럼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u>회계정책의 자발적인 변경</u>	
8D	IAS 8 문단 19	특정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적용하였는가?	
	IAS 8 문단 20 IAS 8 문단 21	*Notes:* *1) IAS 8 의 제정 목적에 따라, IFRS 를 조기 적용하는 것은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특정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IFRS 가 없는 경우, 경영진은 IAS 8 문단 12 에 따라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여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IASB 이외의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에 기초한 회계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회계기준의 개정에 따라 회계정책을 변경하기로 하였다면, 이 경우의 회계변경은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공시한다.*	
		<u>소급적용</u>	
8C	IAS 8 문단 22	회계정책의 변경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조정하는가? a)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영향 받는 자본의 각 구성요소의 기초 금액 b) 비교 공시되는 각 과거기간의 기타 대응금액 변경의 누적효과와 특정 기간에 귀속되는 영향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회계정책을 처음부터 적용한 것처럼 조정	
8C, D	IAS 8 문단 26	역사적 재무정보의 요약 등 과거기간에 관련된 정보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 앞선 과거기간까지 소급하여 조정하였는가?	
		<u>소급적용의 한계</u>	
8C, D	IAS 8 문단 24	비교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에 대해 특정기간에 미치는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a)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자산 및 부채의 기초장부금액에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였는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은 당기일 수도 있다. b) 그에 따라 변동하는 자본 구성요소의 기초금액을 조정하였는가?	
8C, D	IAS 8 문단 25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새로운 회계정책 적용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전진적용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s:	
	IAS 8 문단 5	*1) 새로운 정책을 전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새로운 회계정책을 변경일 이후에 발생하는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이다.*	
	IAS 8 문단 27	*2)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새로운 회계정책 적용의 누적효과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정책을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경우, IAS 8 문단 25 에 따라 새로운 회계정책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적용시점 이전 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에 미치는 누적효과의 조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변경된 회계정책을 과거의 회계기간부터 실무적으로 전진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회계정책은 변경할 수 있다.*	
	IAS 8 문단 5	*3) 기업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했어도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요구사항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다음의 경우는 특정 과거기간에 대하여 회계정책 변경의 소급적용이나 오류수정을 위한 소급재작성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영향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을 위하여 대상 과거기간의 경영진의 의도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 경우* •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을 위하여 중요한 금액 추정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추정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정보와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정보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o *추정금액을 인식, 측정, 공시하여야 하는 시기에 존재했던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정보* o *당해 과거기간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에 이용가능하였던 정보* *IAS 8 의 문단 50 내지 53 은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를 실무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회계추정의 변경	
	IAS 8 문단 5	*Note: 자산과 부채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거나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예상되는 미래효익과 의무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 또는 기간별 자산의 소비액을 조정하는 것. 회계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 등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를 바꾸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오류수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IAS 8 문단 32	*사업활동에 내재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의 많은 항목이 정확히 측정될 수 없고 추정될 수 밖에 없다. 추정은 최근의 이용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기초한 판단을 수반한다. 추정이 필요할 수 있는 항목의 예로는, 대손, 재고자산 진부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기대소비행태, 품질보증의무 등이 있다.*	
	IAS 8 문단 34	*추정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 추정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성격상 추정의 수정은 과거기간과 연관되지 않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IAS 8 문단 35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8A	IAS 8 문단 36 내지 37	회계추정 변경의 효과는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다루어 지는가? a) 회계추정의 변경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을 변경하거나 자본의 구성요소에 관련되는 경우, 회계추정을 변경한 기간에 관련 자산, 부채 또는 자본 구성요소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회계추정의 변경 효과를 인식한다. b) 위를 제외한 회계추정의 변경 효과는 다음의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하여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i)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 ii)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 기간 *Note: 회계추정의 변경 효과를 전진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추정의 변경을 그것이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당기손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당기손익과 미래기간의 손익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대손에 대한 추정의 변경은 당기손익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의 효과가 당기에 인식된다. 그러나 감가상각자산의 추정내용연수의 변경 또는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기대소비 형태의 변경은 당기의 감가상각비뿐만 아니라 그 자산의 잔존 내용연수동안 미래기간의 감가상각비에 영향을 미친다. 위의 두 경우 모두 당기에 미치는 변경의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의 효과는 해당 미래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오류	
	IAS 8 문단 5	*Note: 전기오류는 과거기간동안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재무제표에의 누락이나 왜곡표시를 말한다. 신뢰할 만한 정보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를 말한다.* *a) 해당기간의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에 이용가능한 정보* *b) 당해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하여 획득하여 고려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정보* *이러한 오류에는 산술적 계산오류, 회계정책의 적용 오류, 사실의 간과 또는 해석의 오류 및 부정 등의 영향을 포함한다.*	
8B	IAS 8 문단 42	특정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다음의 방법으로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하였는가? a)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재무제표가 비교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b) 오류가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을 재작성한다.	
	IAS 8 문단 46	*Note: 전기오류의 수정은 오류가 발견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보고하지 않는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8B	IAS 8 문단 44	비교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에 대해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소급재작성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을 재작성하였는가? (실무적으로 소급재작성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은 당기일 수도 있음). *Note: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에 대해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소급적용의 논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라는 부분을 참조. IAS 8 의 문단 50 내지 53 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8B	IAS 8 문단 45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전진적으로 오류를 수정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하였는가?	
8B	IAS 8 문단 46	과거 재무자료의 요약을 포함한 과거기간의 정보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 앞선 기간까지 소급재작성하였는가?	

IAS 10 보고기간후사건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본 질문서는 기업이 보고기간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한 IAS 10 을 다루고 있다. 주요 이슈사항은 보고기간후사건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해야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다.	
		정의	
		보고기간후 사건*은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으로 정의한다. IAS 10 는 보고기간후 사건을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수정을 요하는 사건****: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	
		예비질문	
		다음 예비질문에 하나라도 "예"라고 답한 경우 관련세부준수질문에 답하시오.	
10A		보고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이 재무제표가 발행승인되기 전인 대차대조표 후에 발생하였는가?	
10B		기업은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배당을 제안하거나 선언하였는가?	
10C		경영자는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기업의 청산이나 기업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결정하거나, 보고기업이 더 이상 계속기업이라고 할 수 없는 징후가 있었는가?	
		세부준수질문	
		인식과 측정	
		수정을 요하는 대차대조표일 후 사건	
10A	IAS 10.8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였는가?	
10A	IAS 10.9	*Note: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사건의 영향으로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금액은 수정하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항목은 새로 인식하여야 한다.* •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 *보고기간말에 이미 자산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나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금액의 수정이 필요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 *보고기간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 *보고기간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서 보고기간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가 있는 이익분배나 상여금지급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 •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수정을 요하지 않는 대차대조표일 이후의 사건	
10A	IAS 10 문단 10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하였는가?	
		Note: 예를 들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 시장가치의 하락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고기간후에 발생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배당금	
10B	IAS 10.12	보고기간 후에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해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금을 보고기간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는가?	
		계속기업	
10C	IAS 10.14	만약,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에, 기업의 청산이나 경영활동의 중단계획을 결정하거나, 그 이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기업은 계속기업의 기준 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였는가?	
10C	IAS 10.15	만약, 보고일 후에 보고기업의 영업성과가 악화되었다면 계속기업의 가정이 여전히 적절한지를 고려하였는가?	
		Note: 만약 계속기업의 가정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면 그 효과가 광범위하게 미치므로, IAS 10 에 따라 단순히 원래의 회계처리방법 내에서 이미 인식한 금액을 조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계처리방법을 근본적으로 변경할 것이 요구된다.	

IAS 11 건설계약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본 질문서는 건설사업자의 재무제표에서 건설계약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건설계약은 단일 자산의 건설이나 설계, 기술 및 기능 또는 그 최종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 자산의 건설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계약이다.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예비질문	
11A		*다음의 물음에 "예"라 답한 경우 관계된 세부준수질문에 답하시오.* 기업은 단일자산의 건설이나 설계, 기술 및 기능 또는 그 최종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자산의 건설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계약을 협상했는가?(즉, IAS 11 에서 정의된 건설계약) *Note: IAS 11 의 목적상 건설계약은 다음을 포함한다:* • *공사관리와 설계용역의 계약과 같이 자산의 건설에 직접 관련된 용역제공 계약* • 자산의 철거나 원상회복 및 자산의 철거에 따르는 환경복구에 관한 계약	
		세부준수질문	
		건설계약의 병합과 분할	
11A	IAS 11.8	단일계약이 복수 자산의 건설을 포함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할 때에는 각 자산의 건설을 독립된 건설계약으로 본다. a) 각 자산에 대하여 별개의 공사제안서가 제출되었는가? b) 각 자산에 대하여 개별적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건설사업자와 발주자는 각 자산별로 각 자산과 관련되는 계약 조건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가? c) 각 자산별로 원가와 수익의 식별이 가능한가?	
11A	IAS 11.9	발주자의 수와 관계없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수의 계약은 단일 건설계약으로 본다. a) 복수의 계약이 일괄적으로 협상되는가? b) 복수의 계약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실상 전체로서의 목표 이윤을 추구하는 단일 프로젝트의 일부인가? c) 복수의 계약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계속하여 순차적으로 수행되는가?	
11A,	IAS 11.10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따르거나 계약을 수정하여 추가로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가 있다. 추가되는 자산의 건설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개의 건설계약으로 본다. a) 추가되는 자산이 설계, 기술 또는 기능에 있어서 원래의 계약에 포함된 자산과 중요한 차이가 있는가? b) 추가되는 자산의 계약금액을 원래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협상하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계약수익	
11A	IAS 11.11	계약수익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a)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인가? b)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으로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것 i)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가? ii)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가?	
11A	IAS 11.12	계약수익은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가? *Note: 공정가치는 지급이 정상적인 신용조건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 이로 인한 할인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11A	IAS 11.13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공사변경을 계약수익에 포함한다 a) 발주자가 공사변경과 변경에 따른 수익금액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은가?. b)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가? *Note: 공사의 변경은 계약상 수행하는 공사의 범위를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1A	IAS 11.14	보상금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계약수익에 포함한다. a) 협상이 상당히 진전되어 발주자가 보상금의 청구를 수락할 가능성이 높은가? b)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가? *Note: 보상금은 건설사업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가를 발주자나 다른 당사자에게서 보상받으려는 금액이다.*	
11A	IAS 11.15	장려금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계약수익에 포함한다. a) 계약이 충분히 진행되어 특정 수행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가? b)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가? *Note: 장려금은 특정 수행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건설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추가금액이다.*	
		계약원가	
11A	IAS 11.16	계약원가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되는가? a) 특정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예: 노무원가, 재료원가, 계약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b)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서 특정 계약에 배분할 수 있는 원가(예: 보험료, 설계와 기술지원원가, 건설간접원가. 차입원가) c)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원가	
11A	IAS 11.17	특정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는 계약수익에 포함되지 않은 부수적 이익에 의하여 차감되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11A	IAS 11.18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원가이며 특정 계약에 배분할 수 있는 경우; a) 그러한 원가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배분하는가? b) 유사한 성격의 모든 원가에 일관되게 적용하는가? c) 원가배분은 건설활동의 정상조업도 수준에 기초하여야 하는가?	
11A	IAS 11.18	기업이 IAS 23 '차입원가'에 따라 적격자산에서 발생한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경우, 차입원가는 본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건설계약에 포함되었는가?	
11A	IAS 11.20	계약활동에 귀속될 수 없거나 특정 계약에 배분할 수 없는 원가는 건설계약의 원가에서 제외되는가?	
		Note: 이러한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계약에 보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반관리원가* • *판매원가* • *계약에 보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연구개발원가* • *특정 계약에 사용하지 않는 유휴 생산설비나 건설장비의 감가상각비*	
11A	IAS 11.21	계약에 직접관련되며 계약을 획득하기 위하여 공사계약체결 전에 발생한원가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원가의 일부로 포함한다. a)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한가? b)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가? c) 계약의 체결가능성이 높은가?	
		Note: 만일 그러한 원가가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이 후속기간에 체결되더라도 계약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수익과 비용의 인식	
11A	IAS 11.22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는가?	
	IAS 11.29	*Note: 일반적으로 계약이 합의된 이후에 신뢰성 있는 추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a)건설대상 자산과 관련한 각 당사자의 구속력 있는 권리, (b)교환 대가 및 (c)결제의 방법과 조건이 정해져야 한다.*	
11A	IAS 11.23	정액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a) 총계약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가? b) 계약과 관련한 경제적효익이 건설사업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가? c) 계약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계약원가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계약진행률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가? d) 특정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계약원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 실제 발생한 계약원가를 이전 추정치와 비교할 수 있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 정액계약은 계약금액을 정액으로 하거나 산출물 단위당 가격을 정액으로 하는 건설계약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물가연동조항을 포함한다.	
11A	IAS 11.24	원가보상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기 위해서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a) 계약과 관련한 경제적효익이 건설사업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가? b) 특정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계약원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가?.	
		Note: 원가보상계약은 원가의 일정비율이나 확정된 이윤을 원가에 가산하여 보상받는 건설계약으로 이 경우 실무상 인정될 수 있거나 계약서에 정의된 원가를 말한다	
11A	IAS 11.6	기업이 정액계약과 원가보상계약의 성격이 모두 포함되는 건설계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업은 IAS 11.23~24 에 있는 모든 요건을 고려했는가?	
11A	IAS 11.27	미래의 계약활동과 관련하여 기업이 부담한 계약원가는 회수가능성이 높은 경우 자산으로 인식하였는가?	
		Note: 그러한 원가는 발주자에게 청구하여 수령할 금액을 의미하며 종종 미성공사로 분류하고 있다.	
11A	IAS 11.28	계약수익으로 손익계산서에 이미 인식한 금액의 회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발생한 경우,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금액은 계약수익을 조정하기 보다는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였는가?	
11A	IAS 11.30	계약의 진행률(및 이로 인한 수익인식)을 산정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기준이 사용되었는가?	
		Note: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 • *수행한 공사의 측량* • *계약 공사의 물리적 완성비율*	
11A	IAS 11.31	진행률을 누적발생계약원가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공사를 반영하는 계약원가만 누적발생원가에 포함하는가?	
		Note: 수행한 공사는 다음의 계약원가를 제외한다. • *현장에 투입되었거나 계약을 위해 별도로 준비되었지만 계약수행을 위해 설치, 사용 또는 적용이 되지 않은 재료의 원가와 같은 미래의 계약활동과 관련된 계약원가. 단, 계약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 •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에 대해 하도급자에게 선급한 금액*	
11A	IAS 11.32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는가? a) 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한다. b) 계약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11A	IAS 11.32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계약의 예상손실은 IAS 11. 36 에 따라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가?	
11A	IAS 11.35	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게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경우, 당해 건설계약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대차대조표일의 계약활동의 진행율을 근거로 인식하는가?	
		예상손실의 인식	
11A	IAS 11.36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였는가?	
	IAS 11.37	*Note: 예상손실은 다음 사항과 관계없이 결정된다.* • *당해 계약의 공사가 시작되었는지의 여부* • *계약활동의 진행정도* • *IAS 11. 9 에 따라 단일건설계약으로 취급되지 않은 다른 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 금액*	
		추정의 변경	
11A	IAS 11.38	계약수익 또는 계약원가의 추정치 변경이 있거나 계약의 결과 추정치 변경이 있을 경우, 그러한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였는가?	
		Note: 본 질문서의 IAS 8 참조	

IAS 12 법인세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본 질문서는 법인세의 회계처리를 기술한 IAS 12 를 다루고 있다. *IAS 12 는 이연법인세 부채 또는 자산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재무상태표 접근법'/'재무상태표 부채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 방법에 따라, 자산 부채의 장부가액은 세무기준액과 비교되며, 두 금액의 차이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 혹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금액이 된다. 동 기준서는 이러한 일시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부채 또는 자산의 인식과 측정을 위한 기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적용범위	
	IAS 12.2	*IAS 12 의 목적상, 법인세는 기업의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국내 및 국외에서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포함한다. 또한 법인세는 보고실체의 종속기업, 관계기업 혹은 조인트벤처가 보고기업에 배당할 때 납부하는 원천징수세금 등도 포함한다.*	
	IAS 12.4	*IAS 12 는 정부보조금과 (IAS 20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국고보조금의 공시'참고) 투자세액공제를 위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다루고 있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기준서는 이러한 보조금 또는 투자세액공제로부터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다룬다.*	
		용어의 정의	
	IAS 12.5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 ***당기법인세**: 회계기간동안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해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 ***법인세비용**: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와 관련하여 당해 회계기간의 손익을 결정하는데 포함되는 총액* ***자산이나 부채의 세무기준액**: 세무상 당해 자산 또는 부채에 귀속되는 금액* ***일시적차이**: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	
		예비질문	
		다음 예비질문에 하나라도 "예"라고 답한 경우 관련 세부준수질문에 답하시오	
12A		국내외 과세당국에 의해 부과된 법인세법(종속기업, 관계회사, 조인트벤처가 보고기업에 배당하는 경우 부과되는 원천징수세금 포함) 의 적용을 받는가?	
12B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존재하는가?	
		Note: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가액이 회수되거나 결제되는 미래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결정시 가산할 금액이 되는 일시적 차이임.	
12C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존재하는가?	
		Note: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가액이 회수되거나 결제되는 미래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결정시 차감할 금액이 되는 일시적 차이임.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12D		회사에 당기 중 또는 당보고기간 말 현재 미사용된 세무상결손금 또는 세액공제가 있는가?	
12E		회사는 당기중 또는 당보고기간 말 현재 종속회사, 지점,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을 가지고 있는가?	
12F		회사는 당 보고기간 중에 사업결합에 관여하였는가?	
12G		회사는 자산을 공정가치 또는 재평가가액으로 평가하고 있는가?(예를 들어, IAS 16 '유형자산', IAS 38 '무형자산'에 따른 재평가모형을 사용하는지, IAS 40 '투자부동산' 혹은 IAS 39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에 따라 공정가치를 사용하는지)	
12H		보고기간동안 회사 또는 회사주주의 납세 지위(tax status)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는가?	
		Note: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회사 지분의 상장 혹은 회사지분의 구조조정에서 발생한다. 또한 지배주주가 해외로 이전할 때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건의 결과로, 회사는 (이전과) 다르게 과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무상 인센티브가 새로 발생하거나 세무상 인센티브를 더이상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며, 또는 미래에 다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12I		회사는 당해 보고기간동안 IFRS 2 *'주식기준보상'* 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요한 주식기준보상 거래가 있었는가?	
12J		회사는 과거 재무보고기간에 영업권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사업결합 또는 취득에 참여하고 있는가?	
12K		회사는 과거의 회계기간에 사업결합이나 취득에 참여하였고, 피취득자의 세무상 결손금 이월액 또는 다른 이연법인세자산이 IFRS 3 *'사업 결합'* 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았는가?	
		세부준수질문	
		세무기준액	
12A	IAS 12.7	회사는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가? a) 자산의 장부가액이 회수될 때 기업에 유입될 경제적 효익이 과세대상이라면, 세무기준액은 과세대상 경제적 효익에서 세무상 차감될 금액인가? b) 자산의 장부가액이 회수될 때 기업에 유입될 경제적 효익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자산의 장부금액과 일치하는가?	
	IAS 12.51	*Note: 세금의 유형에 따라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서로 다를 수 있다. – 예를 들어 법인세, 자본이득세를 측정할 때에는 회사가 자산, 부채의 장부가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을 따른 세효과를 반영한다.*	
12A	IAS 12.8	회사는 부채의 세무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가? a) 수익을 미리 받은 경우를 제외한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가액에서 당해 부채와 관련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인가? b) 수익을 미리 받은 경우,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가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과세되지 않을 수익을 차감한 금액인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12.9 IAS 12.10	*Notes:* *1) 재무상태표에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되지 않지만 세무기준액을 가지는 항목이 있다. 예를 들면, 회계이익을 결정할 때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연구원가가 과세소득(세무상 결손금)을 결정할 때에는 차기 이후에 공제되는 경우이다. 과세당국이 미래 회계기간에 공제하도록 한 금액이 연구원가의 세무기준액이 된다.* *2) 자산 또는 부채의 세무기준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IAS 12 의 토대가 되는 기본원칙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즉,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가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 세효과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미래의 법인세 납부액을 증가(감소)시킨다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한다.*	
12A	IAS 12.11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적절한 기준세무액과 연결제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일시적 차이를 결정하는가? a) 연결납세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의 세무기준액은 제출되는 연결세무신고서를 참조하여 결정하는가? b) 연결납세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국가에서의 세무기준액은 그룹(연결실체)내의 각 회사의 세무신고서를 참조하여 결정하는가? **당기법인세부채와 당기법인세자산의 인식**	
12A	IAS 12.12	당기 및 전기 이전 기간에 대한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였는가?	
12A	IAS 12.12	당기 및 전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금액이 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되었는가?	
12A	IAS 12.13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였는가?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가산할 일시적 차이***	
12B	IAS 12.15	이연법인세부채가 본 질문서의 다른 항목에서 언급하는 다음 사항에서 발생된 이연법인세부채를 제외하고 모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인식되었는가? • 영업권 • 자산 부채의 최초인식거래 그리고, •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Note: 어떤 경우에는 위의 사항에 대해 이연법인세의 인식이 요구될 것이다. 이런 사항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자세한 질문들을 참조할 것.* 영업권	
I2J	IAS 12.15(a)	영업권의 최초인식으로 발생된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되지 않았는가?	
I2J	IAS 12.21A	영업권의 최초인식시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인식되지 아니한 이연법인세부채가 향후 감소되는 경우에도 인식되지 않았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 예를 들면,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영업권의 원가가 100 이고 세무기준액은 0 일 경우, IAS 12.15(a)(상기 내용 참조)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만약 회사가 후속적으로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 손상차손 20 을 인식한다면, 영업권과 관련한 일시적인 차이는 100 에서 80 으로 감소된다. 그 결과 미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의 가치가 감소한다. 당해 미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의 가치 감소는 영업권의 최초인식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문단 15(a) 에 따라 인식하지 아니한다.	
12J	IAS 12.21B	영업권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중 영업권의 최초인식에서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가 인식되었는가?	
		Note: 예를 들어,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원가가 100원이고 취득연도부터 시작하여 연 20%씩 세무상 공제할 수 있는 경우, 영업권의 세무기준액은 최초인식시 100원이고 취득연도의 말에 80원이 된다. 만일, 취득연도의 말에 영업권 장부금액이 변경되지 않아 100원이라면, 취득연도의 말에 20원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당해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영업권의 최초인식과 관련한 것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u>자산 또는 부채의 최초인식(영업권 제외)</u>	
12B	IAS 12.15(b)	아래의 거래에서 발생된 이연법인세부채를 제외하고는, 자산 또는 부채의 최초인식으로부터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가 인식되었는가? i)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ii) 거래당시에 회계상의 이익과 과세소득(또는 세무상 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12F	IAS 12.19	사업결합에서 획득한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서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되었는가?	
		Note: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는 영업권의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자산의 장부가액은 공정가액로 증가하였으나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계속해서 이전 보유자의 원가인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를 초래하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다.	
12G	IAS 12.20	이연법인세부채가 자산의 재평가 또는 자산을 공정가치로 조정하여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인식되었는가?	
		Note: 기업이 당해 자산을 처분할 의도가 없더라도 당해 자산의 재평가된 장부가액은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회수되며 이는 미래 회계기간에 세무상 감가상각을 초과하는 과세대상수익을 창출할 것이므로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되어야 한다. 당해 자산의 매각대금을 유사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이득에 대한 법인세를 이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된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유사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사용할 때 법인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2B		사업결합이 아닌 거래에서 거래당시에 자산 또는 부채의 최초인식으로 발생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회계상의 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IAS 12.15(2)	a) 최초인식에서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가 인식되지 <u>아니하였는가</u>?	
12B	IAS 12.22	b)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에 따라 최초에 미인식한 이연법인세부채의 후속변동은 인식되지 <u>아니하였는가</u>?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 자산의 취득원가는 1,000 이고, 10 년간 감가상각된다. 600 은 5 년동안 세무상 차감할 수 있다. 최초의 인식에서 400 만큼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인식되지 않는다. 당해 회계기간말에 이 자산의 장부가액은 900 이고 그것의 세무기준액은 480 이다. 당 회계기간말의 일시적차이는 360 이고 이는 최초인식시점에 발생한 차이의 감소된 금액이며, 회계와 세무상 감가상각율이 달라서 발생된 새로운 차이는 60 이다. 이연법인세는 이 '새로운' 차이 60 에 대해서만 인식한다.	
12B	IAS 12.23	회사는 복합금융상품(예: 전환사채)을 분리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를 부채요소와 지분요소로 인식하였는가?	
		Note: 일시적 차이는 부채의 최초인식이 아니라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분리하여 최초인식하는 과정중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문단 15(a) 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차감할 일시적 차이	
12C	IAS 12.24	이연법인세자산은 아래 기술된 최초인식의 면제를 제외하고,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이용가능한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이 인식되었는가?	
12C	IAS 12.24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다음의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였는가? i)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ii) 거래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 결손금)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가?	
		Note: 종속회사, 지점 그리고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는 IAS12.44(하기 내용 참조) 에 따라 인식된다.	
12C	IAS 12.28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기업이 동일 과세당국과 동일 과세대상기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회계기간에 소멸이 예상되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충분하지 여부를 고려하였는가? a)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과 동일한 회계기간 b)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무상 결손금이 소급공제되거나 이월공제될 수 있는 회계기간	
12C	IAS 12.29	동일 과세당국과 동일 과세대상기업에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a)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회계기간(또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인하여 발생된 세무상결손금이 소급 공제되거나 이월 공제되는회계기간)에 동일 과세당국과 동일 과세대상기업에 관련된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b) 세무정책으로 적절한 기간에 과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가?	
		Note: 미래 회계기간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있을지 여부를 평가할 때, 미래 회계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로 인한 과세대상금액은 무시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당해 차감할 일시적차이 자체가 사용되기 위하여 미래 과세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12C	IAS 12.22	IAS 12.24 의 인식기준에서 제외된 이연법인세자산(최초인식의 예외사항 - 상기 내용 참조)과 관련해서, 그런 자산이 상각됨에 따라 후속적인 미인식 이연법인세자산의 변동은 인식되지 않았는가?	
	IAS 12.33	*Note: 자산의 최초인식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예로는 자산과 관련된 비과세 정부보조금을 회계상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였으나 세무상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즉, 세무기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작으므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정부보조금은 수익을 이연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연수익과 영(0)인 세무기준액의 차이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된다. 정부보조금을 표시하는 방법에 관계없이, IAS12. 22(상기 내용 참조)에서 제시하는 이유로 이러한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12C	IAS 12.33	자산과 관련된 비과세 정부보조금을 회계상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였으나 세무상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즉, 세무기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아 발생한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이 인식되지 아니하였는가?	
12C	IAS 12.33	수익을 이연하는 방식으로 처리된 비과세 정부보조금으로부터 발생한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 자산이 인식되지 아니하였는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12D	IAS 12.34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였는가?	
	IAS 12.35	*Note: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조건은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조건과 동일하다. 그러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래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한 증거가 된다. 따라서 기업이 최근 결손금 이력이 있는 경우,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거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또는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있는 기타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12D	IAS 12.36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또는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을 검토할 때 다음의 판단기준을 고려하였는가? a) 동일 과세당국과 동일 과세대상기업에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나 세액공제가 만료되기 전에 충분한 과세대상금액을 발생시키는지의 여부 b)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나 세액공제가 만료되기 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 c)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식별가능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d)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나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세무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재검토***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12B,D	IAS 12.37	매 보고기간말에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 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는가?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12E	IAS 12.39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지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였는가? a)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가? b)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가?	
	IAS 12.40	*Note: 미배당 이익이나 외화환산으로부터 발생한 일시적 차이가 종종 발생한다. 만약 보고기업이 그 피투자, 종속기업, 관계기업 등과 관련된 배당정책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일시적 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12E	IAS 12.40	지배기업이 예측가능한 미래에 이익을 배당받지 않을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지배기업은 자회사나 지점의 미배당 이익으로부터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는가?	
		Note: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배당정책을 통제함에 따라 그 투자자산(미배당 이익뿐 아니라 외화 환산차이로 인한 일시적 차이 포함)에 대한 일시적차이의 소멸 시기를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일시적 차이가 소멸될 때 납부하게 될 세액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12E	IAS 12.41	과세소득 또는 세무상결손금(그리고 비화폐성 자산과 부채의 세무기준액)이 그 회사의 기능통화(비화폐성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는 화폐) 이외의 다른통화로 결정되는 경우 기업은 환율변동에 의한 일시적차이에 대한 (IAS 12.24 를 충족하는)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부채를 인식하였는가?	
12E	IAS 12.42	관계기업으로부터 이익을 예측가능한 미래에 배당받지 않는다는 약정이 없다면 투자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였는가?	
		Note: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는 그 기업을 지배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배당정책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한다.	
12E	IAS 12.42	투자자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회수할 때 납부하게 될 세액을 산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금액 이상일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당해 금액(이 최소한의 금액)으로 측정되었는가?	
12E	IAS 12.44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지만 이연법인세자산이 인식되었는가? a)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b)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가?	
	IAS 12.45	*Note: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IAS 12. 28 내지 31(상기 내용 참조)의 지침을 고려한다.*	
		측정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12A	IAS 12.46	당기 이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은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되었는가?	
12A	IAS 12.47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는가?	
	IAS 12.48	*Note: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 및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통 제정된 세율과 세법을 사용하여 측정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세율과 세법을 입법예고하면 실질적인 제정의 효과를 가지는데, 입법예고 후 수개월 뒤에 실제 법이 제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입법이 예고된 세율과 세법을 사용하여 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측정한다*	
12A	IAS 12.49	과세대상수익의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세율을 사용하여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였는가?	
12A	IAS 12.51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적절하게 반영하였는가?	
	IAS 12.52	*Note: 일부 국가에서는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결제)하는 방식이 다음의 하나 또는 모두에 영향을 미칠것이다.* • *기업이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결제)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세율* • *자산(부채)의 세무기준액* *이러한 경우에는, 기대되는 회수 또는 결제 방식과 일관성있는 세율과 세무기준액을 사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한다.*	
12G	SIC 21.5	IAS 16 '유형자산' 문단 31 에 따라 비상각자산의 재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부채 또는 자산은 당해 자산 장부가액의 측정기초에 관계없이 매각을 통한 동 장부가액의 회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세효과에 기초하여 측정되었는가?	
	SIC 21.6	*Note:* 토지와 같은 비상각 자산이 IAS 16 의 기준에 따라 재평가되는 경우, 자산의 어떠한 부분도 사용을 통해 회수(즉, 소비)되리라고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평가중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혹은 자산은 사용을 통해서보다는 당해 자산의 매각에 의한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SIC 21.4	이는 IAS 40 '투자부동산'의 문단 33 에 따라 장부가액이 재평가된 투자부동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만약 IAS 16 이 적용된다면 비상각자산으로 간주될 것이다.	
12A	IAS 12.52A	순이익이나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면 더 높거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혹은 순이익이나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사의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면 법인세를 환급받거나 납부할 수 있는 경우: a) 당기 법인세 자산과 부채 및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미배당이익에 적용되는 세율로 측정되었는가?	
	IAS 12.52B	b)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효과는 배당지급에 대한 부채가 인식될 때 인식되었는가?	
12A	IAS 12.53	이연법인세 부채와 자산의 측정시 현재가치 평가는 무시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12A	IAS 12.56	매 보고기간말에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검토되었는가? 또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사용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의 여부가 고려되었는가?	
12A	IAS 12.56	보고기간말 현재의 검토에 기초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가액은 감액되었는가?	
12A	IAS 12.56	이연법인세자산의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되었는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 손익으로 인식되는 항목	
12A	IAS 12.58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였는가? a)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b) 사업결합	
12A	IAS 12.60	관련된 일시적 차이의 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전기 이전에 자본에 가감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제외하고 장부가액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이연법인세는 손익계산서에 인식되었는가?	
		Note: 예를 들어, 세율이나 세법의 변화,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 가능성 재평가 혹은 예상되는 자산이 회수 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u>기업 혹은 주주의 납세 지위 변동</u>	
12H	SIC 25.4	만약 거래 및 사건과 관련된 당해 세효과가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된다면, 납세지위 변동에 따른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효과는 당기손익에 포함되었는가?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	
12A	IAS 12.61	법인세가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된 항목과 관련이 있다면, 당기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되었는가?	
	IAS 12.62	Note: *이러한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음.* •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부금액의 변동(IAS 16 참조)* • *소급적용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오류의 수정으로 인한 기초 이익잉여금 잔액의 조정(IAS 8 참조)* • *해외사업장 재무제표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IAS 21 참조)* • *복합금융상품의 자본요소에 대한 최초 인식에서 발생하는 금액(IAS 12.23 참조)*	
12A	IAS 12.63	예외적인 경우로서,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금액을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항목으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관련 국가 내 기업의 합리적인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비율로 배분하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 더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되었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12A	IAS 12.64	IAS 16 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하고 재평가된 자산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금액과 원가에 기초한 감가상각 또는 상각 금액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평가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체된 금액은 관련된 이연법인세를 차감한 순액인가?	
12A	IAS 12.64	회사가 자산을 IAS 16 에 따라 재평가하고 자산을 처분한 경우, 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 경우, 대체된 금액은 관련된 이연법인세를 차감한 순액인가?	
12A	IAS 12.65	세무상으로 자산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동 재평가가 과거에 이루어진 회계상의 재평가나 미래에 이루어질 회계상의 재평가와 관련이 있다면, 자산재평가와 세무기준액의 조정으로 인한 세효과는 세무상 재평가가 이루어진 회계기간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12A	IAS 12.65	세무상의 재평가가 과거에 이루어진 회계상의 재평가나 또는 미래에 이루어질 회계상의 재평가와 관련이 없다면, 세무기준액의 조정으로 인한 세효과는 당기손익에 반영되었는가?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의 변동	
12H	SIC 25.4	이러한 동일기간 혹은 다른기간에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의 변동과 관련한 납세지위의 변동으로 인한 세효과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되었는가?	
12A	IAS 12.65A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주주를 대신하여 과세당국에 배당금의 일부(원천징수세금)를 납부하는 경우, 과세당국에 납부하거나 납부할 이러한 금액은 배당금의 일부로서 자본에서 차감되었는가?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	
12F	IAS 12.66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부채가 a) 영업권의 최초인식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결과인 경우, 인식되지 않았는가? b)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이연법인세자산(IAS 12.24 의 적절한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되었는가?	
12F	IAS 12.67	사업결합의 결과로서 취득자가 사업결합전에는 인식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서이 높아질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취득자는 a)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b)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서는 제외시켰는가? *Note: 예를 들어, 취득자는 피취득자의 미래과세가능소득에 대해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되하만 영업권의 결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12K	IAS 12.68	피취득자의 세무상결손금 이월액 또는 기타 이연법인세자산의 잠재적 효익이 사업결합의 최초 회계처리시 IFRS 3 의 별도로 인식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향후에 실현된 경우, 취득자는 a) 그 결과로 인한 이연법인세를 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b) 이연법인세자산을 취득일부터 식별가능한 자산으로 인식했었더라면 인식되었을 금액으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켰는가? c) 영업권의 장부금액의 감소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였는가? 이러한 과정이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와 우발부채의 순 공정가치에 대한 사업결합초과분을 창출하거나 과거에 사업결합초과분으로 인식하였던 금액을 증가시키지도 않았는가?	
		Note: 이 과정의 예시로 IAS 23.68 참조	
		주식기준 보상 거래에서 발생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12I	IAS 12.68C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발생한 당기법인세 혹은 이연법인세는 세공제액(또는 미래 세공제의 추정액)이 관련 누적보상비용을 초과할 경우를 제외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법인세비용(수익)으로 인식되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관련된 당기법인세 또는 이연법인세 초과분은 자본에 직접 인식하였는가?	
		Notes:	
	IAS 12.68A	*1) 일부 국가에서는 주식, 주식 옵션 또는 기타 지분상품으로 지급되는 보상과 관련된 세공제액이 IFRS 2 '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공제가 차기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당해 주식옵션이 행사되어야 행사일 현재의 주가에 근거하여 측정한 금액으로 세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보고일 현재까지 제공받은 종업원 근무용역의 세무기준액(미래 회계기간에 과세당국이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도록 인정하는 금액)과 "0"인 장부가액의 차이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되고, 이연법인세자산을 발생시킨다.*	
	IAS 12.68C	*2) 세공제액(미래 세공제의 추정액)이 관련 누적보상비용을 초과한다면, 이것은 세법상 차감될 금액이 보상원가뿐만 아니라 자본항목에도 관련되어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우에, 관련 당기법인세 또는 이연법인세의 초과분은 자본에 직접 인식한다.*	
12I	IAS 12.68B	과세당국이 주식기준보상에 대해 미래 회계기간에 차감되도록 인정하는 금액을 회계기간 말에 알 수 없다면, 이용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공제액이 추정되었는가?	
		Note: 상기 요구사항에 적용되는 예를 들면, 과세당국이 미래일자의 기업의 주가를 기준으로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경우, 회계기간 말 현재의 주가에 근거하여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측정하여야 한다.	

IAS14 부문 보고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14 는 IFRS 8 *영업부문*(2009 년 1 월 1 일부터 유효하며 조기 적용가능)으로 대체되었음. 따라서, 표시 및 공시 체크리스트에서는 IFRS 8 만을 다루고 있으며 IAS 14 의 요구사항에 대한 Deloitte 의 표시와 공시 Checklist 를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체크리스트를 입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IAS 16 유형자산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본 질문서는 유형자산의 회계처리를 설명하는 IAS 16 을 다룬다. 유형자산회계에서 중요한 주제는 자산의 인식, 장부가액, 감가상각액의 결정 및 손상차손의 인식에 관한 회계처리이다.	
		적용범위	
		IAS 16 은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상이한 회계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IAS 16 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다루지 않는다* *a) 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유형자산* *b)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되는 생물자산 (IAS 41 '농림어업' 참조)* *c) 탐사평가자산의 인식과 측정(IFRS 6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참조)* *d) 석유, 천연가스, 이와 유사한 비재생 자원과 같은 매장광물과 광업권* *그러나 b) 내지 d)의 자산을 개발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형자산에는 IAS 16 을 적용한다.*	
		예비질문	
		다음의 물음에 "예"라 답한 경우 관계된 세부 질문에 답하시오.	
16A		기업이 당기중에 유형자산을 소유,건설, 취득하였는가?	
16B		기업이 당기중에 소유하고 있는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후속적인 지출이 발생하였는가?	
16C		기업이 원가모형에 따라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가?	
16D		기업이 재평가모형에 따라 특정 유형자산 분류를 재평가하였는가?	
16E		기업이 당기중에 유형자산을 판매, 폐기, 혹은 처분하였는가?	
16F		기업이 다른 자산과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였는가?	
16G		기업이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 복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해체, 복구 및 그와 유사한 부채로서 언급되어진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세부준수질문	
		인식	
16A	IAS 16.6	당기중에 인식된 모든 유형자산에 대하여 다음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는가?: a)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가? b)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가?	
16A	IAS 16.7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 다음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는가? a)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b)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IAS 16.10	*Note: 유형자산과 관련된 모든 원가는 그 발생시점에 인식원칙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러한 원가에는 유형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할 때 최초로 발생하는 원가뿐만 아니라 후속적으로 증설, 대체 또는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를 포함한다.*	
16A	IAS 16.7	위에서 언급한 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모든 지출을 비용처리 하였는가?	
16A	IAS 16.8	다음의 항목들은 유형자산으로서 인식되었는가? a) 중요한 예비부품과 대기성 장비로서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b) 예비부품과 수선용구가 특정 유형자산에만 연계되어 사용될 수 있는 경우 *Note: 위에 있는 (a)와 (b)에서 언급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예비부품과 대기성장비는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사용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최초 원가	
16A	IAS 16.11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그 자체로는 직접적인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지만, 다른 자산에서 미래경제적효익을 얻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다. a) 유형자산으로 인식되었는가? b) 그러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IAS 36 에 따라서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되었는가?	
		후속 원가	
16B	IAS 16.12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Note: 일상적인 수선·유지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주로 노무비와 소모품비로 구성되며 사소한 부품원가가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의 목적은 보통 유형자산의 '수선과 유지'로 설명된다.*	
16B	IAS 16.13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유형자산의 부품에 있어서 기업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a) 다음과 같은 경우 그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을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한다. i) 해당항목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ii)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 b) IAS 16. 67~72(하단참조)에 따라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였는가?	
		Note: 일부 유형자산의 경우 주요 부품이나 구성요소의 정기적 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용광로의 경우 일정시간 사용 후에 내화벽돌의 교체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항공기의 경우에도 좌석과 취사실 등의 내부설비를 항공기 동체의 내용연수 동안 여러 번 교체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유형자산이 취득된 후 반복적이지만 비교적 적은 빈도로 대체(예: 건물 인테리어 벽 대체)되거나 비반복적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 IAS 16.7 인식원칙 아래에서 만약 그 원칙의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한 기업은 원가가 발생할 때 그러한 항목의 교체비용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인식한다.	
16B	IAS 16.14	만약 유형자산을 계속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a)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에 검사에서 발생한 원가를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였는가? i) 해당항목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ii)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 b) 해당 유형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할 때 종합검사와 관련된 원가를 분리하여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전에 이루어진 종합검사에서의 원가와 관련되어 남아 있는 장부금액을 제거하였는가?	
		Note: 이전의 검사에 대한 비용은 해당 유형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할 때 분리하여 인식되지 않았어도 제거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의 종합검사와 관련된 기존원가요소가 매입 또는 건설시점에 얼마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미래의 유사한 종합검사 추정원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인식 시점의 측정	
16A	IAS 16.15	인식기준에 충족된 유형자산이 최초에 원가로 측정되는가?	
		원가구성요소	
16A	IAS 16.16	유형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목적으로 기업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구입가격(관세, 환급불가능한 취득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등을 차감함) b)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16G	IAS 16.16	회사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에따라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또는 해당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로서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유형자산에 포함시켰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16A	IAS 16.17	다음 항목이 직접 관련되는 원가에 포함되었는가? a)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IAS 19 '종업원급여' 참조) b) 설치장소 준비 원가 c)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d)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e)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f)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Note: 이러한 목록이 정형화된 것은 아니다*	
16A	IAS 16.19	다음의 원가들은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제외하였는가? a)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b)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예: 광고 및 판촉활동과 관련된 원가) c)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원가(예: 직원 교육훈련비) d)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	
16A	IAS 16.20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는 유형자산 원가의 인식을 중단하였는가?	
16A	IAS 16.20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의 인식에서 제외하였는가? a)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동수준이 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b)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c)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16A	IAS 16.21	부수적인 영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이 유형자산의 원가로 인식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은 아니지만, 유형자산의 건설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영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부수적인 영업활동은 건설이나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또는 그 이전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설이 시작되기전에 건설용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수익이 획득될 수 있다. 부수적인 영업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 아니므로 그러한 수익과 관련 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각각 수익과 비용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6A	IAS 16.22	자가건설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외부에서 구입한 유형자산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되는가?	
		Note: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어떤 기업이 유사한 자산을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만든다면, 일반적으로 자가건설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판매목적으로 건설하는 자산(IAS 2)의 원가와 동일하다.* • *내부이익은 원가를 결정하는데 제거된다.* • *자가건설 과정에서 원재료, 인력 및 기타 자원의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 *자가건설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IAS 23 '차입원가'의 인식기준을 적용한다.*	
		원가의 측정	
16A	IAS 16.23	유형자산의 원가는 인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인가?	
16A	IAS 16.23	대금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IAS 23 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로 인식하는가?	
16F	IAS 16.24	하나 이상의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가? a)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b)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IAS 16.25 IAS 16.24	*Notes:* *1) 상업적 실질을 가지는 교환거래는 다음과 같다* *i) 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위험, 유출입시기, 금액)이 제공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과 다르다.* *ii)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 부분의 기업특유가치가 교환거래의 결과로 변동한다.* *iii) 위 a)이나 b)의 차이가 교환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하여 중요하다.* *2) 기업이 즉시 제공한 자산을 제거할수 없는 경우라도 취득한 자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16F	IAS 16.24	하나 이상의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공정가액으로 측정이 불가능하다면 유형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측정되는가?	
16F	IAS 16.26	취득한 자산이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였는가?	
16A	IAS 16.27	자산이 금융리스하에서 취득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유형자산의 원가는 IAS 16 가 아닌 IAS 17(즉,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운데 작은 금액)에 따라 결정하였는가?	
16A	IAS 16.28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IAS 20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 따라 정부보조금만큼 차감되었는가?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	
16A	IAS 16.29	기업은 IAS 16.30 의 원가모형이나 IAS 16.31 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적용하였는가?	
16A	IAS 16.29	기업은 선택한 측정방법을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였는가?	
	IAS 16.37	*Note: 유형자산은 영업상 유사한 성격과 용도로 분류한다. 다음은 개별분류의 예이다.* *토지,토지와 건물,기계장치,선박,항공기,차량운반구,집기,사무용비품*	
		원가모형	
16C	IAS 16.30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장부금액이 되었는가?	
		재평가모형	
16D	IAS 16.31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였는가?	
		Note: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공인된 감정평가인의 감정에 의하고 시장에 근거한 증거로 결정된다.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해 시장에 근거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 이익접근법이나 상각후대체원가법을 사용해서 공정가치를 측정할수 있다.	
16D	IAS 16.31	재평가가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되었는가?	
16D	IAS 16.35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은 다음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였는가? a) 재평가 후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누계액과 총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이 방법은 지수를 적용하여 상각후대체원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재평가할 때 흔히 사용된다.) b)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하는 방법	
16D	IAS 16.36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16D	IAS 16.38	유형자산의 분류내의 해당자산들은 다음 둘중의 하나로 재평가되었는가? a) 유형자산별로 선택적 재평가를 하거나 서로 다른 기준일의 평가금액이 혼재된 재무보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분류 내의 유형자산은 동시에 재평가 b)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되는 가정하에서의 순차적인 평가	
16D	IAS 16.39	만약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a)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b)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하였는가?	
16D	IAS 16.40	만약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a)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b)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용으로 인식하였는가?	
16D	IAS 16.41	어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되거나 사용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가? a) 재평가잉여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하였는가? b) 자산이 사용됨에 따라 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이 되었는가?	
16D	IAS 16.42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한 법인세효과는 IAS 12 호 '법인세'에 따라 인식하고 공시하였는가?	
		감가상각	
16C, D	IAS 16.43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였는가?	
	IAS 16.44 IAS 16.45	*Notes:* *1) 유형자산의 원가는 그 유형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에 배분하여 각 부분별로 감가상각한다. 예를 들면,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지 금융리스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항공기 동체와 엔진을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2) 유형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 유형자산의 다른 중요한 부분과 동일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액을 결정할 때 하나의 집단으로 통합할 수 있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16.46 IAS 16.47	*3) 유형자산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유형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도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나머지 부분은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양한 기대치가 존재한다면 각 부분들의 소비형태나 내용연수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법으로 근사치를 이용하여 감가상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해당 원가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별도로 분리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16C, D	IAS 16.48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는가? <u>감가상각대상 금액과 내용연수</u>	
16C, D	IAS 16.50	기업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였는가? *Note: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다. 잔존가치는 자산이 이미 오래되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하에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현재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의 추정치이다.* *내용연수는 기업에서 자산이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또는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 수량이다.*	
16C, D	IAS 16.51	기업은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였는가?	
16C, D	IAS 16.51	잔존가치나 내용연수가 재검토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되는가?	
16C, D	IAS 16.52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감가상각액을 계속 인식하는가?	
16C, D	IAS 16.54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하는 경우 자산의 잔존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영(0)이 되는가?	
16C, D	IAS 16.55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하는가?	
16C, D	IAS 16.55	기업이 하단에 제시된 둘 중 이른날에 감가상각을 중지하는가? a) IFRS 5 에 따라 자산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날 b) 자산이 제거되는 날	
16C, D	IAS 16.56	기업이 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모든 조건들을 고려하는가? a) 자산의 예상사용수준 *Note: 사용수준은 참고로 자산의 예상 생산능력이나 물리적 생산량을 토대로 결정된다.* b) 자산을 교대로 사용하는 빈도, 수선 유지계획과 운휴 중 유지보수 등과 같은 가동요소를 고려한 자산의 예상 물리적 마모나 손상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c) 생산방법의 변화, 개선 또는 해당 자산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시장수요의 변화로 인한 기술적 또는 상업적 진부화 d) 리스계약의 만료일 등 자산의 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	
16C, D	IAS 16.57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되는가?	
		Note: 유형자산은 기업의 자산관리정책에 따라 특정기간이 경과되거나 자산에 내재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특정부분이 소비되면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용연수는 일반적 상황에서의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을 수 있으므로 유사한 자산에 대한 기업의 경험에 비추어 해당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여야 한다.	
16C, D	IAS 16.58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에도 별개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가?	
		Note: 채석장이나 매립지 등을 제외하고는 토지는 내용연수가 무한하므로 감가상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건물은 내용연수가 유한하므로 감가상각대상자산이다.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건물의 감가상각대상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6G	IAS 16.59	토지의 원가에 해체, 제거 및 복구원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한 원가를 관련 경제적효익이 유입되는 기간에 감가상각하였는가?	
		<u>감가상각방법</u>	
16C, D	IAS 16.60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는가?	
		Note: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및 생산량비례법이 있다.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선택하고, 예상 소비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16C, D	IAS 16.61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되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16C, D	IAS 16.61	재검토결과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중요한 변동이 있다면, a)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였는가? b) 그러한 변경은 IAS 8 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는가?	
		손상	
16C, D	IAS 16.63	유형자산의 손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IAS 36 을 적용하는가?	
		손상에 대한 보상	
16C, D	IAS 16.65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 3 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는가?	
16C, D	IAS 16.66	유형자산과 관련된 손상차손이나 기타 손실, 제 3 자에 대한 보상청구나 그 보상금의 수령 그리고 대체 유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은 각각 구분되는 경제적 사건이므로 다음과 같이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가? a) 유형자산의 손상은 IAS 36 에 따라 인식한다 b) 폐기되거나 처분되는 유형자산은 이 기준서에 따라 제거한다. c)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 3 자에게서 받는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d) 대체 목적으로 복구, 매입 또는 건설된 유형자산의 원가는 이 기준서에 따라 결정되는가?	
		제거	
16E	IAS 16.67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은 때에 제거하는가? a) 처분하는 때; 혹은 b)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16E	IAS 16.68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가?(단, IAS 17 '리스'에서 판매후리스거래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16E	IAS 16.68	기업이 제거이익을 수익으로 분류하지 않는가?	
16E	IAS 16.69	유형자산의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IAS18 '수익'의 재화의 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는가?	
16E	IAS 16.70	유형자산 항목의 일부에 대한 대체원가를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는 경우, 대체되는 부분이 별도로 분리되어 상각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는가?	
16E	IAS 16.70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된 부분을 취득하거나 건설한 시점의 원가를 추정하기 위한 지표로 그 대체원가를 사용할 수도 있는가?	
16E	IAS 16.71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16E	IAS 16.72	유형자산의 처분대가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는가?	
16E	IAS 16.72	유형자산에 대한 지급이 지연되면 a) 처분대가는 최초에 현금가격상당액으로 인식되는가? b) 처분대가의 명목금액과 현금가격상당액의 차이는 IAS 18 에 따라 처분으로 인하여 받을 금액에 유효이자율을 반영하여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는가?	
		IFRIC 1-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	
16G	IFRIC 1.4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 시기나 유출금액 추정의 변경 또는 할인율의 변경에 따라 기존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측정을 변경하는 경우 아래 문단 5 내지 7(아래 참조)에 따라 회계처리하는가?	
16G	IFRIC 1.5	만약 관련된 자산은 원가모형을 사용해서 평가한다면 a) 부채의 변경은 아래 b)의 경우를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당기에 관련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는가? b) 그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가? *Note: 만약 부채의 감소가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c) 조정으로 인하여 자산의 원가가 증가한 경우, 관련 자산의 새로운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한지를 고려하였는가? *Note:* 만약 회수가능성이 의심이 된다면, IAS 36에 따라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자산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손상된 경우에는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16G	IFRIC 1.6	재평가모형을 사용하여 관련 자산을 측정한 경우 a) 부채의 변경은 당해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을 조정하여 회계처리하였는가? i) 부채의 감소는(아래 b)의 경우를 충족시키는 조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의 항목 중 재평가잉여금을 증가시킨다. 다만, 그 금액 중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한다. ii) 부채의 증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그 금액 중 해당 자산과 관련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을 한도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의 항목 중 재평가잉여금을 감소시킨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b) 당해 자산이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다면 인식되었을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부채가 감소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c) 부채의 변경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이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를 사용하여 결정되었을 금액과 중요하게 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Note: 이러한 재평가는 위 (a)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될 금액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종류의 자산을 모두 재평가해야 한다.*	
16G	IFRIC 1.7	일단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되면 관련 부채의 모든 후속적인 변경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가? *Note: 이러한 회계처리는 원가모형과 재평가 모형에 모두 적용된다. 자산의 조정된 감가상각대상금액은 그 내용연수동안 상각한다.*	
16G	IFRIC 1.8	할인액의 상각은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는가? *Note: IAS 23 에 따른 자본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IAS 17 리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o/N/A
		본 질문서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 모두의 관점에서 리스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룬다.	
		적용범위	
	IAS 17.2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리스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a) 광물, 석유, 천연가스 및 유사한 비재생 천연자원의 탐사나 사용을 위한 리스* b) *영화필름, 비디오 녹화물, 희곡, 원고, 특허권 및 저작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IAS 17.3	*이 기준서는 다음 항목들의 측정기준으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투자부동산으로 회계처리되는 리스이용자 보유 부동산 (IAS 40 '투자부동산' 참조)* *b) 리스제공자가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투자부동산 (IAS 40 '투자부동산' 참조)* *c)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로 보유하는 생물자산 (IAS 41 '농림어업' 참조)* *d) 리스제공자가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생물자산 (IAS 41 '농림어업' 참조)* *IAS 17 은 자산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리스제공자가 상당한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자산사용권 이전계약에도 적용한다. 그러나 계약의 어느 한 당사자로부터 상대방에게 자산사용권이 이전되지 않는 용역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비질문	
		어떠한 예비질문에라도 "예"라고 답한 경우에는 관련 세부준수질문 (compliance questions) 에 답하시오..	
17A		자산 또는 자산 부분의 사용권을 어떠한 기간동안 기업에게 이전하는 리스계약, 렌탈계약, 할부구매계약 (hire-purchase agreement) 또는 기타 다른 계약을 기업이 체결하였는가? (*기업은 리스이용자인가?*)	
17B		기업은 다른 기업의 자산 매입을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였거나 자금 조달을 위해 자산을 처분하였거나 자산의 사용권을 이전하였거나 다른 기업에 자산을 렌탈하였는가? (기업은 리스제공자인가?)	
17C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판매후리스 또는 리스후역리스 거래를 기업이 체결하였는가?	
17D		리스기간 중 리스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었는가?	
17E		토지와 건물을 모두 포함하는 리스계약을 기업이 체결하였는가?	
17F		기업은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인가?	
17G		리스거래의 실질이 IAS 17 에 해당하는 리스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을 수 있는 리스의 법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래나 그렇게 설계된 일련의 거래 (약정)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 (투자자)와 기업이 체결하였는가?	
17H		하나 또는 일련의 관련된 거래를 통하여, 리스의 법적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한 번 또는 일련의 지급을 대가로 자산 (예: 유형자산항목)의 사용권을 이전하는 약정의 당사자가 회사인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세부준수질문	
		IAS 17 에 해당하는 리스가 약정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의 결정	
		리스의 법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 약정	
17G	SIC 27.3	일련의 거래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는 종합적인 경제적 효과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의 법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일련의 거래는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거래는 하나의 거래로 회계처리되고 있는가?	
17G	SIC 27.4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기 위해 경제적 효과가 있는 부분에 비중을 두어 약정의 모든 측면과 함축된 의미를 검토하였는가? 그리고 약정은 그러한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되는가?	
17G	SIC 27.5	합의된 기간 동안 자산 사용권의 이전이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약정에 IAS 17 를 적용하였는가?	
17G	SIC 27.5	약정에 다음의 지표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은 당해 약정에 IAS 17 에 해당하는 리스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러한 사항을 선택하는가? a) 기업이 약정대상 자산의 소유에 따른 모든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정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그 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향유한다. b) 약정의 주된 이유가 자산의 사용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세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c) 행사를 거의 확실하게 만드는 조건의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예: 행사 가능한 시점에 예상되는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높은 가격으로 행사 가능한 풋옵션)	
		리스의 법적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약정	
17H	IFRIC 4.6	기업은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기업은 약정 (리스의 법적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또는 약정의 요소를 IAS 17 에 해당하는 리스로 회계처리하였는가? a) 특정 자산을 사용해야만 약정을 이행할 수 있다 (아래 notes 1 and 2 참조) b) 약정에 따라 그 자산의 사용권이 이전된다 (아래 note 3 참조).	
	IFRIC 4.7 IFRIC 4.8	*Notes:* *1) 특정 자산을 약정에서 명백히 규정하더라도, 그 특정 자산을 사용해야만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리스의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공급자가 정해진 양의 재화나 용역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자산을 사용하여 그러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권리와 능력이 있다면, 약정에서 정한 자산을 사용해야만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며 그 약정에는 리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약정에서 정한 특정 자산이 적절하게 가동되지 않을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보증의무가 있더라도 리스처리가 배제되지 않는다. 또한, 공급자가 정해진 날짜 이후에 어떤 이유로든 다른 자산으로의 대체를 허용하거나 강제하는 계약상 규정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성립함) 이 있더라도 대체일 전까지는 리스처리가 배제되지 않는다.* *2) 예를 들어, 공급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단 하나의 자산을 소유하거나 리스하고, 대체 자산을 사용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그 자산은 암묵적으로 지정된 것이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FRIC 4.9	*3) 약정에 따라 약정대상자산의 사용을 통제하는 권리가 구매자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된다면 자산의 사용권이 이전되는 약정에 해당된다.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약정대산 자산의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전된다.* • *구매자가 약정대상 자산으로부터 미미하지 않은 양의 산출물이나 기타 효용을 획득하거나 통제하면서, 그 자산을 운영하는 능력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구매자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그 자산을 운영하도록 타인에게 지시할 능력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다.* • *구매자가 약정대상 자산으로부터 미미하지 않은 양의 산출물이나 기타 효용을 획득하거나 통제하면서, 그 자산에 대한 무리적 접근을 통제하는 능력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다.* • *사실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구매자를 제외한 하나 이상의 당사자가 약정기간 동안 그 자산이 생산하거나 창출하는 미미하지 않은 양의 산출물이나 기타 효용을 획득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구매자가 산출물에 대해서 지불할 가격이 산출물의 단위당 가격으로 계약상 확정되지 않으며, 산출물의 인도시점의 단위당 시장가격과도 같지 않다.*	
17H	IFRIC 4.10	약정 개시일 (약정일과 약정의 주요 조건에 당사자가 합의한 날 중 이른 날)에 기업은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당해 약정을 재검토하였는가? a) 계약조건에 변동이 있다. 다만, 약정을 단순히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b) 갱신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약정 당사자가 기간 연장을 합의한다. 다만, 갱신이나 연장 기간이 IAS 17 의 문단 4 에 따라 리스기간에 처음부터 포함된 경우를 제외한다. c) 특정 자산을 사용하여야만 이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에 변경이 있다. d) 그 자산에 실질적인 변경 (예: 유형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물리적 변경)이 있다.	
	IFRIC 4.11	*Note: 추정의 변경 (예: 구매자나 기타 잠재적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산출물의 추정량)이 있다고 하여 약정을 재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17H	IFRIC 4.11	IFRIC 4 의 문단 10 (위 참조)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 약정을 재검토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검토는 약정의 잔여기간을 포함하여 재검토일의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였는가?	
17H	IFRIC 4.11	약정을 재검토하여 리스가 포함되어 있다 (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결정하면, 기업은 다음시점부터 리스회계처리를 적용하였는가 (또는 적용을 중지하였는가)? a) IFRIC 4 문단 10 의 (a), (c) 또는 (d)의 경우, 재검토를 유발한 상황의 변화가 발생한 시점 b) IFRIC 4 문단 10 의 (b)의 경우, 갱신이나 연장 기간의 개시시점	
17H	IFRIC 4.12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기업은 IAS 17 의 문단 2 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행 약정의 리스요소에 IAS 17 을 적용하였는가? *Note: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IAS 17 의 무단 7~19 에 따라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IAS 17 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약정의 다른 요소는 다른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17H	IFRIC 4.13	IAS 17 를 적용하기 위하여 약정 개시일이나 약정의 재검토 시점에 약정에서 요구하는 지급액과 기타 대가를 기업은 상대적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리스 부분과 기타 요소 부분으로 분리하였는가? *Note: IAS 17 의 문단 4 에서 정의하고 있는 최소리스료에는 리스 (즉, 자산의 사용권)에 대한 지급액만 포함하고 약정의 다른 요소 (예: 용역과 투입물의 원가)에 대한 지급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	
17H	IFRIC 4.15	구매자인 기업이 지급액을 신뢰성 있게 실무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거나 공시하였는가? a)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약정대상 자산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으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한다. 그리고 추후에 지급되면 부채는 감소하고 부채에 대한 금융원가는 구매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한다. b)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IAS 17 의 공시 요구사항을 따르기 위하여 약정의 모든 지급액을 리스료로 처리한다.	
17H	IFRIC 4.17	기업이 IFRIC 4 를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IFRIC 4 의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을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거나 IFRS 을 적용한 비교정보가 제시되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개시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약정에 대하여 그 회계기간의 개시시점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화에 근거하여 IFRIC 4 의 문단 6~9 을 적용하였는가?	
		리스의 분류	
17A, B, C	IAS 17.8	기업은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는가?	
17A, B, C	IAS 17.8	기업은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하는가?	
		금융리스 지표	
17A, B, C	IAS 17.10	리스가 다음에 예시한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되면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되는가? a)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b)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하게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리스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거의 확실한 경우 c)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경제적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d) 리스약정일 현재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상당하는 경우 e)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성격의 리스자산인 경우	
17A, B, C	IAS 17.11	리스의 분류를 결정할 때, 리스가 다음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되면, 역시 금융리스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다음 경우를 검토하였는가? a)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로 인한 리스제공자의 손실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b) 잔존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이 리스이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예를 들어, 리스종료시점에 리스자산 매각 대가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리스료 환급의 현태로 리스이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c) 리스이용자가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리스를 갱신할 능력이 있는 경우	
	IAS 17.12	*Note: 위 (IAS 17 의 문단 10 및 11)에서 열거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항상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다른 특성들을 고려할 때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그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그 시점의 공정가치로 이전하거나 조정리스료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리스약정일에 결정되어 그 이후에 변경되지 않는 리스 분류	
17A, B, C, D	IAS 17.13	리스약정일에 리스분류를 결정하였는가?	
		Note: 추정의 변경 (예: 리스자산의 경제적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치에 대한 추정의 변경)이나 상황의 변경 (예: 리스이용자의 지급불능상황)은 회계목적상으로는 기존 리스의 분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다.	
17D	IAS 17.13	만약 리스기간 중 리스의 양 당사자가 리스 재계약이 아닌 형태로 리스조건의 변경에 합의하였는데, 만약 리스약정일에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IAS 17 의 문단 7~12 에 따라 리스의 분류가 최초의 분류와 다르게 분류되었을 경우도 있다. 이 때에는 변경된 계약을 잔여리스기간 동안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하는가?	
		토지와 건물의 리스	
17A, B, C	IAS 17.14	비한정 경제적내용연수 갖는 토지의 리스가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토지 소유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면, 토지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는가?	
17A, B, C	IAS 17.14	운용리스로 회계처리되는 임차계약의 체결 또는 임차권의 취득과정에서 지불된 금액은 선급리스료가 되며 제공되는 효익의 형태에 따라 리스기간 동안 상각되는가?	
17E	IAS 17.15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하는 경우에 각각 분리하여 리스를 분류하는가?	
17E	IAS 17.15	만약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한 소유권이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된다면, 토지와 건물은 하나의 금융리스로 분류되는가 (다만, 다른 특징들로 미루어 볼 때 리스자산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지 않는 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7E	IAS 17.16	기업은 리스약정일 현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차권의 상대적인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최소리스로 (선지급액 포함)를 각각에 배분하였는가?	
17E	IAS 17.16	만약 최소리스료가 토지와 건물에 신뢰성 있게 배분될 수 없고, 토지와 건물 모두 운용리스라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면, 기업은 토지와 건물리스를 하나의 금융리스로 분류하였는가 (다만, 토지와 건물 모두 운용리스라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하나의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17E	IAS 17.17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하는 경우, 최초로 인식될 토지분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서 토지와 건물은 리스분류 목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취급되는가?	
		Note: 이 경우 건물의 경제적내용연수를 전체 리스자산의 경제적내용연수로 본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투자부동산 리스	
17A, B	IAS 17.19	리스이용자인 기업이 운용리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IAS 40 에 따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기업은 다음과 같이 하였는가? a) 기업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금융리스인 경우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는가? b) 기업은 인식한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는가? c) 후속적인 사건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성격이 달라져서 더 이상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없더라도 기업은 계속하여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였는가?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금융리스	
		최초 인식	
17A	IAS 17.20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개시일에 각 금융리스를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인식하였는가?	
17A	IAS 17.20	최초 인식시,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는 리스약정일에 결정된 다음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되었는가? a)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b)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Note: "리스기간개시일"과 "리스약정일은" 동일한 날이 아닐 수 있다. IAS 17 문단 4 의 정의 참조하라.*	
17A	IAS 17.20 IAS 17.4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를 측정할 목적으로 내재이자율을 적용하여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가? *Notes:* *1) 내재이자율은 리스약정일 현재 (a) 최소리스료와 (b)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합계액을, (i)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ii)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이다.* *2) 무보증잔존가치는 리스제공자가 실현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거나 리스제공자의 특수관계자만이 보증한 리스자산의 잔존가치 부분이다.*	
17A	IAS 17.20 IAS 17.4	만약, 내재이자율을 알 수 없다면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하였는가? *Note: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이용자가 유사한 리스에 대해 부담해야 할 이자율. 만약 그러한 이자율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약정일에 리스이용자가 유사한 조건과 담보로 리스자산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경우의 이자율이다.*	
17A	IAS 17.4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를 측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최소리스료는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다음 금액을 제외하거나 포함하는가? a) 제외 금액 i) 조정리스료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i) 리스제공자가 지급하고 리스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용역원가와 세금 b) 포함 금액 i) 리스이용자나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가 보증하는 금액 ii)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하게 낮은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리스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선택권이 행사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거의 확실한 경우의 선택권의 행사가격	
17A	IAS 17.20	리스이용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에 포함되는가?	
	IAS 17.24 IAS 17.22	*Notes:* *1)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일반적으로 협상 및 계약체결과 같은 특정한 리스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수행하였던 활동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에 가산하다.* *2)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된다. 다만, 리스이용자에게 리스개설직접원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IAS 17 의 문단 20 (위 참조)에 따라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되지 아니한다.*	
17A	IAS 39.1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내재파생상품을 주리스계약에서 분리하여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회계처리하였는가? a)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 b)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c) 복합상품(hybrid instrument)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한다. *Note: 만약 (a) 리스계약과 밀접하게 관련이 없는 이자율, 이자율인덱스 또는 기타 가격과 같은 기초변수에 리스료가 연계되어 있거나 (b) 리스계약에 리스의 경제적 특성을 변경하는 조항이나 조건이 있거나 (c) 리스계약에 시장과 관련이 없는 가격조정 조항 (escalation clause) 이 있다면,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IAS 39 의 AG33(f)의 사례를 참조하라.*	
		후속 측정	
17A	IAS 17.25	매기 지급되는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와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나누어지는가?	
17A	IAS 17.25	금융원가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의 각 회계기간에 배분되는가?	
17A	IAS 17.25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되는가?	
	IAS 17.4	*Note: 조정리스료는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 이외의 변동요소 (예: 매출액의 일정비율, 사용량, 물가지수 및 시장이자율)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 부분이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17A	IAS 17.27	감가상각대상인 리스자산의 감가상각정책은 리스이용자가 소요한 다른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감가상각정책과 일치하는가?	
17A	IAS 17.27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는 IAS 16 '유형자산' 및 IAS 38 '무형자산'에 따라 계산되는가?	
17A	IAS 17.27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리스자산은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되는가?	
17A	IAS 17.28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시 된다면 리스자산은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되는가?	
17A	IAS 17.30	리스자산의 손상여부를 경정하기 위하여 기업은 IAS 36 '자산손상'의 규정을 적용하였는가?	
		운용리스	
17A	IAS 17.33	운용리스에서 리스료 (보험이나 수선과 같은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액은 제외)는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되는가?	
17A	IAS 37.66	리스가 손실부담계약이라면, 당해 계약에 따른 현재의무는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충당부채로 인식되고 측정되었는가	
		Note: 손실부담리스계약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그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당해 계약이다. 리스에서 회피 불가능한 원가는 리스를 해지하기 위한 최소순원가로서 리스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와 리스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위약금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	
		운용리스 – 인센티브	
17A	SIC 15.5	리스자산의 사용에 따른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이용자는 인센티브의 총효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에 따라 리스비용에서 차감하여 인식하였는가?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금융리스	
		최초 인식	
17B	IAS 17.36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는가?	
17B	IAS 17.4	리스순투자는 리스총투자 (아래 참조)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인가?	
	IAS 17.4	*Notes:* *1) 내재이자율은 리스약정일 현재 (a) 최소리스료와 (b)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합계액을, (i)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ii)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이다.* *2) 무보증잔존가치는 리스제공자가 실현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거나 리스제공자의 특수관계자만이 보증한 리스자산의 잔존가치 부분이다.*	
17B	IAS 17.4	리스총투자는 다음 금액의 합계액으로 측정되는가? a) 금융리스에서 리스제공자가 수령할 최소리스료 (아래 참조)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b) 리스제공자에게 발생하는 무보증잔존가치	
17B	IAS 17.4	순투자금액을 계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최소리스료는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다음 금액을 제외하거나 포함하는가? a) 제외 금액 i) 조정리스료 ii) 리스제공자가 지급하고 리스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용역원가와 세금? b) 포함 금액 i) 다음 중 하나가 보증한 잔존가치: • 리스이용자 •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 • 리스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재무적으로 이행할 능력이 있는 제 3 자 ii)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하게 낮은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리스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선택권이 행사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거의 확실한 경우의 선택권의 행사가격	
17F	IAS 17.38	제조자나 판매자인 기업에 의해 리스의 협상 및 계약 단계에서 발생한 원가는 매출이익을 인식할 때 비용으로 인식되었는가?	
17B	IAS 17.38	제조자도 판매자도 아닌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채권의 최초측정액에 포함되는가?	
		후속 측정	
17B	IAS 17.39	이자수익은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순투자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는 방식을 적용하여 인식되는가??	
17B	IAS 17.41	리스제공자의 리스총투자 계산에 사용되었던 추정무보증잔존가치는 정기적으로 검토되는가?	
17B	IAS 17.41	추정무보증잔존가치가 감소되면 금융리스채권의 장부금액은 감소하며 그 감소금액은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였는가?	
17B	IAS 17.41A	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으로 분류된 (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금융리스채권은 IFRS 5 에 따라 회계처리 되었는가?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	
17F	IAS 17.42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다음과 같이 하였는가? a) 일반판매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의 회계정책에 따라 매출손익을 인식하였는가? b) 만약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었다면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금액을 한도로 매출이익을 인식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c) 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원가는 매출이익이 인식될 때 비용으로 인식하였는가?	
17F	IAS 17.44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리스기간개시일에 인식할 매출액은 자산의 공정가치와 시장이자율로 할인할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인식되었는가?	
17F	IAS 17.44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리스기간개시일에 인식할 매출원가는 리스자산의 취득원가에서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되었는가? 만약 리스자산의 취득원가와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서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되었는가?	
		운용리스	
17B	IAS 17.50	운용리스에서 리스료수익은 리스자산의 사용효익이 감소되는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정책기준으로 인식되었는가? 리스자산의 사용효익이 감소되는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 인식기준이 있다면 그 인식기준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17B	IAS 17.51	리스료수익의 획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되었는가?	
17B	IAS 17.52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운용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추가하고 리스료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되었는가?	
		<u>운용리스 – 인센티브</u>	
17B	SIC15.5	리스자산의 사용에 따른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이용자는 인센티브의 총효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에 따라 리스비용에서 차감하여 인식하였는가? 리스자산의 사용에 따른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있다면 그 인식기준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u>감가상각과 손상</u>	
17B	IAS 17.53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 정책은 리스제공자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일반 감가상각 정책과 일관되는가?	
17B	IAS 17.53	IAS 16 와 IAS 38 에 따라 감가상각비는 계산되는가?	
17B	IAS 17.54	리스자산의 손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IAS 36 의 규정을 적용하였는가?	
		<u>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u>	
17F	IAS 17.55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계약으로 인한 매출이익을 인식하지 않았는가?	
		판매후리스거래	
	IAS 17.58	*Note: 판매후리스거래란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자산을 판매하고 다시 그 자산을 리스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 경우 리스료와 판매가격이 일괄적으로 협상되기 때문에 보통 리스료와 판매가격은 서로 관련이 있다. 판매후리스거래의 회계처리는 관련된 리스의 형태에 따라 결정된다.*	
17C	IAS 17.59	판매후리스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판매자의 판매에 따른 이익을 즉시 인식하지 아니하고 해당 리스자산의 리스기간에 이연하여 환입하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17C	IAS 17.61	판매후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에 따른 손익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되었는가? a) 리스료와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에 따라 결정된 것이 확실하다면 판매에 따른 손익은 즉시 인식되었는가? b)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판매에 따른 손익은 즉시 인식되었는가 (다만, 아래 (c)에서 규정하는 상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c)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에 미달하고 판매에 따른 손실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미래의 리스료로 보상된다면 당해 손실은 이연하여 리스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리스료에 비례하여 상각되는가? d)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를 초과한다면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연하여 리스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환입되는가?	
17C	IAS 17.63	운용리스로 분류된 판매후리스거래의 발생일 현재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낮다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손실로 인식하는가? *Note: 금융리스로 분류된 판매후리스거래에서는 손상차손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조정은 불필요하다. 만약,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면 IAS 36 에 따라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킨다.*	

IAS 18 수익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본 질문서는 수익의 회계처리에 관련된 IAS 18의 요구사항을 다룬다. 수익은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매출액, 수수료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로열티수익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수익에 관한 회계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IAS 18 기준서 자체의 요구사항에 근거한다. 사용자들은 동 기준서의 적용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는 동 기준서의 Appendix 의 내용들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IFRIC 13 '고객충성제도'는 판매거래의 부분으로 보상점수 (award credits)를 제공함으로써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업의 회계처리를 다룬다. 동 해석서는 2008 년 7 월 1 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조기적용도 허용된다. IFRIC 13 의 요구사항은 이 섹션은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어진다.*	
		적용범위 *IAS 18 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및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금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자산에 대한 타인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동 기준서는 다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리스계약 (IAS 17 '리스' 참조)* •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 (IAS 28 '관계기업 투자' 참조)* • *IFRS 4 '보험계약'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이나 처분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 *기타 유동자산의 가치변동* •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의 최초인식과 공정가치의 변동 (IAS 41 '농림어업' 참조)* • *수확물의 최초인식 (IAS 41 '농림어업' 참조)* • *광석의 추출*	
		예비질문 *어떠한 예비질문에라도 "예"라고 답한 경우에는 관련 세부 이행 질문에 답하시오.*	
18A		기업은 고객에게 재화를 판매하는가 (여기서 재화는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한 제품과 재판매하기 위하여 매입한 상품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	
18B		기업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가 (용역의 제공은 일반적으로 계약상 합의된 과업을 합의한 기간에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8C		기업은 당해 기업의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 이러한 수익은 다음과 같은 유형일 수 있다. • *이자수익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 또는 수취할 금액의 사용대가* • *로열티수익 –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장기성자산의 사용대가* • *배당금수익 – 지분상품의 보유자가 특정 종류의 자본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받는 이익의 분배금*	
18D		기업은 재화의 판매와 함께 자금대여를 제공하는가?	
18E		기업은 하나 이상의 요소로 구성된 거래 (예: 재화와 용역 모두의 인도, 다수의 다양한 재화와 용역의 인도)를 체결하는가?	
18F		기업은 재구매약정을 체결하는가?	
18G		기업은 재화나 용역의 인도와 교환하여 재화나 다른 용역을 수취하였는가 (즉, 기업은 교환거래를 체결하였는가)?	
18H		기업은 판매거래의 부분으로 보상점수 (award credits)를 제공함으로써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고객에게 제공하는가?	
		세부준수질문 **수익의 정의**	
18A, B, C	IAS 18.7	수익은 지분참여자의 출자를 제외한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써 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업 자체가 받았거나 받을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포함시키는가	
18A, B, C	IAS 18.8	수익은 판매세, 부가가치세, 및 용역과 관련된 세금과 같이 제 3 자를 대신하여 받은 금액을 제외하는가?	
18A, B, C	IAS 18.8	수익은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받은 금액을 제외하는가?	
	IAS 18.8	*Note: 거래에서 기업이 본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판매거래로부터 유입된 총금액은 동 기업의 수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기업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수익의 측정	
18A, B, C	IAS 18.9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가?	
	IAS 18.7	*Note: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이다.*	
18A, B, C	IAS 18.10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측정에는 기업이 제공한 매매할인 및 수량 리베이트를 고려하였는가?	
		Note: 수익은 수량할인 또는 매매할인 및 조기 결제 인센티브인 가격할인을 제외하여야 한다.	
18A, B, C	IAS 18.11	고객의 지급이 이연되고 동 약정이 실질적으로 자금대여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가치는 미래 총수취액을 내재이자율로 할인하여 결정되었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18.11	*Note: 내재이자율은 다음 중 더 명확히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 *신용도가 비슷한 기업이 발행한 유사 금융상품의 일반적인 이자율* • *금융자산 명목금액(총수취액)을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현금판매금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	
18A, B, C	IAS 18.11	기업이 IAS 18 의 문단 11 (위 참조)에 따라 거래를 회계처리하였다면, 대가의 공정가치와 명목금액의 차이는 18 문단 29~30 (아래 참조) 및 IAS 39 (see 본 체크리스트의 관련 섹션 참조)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인식되는가?	
		재화나 용역의 교환	
18G	IAS 18.12	성격이나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이나 스왑거래의 경우, 동 교환 거래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거래로 회계처리되었는가?	
18G	IAS 18.12	성격이나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 교환의 경우, 동 교환 거래는 수익이 발생되는 거래로 회계처리되었는가?	
18G	IAS 18.12	성격이나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 교환의 경우, 수익은 다음 중 하나로 측정되었는가? a) 수취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이 이전되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b)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이 이전되면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거래의 식별	
18E	IAS 18.13	하나의 거래가 다른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포함하는 경우, 아래에서 설명하는 수익인식기준은 동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각각의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수익 흐름)에 적용되었는가?	
18E, F	IAS 18.13	둘 이상의 거래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 경제적 효과가 일련의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경우, 수익인식기준은 일련의 거래 전체에 적용되었는가?	
	IAS 18.13	*Note: 예를 들어, 기업이 재화를 판매하고 동시에 당해 재화를 나중에 재구매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판매거래의 실질적 효과가 상쇄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본다.*	
		재화의 판매	
18A	IAS 18.14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에 인식되는가? a)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b)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관리상 지속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한다. c)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d)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e)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 이러한 수익인식기준의 적용은 아래의 질문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어진다. 또한, 다양한 경제 상황에서의 이러한 원칙 적용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은 IAS 18 Appendix 에서 제공된다.	
18A	IAS 18.16	기업이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동 거래로 판매로 회계처리되지 아니 하였고 소유에 다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을 이전하기 전까지 수익은 인식되지 않았는가?	
		Note: 기업이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을 부담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 *인도된 재화의 결함에 대하여 정상적인 품질보증범위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 *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 *설치조건부 판매에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 *구매자가 판매계약서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고, 해당 재화의 반품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18A	IAS 18.17	기업이 부담하는 소유에 따른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동 거래는 판매로 회계처리되었고 수익은 인식되었는가?	
		Note: 예를 들어, 판매자가 판매대금의 회수를 확실히 할 목적만으로 해당 재화의 법적 소유권을 계속 가질 수 있다.	
18A	IAS 18.17	반품 권리가 있는 경우의 수익은 기업이 미래의 반환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식되었고 기업은 과거의 경험과 기타 관련 요인에 기초하여 추정반환금액을 부채로 인식하였는가?	
18A	IAS 18.18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되었는가?	
	IAS 18.18	*Note: 예를 들어, 해외 판매시 판매대금의 송금에 대한 외국 정부의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송금이 허가되어 불확실성이 제거된 때에 수익은 인식된다.*	
18A	IAS 18.18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경우, 회수불가능한 금액이나 더 이상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은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의 조정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인식되었는가?	
18A	IAS 18.19	수익거래와 관련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수익은 인식되어 아니 하였고 재화의 판매로 이미 받은 대가는 부채로 인식되었는가?	
		Note: 기업이 재화의 판매와 직접 관련된 충당부채 (예: 품질보증충당부채, 반품충당부채)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이러한 사실은 수익 거래와 관련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기 전까지는 판매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18F	IAS 18.14	기업이 판매한 재화에 대한 재구매약정, 재구매할 수 있는 콜옵션 또는 구매자가 보유한 풋옵션을 체결한 경우, 실질적으로 판매자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동 약정의 조건들은 분석되었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용역의 제공	
18B	IAS 18.20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식되는가?	
		Note: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뢰성 있게 추정될 수 있다. •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8B	IAS 18.20	용역제공거래와 관련된 수익은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 (종종 진행기준이라 언급되는)에 따라 인식되는가?	
18B	IAS 18.24	용역제공거래의 진행률은 실제 수행된 용역의 비율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는가?	
	IAS 18.24	*Note: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 등으로 진행률은 결정할 수 있다.* • *작업수행정도의 조사* •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는 현재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원가만을 포함하며, 총추정원가는 현재까지의 누적원가와 향후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추정원가만을 포함한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도금이나 선수금은 반드시 진행률의 척도인 것은 아니다.*	
18B	IAS 18.22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경우, 회수불가능한 금액이나 더 이상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은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의 조정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인식되었는가?	
18B	IAS 18.25	수행되어야 하는 용역이 특정 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의 활동을 포함하는 경우, 수익은 그 진행률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정액기준으로 특정기간에 걸쳐 인식되었는가?	
18B	IAS 18.25	특정 활동이 다른 활동에 비해 특히 중요한 경우, 수익인식은 그 활동이 수행될 때까지 연기되었는가?	
18B	IAS 18.26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인식된 비용의 회수가능한 범위 내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 즉, 이익을 인식하지 아니 하는가?	
		Note: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지침은 IAS 18 문단 20 (위 참조)을 참조하라.	
18B	IAS 18.28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IAS 18 문단 20 (위 참조)의 요구사항에 따라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은 인식되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광고용역의 교환 거래	
		Note: SIC 31 수익 – 광고용역의 교환 거래 (아래 참조)의 요구사항은 특히 광고용역에 적용하지만 동 지침은 다른 IFRS 나 해석서에서 특히 다루지 않는 기타 교환에 적용한다.	
18G	IAS 18.12 IAS 18.20(a)	판매자가 광고용역의 교환거래를 체결한 경우, 수익은 다음의 조건이 적용하는 경우에만 인식되었는가? a) 교환된 광고는 상이하다. b) 수익금액은 신뢰성 있게 측정 될 수 있다.	
		Note: 용역거래의 수익인식에 대한 기본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에만 SIC 31 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유사한 광고 용역의 교환은 IAS 18 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는 거래가 아니다.	
18G	SIC 31.5	기업이 광고용역의 교환 거래를 시작한 경우, 인식된 수익은 기업이 제공받은 광고용역의 공정가치가 아니라 제공한 광고용역의 공정가치 (아래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에 근거하여 측정되었는가?	
18G	SIC 31.5	기업이 광고용역의 교환 거래를 시작한 경우, 제공된 용역의 공정가치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교환거래에 근거하여 측정되었는가? a) 교환거래의 광고와 유사한 광고의 거래이다. b) 자주 발생한다. c) 교환거래의 광고와 유사한 광고를 제공하는 모든 거래 중 발생 건수와 금액측면에서 주된 거래이다. d) 현금 또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대가(예: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비화폐성 자산 및 기타 용역)를 수반한다. e) 거래상대방이 교환거래의 상대방과 다르다.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18C	IAS 18.29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과 같은 형태의 수익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인식되는가? a)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b)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8C	IAS 18.30	수익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되는가? a) <u>이자수익</u>: IAS 39 문단 9 및 AG5~AG8 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 b) <u>로열티수익</u>: 관련된 계약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 c) <u>배당수익</u>: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	
18C	IAS 18.32	이자부 투자자산의 취득전에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가 발생한 경우, 취득 후 처음 받은 이자는 취득 이전 기간과 취득 이후 기간으로 배분되어 취득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만을 수익으로 인식되었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18C	IAS 18.33	계약의 실질을 고려할 때 다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된 계약조건에 따라 로열티수익은 인식되는가?	
18C	IAS 18.34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경우, 회수불가능한 금액이나 더 이상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은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의 조정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인식되었는가?	
		IFRIC 13 고객충성제도	
		Note: IFRIC 13 는 판매거래의 부분으로 보상점수 (award credits)를 제공함으로써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업의 회계처리를 다룬다. 동 해석서는 기업이 판매거래 즉,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기업의 자산에 대한 고객의 사용의 부분으로 고객에게 부여하고 추가적인 적격조건이 있다면 충족하는 경우에 고객은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 취득하거나 할인 구매하는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는 고객충성제도에 적용한다.	
18H	IFRIC 13.5	기업은 IAS 18 문단 13 을 적용하여 보상점수 (award credits)를 부여된 판매거래 ('최초매출')의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부분으로 회계처리하였는가?	
18H	IFRIC 13.5	기업은 최초매출에서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를 보상점수 (award credits)와 판매의 기타부분으로 배분하였는가?	
18H	IFRIC 13.6	보상점수 (award credits)에 배분된 대가는 공정가치 즉, 보상점수 (award credits)가 개별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금액에 근거하여 측정되었는가?	
		기업이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IFRIC 13.7	기업이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보상점수 (award credits)가 회수되고 당해 기업이 보상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당해 기업은 보상점수에 배분된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였는가?	
	IFRIC 13.7	수익금액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보상점수 (award credits)대비 보상과 교환하여 회수된 보상점수에 근거하여 인식되었는가?	
		제 3 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IFRIC 13.8	제 3 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기업은 자기의 계산 (즉, 당해 거래의 본인으로써) 또는 제 3 자를 대신하여 (즉, 제 3 자의 대리인으로써) 보상점수 (award credits)에 배분된 대가를 회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였는가?	
	IFRIC 13.8	기업이 제 3 자를 대신하여 대가를 회수한다면, 기업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는가? a)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순액 (즉, 보상점수에 배분된 대가와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제 3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간의 차이)을 수익으로 측정한다. b) 제 3 자가 보상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 시점에 동 순액을 인식한다.	
		Note: 이러한 사건은 보상점수 (award credits)가 부여되자 마자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당해 기업과 제 3 자 중 어느 한 쪽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사건은 고객이 제 3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것을 선택한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FRIC 13.8	기업이 자신의 계산으로 대가를 회수한다면, 당해 기업은 보상점수 (award credits)에 배분된 총 대가를 수익으로 측정하였고 보상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였는가?	
		받았거나 받을 대가를 초과하는 원가	
	IFRIC 13.9	언제라도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회피불가능한 원가가 의무의 이행으로 받았거나 받을 대가 (즉, 최초매출 시점에 보상점수 (award credits)에 배분된 대가 중 아직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금액과 고객이 보상점수를 회수할 때 받을 추가 대가의 합계 금액)를 초과한다면, 기업은 IAS 37 에 따라 부채를 인식하였는가?	
	IFRIC 13.9	*Note: 보상 제공에 대한 예상 원가가 증가한다면 예를 들어, 기업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점수 (award credits) 에 대한 기대치를 변경한다면, 이러한 부채를 인식할 필요성은 발생할 수 있다.*	
		IFRIC 13 의 적용	
	IFRIC 13.10	기업이 IFRIC 13 을 회계기간 (2008 년 7 월 1 일 또는 그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 및 조기적용도 허용됨)에 적용한다면,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결과는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처리되었는가?	

IAS 19 종업원급여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본 질문서는 종업원급여에 대한 회계처리를 서술한 IAS 19 에 대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장단기 종업원급여에 대한 종업원급여채무, 장단기 종업원급여 관련 자산, 비용의 결정과 관련되어 있다. *IFRIC 14 " IAS 19-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는 미인식보험수리적손익을 포함하여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로 확정급여자산의 측정을 제한하고 있는 IAS 19. 58 의 적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최소적립요건은 많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최소적립요건에 의하여 미래의 기여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회사의 능력이 제한될 수 있고, 또한, 부채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 해석서는 다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IAS 19.58 에 따라 환급이나 미래기여금절감이 이용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경우* • *최소적립요건이 미래기여금절감의 이용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 *최소적립요건으로 인한 부채는 언제 발생할 수 있는지* *IFRIC 14 의 요구사항들은 본 섹션의 IAS 19.58 의 요구사항 다음부분에 기술되어 있다. 동 해석서는 2008 년 1 월 1 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유효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IFRS 2 '주식기준보상'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종업원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예비질문 *아래의 질문 중 어느 하나라도 "예"라고 답한다면, 관련세부준수질문에 답하시오.*	
19A		회사는 다음과 같은 단기종업원급여(IFRS 2 '주식기준보상'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에서 발생한 비용이 있는가? a) 급여 및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b) 단기 유급휴가(예 : 휴양, 병가와 단기 장애, 출산 또는 육아, 배심원과 병역 등으로 인한 휴가) c)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 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d)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예: 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 또는 일부 보조로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	
		Note: 단기 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 개월이내에 지급기일이 전부 도래하는 종업원급여(해고급여 제외) 이다.	
19B		회사는 다음과 같은 퇴직급여를 제공하였는가? a) 퇴직연금과 같은 퇴직급여 b) 퇴직후생명보험이나 퇴직후의료급여 등과 같은 그 밖의 퇴직급여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 퇴직급여는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종업원급여(해고급여 제외)이다.	
19C		회사는 복수사용자 퇴직급여제도에 가입하고 있는가?	
		Note: 복수사용자제도는 동일 지배하에 있지 않는 복수기업에 의해 출연된 자산을 공동관리하고, 복수기업의 종업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그 자산을 사용하되, 기여금과 급여수준은 대상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별 기업과 관계없이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공공제도와 동일지배하의 기업들이 위험을 공유하는 제도는 제외)이다. 복수사용자제도는 단순히 단일사용자제도를 결합한 것으로 참여사용자들이 투자목적으로 자산을 공동관리하여 투자관리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집단관리제도와 구별된다.	
19D		회사는 공공 퇴직급여제도에 가입하고 있는가?	
		*Note: 공공제도는 법령에 따라 모든 기업(또는 특정 산업과 같이 특정범주에 속하는 모든 기업)을 참여기업으로 하여 수립되고 국가나 지방정부 또는 보고기업**! 식의 끝이 잘못되었습니다.**의 통제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기구(예: 공공제도를 위해 특별히 설립된 독립기구)에 의해 운영된다.*	
19E		회사는 퇴직급여제도의 기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가?	
19F		당 회계기간중에 축소 혹은 청산이 발생하였는가?	
19G		회사는 다음과 같은 기타장기종업원급여채무를 가지고 있는가? (IFRS 2 '주식기준보상'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a) 장기유급휴가(예 : 장기근속휴가 또는 안식년휴가) b) 그밖의 장기근속급여 c) 장기장애급여 d)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 개월이 지난 후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e) 발생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 개월이 지난 후에 지급될 이연보상	
		Note: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급여 전부나 일부의 지급기일이 종업원의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 개월 이내에 도래하지 아니하는 종업원급여(퇴직급여와 해고급여 제외)이다.	
19H		회사는 다음 중 하나의 결과로서 발생한 종업원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a) 회사가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결정하였을 경우 b)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해고급여를 제공받는 대가로 자발적으로 명예퇴직을 받아들이는 경우	
19I		회사는 당 회계기간 중에 다른 기업실체의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결과로서 개별 기업실체들이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되는 사업결합이나 취득에 참여하였는가?	
19J		회사는 동일지배하에 있는 복수의 기업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에 참여하고 있는가?	
		Note: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처럼 동일지배하에 있는 복수의 기업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는 복수사용자제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세부준수질문	
		단기종업원급여	
		일반사항	
19A	IAS 19.10	회사는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은 단기종업원급여를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에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는가?	
		Note: 단기종업원 급여에 대한 기업의 채무는 이미 지급된 금액을 차감한 후, 할인되지 않는 금액으로 측정된다.	
19A	IAS 19.10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였는가?	
19A	IAS 19.10	다른 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하여 할인되지 않은 단기종업원급여를 근무용역을 제공한 근무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였는가?	
		단기유급휴가	
19A	IAS 19.11	누적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누적유급휴가의 예상원가를 인식하였는가?	
		Note: 당기에 사용되지 않은 유급휴가가 이월되어 차기 이후에 사용될 수 있다면 누적유급휴가에 해당한다.	
19A	IAS 19.11	비누적유급휴가의 경우, 회사는 휴가가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비누적유급휴가의 예상원가를 인식하였는가?	
		Note: 비누적유급휴가는 이월되지 않으므로 당기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된다.	
19A	IAS 19.14	누적유급휴가의 예상원가는 보고기간말 현재 미사용유급휴가가 누적된 결과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금액으로 측정하였는가?	
	IAS 19.13	*Note: 누적유급휴가는 가득되거나(종업원이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가득되지 않을(종업원이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을) 수 있다. 기업의 채무는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다. 유급휴가가 아직 가득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채무는 존재하므로 그 채무를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를 측정할 때에는 가득되지 않은 누적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종업원이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	
19A	IAS 19.17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의 예상원가를 인식하였는가? a)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발생하였는가? b) 채무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19.17 IAS 19.18 IAS 19.20	*Notes:* *1) 현재의무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을 때 존재한다.* *2) 종업원이 특정기간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제도에서는 종업원이 특정시점까지 계속 근무할 경우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기업이 지급할 금액이 증가하므로 기업에 의제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의무를 측정할 때 일부 종업원이 이익분배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할 가능성이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무는 해당 특정기간 종료 이전에 존재하므로 인식되어야 한다.* *3)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할 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급여산정식이 명시되어 있다.* • *재무제표의 발행이 승인되기 전에 지급액이 결정된다.* • *과거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이 부담하는 의제의무의 금액을 명백히 결정할 수 있다.*	
19A	IAS 19.21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니라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였는가?	
19A	IAS 19.22	이익분배금 또는 상여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기일이 종업원의 근무용역이 제공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 개월 이내에 도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급여는 기타장기종업원급여으로 인식되었는가?	
		퇴직급여	
19B	IAS 19.25	회사는 제도의 주요 규약에서 도출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확정기여제도 또는확정급여제도로 분류하였는가?	
	IAS 19.7	*Note: 확정기여제도 : 기업이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기금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과 관련된 모든 종업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에게는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없는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 :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	
		확정기여제도	
19B	IAS 19.44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기업은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다음과 같이 인식하였는가? a) 비용(다른 기준서에 따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으로 인식하였는가? b)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였는가?	
19B	IAS 19.44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였는가?	
19B	IAS 19.45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 전부나 일부의 납부기일이 종업원의 근무용역이 제공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 개월 이내에 도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IAS 19.78 (아래 참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할인율을 사용하여 할인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확정급여제도	
		인식과 측정 : 일반사항	
19B	IAS 19.52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회계처리에 있어, 회사는 공식적 규약에 따른 법적의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관행에서 생기는 의제의무도 포함하였는가?	
		Note: 비공식적 관행의 예로, 종업원과의 공식적 계약형태의 요구사항 없이 퇴직 종업원의 퇴직후의료급여를 지불하는 경우를 들수 있다.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이러한 비공식적 관행은 의제의무를 발생시킨다. 기업이 비공식적 관행을 따르지 않는다면 종업원과의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가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재무상태표	
19B	IAS 19.54	회사는 다음의 순합계액을 확정급여부채(또는 자산)으로 인식하였는가? a)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IAS 19.64 참조) b) IAS 19.92 와 93 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방법 때문에 인식되지 않은 보험수리적 이익(손실) 가산(차감) c) 미인식과거근무원가 차감(IAS 19.96 참조) d)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 차감(IAS 19.102 ~ 104 참조)	
19B	IAS 19.56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이 보고기간말에 결정될 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의 주기를 두고 결정하였는가?	
19B	IAS 19.58-58A	IAS 19.54 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 부(-)의 금액(확정급여자산)인 경우, 회사는 다음 의 합계액으로 측정한 금액으로 확정급여자산 인식을 제한하였는가? a) 미인식보험수리적순손실 및 미인식과거근무원가의 누계액 b)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감소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	
		Note: IAS 19.58 을 적용할 때, 오직 당기 중에 발생한 보험수리적손실이나 과거근무원가 때문에 이익을 인식하거나, 오직 당기 중에 발생한 보험수리적이익 때문에 손실을 인식하여서는 아니된다. 보다 자세한 지침은 IAS 19.58A ~ 60 참조.	
		IFRIC 14 *IAS 19 –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환급이나 미래기여금절감의 이용가능성	
19B	IFRIC 14.7	환급이나 미래기여금절감의 이용가능성은 제도규약과 제도가 설립□운용되는 국가의 법적 요건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가?	
	IFRIC 14.8	*Note: 제도가 존속하는 중에 또는 제도부채가 청산되는 시점에 기업이 환급이나 미래기여금절감의 방식으로 경제적효익을 실현할 수 있다면 당해 경제적효익은 이용가능한 것이다. 특히, 그러한 경제적효익이 보고기간말에 즉시 실현가능하지 않더라도 이용가능할 수 있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FRIC 14.11	*Note: 환급은 기업이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무조건부 환급권을 가질 때에만 이용가능하다.* *a) 제도가 존속하는 동안. 이 경우 환급을 받기 위한 제도부채의 청산을 전제하지 않음 (예: 어떤 국가에서는 기업이 제도부채의 청산 여부에 관계없이 제도가 존속하는 동안에 환급권을 가질 수 있음).* *b) 모든 가입자가 제도를 탈퇴할 때까지의 기간에 제도부채가 점진적으로 결제된다고 전제하는 경우* *c) 단일 사건으로 제도부채가 전부 청산된다고 전제하는 경우* *무조건부 환급권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도의 적립수준에 관계없이 존재할 수 있다.*	
	IFRIC 14.12	*초과적립액에 대한 환급권이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것에 좌우된다면, 기업은 무조건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IFRIC 14.9	기업은 환급이나 미래기여금절감 또는 이 두 방식의 결합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최대치를 결정하였는가?	
	IFRIC 14.9	환급 및 미래기여금절감에 관한 가정이 상호배타적이라면, 기업은 그 결합에 따른 경제적효익은 인식하지 아니하였는가?	
	IFRIC 14.13	기업은 환급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을 보고기간말 현재 기업이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초과적립액(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에서 관련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하였는가?	
	IFRIC 14.14	제도가 해산될 때, 이용가능한 환급액은 제도부채를 청산하고 환급하면서 제도가 부담하는 원가를 반영하여 측정하였는가?	
	IFRIC 14.15	환급액이 고정금액이 아니라 초과적립액의 전부나 일부로 결정된다면, 환급이 미래에만 실현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는가?	
	IFRIC 14.16	최소적립요건이 없는 경우, 기업은 미래기여금절감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였는가? (a) 제도의 초과적립액 (b) 제도의 기대존속기간과 기업의 기대존속기간 중 짧은 기간에 매년 기업이 부담할 미래근무원가(종업원이 부담할 미래근무원가는 제외)의 현재가치	
	IFRIC 14.17	미래근무원가를 결정할 때, 기업은 확정급여채무 결정에 사용된 가정 및 IAS 19 에 따라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황과 일관되는 가정을 사용하였는가?	
	IFRIC 14.17	*Note: 제도가 개정되기 전에는 미래에 제도에서 제공되는 급여가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수를 감소시킬 것을 명시적으로 확정하지 않는 한 종업원집단은 미래에도 안정적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수를 감소시킬 것을 명시적으로 확정한 경우에는 미래 종업원집단에 대한 가정에 그러한 종업원수 감소를 반영한다.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 계산에 사용된 할인율과 동일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미래근무원가의 현재가치를 결정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최소적립요건이 미래기여금절감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에 미치는 영향	
	IFRIC 14.18	기업은 특정일 현재의 최소적립요건을 (a) 최소적립기준상 과거근무용역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과소적립액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기여금과 (b) 미래발생급여의 재원마련을 위해 필요한 기여금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가?	
	IFRIC 14.20	미래발생급여와 관련된 기여금에 대해 최소적립요건이 있다면, 기업은 미래기여금절감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은 다음 (a)에서 (b)를 차감한 금액의 현재가치로 결정하였는가? (a) IFRIC 14.16 과 17 에 따른 각 연도의 추정미래근무원가 (b) 각 연도의 미래발생급여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추정최소적립기여금	
	IFRIC 14.21	미래발생급여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미래최소적립기여금을 계산할 때에는 최소적립요건기준상 존재하는 초과적립액의 효과를 고려하였는가?	
	IFRIC 14.22	*Note: 특정 연도에 미래발생급여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미래최소적립기여금이 IAS 19 에 의한 미래근무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고기간말에 미래기여금절감으로 이용가능한 자산금액이 그 초과액의 현재가치만큼 감소한다. 그러나 미래기여금절감으로 이용가능한 자산금액이 영(0)보다 작을 수는 없다.*	
		최소적립요건으로 인해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IFRIC 14.23	최소적립요건하에서, 기업이 이미 제공받은 근무용역과 관련하여 최소적립기준상 존재하는 과소적립액을 보전하기 위해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기업은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제도에 납부한 후 그 납부해야 할 기여금이 환급이나 미래기여금절감으로 이용가능하게 될지를 결정하였는가?	
	IFRIC 14.24	납부해야 할 기여금이 제도에 납부된 후 이용가능하지 않게 된다면 그 금액만큼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였는가?	
	IFRIC 14.24 IFRIC 14.25	*Notes: 이 부채로 인해 확정급여자산이 감소하거나 확정급여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실제로 기여금을 납부할 때 IAS 19.58 의 적용으로 인해 손익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 IAS 19.24 에 따라 부채를 결정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서 IAS 19.58A 를 적용한다.*	
	IFRIC 14.26	기업은 최소적립요건에 관련된 부채와 당해 부채를 후속적으로 재측정한 효과를 IAS 19.58 의 한도가 확정급여자산 측정에 미치는 효과를 인식하기 위해 기업이 채택한 회계정책에 따라 즉시 인식하였는가?	
	IFRIC 14.26	*Note: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 IAS 19.61(g)에 따라 IAS 19. 58 의 한도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기업인 경우 조정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b) IAS 19.93C 에 따라 IAS 19.58 의 한도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기업인 경우 조정액을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IFRIC 14.28	기업이 IFRIC 14 를 적용(2008 년 1 월 1 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됨)한 경우, 기업은: a) 동 해석서가 적용되는 최초 재무제표의 개시재무제표에 동 해석서를 적용하였는가; 그리고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b) 해당 기간의 개시재무제표의 이익잉여금에 동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들을 인식하였는가?	
		당기손익	
19B	IAS 19.61	다른 기준서에 따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순합계금액을 당기손익에 인식하였는가? a) 당기근무원가(IAS 19.63 ~ 91 참조) b) 이자원가(IAS 19.82 참조) c)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IAS 19.105 ~ 107 참조)과 보상권의 기대수익(IAS 19.104A 참조) d) 기업의 회계정책에 따라 인식하는 보험수리적손익(IAS 19.92 ~ 93D 참조) e) 과거근무원가(IAS 19.96 참조) f) 축소나 청산의 효과(IAS 19.109 와 110 참조) g) IAS 19.58(b)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인식상한의 효과. 다만, IAS 19.93C 에 따라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u>인식과 측정: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및 당기근무원가</u>	
	IAS 19.64	*Note: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관련 당기근무원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 *퇴직급여액을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걸쳐 배분한다.* • *보험수리적 가정을 세운다.* *상기의 각각의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차례로 다루고 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	
19B	IAS 19.64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적용가능하다면 과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도 이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였는가?	
		Note: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무를 결제하는 데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의 현재가치(사외적립자산 차감 전)이다. 과거근무원가는 퇴직급여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당기에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이다. 과거근무원가는 정(+)의 금액(급여가 새로 생기거나 증가하는 경우)이 될 수도 있고 부(-)의 금액(기존 급여가 감액되는 경우)이 될 수도 있다.	
		급여의 기간배분	
19B	IAS 19.67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관련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 회사는 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산정식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걸쳐 급여를 배분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19.68	*Note: 급여는 기업이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발생하는 기간에 배분한다. 이러한 채무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발생하며, 그 근무용역은 기업이 미래 보고기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퇴직급여의 대가이다.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 보험수리적 기법을 사용하면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고 부채의 인식을 정당화할 수 있다.*	
19B	IAS 19.67	종업원의 근무기간 후반에 귀속되는 급여 수준이 근무기간 초반에 귀속되는 급여 수준보다 중요하게 높은 경우, 회사는 다음의 기간에 대하여 정액법으로 급여를 배분하였는가? •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확정급여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날(그 급여가 미래의 근무용역제공을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와 무관함) 부터 • 종업원이 추가로 근무용역을 제공하더라도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추가임금상승 이외에는 더 이상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날까지	
		Note: IAS 19.68 ~ 71 에서는 다양한 상황하에서 급여가 근무기간에 배부되는 사례를 제공함.	
		보험수리적 가정	
19B	IAS 19.72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측정함에 있어, 보험수리적 가정은 편의가 없고(즉, 지나치게 낙관적이지도 지나치게 보수적이지도 아니함) 서로 양립가능한가?	
	IAS 19.73	*Note: 보험수리적 가정은 인구통계적 가정(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갖는 전·현직 종업원과 그 피부양자의 미래 특성에 관한 인구통계적 가정), 그리고 재무적 가정(예를 들어,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수준, 미래 의료원가, 사외적립자산의 기대 수익률)으로 구성된다.*	
19B	IAS 19.77	재무적 가정은 채무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대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대치에 기초하였는가?	
19B	IAS 19.78	퇴직급여채무(기금이 적립되는 경우와 적립되지 않는 경우 모두 포함)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하였는가?	
		Notes: *1) 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2) 회사채나 국공채의 통화 및 만기는 퇴직급여채무의 통화 및 예상지급시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19B	IAS 19.82	이자원가는 기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회계기간 중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적용하여 산정하며, 확정급여채무의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였는가?	
		Note: IAS 19 의 Appendix A 는 이자원가의 계산사례를 예시하고 있다.	
19B	IAS 19.83	퇴직급여채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측정하였는가? a) 미래의 임금상승에 대한 추정(물가상승, 연공, 승진 그리고 인력시장의 수요·공급과 같은 관련 요소들) b) 보고기간말 현재 제도규약에 명시되거나 명시적 제도규약을 넘어서는 의제의무에 따라 정해지는 급여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c)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지급될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급여수준의 예상 미래변동 i) 공공급여수준의 변동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법제화 되었다. ii) 과거의 경험이나 그 밖의 신뢰할만한 증거로 비추어볼 때 공공급여수준이 예측가능한 방식(예: 일반물가수준이나 일반임금수준의 미래 변동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변동될 것이다.	
19B	IAS 19.88	의료원가에 관한 가정에는 물가상승 및 의료원가 자체의 개별가격 변동에서 기인하는 의료원가의 예상 미래변동성을 반영하였는가?	
		보험수리적 손익	
19B	IAS 19.92-93D	기업은 확정급여 퇴직급여제도로부터 발생한 보험수리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인식할지 여부를 결정하였는가?	
19B	IAS 19.93A-93D	기업이 보험수리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 a) 보험수리적손익을 발생한 기간에 모두 인식하였는가? b) IAS 19.58(b)의 자산인식상한 때문에 발생하는 조정액 뿐만 아니라 모든 확정급여제도와 모든 보험수리적손익에 일관되게 적용하였는가? c) 보험수리적손익(IAS 19.58(b)에 따른 조정액 포함)을 IAS 1.96 에서 규정한 항목만으로 구성된 자본변동표의 인식손익표에표시하였는가? d) 보험수리적손익(IAS 19.58(b)에 따른 조정액 포함)을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였는가? *Notes:* *1) IAS 1.96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변동표의 형태는 지분 소유주들과의 거래로부터 발생된 어떠한 순 자산의 변화도 배제하고 있다. 기업이 보험수리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정책을 채택한 경우, 기업은 보험수리적 손익을 자본변동표상 IAS 1.101 에서 제시된 분류항목 또는 IAS 1.97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포함한 어떠한 항목으로도 표시할 수 없다.* *2) IAS 19.93A 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된 항목은 그 후의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19B	IAS 19.92-93	기업이 보험수리적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직전 보고기간말 현재 인식되지 않은 보험수리적손익의 순누계액이 다음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a) 직전 보고기간말 현재 사외적립자산 차감 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10%를 곱한 금액 b) 직전 보고기간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 10%를 곱한 금액 회사는 위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한계를 초과하는 금액을 확정급여제도에 가입한 종업원의 예상평균잔여근무기간으로 나눈 금액이상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s: *1) 만약 기업이 보험수리적손익을 IAS 1 에 따른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있는 10% 범위(위 참조)를 초과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특정기간에 걸쳐서 손익으로 인식된다. 만약, 10%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떠한 보험수리적 손익도 손익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 *2) 이 섹션에서 언급하고 있는 '범위한계(corridor)'는 각 확정급여제도별로 계산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19B	IAS 19.92	회사가 보험수리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IAS 19.92 와 93 에서 설명된 '범위(corridor)'접근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리적 손익을 전술한 방법보다 조기에 인식하는 다른 체계적인 방법을 채택하였는가?	
		Note: 비록 IAS 19 가 범위한계('corridor) 접근법을 허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험수리적 손익을 조기에 인식(보험수리적 손익 전부를 즉시 인식하는 방법 포함)하는 체계적인 방법처럼 당기손익에 즉시 인식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기업은 10% 범위한계 내에서도 그러한 체계적 인식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9B	IAS 19.93	회사가 보험수리적 손익을 보다 조기에 인식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하였는가? a) 보험수리적이익과 보험수리적손실 양쪽에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였는가? b) 그 방법을 각 보고기간마다 일관성 있게 적용하였는가?	
		과거근무원가	
19B	IAS 19.96	IAS 19.54 에 따라 확정급여부채를 측정할 때, IAS 19.58A 의 제약하에 회사는 과거근무원가를 관련 급여가 가득되기까지의 평균기간에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하였는가?	
	IAS 19.99	*Note: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작성된 상각표는 제도의 축소나 청산이 있을 경우에만 수정한다.*	
19B	IAS 19.96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는 즉시 관련 급여가 가득되는 경우에, 해당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인식되었는가?	
		<u>인식과 측정 : 사외적립자산</u>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9B	IAS 19.102	회사는 보고기간말 시점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결정하였는가?	
		Notes: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될 수 있는 금액이다.* *사외적립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장기종업원급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고기업과 법적으로 별개이고, IAS 19.7 의 특정상황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종업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종업원급여 기금적립을 위하여만 존재함)* *b) 적격보험계약(오직 확정급여제도상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종업원급여 기금적립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IAS19.7 의 특정상황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채권자에게 이용가능하지 아니함)*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19.103	*기업이 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미지급기여금과 기업이 발행한 것으로서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양도불가능한 금융상품은 사외적립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종업원급여와 관계없는 기금부채(예: 매입채무 및 파생상품 관련 부채)가 있는 경우 사외적립자산은 그만큼 감소한다.*	
19B	IAS 19.104A	*적격보험계약이 아닌 보상권* 제 3 자가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의 전부나 일부를 보상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 회사는 a) 그러한 보상권을 사외적립자산과 별개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b)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c) 상기 이외의 다른 모든 측면에서는 보상권을 사외적립자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는가?	
		Note: 적격보험계약이 사외적립자산이고 다른 사외적립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적격보험계약에는 IAS 19.104A 를 적용하지 않는다. IAS 19.104A 는 IAS 19.54 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에서 차감되지 아니하고 별개의 자산으로 인식되는 다른 보험계약에 적용된다. 그러나, 다른 모든 측면에서는 보상권을 사외적립자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한다. (추가적인 사항은 IAS 19.104C 참조)	
19B	IAS 19.104A	손익계산서에서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비용은 IAS 19.104A 에 따라 인식된 보상권과 관련하여 인식된 금액을 반영한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고려하였는가?	
		<u>사업결합</u>	
19I	IAS 19.108	당기 중 발생한 사업결합거래에서, 취득자인 회사는 퇴직급여에서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를 인식할 때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였는가?	
19I	IAS 19.108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피취득자가 취득일 현재 인식하지 않더라도 다음 사항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가? a) 취득일 전에 발생한 보험수리적손익(10%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무관하다) b) 취득일 전에 급여의 변경이나 제도의 도입에 따라 발생한 과거근무원가 c) IAS 19.155(b)의 경과규정에 따라 피취득자가 인식하지 않은 금액	
		<u>축소 및 청산</u>	
19F	IAS 19.109	확정급여제도의 축소나 청산이 일어나는 경우에 회사는 축소나 청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19.111 IAS 19.112 IAS 19.114	*Note: 제도의 축소가 일어나는 때는 다음과 같다.* • *확정급여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 수를 중요하게 감소시킬 것을 명시적으로 확약한 때* • *현직종업원의 미래근무용역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 더 이상 퇴직급여를 부여하지 않거나 적게 퇴직급여를 부여하도록 확정급여제도의 규약을 개정한 때* *제도의 청산은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발생한 급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를 기업이 더 이상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거래가 있을 때 일어난다.* *제도가 종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는 새로운 제도로 대체된다면 축소나 청산이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	
19F	IAS 19.109	축소나 청산으로 인한 손익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a)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액 b)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의 변동액 c) IAS 19.92 와 96 에 따라 과거에 인식하지 않은 관련 보험수리적손익과 과거근무원가	
19F	IAS 19.110	축소나 청산의 효과를 결정하기 전에, 회사는 우선 축소일이나 청산일 현재의 보험수리적 가정(현행 시장이자율과 그 밖의 현행 시장가격 포함)을 사용하여 확정급여채무와 관련 사외적립자산을 재측정하였는가?	
19F	IAS 19.115	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의 일부에게만 축소가 적용되거나 확정급여채무의 일부만이 청산되는 경우, 축소나 청산과 관련된 손익에는 미인식과거근무원가와 미인식보험수리적손익 및 IAS 19.155(b) 에 의한 미인식경과부채의 비례적 부분을 포함하였는가?	
		복수사용자제도	
19C	IAS 19.29	회사는 복수사용자제도를 제도규약(공식적 규약뿐만 아니라 의제의무도 포함)에 따라 확정기여제도나 확정급여제도로 분류하였는가?	
		Note: 회계처리는 이 분류에 따른다.	
19C	IAS 19.29	복수사용자제도가 확정급여제도로 분류되는 경우, 만일 충분한 정보가 이용가능하다면(아래 참조), 회사는 복수사용자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 및 원가에 대해서 해당 기업의 비례적 지분만큼을 다른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였는가?	
19C	IAS 19.30	복수사용자제도가 확정급여제도에 해당되지만 확정급여제도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그 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보아 회계처리 하였는가?	
19C	IAS 19.32A	복수사용자제도와 그 참여자 사이에 복수사용자제도의 초과적립액을 참여자에게 배분하는 방법(또는 과소적립액을 참여자로부터 보전 받는 방법)을 결정하는 계약상 합의가 있고, 복수사용자제도의 참여자인 회사가 복수사용자제도를 IAS 19.30 에 따라 확정기여제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회사는 당해 계약상 합의로 발생하는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이나 비용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19C	IAS 19.32B	회사는 복수사용자제도와 관련하여,충당부채나 우발부채가 발생는지 여부를 고려하였으며, 발생한 경우, IAS3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충당부채를 인식하였는가?	
		Note: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충당부채나 우발부채가 발생할 수 있다. • *복수사용자제도에 참여하는 각 기업이 다른 모든 참여기업의 보험수리적위험을 분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른 참여기업과 관련된 보험수리적손실* • *다른 참여기업이 제도에서 탈퇴하여 제도에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제도규약에 따라 참여기업이 그 부족액을 보전할 책임*	
		동일지배하에 있는 복수의 기업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	
	IAS 19.34	*Note: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처럼 동일지배하에 있는 복수의 기업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는 복수사용자제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J	IAS 19.34A	IAS 19 에 따라 측정된 제도 전체의 순확정급여원가를 연결실체의 개별 기업들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상 합의나 명시적 정책이 있다면, 기업은 각자가 부담하는 순확정급여원가를 당해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 인식하였는가?.	
		Note: 이러한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은, 제도 전체에 대해 적용되는 가정에 근거하여 이 기준서에 따라 전체로 측정된 정보를 입수하여야 한다.	
19J	IAS 19.34A	만약 그러한 합의나 정책이 없다면, 법률상 그 제도의 책임사용자인 연결실체 기업은 순확정급여원가 전액을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 인식하고, 다른 연결실체 기업들은 지급의무가 있는 당해 기간의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을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 원가로 인식하였는가?	
		공공제도	
19D	IAS 19.36	회사는 공공제도를 복수사용자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 하였는가?	
		Note: 복수사용자제도에 대한 회계처리는 위 참조	
		보험에 가입된 급여	
19E	IAS 19.39, 42	퇴직급여제도의 기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직접 또는 제도를 통하여 간접으로 부담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처리하였는가? a) 종업원급여의 지급기일이 도래할 때 직접 종업원급여를 지급할 의무 b)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과 관련된 미래의 종업원급여 전부를 보험자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 기업이 그 부족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	
		Note: 만약 기업이 보험 계약상의 손실을 보전해야할 어떠한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지지 않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보험자가 전적으로 급여지급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확정기여형으로 회계처리 해야한다. 만약, 기업이 그러한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확정급여형으로 회계처리 해야한다.	
19E	IAS 19.41	만약 확정급여제도로 처리되는 경우, 회사는 a) 적격보험계약을 사외적립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는가? b) 그 밖의 보험계약을 보상권으로 인식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기타장기종업원급여	
19G	IAS 19.128	회사는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다음의 순합계액을 부채로 인식하였는가? a)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b)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 차감	
	IAS 19.126 IAS 19.128	*Notes:* *1) 기타장기종업원 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 개월이내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종업원급여(퇴직급여와 해고급여 제외) 이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급여가 포함된다.* • *장기근속휴가나 안식년휴가* • *그밖의 장기근속급여* • *장기장애급여* •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 개월이 지난 후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 *발생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 개월이 지난 후에 지급될 이연보상* *2) 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IAS 19.49 ~ 91(IAS 19.54 와 61 은 제외)을 적용하되, 보상권을 인식하고 측정할 때에는 IAS 19.104A 를 적용한다. 따라서,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한 회계처리는 퇴직급여보다 비교적 단순하다. 모든 과거근무원가와 보험수리적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당기손익 인식범위를 벗어나거나 범위(corridor) 접근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	
19G	IAS 19.129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기준서에 따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순합계금액을 당기손익(다만, IAS 19.58 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의 제약을 받음)에 반영하였는가? a) 당기근무원가 b) 이자원가 c)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과 자산으로 인식한 보상권의 기대수익 d) 보험수리적손익(전액을 즉시 인식) e) 과거근무원가(전액을 즉시 인식) f) 축소나 청산의 효과	
		해고급여	
19H	IAS 19.133	회사는 다음 중 하나의 사건이 발생할 때 해고급여를 부채와 비용으로 인식하였는가? a) 기업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명시적으로 확약한다. b) 기업이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면서 해고급여를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확약한다.	
19H	IAS 19.134	기업이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식적 세부계획을 갖고 있고 그 계획이 현실적으로 철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종업원 해고를 명시적으로 확약한 것으로 보았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a) 해고대상 종업원의 근무지, 직능 및 개략적인 인원수 b) 직군별 또는 직능별로 지급될 해고급여 c) 계획이 실행될 시기. 계획실행은 가능한 한 빨리 착수되어야 하며 중요한 계획변경이 예상되지 않을 정도의 기간에 실행이 완료되어야 한다.	
19H	IAS 19.139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 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급여는 IAS 19.78 에서 정하고 있는 할인율을 사용하여 할인하였는가?	
19H	IAS 19.140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하였는가?	

IAS 20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본 질문서는 IAS 20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 관하여 다룬다. IAS 20 는 "정부보조금" (동 기준서에서 회계처리를 규정하는)과 "정부지원" (정부지원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없지만 기업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주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을 구분한다.	
		적용범위	
		IAS 20 은 다음과 같은 사항은 다루지 아니한다. • *가격의 변동 효과를 반영하는 재무제표나 유사한 성격의 보충정보에서 정부보조금을 회계처리할 때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 • *법인세 효익 (예: 법인세 감면, 가속상각 및 법인세율 인하)의 형식으로 제공되는 정부지원* • *기업의 지분에 대한 정부의 참여* • *농립어업 활동과 관련된 정부보조금 (IAS 41 '농립어업'이 적용되는)* ***정부보조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정부, 정부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가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이다. 정부보조금은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정부지원 (예: 기술이나 마케팅에 관한 무료 자문과 보증제공)과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분할 수 없는 정부와의 거래는 제외한다. 그러나, 정부보조금에는 특정 지역이나 산업영역에서 영업하는 요건 이외에 기업의 영업활동과 특별히 관련된 조건이 없는 정부지원 또는 정보보조금을 포함한다.* ***정부지원**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경제적효익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행위이다. 개발지역에 기반시설을 제공하거나 경쟁자에게 거래상 제약을 부과하는 등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제공되는 효익은 IAS 20 가 적용되는 정보지원이 아니다.*	
		예비질문	
		어떠한 예비질문에라도 "예"라고 답한 경우에는 관련 세부 이행 질문 (compliance questions) 에 답하시오..	
20A		기업은 정부, 정부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로부터 보조금, 보상금, 조성금 및 자원의 기타 이전을 받았는가?	
20B		정부보조금은 상환되었거나 상환의무가 발생되었는가?	
		세부준수질문	
		정부보조금	
20A	IAS 20.7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을 포함하는 정부보조금의 인식은 다음 모두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인식되지 아니하는가? a) 기업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이행할 것이다. b) 보조금은 수취될 것이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20.9	*Note: 보조금이 수취되는 방법 (현금, 비화폐성자산 또는 부채의 감소)는 회계처리방법의 채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A	IAS 20.10	기업이 정부로부터 상환면제가능대출을 받았다면, 기업이 대출의 상환면제조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학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당해 대출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되었는가?	
20A	IAS 20.11	정부보조금이 인식된 경우 관련된 우발부채나 우발자산은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처리되었는가?	
20A	IAS 20.12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은 수익으로 인식되는가?	
	IAS 20.19	*Note: 때때로 여러 가지 조건이 부수되는 금융지원의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보조금이 수취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원가와 비용을 발생시키는 조건(동 조건이 보조금의 인식기간을 결정함)을 식별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구성하는 각 부분을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20A	IAS 20.12	기업은 정부보조금은 주주지분에 직접 인식되지 않아야 한다는 IAS 20 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였는가?	
	SIC 10.3	*Note: 특정 지역이나 산업영역에서 영업하는 요건 이외에 기업의 영업활동과 특별히 관련된 조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조금은 자본에 직접 인식되어서는 아니 된다.*	
20A	IAS 20.18	일정한 의무의 이행이 역시 요구되는 비상각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그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원가를 부담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되는가?	
20A	IAS 20.17	감가상각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러한 자산이 상각되는 기간과 비율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되는가?	
20A	IAS 20.16	수취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한 회계기간 이외의 회계기간에 보조금을 배분하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가?	
20A	IAS 20.20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기업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한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되었는가?	
20A	IAS 20.23	정부보조금이 비화폐성자산 (기업이 사용할)의 형식으로 수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인식되었는가? a) 보조금은 공정가치로 인식되었다. b) 자산은 공정가치로 인식되었다.	
		Note: 대체적인 방법으로 자산과 보조금 모두는 명목금액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정부보조금의 상환	
20B	IAS 20.32	상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정부보조금은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되는가?	
20B	IAS 20.32	수익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는가? a) 보조금과 관련하여 설정된 미상각 이연계정에 먼저 적용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b) 이러한 이연계정을 초과하거나 이연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초과금액 또는 상환금액은 즉시비용으로 인식된다.	
20B	IAS 20.32	이연수익으로 인식된 자산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을 이연수익에서 차감하여 기록하고 초과금액을 비용으로 기록하는가?	
20B	IAS 20.32	자산을 차감하여 인식된 자산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키고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현재까지 비용으로 인식했어야 하는 누적적인 추가 감가상각액을 즉시 비용으로 기록함으로써 인식되는가?	
20B	IAS 20.33	자산관련보조금의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자산의 새로운 장부금액은 IAS 36 '자산손상'에 따른 손상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IAS 21 환율변동효과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본 질문서는 외화거래와 해외사업장을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하고 보고기업의 표시통화로 재무제표를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 IAS 21 에 대한 것이다. 주요 문제는 적용할 환율과 재무제표에 환율변동효과를 보고하는 방법이다.	
		적용범위	
		다음의 경우 IAS 21 을 적용한다: *a) 외화거래와 외화표시잔액의 회계처리* *b) 연결, 비례연결 혹은 지분법에 의해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의 환산* *c)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를 포함하여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외화파생상품의 거래와 잔액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IAS 39 를 적용하지 않는 외화파생상품 (예: 기타 계약에 내재된 일부 내재파생상품) 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또한, IAS 21 은 파생상품과 관련된 금액을 기능통화에서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IAS 21 은 외화 항목에 대한 위험회피회계에 적용하지 않는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지침은 본 체크리스트의 IAS 39 section 을 참고한다.* *외화거래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표시와 해외사업장의 현금흐름의 환산에는 IAS 21 을 적용하지 않는다. (Deloitte 의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 대한 체크리스트 중 IAS 7 "현금흐름표"를 참고)*	
		정의	
	IAS 21.8	***외화**는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이다.* ***기능통화**는 기업이 활동하는 주된 경제적 환경의 통화로 정의된다.* *통상적으로 재무제표를 기능통화로 표시하더라도 다른 통화로 재무제표를 표시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재무제표를 표시하는 통화를 **표시통화**라고 한다.* ***해외사업장**은 보고기업과 다른 국가나 다른 통화로 영업활동을 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조인트벤처나 지점이다.* ***화폐성항목**은 화폐로 고정되거나 확정할 수 있는 통화단위의 수량으로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자산과 부채이다.*	
		예비질문	
		만약 아래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면, 관련 세부준수질문에 답한다.	
21A		외화로 거래를 수행하고 있는가?	
21B		a) 외화로 가격이 표시되는 재화나 용역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가? b) 외화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조달하는가? c) 자산을 취득, 처분하거나 외화로 표시된 부채를 발생, 상환하는 거래가 외화로 표시되는가?	
21C		외화로 표시되는 자산이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21D		위험회피목적으로 외화표시 자산이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가?	
21E		해외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가?	
21F		당기에 해외사업장을 처분한 적이 있는가?	
21G		재무제표를 표시하는데 사용된 통화가 기능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 (표시통화)인가?	
21H		기능통화가 IAS 29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따른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인가?	
		세부준수질문	
		기능통화	
21A,E	IAS 21.9-10	기능통화는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결정되었는가?	
	IAS 21.9, 10	*Note: 상기의 기능통화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음의 질문을 고려해야 한다.* •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가 무엇인가?(흔히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을 표시하고 결제하는 통화) (주요지표)* •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을 주로 결정하는 경쟁요인과 법규가 있는 나라의 통화가 무엇인가? (주요지표)* •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데 드는 노무원가, 재료원가와 그 밖의 원가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가 무엇인가?(흔히 이러한 원가를 표시하거나 결제하는 통화) (주요지표)* • *재무활동으로 조달되는 통화는 무엇인가? (보조지표)* • *영업활동에서 유입되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통화는 무엇인가? (보조지표)*	
21E	IAS 21.11	개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는 적절하게 결정되었는가?	
		Note: 아래의 추가적인 요소들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를 결정하고 그 기능통화가 보고기업의 기능통화와 같은지를 결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 • *해외사업장의 활동이 보고기업의 일부로서 수행되는지 상당히 독자적으로 수행되는지* • *보고기업과의 거래가 해외사업장의 활동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지 낮은지* • *해외사업장의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보고기업의 현금흐름에 직접 영향을 주고 보고기업으로 쉽게 송금될 수 있는지* • *보고기업의 자금지원없이 해외사업장의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현재의 채무나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채무를 감당하기에 충분한지*	
21A, E	IAS 21.12	IAS 21 의 문단 9 내지 11 에서 언급된 지표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여 기능통화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경영진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였는가? a) 실제 거래, 사건과 상황의 경제적 효과를 가장 충실하게 표현하는 기능통화를 결정하기 위하여 경영진의 판단을 적용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b) 기능통화를 결정하는 데 추가적인 보조 증거를 제시하는 IAS 21 의 문단 10 과 11 을 고려하기 전에 문단 9 의 주요 지표를 우선하여 고려하였는가?	
21A, E	IAS 21.13	기능통화는 기업과 관련된 실제 거래, 사건 및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가?	
21A, E, H	IAS 21.14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라면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9 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는가?	
		Note: 기업은 기업회계준서 제 1021 호에 의해서 결정되는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예: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는 방법 등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9 호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	
		기능통화의 변경	
21A, E	IAS 21.13	기능통화는 한번 결정되면 관련된 실제 거래, 사건과 상황에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IAS 21.36	*Note: 예를 들어, 재화와 용역의 판매 가격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의 변경은 기능통화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다.*	
21A, E	IAS 21.35	기능통화를 변경하였다면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 적용하였는가?	
21A, E	IAS 21.37	새로운 기능통화를 전진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a) 새로운 기능통화로 변경한 날의 환율을 사용하여 모든 항목을 새로운 기능통화로 환산하였는가? b) 새로운 기능통화로 환산한 비화폐성항목의 금액을 역사적 원가로 하였는가? c) IAS 21 문단 32 와 39(1)에 따라 이전에 자본항목으로 분류된 해외사업장의 환산으로 발생한 외환차이는 해외사업장을 처분할 때까지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았는가?	
21D	IAS 39.88	위험회피목적으로 다른 통화의 자산이나 부채를 사용하고 외환차이를 자본항목으로 이연하고 있다면 IAS 39 의 문단 88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가?	
		Note: 본 체크리스트의 IAS 39 section 을 참고한다.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의 보고	
21B, C	IAS 21.21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환율(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외화거래를 보고하는가?	
	IAS 21.22	*Note: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실제환율에 근접한 환율로 기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주일이나 한달 동안의 평균환율) 그러나, 환율의 변동이 중요한 경우,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1B, C	IAS 21.23	매 보고기간말에 외화항목을 보고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적용하였는가? a)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보고기간말의 환율)로 환산하였는가? b)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c)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 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였는가?	
	IAS 21.26	*Note: 여러가지 환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나 잔액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이 측정일에 발생하였다면 결제하였을 환율을 사용한다.*	
21B, C	IAS 21.25	순실현가능가치나 회수가능액으로 측정되는 자산이 비화폐성이고 외화로 측정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비교하여 장부금액을 결정하고 있는가? a) 그 금액이 결정된 날의 환율(즉, 역사적원가로 측정한 항목의 거래의 경우 거래일의 환율)로 적절하게 환산한 취득원가나 장부금액 b) 그 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예: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적절하게 환산한 순실현가능가치나 회수가능액 *Note: IAS 21 문단 25 의 규정에 따라 a)와 b)를 비교하는 경우 기능통화를 기준으로 할 때는 손상차손을 인식하나 외화를 기준으로 할 때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1B, C	IAS 21.28	IAS 21 문단 32 에 따라 처리하는 외환차이가 아닌 다음의 사항에서 발생하는 모든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발생하는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a) 화폐성항목의 결제 b)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 재무제표의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환산차이	
	IAS 21.27	*Note: 상기 적용범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IAS 39 는 외화항목의 위험회피회계에 적용한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는 IAS 21 의 외환차이 규정과 다르게 회계처리한다. 본 체크리스트의 IAS 39 section 을 참고한다.*	
21B, C	IAS 21.30	비화폐성 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자본항목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모두 자본항목으로 인식하였는가?	
	IAS 21.31	*Note: 예를 들어, 유형자산의 재평가에서 생기는 손익은 IAS 16 "유형자산"에 따라 자본항목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자산이 외화로 측정된다면, 문단 23(3)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평가금액을 환산하며, 이 때 생기는 외환차이도 자본항목으로 인식한다.*	
21B, C	IAS 21.30	비화폐성 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21E	IAS 21.32	보고기업이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가? a) 보고기업의 별도재무제표나 해외사업장의 개별재무제표에서 화폐성항목의 외환차이를 당기손익으로 반영 b) 해외사업장과 보고기업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예: 해외사업장이 종속기업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서는 화폐성항목의 외환차이를 문단 48 에 따라 관련 순투자를 처분할 때까지 자본항목으로 인식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s: *1) 기업이 해외사업장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화폐성항목 중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실질적으로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로 문단 32 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이러한 화폐성항목에는 장기 채권이나 대여금은 포함될 수 있으나,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2) 문단 15 에서 언급한 해외사업장에 지급하거나 수취할 화폐성항목을 보유한 기업이 연결실체의 종속기업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속기업 A 와 B 를 소유한 기업이 있으며 종속기업 B 는 해외사업장이다. 종속기업 A 가 종속기업 B 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이 대여금이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다면, 종속기업 A 의 대여금은 종속기업 B 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가 된다. 종속기업 A 가 해외사업장인 경우에도 이러한 관계는 똑같이 성립한다.*	
	IAS 21.15 IAS 21.15A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의 사용**	
	IAS 21.38	*Note: 재무제표는 어떠한 통화로도 보고할 수 있다.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한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개별기업으로 구성되는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각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같은 통화로 표시한다.*	
		표시통화로의 환산	
21G	IAS 21.39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로 환산하였는가? a) 재무상태표 (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였는가? b) 포괄손익계산서 (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였는가? c)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로 환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IAS 21.40	*Note: 실무적으로 수익과 비용항목을 환산할 때 거래일의 환율에 근접한 환율(예: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을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환율이 중요하게 변동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1G	IAS 21.41	지분을 전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연결실체에 포함되는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로 환산함에 따라 외환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비지배지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연결재무상태표의 비지배지분으로 배분하여 인식하였는가?	
21G, H	IAS 21.42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인 경우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다음의절차에 따라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로 환산하였는가? a) 모든 금액 (즉, 자산, 부채, 자본항목, 수익과 비용. 비교표시되는 금액 포함)을 최근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였는가? b) 초인플레이션이 아닌 경제의 통화로 환산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비교표시되는 금액은 최근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였는가? c) 초인플레이션이 아닌 경제의 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비교표시되는 금액은 전기에 보고한 재무제표 금액 (즉, 전기 이후의 물가수준변동효과나 환율변동효과를 반영하지 않는 금액)으로 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21G, H	IAS 21.43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인 경우 문단 42 의 환산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초인플레이션이 아닌 경제의 통화로 환산된 비교표시 금액은 제외하고 IAS 29 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는가?	
21G, H	IAS 21.43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 벗어나게 되어 더 이상 IAS 29 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 재무제표의 재작성을 중지한 날의 물가수준으로 재작성한 금액을 표시통화로 환산하기 위한 역사적원가로 사용하였는가?	
		해외사업장의 환산	
		Note: 해외사업장을 연결, 비례연결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보고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문단 38 내지 43 과 문단 45 내지 47 을 적용한다.	
21E	IAS 21.45	보고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화폐성항목 (장단기여부와 관계없이)으로부터 외환차이가 발생하였다면 다음 사항에 따라 외환차이를 인식하였는가? a) IAS 21 문단 32 에서 기술한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가 아니라면 해당 외환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b) IAS 21 문단 32 에서 기술한 상황에서 외환차이가 발생하였다면 해외사업장이 처분될 때까지 자본의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였는가?	
		Note: 이러한 외환차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제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화폐성항목이 특정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하는 약정을 표시하며 환율변동으로 인해 보고기업의 손익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21E, G	IAS 21.46	해외사업장과 보고기업의 보고기간말이 다른 경우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한다면 보고기업의 보고기간말로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a) 보고기간말의 차이가 3 개월 이내인가? b) 차이가 나는 기간 동안 있었던 중요한 거래나 기타 사건의 영향을 반영하여 조정하였는가? c)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가 해외사업장의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환산되었는가? d) 보고기업의 보고기간말까지의 환율이 중요하게 변동되는 경우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IAS 28 "관계기업 투자", IAS 31 "조인트벤처"에 따라 그 영향을 반영하여 조정하였는가?	
21E, G	IAS 21.47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 부채로 처리하였는가? 즉, 이러한 영업권과 자산,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을 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IAS 21 문단 39 와 42 에 따라 마감환율로 환산하였는가?	
		해외사업장의 처분	
21F	IAS 21.48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21F	IAS 21.49	보고기업이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한다면 관련 외환차이누계액 중 처분한부분에 비례하는 금액을 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21.49	*Note: 해외사업장의 장부금액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은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환차이의 누계액을 손상차손을 인식한 시점에 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21B, C, E	IAS 21.50	**외환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 외환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는 IAS 12 "법인세"에 따라 회계처리하였는가? *Note: 이 체크리스트의 IAS 12 section 을 참고한다.*	

IAS 23 차입원가 (Revised 2007)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를 구성될 것을 IAS 23 (r2007) 에서는 요구한다. 기타 차입원가는 비용으로 인식된다. 당해 개정 기준서는 2009 년 1 월 1 일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도 허용된다. *Note: 개정전 IAS 23 을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본 질문서가 아니라 이전 기준서와 관련된 질문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자본 (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우선주자본금 포함)의 실제원가 또는 내재원가는 IAS 23 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매입거래 헷지(hedging of a purchase)와 관련된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자본화는 당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참조하라.* *기업은 다음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에 당해 기준서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a)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적격자산 (예: 생물자산)* *b) 반복적으로 대량 생산되거나 제조되는 재고자산*	
		정의	
	IAS 23(r2007).5, 6 IAS 23(r2007).5, 7 IAS 23(r2007).7	***차입원가**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원가이다. 차입원가는 다음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a)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서 설명되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상된 이자비용* *b) IAS 17'리스'에 따라 인식되는 금융리스 관련 금융비용* *c)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적격자산** 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이다.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자산은 경우에 따라 적격자산이 될 수 있다.* *a) 재고자산* *b) 제조설비자산* *c) 전력생산설비* *d) 무형자산* *e) 투자부동산* *금융자산, 그리고 단기간 내에 생산되거나 제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예비질문	
		어떠한 예비질문에라도 "예"라고 답한 경우에는 관련 세부준수질문 (compliance questions) 에 답하시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23A		기업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차입원가를 발생하였는가?	
23B		기업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발생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세부준수질문	
23A	IAS 23(r2007).8	기업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모든 차입원가를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였는가?	
23B	IAS 23(r2007).8	기업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모든 차입원가를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였는가?	
	IAS 23(r2007). 10 IAS 23(r2007). 11	*Note: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차입원가이다.* *개별 차입금과 적격자산 간의 직접 관련성을 식별하고,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차입원가를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적격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판단이 요구된다.* *IAS 23 (r2007) 문단 10 ~ 15 는 자본화가능차입원가 결정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23B	IAS 23(r2007).8	자본화가능차입원가금액은 IAS 23 (다음 질문 참조)에 따라 결정되었는가?	
23B	IAS 23(r2007).9	차입원가는 미래경제적효익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할 경우에만 적격자산의 원가에 포함되었는가?	
23B	IAS 23(r2007).9	*Note: IAS 29 '초 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가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에 당해 기업은 IAS 29 의 문단 21 에 따라 해당 기간의 인플레이션을 보상하기 위한 차입원가부분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23B	IAS (r2007)23. 12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였는가?	
23B	IAS 23(r2007). 14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였는가?	
	IAS 23(r2007). 14 IAS 23(r2007). 15 IAS 23(r2007). 18 IAS 23(r2007). 18	*Notes:* *1) 사용되는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동안 차입한 자금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2) 차입원가의 가중평균을 산정함에 있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모든 차입금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고, 개별 종속기업의 차입금에 적용되는 차입원가의 가중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3)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은 현금의 지급, 다른 자산의 제공, 차입원가를 부담하는 부채의 발생 등에 따른 지출액을 의미한다.* *4) 회계기간동안 적격자산의 평균장부금액 (이미 자본화된 차입원가 포함)은 일반적으로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기간동안 지출액의 적절한 근사치이다.*	
23B	IAS 23(r2007). 14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하는가?	
23B	IAS 23(r2007). 16	적격자산의 장부금액 또는 예상최종원가가 회수가능액 또는 손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기준서의 규정에 따라 자산손상을 기록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 기준서의 규정에 따라 기록된 자산손상 금액을 환입한다.	
23B	IAS 23(r2007). 17	기업이 최초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시점에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의 원가의 일부로 인식하는 자본화는 시작되는가? a) 적격자산에 대하여 지출하고 있다. b) 차입원가를 발생시키고 있다. c)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IAS 23(r2007). 19	*Note: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활동은 당해 자산의 물리적인 제작뿐만 아니라 그 이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기술 및 관리상의 활동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물리적인 제작 전에 각종 인허가를 얻기 위한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자산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오는 생산 또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단지 당해 자산의 보유는 필요한 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23B	IAS 23(r2007). 20	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동안 차입원가의 자본화는 중단되었는가?	
	IAS 23(r2007). 21	*Note: 상당한 기술 및 관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간 또는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기 위한 과정에 있어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인 경우 차입원가의 자본화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23B	IAS 23(r2007). 22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차입원가의 자본화는 종료되는가?	
	IAS 23(r2007). 23	*Note: 적격자산이 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당해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중요하지 않은 작업만이 남아 있더라도 당해 자산은 사용할 수 있다.*	
23B	IAS 23(r2007). 24	적격자산의 건설활동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완성되고 남아 있는 부분의 건설활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이 사용 가능하다면, 당해 부분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차입원가의 자본화는 종료되는가?	
		경과규정	
23B	IAS 23(r2007). 27	IAS 23(r2007)를 적용함에 따라 회계정책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기업은 자본화 개시일이 2009 년 1 월 1 일 이후인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이 기준서를 적용하였는가?	
	IAS 23(r2007). 28	*Note: 기업은 2009 년 1 월 1 일 이전의 특정일을 지정하여 자본화개시일이 그 특정일 이후인 모든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다.*	

IAS24 특수관계자공시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식별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 공시사항을 규정한 IAS 24 의 요구사항에 대해 Deloitte 의 표시와 공시 Checklist 를 참조하시오.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본 질문서는 지배기업의 지배력하에 있는 연결실체기업들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회계원칙을 규정한 IAS 27 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 기준서는 관련 법규에서 별도재무제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거나, 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주요 사항은 특정 투자가 종속기업인지 여부와 연결회계처리 적용방법이다.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사업결합에서 생기는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결합에 관한 회계처리와 그 회계처리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한다. 이 주제는 IFRS 3 '사업결합'에서 다루고 있다.	
		예비질문	
		아래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경우 관련 세부준수질문에 답하시오.	
27A		보고기업이 보고기간 동안 또는 보고기간 종료시점에 하나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가?	
	IAS 27.4 IAS 27.13	*주: 지배력은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지배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그 기업을 지배한다고 본다. 다만 그러한 소유권이 지배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다른 기업 의결권의 절반 또는 그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지배한다고 본다.* •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법규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27B		보고기업이 보고기간 동안 보고기업의 한정된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소위 특수목적기업-SPE)을 설립하거나 스폰서하거나 이 기업과의 거래에 참여했는가?	
27C		보고기업이 보고기간 중 종속기업의 지배력을 상실하였는가(예: 소유 지분의 일부를 처분함)?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27.21	*주: 지배기업이 피투자자의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면 지배기업은 지배력을 상실한다. 지배력은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인 소유 수준의 변동에 따라 상실될 수 있으며 소유 수준의 변동이 없어도 상실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종속기업이 정부, 법원, 관재인, 감독기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경우에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 또 계약상 합의의 결과로도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27D		보고기간 동안 또는 보고기간 종료시점에 종속기업에 대한 보고기업의 지분이 100% 미만이어서 비지배지분이 있는가?	
27E		기업은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가?	
	IAS 27.4 IAS 27.38 IAS 28.3	*주: 별도재무제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 *IAS 27 는 어떤 기업이 일반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것인가를 규정하지 아니한다. 별도재무제표는 현지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요구될 수 있으며, 보고기업이 자발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IAS 27. 37 내지 39 의 요구사항(아래 참조)은 별도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회계처리에 있어서 '별도재무제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별도재무제표는 단순히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재무제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주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에 대해 지분법회계처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세부준수질문 **연결재무제표 공시 요구사항**	
27A	IAS 27.9	지배기업은 IAS 27 에 따라 종속기업 투자를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는가?	
	IAS 27.4	*주: 연결재무제표는 단일 경제적 실체의 재무제표로 표시되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이다.*	
27A	IAS 27.10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근거에 의해 정당화되는가? (1)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지배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의결권이 없는 소유주 포함)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2) 지배기업의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이 공개된 시장(국내•외 증권거래소나 장외시장. 지역시장 포함)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3) 지배기업이 공개된 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증권 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4)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일반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27A	IAS 27.12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는가(아래 참조)?	
		주: 취득 당시 종속기업이 IFRS 5 '매각예정자산과 중단영업'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IFRS 5 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27A	IAS 27.13	지배기업이 의결권의 과반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유권이 지배력을 의미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을 연결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27A	IAS 27.13	보고기업이 다른 기업 의결권의 절반 또는 그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지배한다고 평가하는 경우 다음 요소를 고려하였는가? (1)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2) 법규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3)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4)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주: 위에 언급한 항목들의 존재는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7A	IAS 27.14	보고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 여부를 결정할 때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하였는가?	
	IAS 27.14	*주: 잠재적 의결권은 주식매입권, 주식콜옵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금융상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행사되거나 전환될 경우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대한 기업의 의결권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상대방의 의결권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잠재적 의결권을 미래의 특정일이 되기 전까지 또는 미래의 특정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거나 전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잠재적 의결권은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IAS 27.15	*잠재적 의결권이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때 잠재적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검토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조건과 그 밖의 계약상 합의내용을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행사나 전환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와 재무 능력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27A	IAS 27.19	투자자가 벤처캐피털,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기업에 관계없이모든 종속기업이 연결되었는가?	
27A	IAS 27.20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들과 사업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도 모든 종속기업이 연결되었는가?	
27B	SIC 12.8-10	기업과 특수목적기업간의 실질 관계에서 특수목적기업이 당해 기업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특수목적기업을 연결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SIC 12.9 SIC 12.10	*주: 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소유한 경우에도 특수목적기업을 지배할 수 있다.* *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을 지배하고 결과적으로 특수목적기업을 연결해야하는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실질적으로 기업의 특정 사업의 필요에 따라 기업을 위하여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이 수행되고, 기업은 특수목적기업의 운영에서 효익을 얻고 있다.* • *실질적으로 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효익의 과반을 얻을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자동조종'절차를 수립하여 이러한 의사결정능력을 위임하고 있다.* • *실질적으로 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의 효익의 과반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 *실질적으로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이나 특수목적기업의 자산과 관련된 잔여위험이나 소유위험의 과반을 가지고 있다.*	
		연결절차	
27A, B	IAS 27.22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는가?	
27A, B	IAS 27.22(1)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을 제거되었는가?	
27A,B	IAS 27.22(1)	영업권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IFRS 3 '사업결합'에 따라회계처리하였는가?	
27D	IAS 27.22(2)	보고기간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비지배지분이 식별되었는가?	
27D	IAS 27.22(3)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지분순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식별되었는가?	
		주: 비지배지분순자산은 IFRS 3 에 따라 계산한 최초사업결합 시점의 비지배주주지분순자산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업결합 이후의 자본의 변동분 중 비지배주주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성된다.	
27D	IAS 27.23	당기순손익과 자본변동을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지분에 배분할 때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가능성이나 전환가능성은 반영하지 아니하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기초하여 산정하는가?	
		내부거래 및 잔액	
27A, B	IAS 27.24	수익, 비용과 배당을 포함한, 연결실체 내의 거래와 잔액은 모두 제거되었는가?	
27A, B	IAS 27.25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과 같이 자산에 인식되어 있는 연결실체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모두 제거되었는가?	
		주: *1) 연결실체 내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해야하는 자산손상의 징후일 수도 있다.* *2) 연결실체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제거로 인한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IAS 12 '법인세'를 적용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회계기간 및 보고기간종료일	
27A, B	IAS 27.26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에 작성된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는가?	
27A, B	IAS 27.26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에는 종속기업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 않다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하였는가?	
27A, B	IAS 27.27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 지배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다른 경우 (1)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지배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3 개월 이내인가? (2) 지배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나 사건의 영향이 반영되었는가? (3)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보고기간 종료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한가?	
		통일된 회계정책	
27A, B	IAS 27.28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가?	
27A, B	IAS 27.29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는가?	
		취득	
27A, B	IAS 27.30	보고기간 중 취득한 종속기업에 대해서 IFRS 3 에서 정의하고 있는 종속기업의 취득일로부터 영업성과가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되었는가?	
		처분	
27C	IAS 27.30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하였는가?	
27C	IAS 27.30	종속기업 주식의 처분 대가와 처분시점의 장부금액(IAS 21'환율변동효과'에 따라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되었던 종속기업과 관련된 외환차이 누계액 포함)의 차이는 종속기업 처분손익으로 인식되었는가?	
27C	IAS 27.31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고, IAS 28 '관계기업투자'에서 정의하는 관계기업이나 IAS 31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서 정의하는 공동지배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투자는 IAS 39 에 따라 회계처리 되었는가?	
	IAS 27.32	(2)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는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IAS 39 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측정시의 원가로 간주하였는가?	
		비지배지분	
27D	IAS 27.34	비지배지분에 귀속된 금액은 자본항목이므로 수익이나 비용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27D	IAS 27.35	종속기업이 당기 중 순손실을 발생시키는 경우,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비지배주주에게 해당하는 손실이 그 종속기업의 자본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배분하였는가?	
27D	IAS 27.35	비지배지분에게 배분된 손실이 비지배지분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 (1) 비지배주주에게 지분을 초과하는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는 구속력 있는 의무가 있고 또 추가로 출자할 능력이 있는가? (2) 이후 종속기업이 이익을 보고하면 이미 지배기업지분에 포함된 비지배지분손실이 회복될 때까지 그러한 이익을 지배기업지분에 배분하였는가?	
27D	IAS 27.36	종속기업이 자본으로 분류하는 누적적우선주를 발행하고 이를 비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배기업은 배당결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런한 주식의 배당금에 대하여 조정한 후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배기업지분을 산정하였는가?	
		별도재무제표에서 투자의 회계처리	
27E	IAS 27.37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IFRS 5 에서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은(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지 않은)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는 다음 방법 중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1) 원가법 (2) IAS 39 에 따른 방법 *주: 투자자산의 각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한다. IFRS 5 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는 IFRS 5 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27E	IAS 27.39	연결재무제표에서 IAS 39 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공동지배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는 해당 투자자의 별도재무제표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IAS 28 관계기업 투자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본 질문서는 관계기업 투자의 회계처리를 설명하고 있다. 주요한 문제는 중대한 영향력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지분법의 적용을 식별하는 것이다.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관계기업 투자(즉, 투자자가 당해 기업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기업으로 관계기업은 종속기업이 아니며 조인트벤처 투자지분도 아니다.) 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투자자가 관계기업에게 제공하는 대여금은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여금 중 장기로 간주되는 부분이 있다면 동 장기대여금은 IAS 28 의 문단 29 과 30 의 목적을 위해 검토되어야 한다(아래 참조). 관계기업의 최초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는 이 기준서에서 다루지 않으며 IFRS 3 '사업결합'에서 다룬다. *IAS 28은 다음의 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IAS 39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되나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는 관계기업 투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벤처캐피털 투자기구 또는* •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 *이러한 투자자산은 IAS 39 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은 변동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예비질문	
		다음 예비질문에 하나라도 "예"라고 답한 경우 관련된 세부준수질문에 답하시오.	
28A		보고기업이 하나 이상의 기업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Note: 중대한 영향력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나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가 직접으로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중대한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8B		보고기업은 보고기간동안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는가(예를 들면, 소유지분의 일부를 처분한 결과)? *Note: 중대한 영향력은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인 소유 지분율의 변동에 따라 상실될 수 있으며 소유 지분율의 변동이 없어도 상실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관계기업이 정부, 법원, 관재인, 감독기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경우에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다. 또 계약상 합의의 결과로도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다.*	
28C		보고기업은 관계기업 투자를 가지고 있고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가? *Note: 별도재무제표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 질문의 IAS 27 을 참조하시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세부준수질문	
		지분법을 적요한 관계기업에 대한 회계처리규정	
28A	IAS 28.13	관계기업 투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a) 투자자산이 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가? b)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문단 10 의 예외조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가(해당 체크리스트의 관련 부분 참조)? c)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가? i) 투자자가 그 자체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투자자가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투자자가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투자자의 다른 소유주들(의결권이 없는 소유주 포함)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ii) 투자자의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이 공개된 시장(국내·외 증권거래소나 장외시장. 지역시장 포함)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iii) 투자자가 공개된 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현재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iv) 투자자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IFRSs 을 적용하여 일반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28A	IAS 28.14	IFRS 5 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투자자산이 지분법이 아닌 해당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되었는가?	
28A	IAS 28.15	과거에 IFRS 5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관계기업 투자가 더 이상 그 분류기준을 충족하지 않는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IFRS 5 참조)된 그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시점 이후 기간의 재무제표는 이에 따라 수정되었는가?	
		중대한 영향력	
28A	IAS 28.6	투자자가 직접으로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관계기업 투자로 회계처리 하였는가? 다만 중대한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Note: 투자자 외의 다른 투자자가 해당 피투자자의 주식을 상당한 부분 또는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28A	IAS 28.6	투자자가 직접으로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중대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았는가 (그러므로 투자자산을 관계기업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28.7	*Note: 투자자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 •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 *경영진의 상호 교류* •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28A	IAS 28.8	기업이 해당 피투자자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였는가?	
		Note: 기업은 주식매입권, 주식콜옵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금융상품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행사되거나 전환될 경우 해당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대한 기업의 의결권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상대방의 의결권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즉, 잠재적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잠재적 의결권을 미래의 특정일이 되기 전까지 또는 미래 특정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거나 전환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당해 잠재적 의결권은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8A	IAS 28.9	잠재적 의결권이 중대한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할 때 잠재적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검토하여야 하였는가? 여기에는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 조건과 그 밖의 계약상 합의내용을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행사나 전환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와 재무 능력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지분법	
		일반사항	
28A	IAS 28.11	관계기업 투자를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는가? a)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였는가? b) 피투자자에게서 받은 분배액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였는가? c) 피투자자의 순자산변동이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자본 변동분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였는가(예를 들면, 유형자산의 재평가나 외화환산차이 에서 발생하는 변동)?	
28A	IAS 28.11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지분이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에 인식되는가?	
28A	IAS 28.11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이외의 자본변동 중 투자자의 지분이 투자자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가?	
28A	IAS 28.21	투자자가 지배기업인 경우,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자본변동 중 연결실체의 지분은 연결실체 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단순 합산한 것인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28A	IAS 28.12	잠재적 의결권이 있는 경우,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자본변동 중 투자자의 지분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기초하여 산정하며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가능성이나 전환가능성은 반영하지 않았는가?	
28A	IAS 28.21	관계기업이 종속기업, 관계기업, 조인트벤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한 당기순손익과 순자산은 동일한 회계정책의 적용효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거친 후의 관계기업의 재무제표(관계기업과 조인트벤처의 당기순손익과 순자산 중 자신의 지분을 포함)에 인식되었는가?	
28A	IAS 28.22	투자자(투자자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포함)와 관계기업 사이의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당기손익에 대하여 투자자는 그 관계기업 투자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인식하였는가?	
		Note: '상향'거래의 예로는 관계기업이 투자자에게 자산을 매각하는 거래를 들 수 있다. '하향'거래의 예로는 투자자가 관계기업에게 자산을 매각하는 거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관계기업의 당기손익 중 투자자의 지분은 제거한다.	
		Investment ceases to be classified as an associate	
28A, B	IAS 28.18	투자자는 관계기업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하며, 당해 관계기업이 종속기업이나 IAS 31 에서 정의하는 조인트벤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IAS 39 에 따라 회계처리하는가?	
	IAS 28.19	*Note: 위에서 언급한 상황에 따라 지분법을 중단한 경우, 관계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IAS 39 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측정시의 원가로 간주한다.*	
		관계기업의 취득	
28A	IAS 28.23	관계기업 투자는 관계기업이 되는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는가?	
28A	IAS 28.23	투자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투자자산의 원가가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되었는가? a) 영업권으로 식별되고 IFRS 3 '사업결합'에 따라서 회계처리된다. b)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된다.	
		Note: 관계기업에 관련된 영업권의 상각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상당액 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28A	IAS 28.23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투자자의 지분이 투자자산의 원가를 초과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되었는가? a) IFRS 3 '사업결합'에 따라서 회계처리된다. b)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제외하며, 그 대신에 투자자산을 취득한 회계기간의 관계기업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지분상당액을 결정할 때 이익에 포함한다.	
28A	IAS 28.23	투자자산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평가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감가상각하기 위해 취득한 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지분을 적절히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는가?	
28A	IAS 28.23	관계기업이 영업권이나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투자자는 취득 후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지분을 적절히 조정하여 회계처리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회계기간과 보고기간 종료일	
28A	IAS 28.24	투자자는 지분법을 적용할 때 가장 최근의 이용가능한 관계기업 재무제표를 사용하였는가?	
28A	IAS 28.24	투자자와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관계기업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 않다면 투자자의 사용을 위하여 투자자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는가?	
28A	IAS 28.25	관계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 투자자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투자자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하였는가?	
28A	IAS 28.25	보고기간종료일 간의 차이는 3 개월 이내인가?	
28A	IAS 28.25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여야 한가?	
		동일한 회계정책	
28A	IAS 28.26	*Note: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투자자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28A	IAS 28.27	관계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투자자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투자자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때 관계기업의 회계정책을 투자자의 회계정책과 일관되도록 하였는가?	
		관계기업이 누적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28A	IAS 28.28	관계기업이 자본으로 분류하는 누적우선주를 발행하였고 이를 다른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투자자는 배당결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주식의 배당금에 대하여 조정한 후 당기순손익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을 산정하였는가?	
		관계기업의 손실 중 투자자의 지분이 관계기업 투자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28A	IAS 28.29-30	관계기업의 손실 중 투자자의 지분이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가? a)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투자자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불한다. b) 지분법 적용으로 관계기업 보통주에 대한 투자 금액을 초과한 손실은 관계기업 투자지분 중 보통주와 다른 구성항목이 있을 경우 관계기업이 청산된다면 상환 받는 우선순위와는 반대의 순서로 적용하여 인식하는가?	
28A	IAS 28.29	*Note: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지분법이 적용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투자자의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항목을 합한 금액이다. 예를 들면, 예측 가능한 미래에 상환 받을 계획도 없고 상환가능성도 높지 않은 항목은 실질적으로 관계기업 투자의 연장이다. 이러한 항목에는 우선주와 장기수취채권이나 장기대여금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매출채권, 매입채무 또는 담보부대여금과 같이 적절한 담보가 있는 장기수취채권은 제외한다.*	
28A	IAS 28.30	위에서 언급한 대로 투자자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의무 또는 지불액까지 관계기업의 손실 중 투자자의 지분을 계속 인식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28A	IAS 28.30	IAS 28 문단 29 에 따라 투자자가 과거에 관계기업의 손실 중 투자자의 지분을 인식하지 않고 관계기업이 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인식(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을 재개하였는가?	
		손상차손	
28A	IAS 28.31	관계기업의 손실 인식을 포함하여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투자자는 관계기업 순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IAS 39 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였는가?	
28A	IAS 28.32	투자자는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투자자산에 대하여 IAS 39 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인지 여부와 손상금액을 결정하였는가?	
28A	IAS 28.33	투자자산이 IAS 39 의 요구사항을 적용한 결과로 손상될 수 있는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투자자산의 전체 장부금액을 IAS 36 '자산손상'에 따라 손상검사를 하였는가?	
		Notes:	
	IAS 28.33	1) *투자자산의 전체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투자자산의 사용가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를 추정한다.*	
		a) *관계기업이 영업 등을 통하여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중 투자자의 지분과 해당 투자자산의 최종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b) *투자자산에서 배당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해당 투자자산의 최종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IAS 28.34	2)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은 각 관계기업별로 평가한다. 다만, 관계기업이 창출하는 현금유입이 그 기업의 다른 자산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과 거의 독립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체크리스트의 IAS 36 부분을 참조*	
		별도재무제표	
	IAS 28.35	*Note: 투자자의 별도재무제표에는 관계기업 투자를 아래에 언급된 IAS 27 의 문단 37 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28C	IAS 27.37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는가? a) 원가법 b) IAS 39 에 따른 방법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s: *1) 별도재무제표는 관계기업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 참여자인 지배기업이 해당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순자산과 보고된 성과에 기초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회계처리하여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다.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법규나 규제기관이 작성을 요구하거나, 보고기업이 자발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IAS 28 의 문단 35(위 참조)의 요구사항은 별도재무제표가 작성되는 때에 적용한다.* *2) 특별히 관계기업과 조인트벤처를 다루는 경우 '별도재무제표'의 의미가 단순히 '연결재무제표 이외의 재무제표'를 의미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종속기업이 없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주재무제표에 관계기업에 대해 지분법회계처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투자자산의 각 항목에서 동일한 회계처리를 적용한다. IFRS 5 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는 동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28C	IAS 27.39	연결재무제표에서 IAS 39 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관계기업 투자는 해당 투자자의 별도재무제표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 되었는가?	

IAS 29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본 질문서는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로 보고하는 재무제표의 재작성을 다루고 있는 IAS 29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대한 것이다. *기업이 IAS 29 를 적용하기 시작한 보고기간에 재작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5 년 11 월에 발표된 IFRIC 7 "IAS 29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서의 재작성방법의 적용"은 다음 사항을 다루고 있다.* •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 금액을 재작성하는 방법* • *재무상태표의 기초 이연법인세을 재작성하는 방법*	
		적용범위 *IAS 29 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해서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인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에 적용된다. 초인플레이션 경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a) 일반인은 재산을 비화폐성 자산이나 상대적으로 안정된 외화로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며 보유중인 현지통화는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즉시 투자된다.* *b) 일반인은 화폐금액을 현지통화가 아닌 상대적으로 안정된 외화의 관점에서 고려한다. 그러한 외화로 가격이 공표되기도 한다.* *c) 신용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도, 그 신용기간에 예상되는 구매력의 손실을 보상하는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 *d) 이자율, 임금 및 가격이 물가지수와 연계되어 있다.* *e) 3 년 동안의 누적인플레이션율이 100%에 근접하거나 초과한다.* *초인플레이션 경제와 통화의 결정은 판단을 요구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에서 어떤 국가가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일반적으로 각각의 개별 기업보다는 회계 전문가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예비질문 *아래의 세부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면, 관련 세부준수질문에 답한다.*	
29A		지배기업이나 그 종속기업이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역사적원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가?	
29B		지배기업나 그 종속기업이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로 현행원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가?	
29C		지배기업이나 그 종속회사의 기능통화가 해당 기간 중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 벗어난 통화에 해당되는가?	
29D		전기까지 지배기업이나 그 종속기업이 속한 경제가 초인플레이션이 아니지만 당기에 그 경제에 속한 기업이나 그 종속기업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로 간주되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세부준수질문	
		재무제표의 재작성	
29A, B	IAS 29.7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하는 경우 재작성된 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하고 있는가?	
		Note: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재무제표의 재작성이 아닌 보충정보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재작성하기 전의 재무 제표를 별도로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29A, B	IAS 29.8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인 기업의 재무제표는 (역사적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든지 현행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든지 관계없이)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하는가?	
29A, B	IAS 29.8	전기의 대응수치와 그 이전기간의 정보도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되는가?	
		Note: 비교금액을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IAS 21 "환율변동효과"의 문단 42(2)와 43 을 적용한다. 본 체크리스트의 IAS 21 section 참조	
29A, B	IAS 29.9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며 별도로 공시하는가?	
	IAS 29.27	*Note: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비화폐성 자산, 자본,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 항목과 물가지수와 연동되어 있는 자산, 부채의 조정으로부터 발생한 차이에 기인한다.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그 기간의 화폐성자산과 화폐성부채의 차이금액의 가중평균에 일반물가지수의 변동을 적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역사적 원가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29A	IAS 29.11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되지 아니한 재무상태표 금액은 일반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재작성하였는가?	
29A	IAS 29.12	화폐성항목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이미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재작성하지 아니하였는가?	
		Note: 화폐성항목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는 현금으로 수취하거나 지급할 항목이다.	
29A	IAS 29.13	물가지수연동사채나 물가지수연동대여금과 같은 물가변동에 연동되어 있는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유효한 금액을 표시할 수 있도록 약정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였는가?	
29A	IAS 29.14	순실현가능가치나 시장가치와 같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금액으로 표시되는 비화폐성 자산과 부채는 재작성하지 않았는가?	
29A	IAS 29.15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금액 (예를 들어, 원가 또는 상각후원가)으로 표시되는 비화폐성 자산과 부채는 취득일 또는 발생일 이후부터 재작성하였는가?	
		Note: 비화폐성자산은 유형자산, 투자자산, 재고자산,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등을 포함한다.	
29A	IAS 29.15	재공품이나 완성품과 같은 재고자산은 매입원가나 가공원가의 발생일 이후부터 재작성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29A	IAS 29.16	유형자산 취득당시의 세부기록을 이용할 수 없거나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 이 기준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에 재작성하기 위한 기초로서 해당 항목의 가치에 대한 독립적 전문가의 평가액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하였는가?	
29A	IAS 29.17	IAS 29 에 따라 유형자산의 재작성이 필요한 기간의 일반물가지수를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기능통화와 비교적 안정적인 외화 사이의 환율변동 등에 기초한 추정치를 사용하였는가?	
29A	IAS 29.18	비화폐성항목은 취득일이나 보고기간말이 아닌 다른 시점의 금액으로 표시되는 경우 그러한 시점(예를 들면, 최근 재평가일)부터 재작성하였는가?	
29A	IAS 29.19	비화폐성항목의 재작성 금액이 미래의 사용 (매각이나 처분 포함)으로부터 기대되는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시켰는가?	
		Note: 예를 들어, 유형자산,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의 재작성 금액은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고, 재고자산의 재작성 금액은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며, 유동성 투자자산의 재작성 금액은 시장가치로 감액한다.	
29A	IAS 29.20	지분법이 적용되는 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로 보고되는 경우 피투자기업의 순자산과 영업성과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을 산출하기 위하여 피투자기업의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IAS 29 에 따라 재작성하였는가?	
		Note: 피투자기업의 재작성된 재무제표가 외화로 표시된 경우에는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29A	IAS 29.21	일정 기간동안 발생한 차입원가가 동일 기간의 인플레이션을 보상하기 위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차입원가에 대한 일반적인 회계정책과 관계없이 그러한 부분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되었는가?	
		Note: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차입원가에 인식된다. 차입으로 조달한 자본적지출 금액을 재작성하면서 동시에 차입원가 중 동일 기간의 인플레이션을 보상하기 위한 부분을 자본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9A	IAS 29.22	명시적 이자를 부담하지 않고 대금 지급을 지연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내재적 이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자산을 대금지급일부터 재작성하였는가?	
29D	IAS 29.24	IAS 29 를 처음 적용하는 회계기간에 자본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는가? a) 이익잉여금과 재평가잉여금을 제외한 소유주 지분은 그 구성요소가 불입되거나 발생한 날부터 일반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재작성되었는가? b) IAS 29 를 처음 적용한 회계기간 전에 발생한 재평가잉여금은 제거되었는가? c) 이익잉여금을 제외한 모든 재무상태표 항목을 재작성하여 이익잉여금의 재작성 금액을 산출하였는가?	
29A	IAS 29.25	IAS 29 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말과 후속 회계기간에 모든 자본의 구성요소는 회계기간의 기초 또는, 만약 늦다면, 불입일부터 보고기간말까지 일반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재작성하였는가?	
		포괄손익계산서	
29A	IAS 29.26	포괄손익계산서의 모든 항목은 수익과 비용이 최초로 재무제표에 기록된 날부터 보고기간말까지의 일반물가지수의 변동을 적용하여 재작성하였는가 ?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	
29A	IAS 29.28	IAS 29 문단 9 에 따라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에 포함되었는가?	
29A	IAS 29.28	약정에 의하여 물가변동과 연동되어 있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IAS 29 문단 13 에 따라 이루어진 조정금액은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상계하였는가?	
		현행원가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29B	IAS 29.29	현행원가로 표시된 항목은 이미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재작성하지 않았는가?	
29B	IAS 29.29	재무상태표의 다른 항목 (즉, 현행원가로 표시되지 않은 항목)은 역사적원가 재무제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 (IAS 29 문단 11 내지 25) 에 따라 재작성하였는가?	
		포괄손익계산서	
29B	IAS 29.30	실제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의 현행원가로 보고하는 포괄손익계산서는 실제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일반물가지수를 적용하여 보고기간말의 측정단위로 재작성하였는가?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	
29B	IAS 29.31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IAS 29 문단 27,28 에 따라 회계처리되었는가?	
		법인세	
29A, B	IAS 29.32	IAS 29 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무상태표의 개별 자산,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는 IAS 12 "법인세"에 따라 회계처리되었는가?	
		현금흐름표	
29A, B	IAS 29.33	현금흐름표의 모든 항목이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되었는가?	
		대응 수치	
29A, B	IAS 29.34	전기의 대응수치는 비교재무제표가 보고기간말의 측정단위로 표시할 수 있도록 일반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재작성하였으며 전기 이전의 회계기간에 대하여 공시된 정보도 보고기간말의 측정단위로 표시되었는가?	
		Note: 비교표시되는 금액을 다른 표시통화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IAS 21 문단 42(2), 43 을 적용한다.	
		연결재무제표	
29A, B	IAS 29.35	종속기업과 지배기업이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로 보고하는 경우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기 전에 표시통화가 통용되는 국가의 일반물가지수로 재작성하였는가?	
		Note: 종속기업이 해외사업장인 경우 재작성한 재무제표에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29A, B	IAS 29.35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로 보고하는 지배기업이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로 보고하지 않는 종속기업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러한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IAS 21 에 따라 처리하였는가?	
29A, B	IAS 29.36	보고기간말이 서로 다른 재무제표들을 연결하는 경우 화폐성이든 비화폐성이든 모든 항목을 연결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재작성하였는가?	
		일반물가지수의 선택과 사용	
29A, B	IAS 29.37	일반구매력의 변동을 반영한 일반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는가?	
		Note: 동일한 경제의 통화로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모든 기업은 동일한 종류의 물가지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난 경제	
29C	IAS 29.38	경제가 초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서 IAS 29 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표시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직전 회계기간 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한 금액을 당기 이후의 재무제표의 장부금액에 대한 기초로 사용하였는가?	
		직전 회계기간이 초인플레이션 경제가 아닌 경우의 재작성	
29D	IFRIC 7.3	보고 기간에 기업의 기능통화의 경제가 초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전기에는 초인플레이션이 아닌 경우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과거부터 계속되었던 것처럼 가정하고 IAS 29 의 규정을 적용하였는가?	
29D	IFRIC 7.3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항목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포함된 가장 이른 기간 개시 초의 개시재무상태표가 자산을 취득한 날이나 부채가 발생한 날부터 보고기간의 보고기간 종료일까지의 인플레이션 영향을 반영하여 재작성되었는가?	
29D	IFRIC 7.3	취득일이나 발생일이 아닌 날 현재의 금액으로 개시재무상태표에 표시된 비화폐성항목의 경우 장부금액이 결정된 날부터 보고기간의 보고기간 종료일까지의 인플레이션 영향을 반영하여 재작성하였는가?	
29D	IFRIC 7.4	보고기간 종료일에 IAS 12 에 따라 이연법인세를 인식하고 측정하였는가?	
29D	IFRIC 7.4	보고기간의 개시재무제표에 이연법인세 금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는가? a) 보고기간 개시일에 그날의 측정단위를 사용하여 비화폐성 항목의 명목장부금액을 재작성한 후에 IAS 12 에 따라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측정하였는가? b) (a)에 따라 재측정한 이연법인세 항목은 보고기간 개시일부터 보고기간 종료일까지의 측정단위의 변동을 반영하여 재작성하였는가?	
29D	IFRIC 7.4	IAS 29 를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재작성된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된 특정 기간의 개시재무상태표에서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작성할 때도 IFRIC 7 문단 4(1)와 4(2)의 방법을 적용하였는가?	
29A, B, C	IFRIC 7.5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후 후속 보고기간에 그 후속 보고기간에 일어난 측정단위의 변동을 이전 보고기간의 재작성된 재무제표에만 적용하여 이연법인세 항목을 포함한 후속 보고기간 재무제표의 모든 대응수치를 재작성 하였는가?	

IAS 31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본 질문서는 조인트벤처 참여자와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의 회계처리와 조인트벤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보고를 설명하고 있다. 조인트벤처는 다양한 형태와 구조를 가진다. 이 기준서는 조인트벤처를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및 공동지배기업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주요한 문제는 공동지배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조인트벤처 유형 및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비례연결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식별하는 것이다.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조인트벤처의 구조나 형태에 관계없이 조인트벤처 참여자와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의 회계처리와 조인트벤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보고에 적용한다. *이 기준서는 투자자가 지배하는 투자자산이나, 중대항 영향력을 가지는 투자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루지 않는다. 각각의 경우 이 체크리스트 중 관련 부분(종속기업은 IAS 27, 관계기업은 IAS 28)을 참고하라. 지배, 공동지배 및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 조인트벤처 투자자는 IAS 39 에 따라서 투자자산을 회계처리한다.* *다음의 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거나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는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에 IAS 31을 적용하지 않는다.* *a) 벤처캐피털 투자기구* *b)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 *이러한 투자자산은 IAS 39 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은 변동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예비질문	
31A		*다음 예비질문에 하나라도 "예"라고 답한 경우 관련 세부준수질문에 답하시오.* 기업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계약상 합의에 참여하는가? (기업은 조인트벤처 당사자인가?) *Note: **지배력**은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__공동지배__는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공유하며, 경제활동에 관련된 전략적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는 당사자(참여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할 때에만 존재한다.* *__참여자__는 조인트벤처에 대한 당사자이며 그 조인트벤처에 대하여 공동지배를 가지고 있는 자이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31B		법인, 파트너십이나 그 밖의 실체 또는 참여자와 분리된 별개의 재무적 조직 등으로 설립되지 아니하고 참여자의 자산과 그 밖의 자원을 사용하여 운영되는 조인트벤처를 공동지배하는가? (공동지배사업의 참여자인가?) *Note: 공동지배사업의 예를 들면, 둘 이상의 참여자가 특정한 생산물을 공동으로 제조□판매□공급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의 영업□자원□기술 등을 결합하는 경우이다. 각 참여자는 제조공정의 다른 부분을 담당한다. 각 참여자는 자신의 원가를 부담하고 제품 판매수익을 분배받는데, 이러한 분배는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31C		조인트벤처의 목적으로 출자되거나 취득되고 조인트벤처의 목적에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자산을 참여자가 공동지배하고 흔히 공동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조인트벤처에 대해 각 참여자는 공동지배자산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 중 자신의 지분을 지배할 목적으로 공동지배를 가지는가? (공동지배자산의 참여자인가?) *Note: 공동지배자산의 예를 들면, 다수의 원유생산기업이 하나의 송유관을 공동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는 경우이다. 각 참여자는 각자의 원유를 수송하기 위하여 그 송유관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송유관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 중 합의된 부분을 부담한다.*	
31D		법인, 파트너십 또는 각 참여자가 지분을 소유하는 그 밖의 형태의 기업으로 설립된 조인트벤처를 공동지배하는가?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인가?)	
31E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참여자의 회계정책은 비례연결인가?	
31F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참여자의 회계정책은 지분법인가?	
31G		참여자가 조인트벤처에 자산을 출자하거나 매각하였는가?	
31H		참여자가 조인트벤처로부터 자산을 구입하였는가?	
31I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을 가지며,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가?	
		세부준수질문	
		공동지배	
31A	IAS 31.8	조인트벤처의 법적 갱생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참여자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데 장기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지배가 지속된다면,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을 IAS 31에 따라 회계처리하는가?	
		Note: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피투자자가 IAS 31 의 조인트벤처의 정의를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지배는 배제될 수 있다. 그러나, 계속 공동지배를 한다면, 이러한 사건 자체만으로 조인트벤처를 이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계약상 합의	
31A	IAS 31.9,11	조인트벤처에 대한 공동지배는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하나의 참여자가 일방적으로 조인트벤처의 활동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지 않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 공동지배가 수반된 투자지분은 계약상 합의가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기업 투자와 다르다. 계약상 합의는 참여자 사이의 계약이나 회의록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계약상 합의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증거는 일반적으로 문서화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룬다. • *조인트벤처의 활동, 존속기간 및 보고의무사항* • *조인트벤처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과 참여자의 의결권* • *참여자의 출자* • *조인트벤처의 산출물, 수익, 비용이나 운영성과에 대한 참여자간의 분배*	
31A	IAS 31.12	참여자 중에서 조인트벤처의 운영자나 관리자로 지정되고, 조인트벤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고 당 운영자에게 위임된 조인트벤처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면, 조인트벤처는 IAS 31 에 따라 회계처리되고 종속기업에 해당하지 않는가?	
	IAS 31.12	*Note: 만약 운영자가 경제적 활동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지배할 수 있다면, 운영자가 그 기업을 지배하고 그 기업은 운영자의 종속기업이 되며 조인트벤처에 해당하지 않는다.*	
31A	IAS 31.52	조인트벤처의 운영자나 관리자로서 활동한다면, 조인트벤처의 운영자나 관리자는 보수는 IAS 18 '수익'에 따라 회계처리하는가?	
		공동지배사업	
31B	IAS 31.15	참여자는 공동지배사업 투자지분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가? a) 참여자가 지배하는 자산과 발생시킨 부채 b) 참여자가 발생시킨 비용과 조인트벤처의 재화나 용역의 판매수익 중 참여자에 대한 분배금액	
		Note: 보통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이 이미 참여자의 재무제표에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자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할 때는 이러한 과목과 관련하여 조정이나 그 밖의 연결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공동지배자산	
31C	IAS 31.21	참여자는 공동지배자산 투자지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가? a) 자산의 성격에 따라 분류된 공동지배자산 중 참여자의 지분 b) 참여자가 발생시킨 부채 c) 조인트벤처와 관련하여 다른 참여자와 공동으로 발생시킨 부채 중 참여자의 지분 d)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조인트벤처의 산출물을 판매하거나 사용하여 발생한 수익과 조인트벤처가 발생시킨 비용 중 참여자의 지분 e) 조인트벤처에 대한 참여자의 지분과 관련하여 참여자가 발생시킨 비용	
		Note: 보통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이 이미 참여자의 재무제표에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자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할 때는 이러한 과목과 관련하여 조정이나 그 밖의 연결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공동지배기업	
		비례연결 또는 지분법 중 하나를 사용하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	
31D	IAS 31.2, 30, 38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을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례연결과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 하는가 a) 투자지분이 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b)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문단 10 의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어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 지배기업인 경우(이 체크리스트의 IAS 27 참조) c)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i) 참여자가 그 자체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참여자가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참여자가 비례연결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참여자의 다른 소유주들(의결권이 없는 소유주 포함)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ii) 참여자의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이 공개된 시장(국내·외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시장. 지역시장 포함)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iii) 참여자가 공개된 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iv) 참여자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일반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31D	IAS 31.30	참여자는 비례연결 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을 인식하는가?	
		비례연결	
31E	IAS 31.33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참여자의 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례연결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는가? a) 참여자의 재무상태표에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참여자의 지분과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부채에 대한 참여자의 지분을 포함한다. b) 참여자의 포괄손익계산서에는 공동지배기업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참여자의 지분이 포함된다.	
31E	IAS 31.33	참여자는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종속기업 투자의 연결절차와 유사한 비례연결절차를 적용하였는가?	
31E	IAS 31.34	참여자의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을 다음의 보고형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참여자의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는가? a) 참여자는 공동지배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각각에 대한 참여자의 지분을 참여자의 재무제표에서 유사한 항목별로 결합한다. b) 참여자는 공동지배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참여자의 지분을 재무제표에 별도의 항목으로 포함시킨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31E	IAS 31.35	비례연결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떤 형식이 사용되더라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존재하고 상계가 자산의 실현 또는 부채의 결제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자산, 부채 또는 수익, 비용을 상계하였는가?	
31E	IAS 31.36	참여자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 공동지배를 상실한 시점부터 비례연결의 사용을 중단하였는가?	
	IAS 31.37	*Note: 참여자는 공동지배기업의 지배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시점부터 비례연결의 사용을 중단한다. 이러한 경우는 예를 들면, 참여자가 자신의 투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외부의 제약으로 인하여 참여자가 더 이상 공동지배를 가지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지분법	
31F	IAS 31.38	참여자는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을 지분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는가?	
31F	IAS 31.40	참여자는 IAS 28 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을 인식 하였는가?	
31F	IAS 31.41	참여자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 공동지배를 하지 않게 되거나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날부터 지분법을 중단하였는가?	
		비례연결과 지분법에 대한 예외사항	
31E, F	IAS 31.42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이 IAS 5 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었으므로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을 비례연결과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았는가?	
31E, F	IAS 31.43	과거에 IFRS 5에 따라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을 회계처리하였으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이 더 이상 그 분류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그 시점(IFRS 5 참조)부터 비례연결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고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시점 이후 기간의 재무제표는 이에 따라 수정되었는가?	
31E, F	IAS 31.45	공동지배기업이 참여자의 종속기업이 된 날부터 참여자는 투자지분을 IAS 27 에 따라 회계처리 하였는가?	
31E, F	IAS 31.45	공동지배기업이 참여자의 관계기업이 된 시점부터 참여자는 그 투자지분을 IAS 28 에 따라 회계처리 하였는가?	
		참여자의 별도재무제표	
	IAS 31.46	*Note: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은 참여자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아래에 언급된 IAS 27 의 문단 37 39 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31I	IAS 27.37	참여자가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은 다음 방법 중 선택하여 회계처리되었는가? a) 원가법 b) IAS 39 에 따른 방법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 *1)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이다. IAS 31 은 어떤 기업들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를 강제하지 않는다. 법규나 규제기관이 작성을 요구하거나, 보고기업이 자발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IAS 31 의 문단 46(위 참조)의 요구사항은 별도재무제표가 작성되는 때에 적용한다.* *2) 특별히 관계기업과 조인트벤처를 다루는 경우 '별도재무제표'의 의미가 단순히 '연결재무제표 이외의 재무제표'를 의미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종속기업이 없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주재무제표에 공동지배기업에 대해 지분법 또는 비례연결회계처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투자자산의 각 항목에서 동일한 회계처리를 적용한다. IFRS 5 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은 동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31I	IAS 27.39	연결재무제표에서 IAS 39 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공동지배기업 투자는 해당 투자자의 별도재무제표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되는가?	
		참여자와 조인트벤처 간의 거래	
31G	IAS 31.48	참여자가 조인트벤처에 자산을 출자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조인트벤처가 자산을 보유하고 참여자가 소유에 따르는 중요한 위험과 보상을 이전하였다면, 다음과 회계처리하는가 ? a) 참여자는 손익 중 다른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만 인식하는가? b) 출자나 매각거래가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감소나 자산손상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참여자는 손실을 전액 인식하는가?	
31G	SIC 13.5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과의 교환으로 공동지배기업에 비화폐성자산을 출자하는 거래에 참여자는 다음 중 하나이상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참여자의 투자지분에 귀속되는 손익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a) 출자된 비화폐성자산의 소유에 따른 중대한 위험과 보상이 공동지배기업에 이전되지 않았다. b) 비화폐성자산의 출자와 관련된 손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c) 출자거래에 IAS 16 '유형자산'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다(체크리스트 IAS 16 참조).	
31G	SIC 13.5	예외사항 (a), (b) 또는 (c)(위 참조)이 적용되는 경우, SIC 13 의 문단 6 의 사항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손익은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31G	SIC 13.6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을 수령하면서 추가로 참여자가 화폐성 또는 비화폐성자산을 받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적절한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31G	SIC 13.7	공동지배기업에 출자된 비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손익은 비례연결에 따라 관련자산에서 제거하거나 지분법에 따라 투자에서 제거하고, 이러한 미실현손익은 참여자의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이연손익으로 표시하지 않았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31H	IAS 31.49	참여자가 조인트벤처로부터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a) 참여자는 그 자산을 제 3 자에게 재매각하기 전까지는 조인트벤처의 이익 중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지 아니하였는가? b) 참여자는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 중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이익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인식하면서, 그러한 손실이 자산의 실현가능가치 감소나 자산손상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참여자는 손실을 즉시 인식하였는가?	
	IAS 31.50	*Note: 참여자와 조인트벤처 간의 거래가 자산손상의 증거를 제공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참여자는 IAS 36 '자산손상'에 따라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한다.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참여자는 조인트벤처가 자산을 계속 사용하고 궁극적으로 자산을 처분한다는 것에 근거하여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다.*	

IAS 32 호 금융상품: 표시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금융상품의 공시사항을 규정한 IAS 32 의 요구사항에 대해 Deloitte 의 표시와 공시 checklist)를 참조하시오	

IAS 33 주당이익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본 질문서는 주당이익(EPS)의 산정방법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는 IAS 33 을 설명한다.	
		IAS 33 의 부록 A 는 기준서의 일부이며, IAS 33 에서 설정하고 있는 원칙에 대한 적용지침을 제공한다.	
		적용범위	
		IAS 33 은 공개된 시장에 보통주나 잠재적보통주를 상장하고 있거나 상장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에 적용한다.	
		주당이익을 공시하는 기업은 이 기준서에 따라 주당이익을 계산하여 공시한다.	
		IAS 27 ‘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 에 따라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를 모두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은 연결정보에만 적용한다. 별도재무제표에 기초한 주당이익을 공시하기로 한 기업은 포괄손익계산서에만 (on the face of its separate income statement) 그러한 주당이익 정보를 표시하며 연결재무제표에 그러한 주당이익 정보를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정의	
		보통주란 다른 모든 종류의 지분상품보다 후순위인 지분상품이다.	
		잠재적보통주란 보통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유자에게 부여된 금융상품이나 계약이다.	
		조건부주식약정이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을 발행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조건부발행보통주란 조건부주식약정에 명시된 특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현금 등의 대가가 없거나 거의 없이 발행하게 되는 보통주이다.	
		예비질문	
		다음 예비질문에 하나라도 “예”라고 답한 경우 관련세부준수질문에 답하시오	
33A		기업이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보통주나 잠재적보통주를 보유하고 있거나 IAS 33 에 따른 EPS 정보를 공시하기로 자발적으로 선택하였는가?	
33B		기업 (또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조인트벤처)이 잠재적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는가? *Note: 잠재적보통주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 (전환우선주 포함)* ● *옵션과 워런트* ● *사업인수나 자산취득과 같은 계약상 합의에 따라 조건이 충족되면 발행될 보통주*	
33C		기업은 당해연도중에 사업결합을 하였는가? *Note: 사업결합은 IFRS 3 에서 별개의 기업이나 사업을 하나의 보고기업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33D		자원의 실질적인 변동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유통보통주식수를 변동시키는 사건 (잠재적보통주의 전환은 제외)이 발생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33E		기업은 특정 사건이 발생되거나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보통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약정을 보유하고 있는가?	
33F		기업은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가능한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가?	
33G		기업은 당해연도중에 매입옵션을 보유하고 있는가 (즉, 자기주식에 대하여 기업이 보유중인 옵션)?	
33H		기업은 당해연도중에 옵션을 발행하거나 선도구매옵션을 보유하였는가 (즉, 기업이 자기주식을 재구매할 것이 요구되는 계약)?	
33I		기업은 보통주식이나 구분보통주식 (two-classes of ordinary share)으로 전환되지 않는 참여형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가? *Note: 일부기업의 자본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다* ● *때때로 참여범위상한 (예를 들면, 주당이익이 특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의 적용을 받으며 사전에 결정된 산식에 따라 (예를 들면, two for one)에 따라 보통주와 같이 배당에 참여하는 상품* ● *우선적인 권한이 없지만 다른 보통주그룹과 다른 배당률을 적용받는 보통주그룹*	
		세부준수질문	
		기본주당순이익	
33A	IAS 33.9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였는가?	
		Note: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은 비지배주주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조정한 후의 연결실체의 당기순손익을 의미한다.	
33A	IAS 33.9	계속사업으로부터의 손익이 손익계산서에 표시되었다면,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사업손익을 기초로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였는가?	
33A	IAS 33.10	기본주당이익은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 (분자)을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 (분모)로 나누어 계산하였는가?	
		이익	
33A	IAS 33.12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때에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다음의 a)와 b)의 각각의 금액에서 1.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 2.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 우선주 배당금, 우선주 상환 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인가?	
33A	IAS 33.13	법인세비용과 부채로 분류되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을 포함하여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에 인식된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 결정에 포함하였는가? (IAS 1 ‘ 재무제표 표시 ’ 참조).	
33A	IAS 33.14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익에서 차감할 세후 우선주 배당금은 다음과 같은가? a. 당해 회계기간과 관련하여 배당결의된 비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세후 배당금 b. 배당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회계기간과 관련한 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세후배당금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33A	IAS 33.14	전기 이전의 기간과 관련하여 당기에 지급되거나 결의된 누적적 우선주 배당금은 제외하였는가?	
33A	IAS 33.15	할증배당우선주의 당초 할인발행차금이나 할증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하여 이익잉여금에 가감하고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우선주 배당금으로 처리하였는가?	
33A	IAS 33.15	*Note: 할증배당우선주는 우선주를 시가보다 할인 발행한 기업에 대한 보상으로 초기에 낮은 배당을 지급하는 우선주 또는 우선주를 시가보다 할증금액으로 매수한 투자자에 대한 보상으로 이후 기간에 시장보다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우선주를 말한다.*	
33A	IAS 33.16	기업이 공개매수 방식으로 우선주를 재매입할 때 우선주 주주에게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가 우선주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우선주 주주에 대한 이익배분으로서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계산할 때 차감하였는가?	
33A	IAS 33.17	전환우선주의 조기전환이 있었다면, 처음의 전환조건에 따라 발행될 보통주의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보통주나 그 밖에 대가의 공정가치는 전환우선주에 대한 이익배분으로 보아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에서 차감하였는가?	
33A	IAS 33.18	우선주의 장부금액이 우선주의 매입을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계산할 때 가산하였는가?	
		보통주식수	
33A	IAS 33.19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는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이하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라 한다)로 하였는가?	
33A	IAS 33.2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기초의 유통보통주식수에 회계기간 중 취득된 자기주식수 또는 신규 발행된 보통주식수를 각각의 유통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한 보통주식수인가?	
33A	IAS 33.20	유통기간에 따른 가중치는 그 회계기간의 총일수에 대한 특정 보통주의 유통일수의 비율로 산정하였는가?	
	IAS 33.20	*Note: 유통기간에 따른 가중치는 가중평균에 대한 합리적 근사치도 사용될 수 있다.*	
33A	IAS 33.2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산정하기 위한 보통주유통일수 계산의 기산일은 통상 주식발행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일반적으로 주식발행일) 또는 기타 적절한 날짜를 적용하였는가?	
	IAS 33.21	*Note: 보통주유통일수를 계산하는 기산일은 주식발행과 관련된 특정 조건에 따라 결정하며, 이때 주식발행에 관한 계약의 실질을 적절하게 고려한다.*	
33C	IAS 33.22	사업결합원가의 일부로 보통주를 발행한 경우 취득일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산정하는 기산일로 하였는가?	
33B	IAS33.23	보통주로 반드시 전환하여야 하는 전환금융상품은 계약체결시점부터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하였는가?	
33E	IAS 33.24	조건부발행보통주는 모든 필요조건이 충족(즉, 사건의 발생)된 날에 발행된 것으로 보아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 *1) 단순히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보통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계약 등의 경우 기간의 경과에는 불확실성이 없으므로 조건부발행보통주로 보지 아니한다.* *2) 조건부로 재매입할 수 있는 보통주를 발행한 경우 이에 대한 재매입가능성이 없어질 때까지는 보통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3D	IAS 33.26	잠재적보통주의 전환은 제외하고 당해 기간 및 비교표시되는 모든 기간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상응하는 자원의 변동 없이 유통보통주식수를 변동시키는 사건을 반영하여 조정하였는가?	
	IAS 33.27	*Note: 자원의 실질적인 변동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보통주가 새로 발행될 수도 있고 유통보통주식수가 감소할 수도 있다. 자본금전입이나 무상증자 ('주식배당' 이라고도 함), 그 밖의 증자에서의 무상증자 요소 (예: 기존 주주에 대한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의 무상증자 요소),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과 같은 예가 이에 해당한다.*	
33D	IAS 33.A2	행사가격이 주식의 공정가치보다 작은 것이 일반적인 (따라서 무상증자 요소를 수반하는)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이 기존의 모든 주주에게 발행된다면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전 모든 기간에 대하여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사용되는 보통주식수는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전의 유통보통주식수에 다음의 조정비율을 곱하여 계산되었는가? 조정비율 = 권리행사 직전의 주당공정가치 / 이론적 권리락 주당공정가치	
		Note: 그 권리 자체가 권리행사일 전에 주식과 분리되어 거래되는 경우에 이 계산에 사용되는 공정가치는 주식이 권리와 함께 거래된 마지막 날의 주식의 종가(즉, 권리부 시장가격)가 된다.	
33D	IAS 33.A2	이론적 권리락 주당공정가치는 권리행사일 직전의 주식의 총시장가치를 권리행사로 인하여 유입되는 금액에 더하고 이를 권리행사 후의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는가?	
33D	IAS 33.28	추가로 대가를 받지 않고 기존 주주에게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이 있기 전의 유통보통주식수를 비교표시되는 최초기간의 개시일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비례적으로 조정하였는가?	
33A	IAS 33.29	주식병합이 전반적으로 주식을 공정가치로 매입한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결합거래가 발생한 기간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특별배당이 인식된 날부터 보통주식수의 감소를 반영하여 조정하였는가?	
33A	IAS 33.A15	보통주가 발행되었지만 부분 납입된 경우 완전 납입된 보통주와 비교하여, 당해기간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보통주의 일부로 취급하여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였는가?	
		희석주당순이익	
33B	IAS 33.30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희석주당순이익을 계산하였는가?	
33B	IAS 33.30	계속영업손익을 표시하는 경우에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에 대하여 희석주당순이익을 계산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33B	IAS 33.31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이하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 ’ 라 한다)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였는가?	
33B	IAS 33.32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에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와 관련하여 그 회계기간에 인식된 배당과 이자비용에서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을 가산하였는가?	
33B	IAS 33.32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에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변동되었을 수익 또는 비용을 조정하였는가?	
33B	IAS 33.3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유통되었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가산하였는가?	
		이익	
33B	IAS 33.33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다음의 사항에서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만큼 조정하였는가? a) 기본주당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계산할 때 차감한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에 대한 배당금이나 기타항목 b)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와 관련하여 그 회계기간에 인식한 이자비용 c)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였다면 발생하였을 그 밖의 수익 또는 비용의 변동사항	
		참여적 지분상품과 구분보통주식 (two classes of ordinary shares)	
33I	IAS 33.A14	보통주 또는 구분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는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권리 또는 잔여이익의 분배에 참가할 권리에 따라 당기순손익을 각 종류의 주식과 참가적 지분상품에 배분하였는가?	
33I	IAS 33.A14	참가적 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는가? a)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은 그 기간에 구분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하기로 결의된 금액과 그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배당 (또는 참가적 회사채에 대한 이자)약정금액(예: 지급되지 않은 누적배당금)만큼 조정 (이익은 감소, 손실은 증가)하였는가? b) 잔여손익은 모든 당기순손익을 배당한 것으로 가정할 때 각 지분상품에 돌아가는 부분만큼 보통주와 참가적 지분상품에 배분하였는가?	
	IAS 33.A14	*Note: 구분지분상품에 배분하는 당기순손익의 총액은 배당으로 배분하는 금액과 이익참가 형식으로 배분하는 금액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였는가?* c) 구분지분상품에 대한 주당이익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 지분상품에 배분한 당기순손익의 총금액을 그 지분상품의 유통수량으로 나누었는가?	
		보통주식수	
33B	IAS 33.36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는 기본주당순이익을 계산할 때 계산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모두 전환될 경우에 발행되는 보통주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가산하여 산출하였는가?	
33B	IAS 33.36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회계기간의 기초에 전환된 것으로 보되 당기에 발행된 것은 그 발행일에 전환된 것으로 보았는가?	
33B	IAS 33.37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식수는 표시되는 각 회계기간마다 독립적으로 결정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33.37	*Note: 누적중간기간의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포함된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식수는 각 중간기간의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포함된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것이 아니다.*	
33B	IAS 33.38	해당 기간에 효력을 잃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잠재적보통주는 해당 기간 중 유통된 기간에 대해서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하였는가?	
33B	IAS 33.38	당기에 보통주로 전환된 잠재적보통주는 기초부터 전환일의 전일까지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하였는가?	
		Note: 전환으로 발행되는 보통주는 전환일부터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한다.	
33B	IAS 33.39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식수는 잠재적보통주의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하였는가?	
33B	IAS 33.39	두 가지 이상의 전환기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잠재적보통주의 보유자에게 가장 유리한 전환비율이나 행사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는가?	
33B	IAS 33.A16	부분 납입으로 당해 기간의 배당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주식의 미납입부분은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있어서 주식매입권이나 옵션과 같이 취급하였는가?	
33B	IAS 33.A16	*Note: 미납입액은 보통주를 매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가정한다.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되는 주식수는 배정된 주식수와 매입된 것으로 가정한 주식수의 차이이다.*	
33B	IAS 33.40	종속기업, 조인트벤처, 관계기업 (이하 ‘ 종속기업 등 ’ 이라 한다)은 자기 기업의 보통주 또는 지배기업, 조인트벤처 참여자, 관계기업투자자 (이하 ‘ 보고기업 ’ 이라 한다)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보통주를 보고기업이 아닌 자에게 발행하고 종속기업 등이 발행한 잠재적보통주가 보고기업의 기본주당이익을 희석하는 효과가 있다면 그 잠재적보통주는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하였는가?	
33B	IAS 33.A11	종속기업 등이 발행한 금융상품이 발행기업의 보통주를 획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기업의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는 데에 포함하고 그러한 주당이익을 종속기업 등이 발행한 그 금융상품에 대한 보고기업의 보유지분에 기초하여 보고기업의 주당이익을 계산하는 데 포함하였는가?	
33B	IAS 33.A11	종속기업 등이 발행한 금융상품으로서 보고기업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보고기업의 잠재적보통주에 해당하므로 보고기업의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였는가?	
33B	IAS 33.A11	종속기업 등이 발행한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으로서 보고기업의 보통주를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이나 주식매입권도 보고기업의 잠재적보통주에 해당하므로 보고기업의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였는가?	
33B	IAS 33.A12	보고기업이 발행한 금융상품으로서 종속기업 등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보고기업의 주당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a) 그러한 금융상품이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며 분자 (보고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는 필요하다면 IAS 33 문단 33 에 따라 조정하였는가? b) 그러한 조정 외에도, 전환가정으로 인한 종속기업 등의 유통보통주식수의 증가에 기인하여 보고기업이 기록하고 있는 손익(배당금수익이나 지분법손익 등)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반영하여 분자를 조정하였는가? c) 보고기업의 유통보통주식수는 위와 같은 전환가정에 의하여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기업의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에 분모는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d)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	
33B	IAS 33.41	잠재적보통주는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경우 주당계속영업이익을 감소시키거나 주당계속영업손실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 처리하였는가?	
33B	IAS 33.42	잠재적보통주가 희석효과를 가지는지 반희석효과를 가지는지는 기준이익인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에 대한 희석효과 유무로 판단하였는가?	
		Note: 기준이익개념의 적용에 관한 사례는 IAS 33 의 부록 문단 A3 을 참조하시오	
33B	IAS 33.42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은 다음의 사항에서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만큼 조정하였는가? a)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을 계산할 때 차감한 희석성잠재적보통주에 대한 배당금이나 기타 항목 b)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와 관련하여 그 회계기간에 인식한 이자비용 c)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였다면 발생하였을 그 밖의 수익 또는 비용의 변동사항	
33B	IAS 33.42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에서 중단영업에 관련된 항목을 제외하였는가?.	
33B	IAS 33.43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반희석성 잠재적보통주의 전환, 행사 또는 기타의 발행에 따른 효과를 배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는가?	
33B	IAS 33.44	여러 종류의 잠재적보통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잠재적보통주가 희석효과를 가지는지 반희석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때 여러 종류의 잠재적보통주를 모두 통합해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고려하였는가?	
33B	IAS 33.44	희석효과가 가장 큰 잠재적보통주부터 순차적으로 고려하였는가?	
		옵션과 워런트 등	
33B	IAS 33.45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희석효과가 있는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은 행사된 것으로 가정하였는가?	
33B	IAS 33.45	이 경우 권리행사에서 예상되는 현금유입액은 보통주를 회계기간의 평균시장가격으로 발행하여 유입된 것으로 가정하였는가?	
33B	IAS 33.45	그 결과 권리를 행사할 때 발행하여야 할 보통주식수와 회계기간의 평균시장가격으로 발행한 것으로 가정하여 환산한 보통주식수의 차이는 무상으로 발행한 것으로 가정하였는가?	
33B	IAS 33.A4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발행된다고 가정하는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은 해당 회계기간의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을 기초로 계산하였는가?	
		Note: 이론적으로는 보통주의 모든 시장거래를 평균시장가격의 산정시 고려하여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주단위나 월단위의 단순평균시장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	
33B	IAS 33.A5	평균시장가격을 산정하는 데 사용한 방법은 상황이 변하여 더 이상은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계속 적용하였는가?	
	IAS 33.A5	*Note: 예를 들어, 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몇 년간 평균시장가격을 산정할 때 종가를 사용해오던 기업이 주가의 변동폭이 커지고 종가를 대표성이 있는 평균가격으로 보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최고가와 최저가의 평균가격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균시장가격을 산정할 때 종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주가의 변동폭이 큰 경우에는 최고가와 최저가의 평균가격이 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33B	IAS 33.A7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서 행사자가 행사가격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할 때 발행기업 (또는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의 채무상품 또는 기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은 행사되어 채무상품 또는 기타 상품 등이 제공된다고 가정하였는가?	
33B	IAS 33.A7 IAS 33.A7,A8	*Note:* *a. 행사자가 행사가격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할 때 발행기업 (또는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의 채무상품 또는 기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옵션이나 주식매입선택권은 (a) 그 기간의 관련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이 행사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b) 제공될 채무상품 등의 판매가격이 옵션이나 주식매입권 계약상 제공하기로 한 금액에 미달하여 실질적인 행사가격이 발행될 주식의 평균시장가격보다 작은 경우에 희석효과가 있다* *b. 만일 현금을 제공하는 것이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의 보유자에게 더 유리하고, 계약에서 현금제공을 허용한다면, 현금이 제공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옵션이나 주식매입권과 유사한 조건이 부여된 우선주 또는 투자자가 현금을 지급하여 보다 유리한 전환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환권이 부여된 다른 금융상품도 유사한 방법을 적용한다.*	
33B	IAS 33.A7	제공될 것으로 가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비용 (법인세효과 차감후)은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분자에 가산하였는가?	
33B	IAS 33.A9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서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의 조건에서 그것을 행사함에 따라 얻게되는 대가를 기업(또는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의 채무상품이나 다른 금융상품의 상환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러한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은 행사된다고 가정하며, 행사에서 발생하는 대가로 보통주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상품을 채무상품의 평균시장가격으로 상환한다고 가정하였는가?	
33B	IAS 33.A9	그러나 행사가정에서 발생하는 대가가 채무상품의 상환가정에 사용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통주를 매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였는가?	
33B	IAS 33.A9	*Note: 상환할 것으로 가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비용(법인세효과 차감후)은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분자에 가산하였는가?*	
33B	IAS 33.47	과거에 이미 보고된 주당이익은 보통주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소급수정을 하지 아니하였는가?	
33B	IAS 33.47A	IFRS 2 ‘ 주식기준보상 ’ 이 적용되는 주식선택권이나 그 밖의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경우, 발행금액과 행사가격에는 주식선택권이나 그 밖의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미래에 유입될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가 포함되었는가?	
33B	IAS 33.48	조건은 확정되었거나 결정할 수 있지만 아직 가득되지 않은 종업원 주식선택권은 미래 가득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옵션으로 보았는가?	
33B	IAS 33.48	조건은 확정되었거나 결정할 수 있지만 아직 가득되지 않은 종업원 주식선택권은 부여일부터 유통되는 것으로 취급하였는가?	
	IAS 33.48	*Note: 성과조건이 부과된 종업원 주식선택권은 시간의 경과 외에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발행되므로 조건부발행 보통주로 취급하였는가?*	
		<u>전환금융상품</u>	
33B	IAS 33.49	전환금융상품의 희석효과는 문단 33 과 36 에 따라 희석주당이익에 반영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33B	IAS 33.51	전환우선주의 전환이나 상환이 유통 전환우선주 가운데 일부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a) 처음의 전환조건에 따라 발행될 보통주의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보통주나 그 밖에 대가의 공정가치는 전환되거나 상환된 전환우선주와 관련된 것으로서 나머지 유통 전환우선주가 희석효과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가?	
33B	IAS 33.51	b) 전환되거나 상환된 전환우선주는 그렇지 않은 나머지 전환우선주와는 구분하여 고려하였는가?	
		<u>조건부발행보통주</u>	
33E	IAS 33.52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에 조건부발행보통주는 그 조건이 충족된 상태 (즉, 사건의 발생)라면 이미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하였는가?	
33E	IAS 33.52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그 회계기간 초부터 (그 회계기간에 조건부발행보통주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계약일부터) 조건부발행보통주를 포함하였는가?	
33E	IAS 33.52	만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 조건부발행보통주는 그 회계기간 말이 조건기간의 만료일이라면 발행할 보통주식수만큼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의 계산에 포함하였는가?	
33E	IAS 33.52	실제로 조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계산결과를 수정하지 아니하였는가?	
33E	IAS 33.53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목표이익을 달성하거나 유지한다면 보통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경우, 보고기간말에 그 목표이익이 달성되었지만 그 보고기간말 이후의 추가적인 기간 동안 그 목표이익이 유지되어야 한다면 a)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보통주가 희석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그 보통주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는가? b) 이 때 희석주당이익은 보고기간말의 이익수준이 조건기간말의 이익수준과 같다면 발행될 보통주식수에 기초하여 계산하였는가?	
	IAS 33.54	조건부발행보통주식수는 보통주의 미래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보고기간말의 시장가격이 조건기간말의 시장가격과 같다면 발행될 보통주식수가 희석효과를 가진다면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하였는가?	
33E	IAS 33.54	만약 조건이 보고기간말 후의 일정 기간의 평균시장가격에 기초하고 있는 때에는 이미 경과된 기간의 평균시장가격을 사용하였는가?	
33E	IAS 33.55	조건부발행보통주식수는 미래의 이익과 보통주의 미래 시장가격 모두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a) 회계기간 말에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조건부발행보통주를 포함였는가? b)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되는 보통주식수는 두 가지 조건 (즉, 회계기간의 이익과 회계기간 말 현재의 시장가격) 모두에 기초하였는가?	
33E	IAS 33.56	조건부발행보통주식수는 이익이나 보통주의 시장가격 외에 다른 조건(예: 특정한 수의 영업점 개설)에 따라 결정될 경우에는 현재의 조건 상태가 조건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고 조건부발행보통주를 보고기간말의 상태에 기초하여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고려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33E	IAS 33.57	조건부발행 전환금융상품과 같이 조건부주식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조건부발행 잠재적 보통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하였는가? a) 잠재적보통주의 발행조건에 기초해 볼 때, 문단 52~56 의 조건부발행보통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잠재적보통주를 발행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지 결정하였는가? b) 그러한 잠재적보통주를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 문단 45~48 의 옵션과 주식매입권에 관한 규정, 문단 49~51 의 전환금융상품에 관한 규정, 문단 58~61 의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여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대한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적절히 결정하였는가? c) 조건부발행이 아닌 유사한 유통 잠재적보통주가 행사되거나 전환된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조건부발행 잠재적보통주가 행사되거나 전환된다고는 가정하지 아니하였는가?	
		<u>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u>	
33F	IAS 33.58	기업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을 발행하였다면 a) 계약이 보통주로 결제될 것으로 가정하였는가? b) 잠재적보통주가 희석효과를 가진다면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하였는가?	
33F	IAS 33.59	기업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이 회계목적상 자산이나 부채로 표시되거나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모두 가지는 경우, 그 계약 전체가 지분상품으로 분류되어 왔다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하였을 손익의 변동액을 분자에 반영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였는가?	
33F	IAS 33.60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하게 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주식결제와 현금결제 중 희석효과가 더 큰 방법으로 결제된다고 가정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였는가?	
		<u>매입옵션</u>	
33G	IAS 33.62	기업이 자신의 보통주에 기초한 옵션 (풋옵션이나 콜옵션)을 매입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는가?	
		<u>매도풋옵션</u>	
33H	IAS 33.63	매도풋옵션과 선도매입계약과 같이 기업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도록 하는 계약이 희석효과가 있다면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하였는가?	
		Note: 이와 관련하여 IAS 33 의 부록 A 의 문단 A10 을 참조하시오.	
33H	IAS 33.63	이러한 계약이 그 회계기간 동안에 ‘ 내가격 ’ 에 있다면 (즉, 행사가격이나 결제가격이 그 회계기간의 평균시장가격보다 높으면), 주당이익에 대한 잠재적 희석효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는가? a)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충분한 수의 보통주를 그 회계기간의 평균시장가격으로 기초에 발행한다고 가정하였는가? b) 주식발행으로 유입된 현금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즉, 자기주식의 매입)로 사용한다고 가정하였는가? c) 증가될 보통주식수 (즉, 발행할 것으로 가정하는 보통주식수와 계약을 이행할 경우 받게 되는 보통주식수의 차이)는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하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소급수정	
33D	IAS 33.64	유통되는 보통주식수나 잠재적보통주식수가 자본금전입, 무상증자, 주식분할로 증가하였거나 주식병합으로 감소하였다면, 비교표시하는 모든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소급하여 수정하였는가?	
33D	IAS 33.64	유통되는 보통주식수나 잠재적보통주식수가 자본금전입, 무상증자, 주식분할로 증가하였거나 주식병합으로 감소하였다면, 이러한 변동이 보고기간후와 재무제표의 발행이 승인된 날 사이에 발생하였다면 당기와 표시되는 이전 기간의 주당이익을 새로운 유통보통주식수에 근거하여 재계산하였는가?	
33A	IAS 33.64	오류의 수정과 회계정책의 변경을 소급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를 반영하여 비교표시하는 모든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수정하였는가?	
33A,B	IAS 33.65	주당이익의 계산과정에 사용한 가정이 달라지거나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더라도 표시되는 전기 이전 기간의 희석주당이익은 재작성하지 아니하는가?	

IAS34 중간재무보고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 및 중간기간의 전체 재무제표 또는 요약재무제표에 적용할 인식과 측정원칙을 규정한 IAS 34 의 요구사항에 대해 Deloitte 의 표시와 공시 Checklist 를 참조하시오 2006 년 7 월 발행된 IFRIC 10 *중간재무보고와 손상*은 영업권 및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과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IAS 34 에 따라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후속기간에 환입될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음 IFRIC 10 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AS 36 *자산손상*,IAS 39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관련 질문서를 참조하시오	

IAS 36 자산손상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본 질문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 호를 다루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 호는 자산의 장부가액이 회수가능가액보다 크지 않음을 확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만약 자산의 장부가액이 회수가능가액보다 크다면, 자산은 손상되었다고 표현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 호는 기업으로 하여금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주요 이슈는 손상의 징후를 결정하는 방법과 손상차손의 인식방법 그리고 손상차손환입 인식시기 등이다.* *2006 년 7 월, IFRIC 10-"중간재무보고와 손상"이 공표되었으며 동 해석서는 중간기간에 인식된 특정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모든 자산의 손상에 관한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자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재고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2 호 '재고자산' 참조)* *b)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1 호 '건설계약' 참조)* *c) 이연법인세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2 호 '법인세' 참조)* *d)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9 호 '종업원급여' 참조)* *e)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 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 *f)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IAS 40 '투자부동산' 참조)* *g) 공정가치에서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하 '순공정가치'라 한다)으로 측정되는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41 호 '농림어업' 참조)* *h) 이연신계약비와 IFRS 4 '보험계약'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계약상 권리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i) 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또는처분자산집단)* *상기 언급한 자산들은 각각 적용되는 기준서가 인식과 측정에 대한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IAS 36은 이들 자산들에 적용하지 않는다.* ***IAS 36(따라서, 본 질문서도)에서 자산(assets)이라 함은, 해당부분이 구체적으로 CGU 라고 언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자산(individual assets)과 현금창출단위(Cash-generating units: CGU)를 모두 포괄하며 관련 규정은 개별자산과 현금창출단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정의	
		손상차손은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다.*	
		순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현금창출단위이란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이다.*	
		공동자산이란 *검토대상 현금창출단위와 그 밖의 현금창출단위 모두의 미래현금흐름에 기여하는 자산이다. 단, 영업권은 제외한다.*	
		처분비용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이다. 단, 금융원가 및 법인세비용은 제외한다*	
		예비질문	
		다음의 물음에 "예"라 답한 경우 관계된 세부준수질문에 답하시오.	
36A		회사는 원가법으로 측정하는 유형자산이나 투자자산 혹은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는가?	
36B		회사는 회사내의 다른사업과는 독립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다른 부서, 사업단위, 지점, 판매점을 보유하고 있는가? 혹은	
		회사는 자회사, 관계회사, 조인트벤처에 투자하고 있는가?	
36C		회사는 자산이 손상 징후가 존재하는 자산을 인식하고 있는가?(질문 36A 참고)	
36D		회사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는가?	
36E		회사에는 다른 부서/사업단위와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않지만, 이러한 다른 부서나 사업단위를 위해 존재하는 기업자산(예를들면, 본사의 건물이나, EDP 시설 혹은 연구센터)이 존재하는가?	
36F		회사는 전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는가?	
36G		회사는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혹은 아직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는가?	
		세부준수질문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36A, C	IAS 36.9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는가?	
36A, C	IAS 36.9	만약 손상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가?	
		Note: 자산의 장부가액이 회수가능가액을 초과한다면, 동 자산은 손상된 것이다.	
36G	IAS 36.10	자산손상의 징후여부와는 상관없이, 기업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 대해 매년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을 비교하는 테스트를 수행하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36.24 IAS 36.24	*Notes:* *1) 이 손상검사는 매년 동일시점에 수행되어진다면, 일년중 언제라도 수행되어질 수 있다. 다른 무형자산은 상이한 시점에 손상검사되어질 수 있다. 더 자세한 설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6 호의 15,16 문단을 참고* *2)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에 대해 최근에 실시한 상세한 계산결과를 당기의 손상검사에 이용할 수 있다.* •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동안 창출되는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무형자산이 포함되는 현금창출단위의 일부로서 당해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를 하는 경우, 당해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가 최근의 회수가능액을 계산한 후로 중요하게 변동하지 않았다.* • *최근에 실시한 계산결과에 따른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였다.* • *최근 회수가능액을 계산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변화된 상황을 분석해 볼 때, 현재시점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	
36G	IAS 36.10	자산손상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무형자산에 대해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을 비교함으로써 매년 손상검사를 하는가?	
36G	IAS 36.10	*(비한정내용연수 혹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무형자산이 회계연도 중에 최초로 인식되었다면, 무형자산은 당해 회계연도 말 전에 손상을 검사하였는가?*	
36D	IAS 36.10	자산의 손상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은 사업결합과정에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6 호 80 내지 99 문단(아래참조)에 따라 손상을 매년 검사하는가?	
36A, C	IAS 36.12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여부를 평가할 때, 최소한으로 다음 징후들을 고려하라. <u>외부정보</u> a) 회계기간 중에 자산의 시장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준보다 중요하게 더 하락하였다. b) 기업 경영상의 기술 시장 경제 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c) 시장이자율(시장에서 형성되는 그 밖의 투자수익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회계기간 중에 상승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중요하게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d) 기업의 시가총액이 당해 순자산 장부금액보다 작다. <u>내부정보</u> e) 자산이 진부화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가 있다. f) 회계기간 중에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가 자산의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에서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 이러한 변화에는 자산의 유휴화, 당해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조정하는 계획, 예상 시점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하는 계획 그리고 내용연수를 비한정에서 유한한 것으로 재추정하는 일 등을 포함한다.	
		g)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보고를 통해 얻을 수 있다.	
		Note: 상기 정보는 손상될 수 있는 자산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된다. - 손상징후의 존재는 반드시 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공식적인 손상평가의 유인으로 작용된다. 위에서 언급한 징후들이 모든 것을 포괄한 것은 아니다. 공식적인 손상검사를 필요로 하는 다른 손상징후들이 존재할 수 있다.	
36A, C	IAS 36.14	아래의 내부보고 징후들이 자산의 손상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되었는가? a) 자산의 매입, 운영 및 관리에 쓰이는 현금지출액이 당초 예상수준을 중요하게 초과한다. b) 자산에서 발생하는 실제 순현금흐름이나 실제 영업손익이 당초 예상수준에 비해 중요하게 악화된다. c) 자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현금흐름이나 예상 영업손익이 중요하게 악화된다. d) 자산에서 발생하는 순현금흐름 또는 영업손익 각각의 당기 실적치와 미래 예상치를 합산한 결과, 순현금유출이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Note: 위에서 수행한 검토결과 자산손상의 징후가 발견되었다면, 회사는 IAS 36. 9 에 따라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해야한다. *비한정내용연수를 지닌 무형자산, 아직 사용하지 않은 무형자산 혹은 사업결합과정에서 취득한 영업권이 아닌 자산에 대해, 잠재적인 손상차손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회사는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36A, C	IAS 36.17	자산손상의 징후가 존재한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자산의 잔존가치를 검토하고 조정하였는가?	
		회수가능액의 측정	
36C	IAS 36.18	IAS 36. 10 에 의해 그렇게 하도록 요구될 때, 기업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중 큰 금액으로 회수가능가액을 평가하였는가?	
36C	IAS 36.20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의 공정한 거래로 인한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획득가능한 신뢰성있는 추정액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순공정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경우, 회사는 회수가능액으로 사용가치를 사용하였는가?	
	IAS 36.19	*Note: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때에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모두를 항상 추정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순공정가치나 사용가치 중 하나의 금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자산이 손상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금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36C	IAS 36.21	자산의 사용가치가 순공정가치를 중요하게 초과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 기업은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을 고려했는가?	
		Note: 처분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가 통상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처분 전까지 계속사용으로 유입될 미래현금흐름이 중요하지 않아 사용가치의 대부분이 순처분가액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36C	IAS 36.22	자산에서 창출되는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구별된다면 회수가능액을 개별 자산별로 결정하였는가?	
36C	IAS 36.22	개별자산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과는 완전 별개로 현금유입이 발생되는 경우,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거나 자산의 사용가치가 순공정가치와 거의 같을 것으로 추정되고 순공정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자산이 속해있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였는가?	
		Note: 자산이 속해있는 현금창출집단를 인식하고, 현금창출집단의 손상차손을 결정하기 위한 지침에 대해서는 본 질문서의 36D 관련 세부준수질문을 참고하라.	
		순공정가치	
36C	IAS 36.25-27	자산의 순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회사는 다음 정보들을 이용하였는가(주어진 순서대로)? a)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의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을 통해 합의된 가격에서 자산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를 조정한 금액 b) 자산이 정상거래시장에서 거래된다면 순공정가치는 시장가격(일반적으로 현행 매수호가)에서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	
		Note: 만약 현행 매수호가를 이용할 수 없다면 최근의 거래가격을 근거로 순공정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거래일과 추정일 사이에 경제적 상황이 중요하게 변동하지 않아야 한다.	
		c) 자산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이나 정상거래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고려하여 순공정가치를 결정하였는가?	
		Note: 경영진이 불가피하게 자산을 즉시 매각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매각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 때 동종산업 내에서 최근에 있었던 유사한 자산의 거래결과를 고려한다.	
36C	IAS 36.28	순공정가치를 결정하는데 있어, 자산을 처분하기 위한 직접과 증분비용만을 제외하였는가?	
		Note: *처분비용은 순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차감하여 반영한다. 다만, 이미 부채로 인식된 처분비용은 제외한다. 처분비용의 예로는 법률비용, 인지세 및 이와 유사한 거래세, 자산제거비용, 자산을 매각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증분비용 등이 있다. 그러나 자산처분에 따르는 사업의 축소나 조직변경과 관련된 (IAS 19 에서 정의된) 해고급여 및 기타 비용은 자산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비용이 아니다.*	
36C	IAS 36.29	자산과 함께 부채도 이전되는 일부 자산매매거래에서는 자산과 부채 각각의 순공정가치가 아니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순공정가치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IAS 36. 78(아래참조)을 고려하였는가?	
		사용가치	
36C	IAS 36.30	자산의 사용가치계산에 다음을 반영하였는가? a)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b)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의 변동가능성에 대한 기대치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c) 현행 무위험시장이자율로 반영하는 화폐의 시간가치 d) 자산의 고유위험에 대한 보상가격 e)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들이 반영하는 비유동성과 같은 기타 요소들 *Note: 문단 30 b), d) 및 e) 에서 언급된 요소들은 미래현금흐름 또는 할인율에서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의 변동가능성에 대한 기대치를 미래현금흐름 또는 할인율 중 어느 것에서 조정하여 반영하더라도 그 결과는 미래현금흐름의 기대현재가치, 즉 발생가능한 모든 결과의 가중평균값을 반영한다. 부록 A 는 자산의 사용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현재가치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u>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근거</u>	
36C	IAS 36.33	사용가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a) 현금흐름은 자산의 잔여내용연수동안의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추정한다. 이 때 내부증거보다 외부증거에 더 큰 비중을 둔다. *Note: 외적요소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 b) 현금흐름은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의 재무예산을 기초로 추정한다. 그러나 미래의 구조조정 또는 자산 성능의 향상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은 제외한다. *Note: 이러한 재무예산에 기초한 추정 대상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장 5 년으로 한다.* c) 최근 재무예산의 대상 기간 이후에 대한 성장률은 고정되거나 계속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며, 이러한 성장률은 기업의 제품, 기업이 속한 산업, 기업이 영업을 하는 국가 및 자산이 사용되는 시장의 장기평균성장률을 초과할 수 없다. *Note: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가하는 성장률을 사용하거나 장기평균성장률을 초과하는 성장률을 사용할 수 있다.*	
36C	IAS 36.34	경영진은 과거에 추정한 현금흐름과 실제 발생한 현금흐름 사이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분석하여 현행 현금흐름추정에 기초가 되는 가정이 합리적인지를 평가하였는가? *Note: 실제현금흐름이 창출될 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후속사건이나 상황의 영향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면, 현행 현금흐름추정시 과거 실제 발생한 결과와 일관된 가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36C	IAS 36.35	5 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재무예산에 근거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경우,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시현할 수 있고 미래현금흐름 추정을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가?	
36C	IAS 36.36	자산의 내용연수 말까지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재무예산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간에 대해서는, 재무예산에 근거한 현금흐름추정에 일정한 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경우, 제품 또는 산업의 수명주기와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에 부합하지 않는 한 후속기간에 대해 적용되는 성장률은 증가할 수 없고 일정하거나 감소하는가? *Note: 경우에 따라서는 성장률이 영(0) 이 되거나 음(-) 의 값이 될 수도 있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u>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구성</u>	
36C	IAS 36.39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는 다음을 포함하는가? a) 자산의 계속 사용으로 인한 현금유입에 대한 추정 b) 자산의 계속 사용으로 인한 현금유입을 창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고(자산의 사용준비를 위한 현금유출 포함) 자산에 직접 귀속되거나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당해 자산에 배분될 수 있는 현금유출에 대한 추정 *Note: 위의 현금유출은 자산을 사용가능한 상태까지 준비하는데 필요한 현금유출, 자산사용에 합리적이며 일관되게 배분된 미래 간접비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자산을 사용하는데 드는 현금유출을 포함한다.* c) 내용연수 말에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수취(또는 지급)될 순현금흐름	
36C	IAS 36.40	인율에 인플레이션효과가 반영될 경우 미래현금흐름은 명목금액으로 추정하고, 할인율에 인플레이션효과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미래현금흐름은 실질금액으로 추정하였는가? *Note: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관된 가정을 미래현금흐름과 할인율의 추정치에 반영해야 한다.*	
36C	IAS 36.40	미래현금흐름이 실질금액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인플레이션과 관계없는 자산의 실질가격의 등락은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고려하였는가?	
36C	IAS 36.43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는가? a) 창출하는 현금흐름이 검토대상 자산의 현금흐름과 거의 독립적으로 구별되는 자산으로부터의 현금유입(예: 수취채권과 같은 금융자산) b) 이미 부채로 인식된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현금유출(예: 매입채무, 퇴직급여채무, 충당부채)	
36C	IAS 36.44	미래현금흐름은 자산의 현재 상태를 근거로 추정하였는가?	
36C	IAS 36.44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유입이나 유출을 제외하였는가? a)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 b) 자산 성능의 향상	
36C	IAS 36.47	기업이 구조조정을 확정한 경우에는 다음을 고려하였는가? a)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의 재무예산을 근거로 자산의 사용가치를 결정한다. 이 때 구조조정으로 예상되는 원가절감이나 기타 효익을 반영하여 미래 현금유입 및 현금유출을 추정한다. b) 구조조정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유출의 추정은 IAS 37 에 따라 구조조정충당부채에 포함한다. *Note: 적용사례 5 는 미래의 구조조정이 사용가치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예시한다.*	
36C	IAS 36.48	자산 성능의 향상에 관련된 현금유출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성능향상으로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유입은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서 제외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 IAS 36 의 적용사례 6 참조	
36C	IAS 36.49	현금창출단위가 서로 다른 내용연수의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해 자산 모두가 현금창출단위의 계속적인 영업에 필수적인 경우에 이러한 현금창출단위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연수가 짧은 자산의 대체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유지의 하나로 보았는가?	
36C	IAS 36.49	개별 자산이 내용연수가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자산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연수가 짧은 항목의 대체는 일상적인 관리유지의 하나로 보았는가?	
36C	IAS 36.50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는가? a) 재무활동으로부터의 현금 유입이나 유출 b) 법인세납부액 또는 법인세환급액 *Note: 할인율 계산시 화폐의 시간가치가 이미 고려되었고 IAS 36 에서는 세전할인율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관성을 위해 현금흐름도 위 항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36C	IAS 36.52	내용연수 말에 자산의 처분으로 수취(또는 지급)할 순현금흐름의 추정치는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수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추정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추정하였는가?	
36C	IAS 36.53	53 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에서 자산처분으로 수취(또는 지급)할 순현금흐름은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산의 순공정가치와 유사한 방법으로 추정하였는가? a) 내용연수가 종료되었고 당해 자산이 사용될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운용되었던 유사한 자산에 대해 추정일 현재 형성된 가격을 사용한다. b) 위 a)의 가격에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에 따른 미래 가격 상승과 특정 가격 등락을 모두 조정한다. *Note: 그러나 당해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동안에 창출되는 미래현금흐름과 할인율의 추정치에 일반적인 인플레이션효과를 제외하였다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추정치에서도 그 효과를 제외한다.*	
		<u>외화표시 미래현금흐름</u>	
36C	IAS 36.54	미래현금흐름은 창출될 통화로 추정하고 그 통화에 대한 적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할인하였는가? *Note:* 외화로 표시되는 현재가치는 사용가치계산 시점의 현물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u>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한 사용가치 측정</u>	
36C	IAS 36.A2	회사는 현재가치 계산시, 상황에 따라 사용가치 계산에 사용할 전통적 접근법과 기대현금흐름 접근법중 하나를 사용하였는가? *Note: IAS 36 의 부록 A(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함)에 상세히 설명되어있는 전통적 접근법과 기대현금흐름 접근법과 관련한 추가 질문들은 아래를 참고한다.*	
36C	IAS 36.A3	미래현금흐름과 이자율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체적인 기법은 측정대상 자산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일반원칙은 어떤 현재가치기법보다 우선 적용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a)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자율에는 추정미래현금흐름에 내재된 가정과 일관된 가정을 반영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부 가정이 이중으로 반영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 b) 추정미래현금흐름과 할인율에는 편의가 개입되지 않아야 하며 측정대상 자산과 관계없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c) 추정된 미래현금흐름이나 할인율은 단일의 예측치(예: 가능한 금액 중 가장 발생가능성이 높은 값, 최소값 또는 최대값)가 아니라 가능한 예측치의 변동범위를 반영한다. *전통적 접근법*	
36C	IAS 36.A6	측정대상 현금흐름에 대한 적정 할인율을 그 다른 자산의 관측가능한 이자율로부터 추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였는가? a) 할인될 일련의 현금흐름을 식별한다. b) 시장에서 유사한 현금흐름속성을 가진 다른 자산을 찾는다. c) 두 항목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 자산에서 발생할 일련의 현금흐름을 비교한다. 예를 들어, 양자 모두 약정현금흐름인지 또는 하나는 약정현금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추정된 미래현금흐름인지를 검토한다. d) 한 항목에는 존재하나 다른 항목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요소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예를 들어, 두 자산의 유동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e) 두 자산에서의 일련의 현금흐름이 경제상황 변화에 대해 유사하게 반응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미래현금흐름 접근법*	
36C	IAS 36.A8	회사는 IAS 36 의 부록 A 의 문단 A8 의 예시(이 체크리스트에는 제시되어있지 않음)와 일관된 기대현금흐름법을 적용하였는가? *Note: 기대현금흐름 접근법은 가장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하나의 현금흐름보다는 가능한 현금흐름의 모든 예상치를 사용한다. 기대현금흐름 접근법도 현금흐름의 시기가 불확실할 때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한다.*	
36C	IAS 36.A11	제한된 정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대현금흐름법을 적용할 때 다음의 예시들을 고려하였는가? a) 추정금액은 50 원과 250 원 사이에 있지만 그 범위 내의 어떠한 값도 다른 값보다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추정기대현금흐름은 150 원[(50 원+250 원)/2]으로 결정된다. b) 추정금액은 50 원과 250 원 사이에 있고 가장 발생가능성이 높은 값은 100 원이지만 범위 내 각각의 값에 부여될 확률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추정기대현금흐름은 133.33 원[(50 원+100 원+250 원)/3]으로 결정된다. c) 추정금액은 50 원, 250 원, 또는 100 원이고 그 확률이 각각 10%, 30%, 60%인 경우, 추정기대현금흐름은 140 원[(50 원×0.10)+(250 원×0.30)+(100 원×0.60)]으로 결정된다. *Note: 각각의 경우에 자산의 사용가치를 기대현금흐름으로 추정하는 것이 최소값, 가장 발생가능성이 높은 값 또는 최대값 중 하나로 결정하는 것보다 더 적절한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u>할인율</u>	
36C	IAS 36.55	할인율은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고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인가?	
	IAS 36.56	*Note: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고유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할인율은, 그 자산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발생시기 및 위험 면에서 동일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투자안을 선택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과 같다. 이러한 할인율은 유사한 자산에 대해 현행 시장거래에서 형성되는 내재이자율, 또는 용역잠재력이나 위험의 측면에서 평가대상 자산과 유사한 자산(또는 자산의 포트폴리오)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36C	IAS 36.A15	자산의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어떠한 접근법을 채택하든 간에 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자율은 추정현금흐름에서 조정된 위험을 다시 반영하지 않는가?	
		Note: 그렇지 않으면 일부 가정의 효과가 이중으로 반영될 수 있다.	
36C	IAS 36.A16	자산의 고유할인율이 시장에서 직접 이용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인율을 추정하기 위해 대용치를 사용했는가?	
		Note: 대용치를 사용하는 목적은 가능한 한 다음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하는 데 있다. • *자산의 내용연수 말까지의 기간에 대한 화폐의 시간가치* • *문단 A1 b), (d) 및 (e) 에 기술된 요소. 다만 당해 요소가 추정현금흐름에서 조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36C	IAS 36.A17	대용치를 사용하여 자산의 고유할인율을 추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과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한 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 b) 기업의 증분차입이자율 c) 기타 시장차입이자율	
	IAS 36.A18	*Note: 그러나, IAS 38. A17 에서 다음을 조정한다.* • *자산의 추정현금흐름과 관련된 고유위험에 대해 시장이 평가하는 방법을 반영한다.* • *자산의 추정현금흐름과 관련이 없거나 이미 추정현금흐름에서 조정된 위험은 제외한다.* *또한 국가위험, 환위험 및 가격위험과 같은 위험을 고려한다.*	
36C	IAS 36.A21	자산의 사용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단일 할인율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자산의 사용가치가 기간별 위험의 차이 또는 이자율의 만기구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에는 미래기간별로 별도의 할인율을 사용하는가?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	
36C	IAS 36.59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켜야 하며 감소된 금액은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하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36C	IAS 36.60	자산이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재평가되어 기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36C	IAS 36.60	재평가된 자산의 손상차손은 당해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재평가액의 감소로 처리하였는가?	
	IAS 36.61	*Note: 따라서, 재평가되지 않은 자산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된 자산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에서 발생한 재평가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재평가잉여금에서 직접 차감하여 인식한다.*	
36C	IAS 36.62	손상차손으로 추정된 금액이 관련 자산의 장부금액보다 클 때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만 부채로 인식하는가?	
36C	IAS 36.63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자산의 잔여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손상차손의 인식 후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상각비를 조정하였는가?	
36C	IAS 36.64	손상차손이 인식될 경우 IAS 12 에 따라 수정된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을 비교하여 관련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를 결정하였는가?	
		Note: IAS 36 의 적용사례(Illustrative Examples) 3 을 참조하시오.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36B	IAS 36.66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만약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자산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했는가?	
	IAS 36.67	*Note: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할 수 없다.* • *자산의 사용가치가 순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추정할 수 없다.(예를 들어,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동안에 창출되는 미래현금흐름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추정할 수 없는 경우)* • *자산에서 창출되는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에서 창출되는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구별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가치 즉, 회수가능액은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다.*	
36B	IAS 36.70	자산이나 자산집단이 생산하는 산출물을 거래하는 정상거래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출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업 내부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 자산이나 자산집단을 하나의 현금창출단위로 식별하였는가?	
36B	IAS 36.70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가 창출하는 현금유입이 내부이전가격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에서 형성될 미래 가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다음을 추정하였는가? a) 당해 산출물을 생산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미래현금유입 b) *내부이전가격의 영향을 받는 다른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미래현금유출*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36.71	*Note: 자산이나 자산집단이 생산하는 산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의 다른 현금창출단위가 사용하더라도(예를 들어, 제조공정상 중간단계에 있는 제품) 기업이 당해 산출물을 정상거래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면 그 자산이나 자산집단은 별도의 현금창출단위를 형성한다. 왜냐하면 그 자산이나 자산집단이 창출하는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구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출물을 생산하는 현금창출단위 또는 내부이전가격의 영향을 받는 다른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 관련된 재무예산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정보에 포함된 내부이전가격이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에서 형성될 생산물의 미래 가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그 정보를 적절히 조정한다.*	
36B	IAS 36.72	현금창출단위는 동일 자산이나 동일 유형의 자산에 대해서는 변경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 회계기간마다 일관되게 식별하였는가?	
36B	IAS 36.74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 경영진은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자산의 회수가능액 결정에 대해 규정하는 문단 19 ~ 57 에 따라 결정하였으며 이 경우 동 문단에서 언급하는 자산은 현금창출단위로 보았는가?	
36B	IAS 36.75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방법과 일관되게 결정하였는가?	
	IAS 36.76	*Note: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다음을 고려한다.* • *현금창출단위에 직접 귀속되거나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배분되어,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미래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포함한다.* •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는 이미 인식된 부채의 장부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인식된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를 결정할 때 현금창출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 및 이미 인식된 부채와 관련된 현금흐름을 제외하기 때문이다(문단 28과 43 참조).*	
	IAS 36.77	*회수가능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자산을 통합하는 경우 현금창출단위에는 관련 현금유입을 직접 창출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금창출단위가 실제로 손상되었더라도 충분히 회수가능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이 현금창출단위의 미래현금흐름에 기여하더라도 현금창출단위에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배분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산의 예로는 영업권이나 본사자산과 같은 공동자산이 있다(IAS 36. 80~103에서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자산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36B	IAS 36.78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하는 거래에서 구매자가 관련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에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부채의 장부금액은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사용가치를 결정할 때 차감하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기 위해 이미 인식된 부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하는 거래에서 구매자가 관련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또는 최종 처분과정에서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흐름)는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의 일괄처분 시 추정매각가격에서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36B	IAS 36.79	실무적인 이유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현금창출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과 이미 인식된 부채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그 자산의 장부금액만큼 증가하고 그 부채의 장부금액만큼 감소하는가? ***영업권*** <u>영업권의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배분</u> *Note: IAS36. 80 은 손상테스트를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영업권배분의 기본적인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영업권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는데 가해지는 제한 중 하나는 영업권이 배분되는 단위는 부문별보고를 위한 부문(segment)보다는 큰 단위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IFRS 8 의 적용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IAS 14 적용시 요구사항과 IFRS 8 적용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하시오.*	
36D	IAS 36.80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다.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는가?	
36D	IAS 36.80	영업권이 배분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가? a) 내부관리목적상 영업권을 감독하는 기업 내 최소단위이어야 한다. b) IAS 14 '부문보고'에 따라 결정되는 기업의 일차적 또는 이차적 보고양식에 근거한 부문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IFRS 8 을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2009 년 1 월 1 일 또는 그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 및 조기적용 허용)	
36D	IAS 36.80	영업권이 배분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가? a) 내부관리목적상 영업권을 감독하는 기업 내 최소단위이어야 한다. b) IFRS 8 '영업부문'에 따라 결정되는 영업부문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36D	IAS 36.84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취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말 이전에 배분할 수 없는 경우, 취득일 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말까지 그 영업권을 배분하였는가?	
36D	IAS 36.86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이 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a)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b)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창출단위 내에 남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36D	IAS 36.87	영업권이 배분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현금창출단위의 구성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그 영향을 받는 모든 현금창출단위에 영업권을 재배분하였는가?	
		Note: 영업권을 재배분하기 위해 기업이 사용한 접근방법은 현금창출단위내에서 영업을 처분할 때 사용한 접근법과 유사하다. (상기 참조)	
		<u>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u>	
36D	IAS 36.88	현금창출단위와 관련된 영업권이 해당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되지 않았다면(예: 영업권이 현금창출단위집단에만 배분될 수 있는 경우-IAS 36 문단 81 참조), 해당 CGU 에 손상징후가 존재할때마다 회사는 다음을 수행하였는가? a) 장부가액(영업권 제외) 과 회수가능가액을 비교하여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을 검사하였는가? b) 필요하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는가?	
36D	IAS 36.89	IAS36. 88 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이 포함되고 그러한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현금창출단위의 일부로서만 실시될 수 있다면, 그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는 IAS 36. 10 에 따라 매년 실시하였는가?	
36D	IAS 36.90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a)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였는가? b)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는가?	
		Note: IAS 36. 104 (아래 참조)는 이러한 상황에서 손상차손의 배분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나열하고 있다.	
		<u>소수주주지분(본 용어는 2008 년 IFRS 3 개정으로 인하여 '비지배지분'이라는 용어로 변경됨)</u>	
36D	IAS 36.92	영업권을 포함하면서 소수주주지분이 존재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하기 위해서 명목상 소수주주지분에 귀속되는 영업권을 포함시키기 위해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가산조정하였는가?	
	IAS 36.93	*Note: 명목상 조정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그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여부를 판단한다. 발생한 손상차손은 IAS 36. 104 에 따라 먼저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액한 다음 잔여손상차손을 배분한다.* *영업권은 지배회사지분 상당액까지만 인식되므로, 영업권과 관련된 손상차손은 각각 지배회사지분과 소수주주지분에 귀속될 금액으로 구분하고 지배회사지분만 영업권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36D	IAS 36.94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당해 현금창출단위의 명목상 조정된 장부금액에 미달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이 영업권과 관련된 총손상차손(소수주주지분 귀속분 포함)보다 큰 경우에는, 영업권과 관련된 총손상차손을 제외한 잔여 미달액을 IAS36. 104에 따라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의 장부금액 비율로 배분하였는가?	
		Note: 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를 100%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당해 현금창출단위(non-wholly-owned CGU)에 대한 손상검사를 예시하는 적용사례 7(IAS 36 의 지침)을 참조하시오.	
		<u>손상검사의 시점</u>	
36D	IAS 36.96	회사는 영업권이 배분된 CGU 의 손상검사를 이전 기간과 같은 시기에 수행하였는가?	
		Note: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손상검사는 회계연도 중 어느 때라도 할 수 있으며 매년 같은 시기에 실시한다.	
36D	IAS 36.96	회계연도 중에 일어난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는 당해 회계연도 말 전에 손상검사를 하였는가?	
36D	IAS 36.97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자산에 대해서 당해 현금창출단위와 동일한 시점에 손상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권을 포함하는 당해 현금창출단위보다 그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를 먼저 실시하였는가?	
36D	IAS 36.97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 당해 현금창출단위집단과 동일한 시점에 손상검사를 하는 경우에도, 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집단보다 그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사를 먼저 실시하였는가?	
36D	IAS 36.99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에 대해 직전 회계기간에 실시한 최근의 상세한 측정결과를 당기에 그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할 때 이용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가? a) 최근의 회수가능액을 계산한 후로,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가 중요하게 변동하지 않았다. b) 최근 계산결과에 따른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였다. c) 최근의 회수가능액을 계산한 후로 발생한 사건과 변화된 상황을 분석해 볼 때, 현재시점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	
		공동자산	
36E	IAS 36.102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손상테스트를 할 때, 검사대상 현금창출단위와 관련된 모든 공동자산을 식별하였는가?	
36E	IAS 36.102	공동자산의 장부가액중 일부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다면,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가액이 회수가능가액을 초과할 때 회사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는가?	
36E	IAS 36.102	공동자산의 장부금액을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는가? a) 공동자산을 제외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비교하고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b) 검토대상 현금창출단위를 포함하면서 공동자산의 장부금액이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을 식별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c) 위 b)에서 식별된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을 그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이때 비교대상 장부금액에는 당해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공동자산의 장부금액을 포함한다.	
		Note: 공동자산에 대한 이러한 규정을 적용한 예를 제시하는 적용사례 8(IAS 36 의 지침)을 참조하시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36B, C	IAS 36.104	현금창출단위(또는 영업권이나 공동자산이 배분된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는가?	
36B, C	IAS 36.104	손상차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가? a) 우선,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b)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비례로 배분한다.	
		Note: 장부금액의 감소는 개별자산의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하고 IAS 36. 60 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다(상기 참조).	
36B, C	IAS 36.105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손상차손을 배분할 때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가장 큰 금액 이하로 감소시킬 수 없도록 하였는가? a) 순공정가치(결정가능한 경우) b) 사용가치(결정가능한 경우) c) 영(0)	
36B, C	IAS 36.105	자산에 손상차손을 배분하는 것이 한계가 존재할 때 (IAS 36. 105), 자산에 배분되었을 손상차손이 비례적으로 CGU 의 다른 자산에 배분되었는가?	
36B, C	IAS 36.107	현금창출단위 내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는가?(IAS 36. 67 참조). a) 개별 자산의 순공정가치와 IAS 36. 104 와 105 에서 기술된 절차에 따라 배분한 결과치 중에서 큰 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b) 관련 현금창출단위에서 손상차손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는 개별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36B, C	IAS 36.108	현금창출단위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배분하여 인식하고 남은 잔여손상차손은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손상차손환입	
36F	IAS 36.110	매 보고일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는가?	
36F	IAS 36.111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을 고려하였는가?	
		Note: 다음 징후들의 목적은 더 이상 손상되지 않은 자산을 인식하기 위함이다. 손상징후가 존재한다는 것은 손상검사가 정식적으로 필요함을 의미한다.	
		외부정보 a) 자산의 시장가치가 회계기간 중에 중요하게 증가하였다. b) 기업 경영상의 기술 시장 경제 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당해 기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c) 시장이자율이 회계기간 중에 하락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중요하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내부정보 d) 기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가 자산의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에서 회계기간 중에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는 자산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산이 속하는 영업을 구조조정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e)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수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보고를 통해 얻을 수 있다.	
36F	IAS 36.110	상기에서 수행된 검토에서 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지표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손상의 정도가 감소했다는 지표를 제공하는 경우 기업은 그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였는가?	
36F	IAS 36.113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손상차손에 대해서 그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그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당해 자산에 적용되는 IFRS 에 따라 당해 자산의 잔여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상각방법) 또는 잔존가치에 대해 검토하였는가?	
36F	IAS 36.114	자산에 대하여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36F	IAS 36.114-116	*IAS 36. 114 의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경우(상기 참조), 그 자산의 장부금액(IAS 36. 117 에서 설명된 경우를 제외하고-아래 참조)은 회수가능액으로 환입되었는가?*	
		Note: 손상차손환입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 당해 자산의 사용이나 매각에서 추정되는 용역잠재력의 증가를 반영한다. 추정의 변경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 *회수가능액 측정기준(순공정가치 또는 사용가치)의 변경* • *회수가능액을 사용가치로 결정하는 경우 추정된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발생시기 또는 할인율의 변경* • *회수가능액을 순공정가치로 결정하는 경우 순공정가치의 구성요소에 대한 추정변경* *단순히 미래 현금유입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현재가치가 증가하는 이유만으로 자산의 사용가치는 장부금액보다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자산의 용역잠재력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커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간의 경과(때때로 할인액의 '상각'이라고 한다.)에 따른 현재가치의 증가만으로는 손상차손을 환입하지 아니한다.*	
		개별자산의 손상차손환입	
36F	IAS 36.117	*기업이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36F	IAS 36.118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이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후 잔액을 초과한다면 이는 당해 자산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하여 재평가 회계처리하였는가?	
36F	IAS 36.119	만일 다른 기준서에 따라 재평가된 경우가 아니라면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36F	IAS 36.119	만약 당해 자산이 IAS 16 등과 같이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재평가된 경우라면 재평가금액의 증가로 회계처리하였는가?	
	IAS 36.120	*Note: 재평가된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재평가잉여금 계정으로 자본에 직접 부가한다. 그러나 당해 재평가 자산의 손상차손을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부분까지는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6F	IAS 36.121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자산의 잔여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후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상각비를 조정하였는가?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	
36B, F	IAS 36.122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들의 장부금액비례로 배분하였는가?	
36B, F	IAS 36.122	이러한 장부금액의 증가는 개별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으로 회계처리하고, 문단 119 에 따라 인식하였는가?	
36B, F	IAS 36.123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을 배분할 때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키지 않았는가? a) 회수가능액(결정가능한 경우) b)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당해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장부금액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특정 자산에 배분되지 않는 손상차손환입액은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권을 제외한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비례로 배분한다.	
36D,F	IAS 36.123	손상차손환입의 배분에 한계가 존재할 때(IAS 36. 123), 자산에 배분되었을 손상차손환입은 영업권을 제외한 현금창출단위의 다른 자산들에 비례적으로 배분되었는가?	
		영업권의 손상차손환입	
36D, F	IAS 36.124	기업은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지 않았는가?	
	IAS 36.125 IFRIC 10.8 IFRIC 10.10	*Note:* 1) *IAS 38 '무형자산'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영업권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난 후 후속기간에 증가된 회수가능액은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손상차손환입액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증가액으로 본다.* 2) *영업권의 손상차손의 환입금지는 IAS 34. 28 에 따라서 중간재무보고서나 기말보고서에 인식하였는지 상관없이 적용된다.* 3) *IFRIC 10 은 2006 년 11 월 1 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본 문단은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삭제하였음)*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본 질문서는 모든 충당부채 (구조조정 및 손실부담계약 포함),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을 규정하고 있는 IAS 37를 다룬다.	
		적용범위	
		IAS 37 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 *미이행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다만, 손실부담계약은 제외* • *다른 기준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경우* *IAS 37 은 IAS 39 '금융상품: 인식 및 측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보증 포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인 특정유형의 충당부채를 다루고 있는 다른 기준서들의 예(따라서, IAS 37 에서 다루지 않는)는 다음과 같다.* • *IAS 11 '건설계약'* • *IAS 12 '법인세'* • *IAS 17 '리스' [Note – IAS 17 에는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하는 운용리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IAS 37 을 적용한다.]* • *IAS 19 '종업원 급여'* • *IFRS 4 '보험계약' [Note – IFRS 4 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의 의무와 권리에 따라 발생하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이외의 보험자의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경우에는 IAS 37 을 적용한다]* • *IFRS 3 는 사업결합에서 인수한 충당부채에 대한 취득자의 회계처리를 다룬다.*	
		정의	
		충당부채: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부채:***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 *충당부채는 결제에 필요한 미래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과 같은 기타 부채와 구별된다.*	
		예비질문	
37A		*어떠한 예비질문에라도 "예"라고 답한 경우에는 관련 세부준수질문 (detailed compliance questions) 에 답하시오.* 기업은 보고기말 현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될 지급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현재의무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37B		기업은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또는 기업은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서 인식하지 아니한 현재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기업은 우발부채를 가지고 있는가?)	
37C		기업은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 (기업은 우발자산을 가지고 있는가?)	
37D		기업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그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당해 계약 (예: 기업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물의 장기리스)의 당사자인가? (기업이 손실부담계약의 당사자인가?)	
37E		기업은 사업구조조정 (즉, 경영진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사업의 범위 또는 사업수행방식을 중요하게 변화시키는 일련의 절차)을 계획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가?	
37F		기업은 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에서 발생하는 원가의 일부나 전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별도로 조성한 기금 (fund)이나 신탁 (trust)에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잠재적인 추가 출연의무를 가지고 있었는가?	
37G		기업은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럽연합지침 (WE&EE)에 준하는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사후처리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Note: 만약 해당 국가의 법에서 최종소비가전제품에서 발생한 신폐기물을 최종소비가전제품에서 발생한 구폐기물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루고 있다면,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12 의 적용체계에 근거하여 37G 의 예비질문을 적용한다. IAS 8 의 적용체계는 유럽연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가귀속모형과 유사한 방법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다른 규정에도 적합하게 적용된다*	
		세부준수질문 인식 *충당부채*	
37A	IAS 37.14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되는가? a) 기업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가지고 있다. b)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c) 당해 의무를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37A	IAS 37.15	현재의무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고려하여 보고기간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아니할 가능성보다 높은 경우에는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발생시킨 것으로 간주하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37.16	*Note: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는 대부분의 경우 분명하다. 드문 경우이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와 같이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혹은 당해 사건으로 현재의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 이용가능한 증거 (예를 들어,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를 고려함으로써 보고기간말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한다. 고려해야 할 증거에는 보고기간후사건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증거도 포함된다. 고려할 증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보고기간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고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 *보고기간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로 공시한다(IAS 37 의 문단 86 참조).*	
37A	IAS 37.17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이전에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이외에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의무발생사건이 발생하였는가? *Note: 의무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경우 (법적의무) 또는 당해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된 경우 (의제의무) 에만 이 조건을 충족될 것이다.*	
37A	IAS 37.18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부채만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는가 (즉, 미래 영업을 위하여 발생하게 될 비용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37A	IAS 37.19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인 과거사건에서 발생하는 의무만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는가? *Note: 예를 들어, 불법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환경정화비용의 경우에는 기업의 미래행위에 관계없이 당해 의무의 이행에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이 수반되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기업이 미래행위를 통하여 미래의 지출을 회피할 수 있다면, 당해 지출은 현재의무가 아니며 충당부채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37A	IAS 37.20	의무의 이행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충당부채를 인식하는가? *Note: 의무는 언제나 당해 의무의 이행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의무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대중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의무는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확약을 수반하게 되므로, 경영진 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기업이 자신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인 방법으로 보고기간말 이전에 상대방에게 의사전달되어야만 당해 결정은 의제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본다.*	
37A	IAS 37.22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입법 예고된 법규에 기초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한 경우 그 법규의 시행이 거의 확실한가? *Note: 법규제정을 둘러싼 수많은 서로 다른 상황으로 인하여 법규제정을 거의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특정 사건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특정 법규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당해 법규제정에 대해 거의 확실하게 확신을 갖기 어렵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37A	IAS 37.23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경우 (즉, 특정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아니할 가능성보다 높은 경우)에만 충당부채를 인식하는가?	
		Note: 현재의무의 존재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발 부채를 공시한다. 다만, 당해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37A	IAS 37.24	제품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 등 다수의 유사한 의무가 있는 경우 기업은 의무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은 당해 유사한 의무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는가?	
		Note: 비록 개별항목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고 기타 인식기준이 충족된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37A	IAS 37.25, 26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은 의무를 이행하는데 소요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였는가?	
		Note: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은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할 때 충분히 신뢰성 있는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 극히 드문 경우로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우발부채로 공시한다.	
		우발부채	
37B	IAS 37.27	기업은 우발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지 아니하는가?	
37B	IAS 37.29	기업이 제 3 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 기업은 이행할 전체의무 중에서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제 3 자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우발부채로 공시하였는가?	
		우발자산	
37C	IAS 37.31	기업은 우발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지 아니하는가?	
37C	IAS 37.33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시 된다면 관련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인식되었는가?	
		Note: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시 된다면 관련자산은 더 이상 우발자산이 아니고 당해 자산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측정	
		최선의 추정치	
37A	IAS 37.36	충당부채로 인식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인가?	
	IAS 37.37, 38	*Note: 인식되는 충당부채 금액은 기업이 보고기간말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 3 자에게 이전시키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동 금액에는 유사한 거래에 대한 경영자의 경험, 보고기간후사건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 및 가능한 경우 독립적인 전문가의 보고서가 고려되어야 한다.*	
37A	IAS 37.39	만약 측정하고자 하는 충당부채가 다수의 항목과 관련되는 경우 당해 의무는 모든 가능한 결과와 그와 관련된 확률을 가중평균하여 추정되는가 (즉, '기대가치'를 계산함으로써)?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37A	IAS 37.39	충당부채가 가능한 결과의 연속범위내에 분포하고 각각의 발생확률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의무는 당해 범위의 중간 값을 사용하여 추정되는가?	
		Note: 결과의 연속범위는 그 결과치가 최소값과 최대값사이의 특정 값으로 될 수 있는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이다.	
37A	IAS 37.41	모든 충당부채는 세전금액으로 측정되는가?	
		Note: 충당부채의 법인세효과 및 변동은 IAS 12 '법인세'에 따라 회계처리된다.	
		위험과 불확실성	
37A	IAS 37.42	충당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화에 대한 불가피한 위헌과 불확실성은 고려되는가?	
		현재가치	
37A	IAS 37.45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계산되는가?	
37A	IAS 37.47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인가?	
		Note: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미래사건	
37A	IAS 37.48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은 충당부채 금액에 반영되는가?	
		예산되는 자산처분	
37A	IAS 37.51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데 고려되지 아니하는가?	
	IAS 37.52	*Note: 예상되는 자산처분이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더라도 당해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데 고려되지 아니한다. 기업은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을 당해 자산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다루고 있는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점에 인식한다.*	
		충당부채의 변제	
37A	IAS 37.53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때에 한하여 당해 변제금액은 인식되는가?	
37A	IAS 37.53	이러한 경우, 당해 변제금액은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 되는가?	
		Note: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비용은 제 3 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37A	IAS 37.53	이러한 경우, 자산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으로 제한되는가?	
		충당부채의 변동	
37A	IAS 37.59	충당부채는 매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되고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되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37A	IAS 37.59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는 환입되었는가?	
37A	IAS 37.60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증가시키고 해당 증가 금액은 차입원가로 인식되는가??	
		충당부채의 사용	
37A	IAS 37.61	충당부채의 사용은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제한되는가?	
	IAS 37.62	*Note: 당초 충당부채에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그 충당부채를 사용한다. 당초에 다른 목적으로 인식된 충당부채를 어떤 지출에 대하여 사용하게 되면 다른 두 사건의 영향이 적절하게 표시되지 않는다.*	
		인식과 측정기준의 적용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	
37A	IAS 37.63, 64	미래의 예상 영업비용 또는 손실은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충당부채로 인식되지 아니하는가??	
37A	IAS 37.65	미래에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특정 자산에 IAS 36 '자산손상'에 따라 손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기업은 검토하였는가?	
		Note: IAS 36 체크리스트 참조.	
		손실부담계약	
37D	IAS 37.66	기업이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계약에 따른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되는가?	
		Note: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그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당해 계약으로 정의된다.	
37D	IAS 37.68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는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최소순원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 또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위약금 중 작은 금액)인 회피 불가능한 원가로 측정되었는가?	
37D	IAS 37.67	기업이 손실을 부담하는 미이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IAS 37 의 문단 66 에 따라 부채를 인식하였는가?*	
		Note: 미이행계약은 계약당사자 쌍방 모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의무의 일부만을 동일한 정도로 이행한 계약이다. IAS 37 은 손실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미이행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계약이 특정 사건으로 인하여 손실부담계약이 될 경우 당해 계약은 IAS 37 의 적용대상이며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37D	IAS 37.69	손실부담계약에 다른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당해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기업을 인식하였는가?	
		구조조정	
37E	IAS 37.71	구조조정과 관련된 충당부채는 충당부채의 인식기준 (IAS 37 의 문단 14 에서 규정함 – 위 참조) 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인식되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 일반적인 인식기준이 구조조정에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IAS 37 의 문단 72 ~ 83 (아래 참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37E	IAS 37.72	구조조정충당부채를 위한 구조조정에 대한 의제의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식되는가? a) 기업은 구조조정에 대하여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에 의하여 적어도 아래에 열거하는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i)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의 일부 ii)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는 주사업장 소재지 iii) 해고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의 근무지, 역할 및 대략적인 인원 iv)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지출 v) 구조조정계획의 이행시기 b) 기업이 구조조정계획의 이행에 착수하였거나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기업이 구조조정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져야 한다.	
37E	IAS 37.74	당해 구조조정이 가능한 신속하게 착수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구조조정계획의 내용이 중요하게 변경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시기에 구조조정이 완결되어 지도록 계획되어 있을 때에만 구조조정충당부채는 인식 되었는가? *Note: 구조조정의 착수가 상당히 지연되거나 비합리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조조정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기업이 구조조정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37E	IAS 37.75	보고기간말 전에 경영진 또는 이사회가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였고 그리고 당해 기업이 구조조정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 다음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보고기간말 전에 발생하였는가? a) 구조조정계획의 착수 b)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기업이 구조조정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질 정도로 구조조정계획이 주요 내용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공표 *Note: 이러한 두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 경영진 또는 이사회의 결정은 의제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37E	IAS 37.78	사업매각과 관련된 의무의 인식은 기업이 매각의 이행을 약정하기 전 (즉, 구속력 있는 매각 계약이 있을 때)까지 이연되는가?	
37E	IAS 37.79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특정사업의 매각을 계획하는 경우 IAS 36 '자산손상 (IAS 36 본 체크리스트 참조)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손상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37E	IAS 37.80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하여야 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인식되는가? a)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지출 b)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37E	IAS 37.81	다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출은 구조조정충당부채에서 제외하는가? a) 계속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과 재배치 b) 마케팅 c) 새로운 제도와 물류체제의 구축에 대한 투자 *Note: 이러한 지출은 미래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보고기간말에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IFRIC 5 ***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Note: IFRIC 5 는 사후처리로 통칭되는 설비 (예: 원자력 발전소) 나 특정 장비 (예: 자동차) 의 사후처리 또는 환경정화활동 (예: 수질오염의 제거, 채굴된 토지의 복구) 에서 발생하는 원가의 일부나 전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자산을 별도로 조성하는 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금은 해석서에서 설명하는 구조 중 하나의 구조로 구성될 수도 있다. IFRIC 5 에서는 기금의 출연자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방법과 출연자가 추가 출연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의무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회계논제로 다루고 있다	
		기금의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37F	IFRIC 5.7	기업 (출연자)는 다음을 별도로 인식하는가 (다만, 기금이 사후처리원가를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당해 기업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a) 사후처리원가의 지급의무를 부채로 인식한다. b) 기금에 대한 출연자의 지분	
37F	IFRIC 5.8	기업이 IAS 27, IAS 28, IAS 31 및 SIC 12 에 참조하여 기금에 대한 지배력, 공동지배 또는 중요한 영향력이 있다면, 당해 기업은 해당 기준서에 따라 기금에 대한 지분을 회계처리하였는가?	
37F	IFRIC 5.9	기업이 기금에 대한 지배력, 공동지배 또는 중요한 영향력이 없다면, 당해 기업은 기금으로부터 보상 받을 권리를 IAS 37 (앞 부분 참조)에 따라 보상금으로 인식하였는가?	
37F	IFRIC 5.9	기금으로부터 보상 받을 권리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되었는가? a) 사후처리의무로 인식한 금액 b) 기금 중 출연자에게 귀속되는 순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출연자 지분	
37F	IFRIC 5.9	기급에 대한 출연금이나 기금에서 받은 지급액 이외에 보상받을 권리의 장부가치의 변동은 이러한 변동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는가?	
		추가 출연의무에 대한 회계처리	
37F	IFRIC 5.10	출연자에게 잠재적으로 추가적인 출연의무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다른 출연자가 파산하거나 기금이 보유한 투자자산의 가치가 기금의 보상의무를 수행하기에 불충분할 정도로 감소하는 경우), 추가 출연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당해 기업은 그러한 추가적인 출연을 부채로 인식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FRIC 6 특정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 폐전기 · 전자제품*	
		Note: IFRIC 6 는 구(historical)최종소비자가전제품의 판매에 따른 폐기물 관리를 위한 부채를 폐전기 · 전자제품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에 따라 생산자의 재무제표에 인식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배경 설명은 IFRIC 6 을 참조하라..	
37G	IFRIC 6.9	회원 국가에 의해 정의된 측정기간에 관련시장에 기업의 참여에 기초하여 폐전기 · 전자제품의 사후처리와 관련된 의무가 발생되었는가?	
		Note: 구최종소비가전제품에 대한 의무는 최종 처분될 제품의 제조나 판매보다는 측정기간(measurement period)에 관련시장에의 참여와 연관되기 때문에 측정기간에 시장점유율이 없다면(있을 때까지는)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의무발생사건의 시점은 폐기물관리활동을 수행하고 관련원가가 발생하는 특정 기간과 무관할 수도 있다.	

IAS 38 무형자산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본 질문서는 다른 기준에서 다루지 않은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한 IAS 38 에 대해 다루고 있다. 주요 사항은 무형자산의 인식시점과 이후 장부금액의 결정이다. 본 기준서는 무형자산 인식시 충족해야할 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적용범위	
		IAS 38 은 다음 사항을 제외한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a)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무형자산 [예: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 이연법인세 자산, 리스, 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산,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재고자산 및 건설계약),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연취득원가(deferred acquisition cost) 및 무형자산과 IFRS 5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무형자산)* b) *IAS 32 '금융상품:표시'에서 정의된 금융상품* c) *탐사와 평가 관련 자산의 인식과 측정 (IFRS 6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참조)* d) *광물, 원유, 천연가스, 이와 유사한 비재생 자원의 개발과 추출에 대한 지출* *IAS 38 은 광고, 교육훈련, 사업개시, 연구와 개발활동 등에 대한 지출에 적용한다.* 일부 무형자산은 컴팩트디스크(컴퓨터소프트웨어의 경우), 법적 서류(라이선스나 특허권의 경우)나 필름과 같은 물리적 형체에 담겨 있을 수 있다. 유형의 자산과 무형자산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자산을 IAS 16 '유형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하는지 아니면 이 기준서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지를 결정해야 할 때에는 어떤 요소가 더 중요한지를 판단한다.	
		정의	
	IAS 38.8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지배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예비질문	
		다음의 물음에 "예"라 답한 경우 관계된 세부준수질문에 답하시오.	
38A		기업은 당기 중 무형자산(예: 지적재산권, 상표권, 브랜드, 특허권, 저작권 또는 고객목록)을 보유 또는 취득했는가?	
38B		기업은 대차대조표상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예: 설계, 공정, 영업권, 고객목록, 또는 웹사이트)을 인식하는가?	
38C		기업은 연구 및/또는 개발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했는가?	
38D		기업은 영업 또는 사업개시, 교육훈련 또는 광고 및 홍보에 대한 지출이 발생했는가?	
38E		기업은 당기중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 항목과 관련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했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38F		기업은 원가모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한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가?	
38G		기업은 재평가모형에 따라 무형자산의 특정 분류를 재평가하는가?	
38H		기업은 당기 중 무형자산을 매각, 폐기 또는 처분했는가? 또는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이 예상되지 않는 무형자산이 있는가?	
38I		기업은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인트라넷의 개발과 관련된 원가를 부담했는가?	
38J		기업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가?	
		세부준수질문	
		무형자산	
		Note: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어야 한다.	
		식별가능성	
38A, B	IAS 38.11, 12	기업이 인식한 무형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a) 자산이 분리가능하다. 즉,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및 교환할 수 있다. b)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통제	
38A, B	IAS 38.13	기업이 인식한 모든 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업은 기초가 되는 자원에서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 3 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가?	
		Notes:	
	IAS 38.13	*1) 통제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서 나오나 다른 방법으로도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	
	IAS 38.14	*2) 시장에 대한 지식과 기술적 지식에서도 미래경제적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이 저작권, 계약상의 제약이나 법에 의한 종업원의 기밀유지의무 등과 같은 법적 권리에 의하여 보호된다면, 기업은 그러한 지식에서 얻을 수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IAS 38.15	*3) 기업은 숙련된 종업원으로 구성된 팀을 보유할 수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습득된 종업원의 기술을 식별할 수 있다. 기업은 또한 그러한 숙련된 기술을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숙련된 종업원이나 교육훈련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에는 충분한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특정 경영능력이나 기술적 재능도 그것을 사용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을 확보하는 것이 법적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거나 무형자산 정의의 기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38.16	*4)* 기업은 고객구성이나 시장점유율에 근거하여 고객과의 관계와 고객의 충성도를 잘 유지함으로써 고객이 계속하여 거래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객과의 관계나 고객의 충성도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권리나 그것을 통제할 기타 방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고객과의 관계나 고객의 충성도에서 창출될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해서는 그러한 항목(예: 고객구성, 시장점유율, 고객과의 관계와 고객의 충성도)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에 기업이 충분한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고객과의 관계를 보호할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과의 관계를 교환하는 거래(사업결합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는 고객과의 관계로부터 기대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그러한 교환거래는 고객과의 관계가 분리가능하다는 증거를 제공하므로 그러한 고객과의 관계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미래경제적 효익	
38A, B	IAS 38.17	기업이 인식한 모든 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업은 미래경제적효익이 무형자산으로부터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Note: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제품의 매출,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한다. 예를 들면, 제조과정에서 지적재산을 사용하면 미래 수익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제조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인식과 측정	
		인식- 일반	
38A	IAS 38.18, 21	어떤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가? a)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b)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c)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38E	IAS 38.20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 그리고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외부에서 취득하였는지 또는 내부적으로 창출하였는지에 관계없이)에 대한 취득이나 완성후의 지출은 발생시점에 항상 비용으로 인식하는가?	
		Note: 무형자산의 특성상 자산이 증가하지 않거나 자산의 부분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은 이 기준서에서 정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기 보다는 기존 무형자산에 내재된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을 유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을 사업 전체가 아닌 특정 무형자산에 직접 귀속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이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38A	IAS 38.22, 23	기업은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평가하는가?	
		Note: 외부증거에 좀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	
		측정- 일반	
38A	IAS 38.24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 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자산이 취득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예: 개별취득, 사업결합의 일부로, 정부보조금으로 또는 자산의 교환으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원가에 대해서는 아래의 세부지침을 참조하시오.	
		개별취득	
	IAS 38.25 ISA 38.26	*Note: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그 자산에 내재된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즉, 확률의 효과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된다. 따라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문단 21(1)의 인식조건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특히 현금이나 기타 화폐성자산으로 구입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좀 더 신뢰성 있게 취득원가를 측정할 수 있다.*	
38A	IAS 38.27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는 경우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한불금을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한다) 및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하는가?	
		Note: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종업원급여 및 전문가 수수료* • *그 자산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검사하는데 발생하는 원가*	
38A, D	IAS 38.29-31	다음항목들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에 대해 자본화한 원가에서 제외되었는가? a) 관리비와 기타 일반 간접비 b) 새로운 지역이나 새로운 계층의 고객과 사업을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원가 c) 새로운 제품이나 용역의 홍보원가(광고와 판매촉진활동 원가를 포함한다) d)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데 발생하는 원가 e)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원가 f) 초기영업손실 g) 부수적활동으로 인한 이익 및 관련비용	
38A	IAS 38.30	기업은 그 자산이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무형자산 취득원가의 자본화를 중지하였는가?	
38A	IAS 38.32	무형자산에 대한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현금가격상당액이 되며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IAS 23 '차입원가'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하는가?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	
38A	IFRS 3.37 IAS 38. 34	만일 무형자산을 또다른 기업/사업의 취득(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했다면, 무형자산은 다음의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 영업권과 분리하여 기록하는가(자산이 피취득자에 의해 인식되었는지에 관계없이)? a)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식별가능성, 통제,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기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b)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	
		Notes:	
	IAS 38.33	*1)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그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다. 즉, 확률의 효과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반영한다. 따라서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IAS 38. 21(a)의 인식조건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IAS 38.35	*2)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추정치에 대하여 각각 다른 확률을 가진 가능한 결과의 범위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불확실성은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반영한다. 만약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하다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IAS 38.38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유일한 상황은 해당 무형자산이 법적 또는 기타 계약상 권리로부터 발생하고 (1)분리가능 하지 않거나 (2)분리가능 하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에 대한 교환 거래의 과거 경험이나 증거가 없으며, 공정가치 추정이 측정할 수 없는 변수에 의존한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대한 최초처리에 대한 지침은 이 설문지의 IFRS 3 부분을 참조하시오.	
38A, C	IAS 38.34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사업결합을 통해 취득할 경우, 기업은 연구 개발 프로젝트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그것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는가?	
38A	IAS 38.36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이 관련 유형/무형자산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개별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집단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하였는가?	
	IAS 38.37	*Note: '브랜드'와 '브랜드명'은 일반적으로 상표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브랜드'와 '브랜드명'은 상표(또는 서비스 표)와 그와 관련된 상품명, 방식, 기법, 전문기술과 같은 보충적 자산의 집단을 나타내는데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마케팅 용어이다. 취득자는 '브랜드'를 구성하는 보충적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개별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브랜드'를 구성하는 보충적 무형자산의 집단을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그 보충적 자산의 개별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더라도, 개별 자산들의 내용연수가 유사하다면 취득자는 이들을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38A	IAS 38.33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무형자산에 대해 기업은 취득시점에 공정가치로 인식하였는가?	
		Note: 취득시점에 자산의 공정가치는 IAS 38 에서 무형자산의 원가가 된다.	
38A	IAS 38.39	기업은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정상거래시장에서의 시장가격(매입호가)을 사용하였는가?	
		Note: 정상거래시장은 (a) 거래되는 항목이 동질적이며 (b) 거래의사가 있는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항상 존재하고 (c) 가격이 공개되어 이용가능하다.	
38A	IAS 38.39	현행 매입호가를 이용할 수 없다면, 가장 최근의 유사한 거래일부터 자산의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날까지 경제상황에 중요한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가장 최근에 발생한 유사한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을 사용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38A	IAS 38.40	무형자산에 대해 정상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취득일 현재 최선의 정보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그 자산에 대하여 지급하였던 금액으로 자산의 공정가치를 추정하였는가?	
	IAS 38.41	*Note: 이러한 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기업은 유사자산의 최근 거래 결과를 고려한다. 기업은 특정 무형자산의 매매거래에 정기적으로 관여하는 기업은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것와 같은 기법이 그 자산의 산업에서 통용되는 거래 및 관행을 반영하고 있을 경우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38A	IAS 38.43	사업결합에서 개별적으로 취득하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진행 중인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지출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는가? a) 연구관련지출인 경우에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b) IAS 38. 57 에서 제시된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개발 관련 지출인 경우에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c) IAS 38.57 에서 제시된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는 개발 관련 지출인 경우에는 취득한 진행 중인 연구 개발 프로젝트의 장부금액에 가산한다. ***정부보조에 의한 취득***	
38A	IAS 38.44	만일 무형자산을 정부보조에 의해 취득한 경우(예를 들어, 공항 착륙권,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국 운영권), 그 무형자산을 IAS 20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 따라 최초에 공정가치 또는 명목금액으로 측정하였는가? ***자산의 교환***	
38A	IAS 38.45	만일 기업이 하나의 무형자산을 하나의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 기업은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있거나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둘 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무형자산을 측정하였는가?	
	IAS 38.46	*Notes:* *1) 기업은 비록 제공한 자산을 즉시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할 수 없을 지라도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 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대해 공정가치로 측정해야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 • *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위험, 유출입시기, 금액)이 제공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과 다르거나* •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 부분의 기업특유가치가 교환거래로 인하여 변동하고* • *위의 (a)나 (b)의 차이가 교환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하여 중요하다.*	
38A	IAS 38.47	만일 기업이 수령한 자산이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취득한 무형자산의 원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는가?	
38A	IAS 38.45	취득한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38B	IAS 38.48	기업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는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38B, C	IAS 38.51-53	*Note: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특히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식별 가능한 자산이 있는지의 여부와 시점을 파악하고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IAS 38 에서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기에 앞서 충족되어야만 하는 추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비용화하고 개발단계중 발생한 원가의 일부는 자본화할 수 있다.*	
38C	IAS 38.5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기업은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는가?* a) 연구단계 b) 개발단계	
38C	IAS 38.53	기업이 내부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을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았는가, 즉 전체금액을 발생시점에 비용화했는가? 연구단계	
38C	IAS 38.8,56	*Note: 연구는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이다.* *연구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응용하는 활동* •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38C	IAS 38.54	기업은 연구(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을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였는가? *Note: 연구(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개발단계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38C	IAS 38.8, 59	*Note: 개발은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이다.* *개발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 주형, 틀 등을 설계하는 활동* • *상업적 생산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 •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38C	IAS 38.57, 61, 62	개발(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식하는가? a)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b)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c)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d)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제시할 수 있다. *Note: 그중에서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한다든지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해야한다.* e)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f)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38C	IAS 38.60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지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a) IAS 36 '자산손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을 사용하여 그 자산에서 얻게 될 미래경제적효익을 평가하는가? b) 자산이 다른 자산과 결합해야만 경제적 효익을 창출한 다면 IAS 36 에 따른 현금창출단위의 개념을 적용하는가?	
38B, C	IAS 38.63, 64	*기업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는가?* <u>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u>	
38B, C	IAS 38.65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적용되는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인가?	
38B, C	IAS 38.66	내부적으로 창출한 각각의 무형자산 취득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 직접 관련된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재료비, 용역비* • *무형자산의 창출을 위하여 발생한 종업원급여* • *법적 권리를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 •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특허권과 라이선스의 상각비* *이자비용을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는 것에 대한 지침은 본 설문지의 IAS 23 '차입원가' 를 참조*	
38B, C, D	IAS 38.67	기업은 다음 항목에 대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가? a) 판매비, 관리비 및 기타 간접 지출. 다만, 무형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b) 무형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명백한 비효율로 인한 손실과 초기 영업손실 c) 무형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출	
		비용의 인식	
38B, C	IAS 38.68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무형자산 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가? a)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 취득원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 b) 사업결합에서 취득하였으나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Note: IFRS 3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사업결합의 원가에 포함된 이러한 성격의 지출은 취득일에 영업권에 귀속되어 영업권 금액의 일부가 된다.*	
38B, D	IAS 38.69	다음의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제외되는가? a) 사업개시활동에 대한 지출(즉, 사업개시원가). 다만, IAS 16 '유형자산'에 따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지출은 제외한다. b) 교육 훈련을 위한 지출 c) 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을 위한 지출 d) 기업의 전부나 일부의 이전 또는 조직 개편에 관련된 지출	
38A	IAS 38.70	기업은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전에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선급금을 자산으로 인식하는가?	
38B, C	IAS 38.71	과거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없는가?	
		인식후 측정	
38A	IAS 38.72	기업은 무형자산 분류별로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였는가? *원가모형*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38F	IAS 38.74	만일 기업이 무형자산 분류별로 원가모형을 선택한 경우 최초 인식후에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가?	
		재평가모형	
38G	IAS 38.8,78	기업은 무형자산에 대해 정상거래시장이 존재할 경우에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가?	
		Note: 정상거래시장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장이다. • *거래되는 항목이 동질적이다.* • *거래의사가 있는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항상 존재한다.* • *가격이 공개되어 이용가능하다.*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성격상 독특하고 빈번히 거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형자산에 대하여 정상거래시장이 존재하는 것이 흔하지는 않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정상거래시장이 존재할 수 있다(예;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한 택시 라이선스, 어업권 또는 생산할당량).*	
38G	IAS 38.72	만일 기업이 재평가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기타 모든 자산도 그에 대한 정상거래시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가?	
		Note: 무형자산의 종류는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유사한 성격과 용도를 가진 자산끼리 묶어 분류한 집단이다. 같은 분류내의 무형자산은 선택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시에 재평가한다.	
38G	IAS 38.75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하는가?	
	IAS 38.76	*Note: 재평가모형은 다음을 허용하지 않는다.* • *이전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무형자산의 재평가* • *취득원가가 아닌 금액으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	
	IAS 38.77	*재평가모형은 개발 일부 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만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그 자산 전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IAS 38.77	*정부보조를 통하여 취득하고 명목상 금액으로 인식한 무형자산에도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38G	IAS 38.75	무형자산을 재평가하기 위해서 공정가치는 정상거래시장을 근거로 결정되는가?	
38G	IAS 38.75	대차대조표일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는가?	
38G	IAS 38.80	무형자산이 재평가 되었다면, 재평가일의 상각누계액은 다음 중 하나로 처리하는가? a) 재평가 후의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과 일치하도록 자산의 총장부금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상각누계액을 수정한다. b) 상각누계액을 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제거한 순액을 자산의 재평가금액으로 수정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38G	IAS 38.81	재평가한 무형자산과 같은 종류 내의 무형자산을 그 자산에 대한 정상거래시장이 없어서 재평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는가?	
38G	IAS 38.82	재평가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더 이상 정상거래시장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금액은 정상거래시장을 기초로 한 최종 재평가일의 재평가금액에서 이후의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가?	
38G	IAS 38.83	재평가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더 이상 정상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기업은 자산이 손상되어 IAS 36 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고려했는가?	
38G	IAS 38.84	자산의 공정가치를 이후의 측정일에 정상거래시장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가?	
38G	IAS 38.85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을 직접 증가시키는가?.	
38G	IAS 38.85	그 증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가?	
38G	IAS 38.86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감소하였다면, 그 감소액은 다음의 방법으로 인식하였는가? a) 우선 자산과 관련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을 감소시킨다. b) 잔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8G	IAS 38.87	기업은 자본에 포함된 재평가잉여금 누계액을 그 잉여금이 실현되는 시점(예를 들어 자산의 처분 또는 사용을 통해서)에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하였는가?	
		내용연수	
38J	IAS 38.88, 90, 92	기업은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또는 비한정인지를 평가하였는가?(아래항목은 중요하게 고려될 사항임) a) 기업이 예상하는 자산의 사용방식과 자산이 다른 경영진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 여부 b) 자산의 일반적인 제품수명주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유사한 자산의 내용연수 추정에 관한 공개된 정보 c) 기술적, 공학적, 상업적 또는 기타 유형의 진부화 *Note: 컴퓨터소프트웨어는 기술적 진부화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내용연수를 가지게 된다.* d) 자산이 운용되는 산업의 안정성과 자산으로부터 산출되는 제품이나 용역의 시장수요 변화 e) 기존 또는 잠재적인 경쟁자의 예상 전략 f) 예상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획득에 필요한 자산 유지비용의 수준과 그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g) 자산의 통제가능 기간과 자산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예: 관련된 리스의 만기일) h) 자산의 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관이 있는지 여부	
38J	IAS 38.88	만약 내용연수가 유한하다면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이나 내용연수를 구성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를 평가하는가?	
38J	IAS 38.88	관련된 모든 요소의 분석에 근거하여, 그 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비한정인 것으로 보는가?	
38J	IAS 38.91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는 시점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미래 유지비용과 그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과 의도만을 반영하는가?	
		Note: 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는 시점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지금액을 초과하는 계획된 미래지출에 근거하여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38F, G	IAS 38.94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가?	
		Note: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다.	
38F, G	IAS 38.94	만약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가 갱신가능한 한정된 기간 동안 부여된다면, 중요한 원가 없이 갱신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 갱신기간을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에 포함하는가?	
		Note: 다음은 중요한 원가 없이 갱신될 것이 명백한 지표들이다. • *과거 경험에 비추어 계약상 권리나 기타 법적 권리가 갱신될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 갱신이 제3 자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 자가 승인할 것이라는 증거를 포함한다.* • *권리 갱신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될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 • *갱신원가가 갱신으로 인하여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경제적효익과 비교하여 중요하지 않다.*	
38F, G	IAS 38.95	만약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경우, 기업은 자산의 내용연수산정을 두개 중 짧은 기간을 근거로 하는가?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상각기간과 상각방법*	
38F, G	IAS 38.97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야 하는가?	
38F, G	IAS 38.97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는가?	
		Note: 무형자산이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치와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사용가능한 때로 간주한다.	
38F, G	IAS 38.97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은 다음 중 이른 날에 중지하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a) 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자산이 매각예정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날 b) 자산이 대차대조표에서 제거되는 날	
38F, G	IAS 38.97	기업이 사용한 상각방법은 그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는가?	
	IAS 38.98	*Note: 정액법, 체감잔액법 및 생산량비례법과 같은 방법은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38F, G	IAS 38.97	만일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정액법을 사용했는가?	
38F, G	IAS 38.97	각 회계기간의 상각액은 이 기준서나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에서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가?	
38F, G	IAS 38.98	상각방법은 자산에 내재된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가 변동하지 않는다면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가?	
		잔존가치	
38F, G	IAS 38.100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보는가? a)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 3 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 b) 무형자산의 정상거래시장이 있고, i) 잔존가치를 그 정상거래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ii) 그러한 정상거래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38F, G	IAS 38.101	잔존가치는 그 내용연수의 종료이전에 자산을 처분할 것으로 기대할 경우에만 영(0)보다 큰가?	
38F, G	IAS 38.102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처분으로 회수할 금액을 근거로 하여 추정하는데, 내용연수가 종료되고 자산이 사용될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운용되었던 유사한 자산의 추정 매각시점의 일반적인 가격을 사용하는가?	
38F, G	IAS 38.102	기업은 잔존가치를 적어도 매 회계기간 말에는 검토하고 잔존가치의 변동은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과 오류'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는가?	
38F, G	IAS 38.103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자산의 잔존가치가 이후에 장부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는 무형자산의 상각액은 영(0)이 되는가?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의 검토	
38F, G	IAS 38.104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하는가?	
38F, G	IAS 38.104	자산의 예상 내용연수가 과거의 추정치와 다르다면 상각기간을 변경하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내용연수가 감소했고 그로 인해 상각기간이 변동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38F, G	IAS 38.104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형태가 변동된다면,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가?	
38F, G	IAS 38.104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을 변경할 경우, 그러한 변경은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는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38J	IAS 38.107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는가?	
38J	IAS 38.108	IAS 36 '자산손상'에 따라, 기업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 매년 그리고 손상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테스트를 실시하는가?	
		내용연수 평가검토	
38J	IAS 38.109	기업은 상각하지 않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사건과 상황이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 매 회계기간에 검토하는가?	
38J	IAS 38.109	사건과 상황이 그러한 평가를 정당화하지 않는 경우에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IAS 8'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는가?	
38J	IAS 38.110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수정하는 것은그 자산이 손상되었다는 하나의 징후가 되며 따라서, IAS 36 에 따라 결정된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그 자산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가?*	
		장부금액의 회수가능성 – 손상차손	
38F, G	IAS 38.111	무형자산의 손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IAS 36 을 적용하는가?	
		제거 및 처분	
38H	IAS 38.112	모든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는가?	
38H	IAS 38.113	기업은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을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그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가?(단, IAS 17'리스'에서 판매후리스거래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38H	IAS 38.113	기업은 제거이익을 수익으로 분류하지 아니하는가?	
38H	IAS 38.114	기업은 자산의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는 IAS 18 '수익'의 (판매후리스의 경우는 IAS 17)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는가?	
38H	IAS 38.116	무형자산의 처분대가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는가?	
38H	IAS 38.116	무형자산에 대한 지급이 이연될 경우 기업은 다음과 같이 인식하는가? a) 최초에 현금가격상당액으로 인식한다. b) 처분대가의 명목금액과 현금가격상당액의 차이는 IAS 18 따라 처분으로 인하여 받을 금액에 유효이자율을 반영하여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38H	IAS 38.117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그 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도 상각을 중지하지 아니하나, 완전히 상각하거나 IFRS 5 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상각을 중지하는가? **SIC 32** *무형자산 – 웹사이트원가* *Note: 기업이 내부 또는 외부 접근을 위해 개발한 자체의 웹 사이트는 IAS 38 이 적용되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다.*	
38I	SIC 32.7	기업은 내부적으로 개발한 웹사이트을 인식하기 위해 IAS 38 의 인식과 측정기준을 적용하였는가?	
38I	SIC 32.8	자체적으로 개발한 웹 사이트는 인식과 최초 측정을 규정한 IAS 38. 21 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반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IAS 38. 57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특히 웹 사이트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때 (예: 웹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주문접수를 통해 수익을 직접 발생시키는 경우) 기업은 IAS 38. 57(d)의 조건인 웹 사이트가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임을 제시할 수 있는가? *Note: 예를 들어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진 주문접수를 통해 수익을 직접 발생시키는 경우 미래경제적효익의 창출을 제시할 수 있다.*	
38I	SIC 32.8	기업이 주로 자체의 재화와 용역의 판매촉진과 광고를 위해 웹 사이트를 개발한 경우에는 이러한 웹 사이트 개발에 대한 모든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가?	
38I	SIC 32.9	웹사이트의 계획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하였는가?	
38I	SIC 32.9	적용과 하부구조 개발단계, 그래픽 디자인 단계, 콘텐츠 개발단계는 콘텐츠가 기업 자체의 재화와 용역의 광고와 판매촉진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 웹 사이트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해석서의 문단 8 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웹 사이트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가?	
38I	SIC 32.9	콘텐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콘텐츠가 기업 자체의 재화와 용역을 광고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면(예를 들면, 재화의 디지털 사진),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가?	
38I	SIC 32.9	운영단계는 웹 사이트의 개발이 완성되면 개시하고 이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IAS38. 18 의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가?	
38I	SIC 32.10	무형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웹사이트원가는 최초인식후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을 차감하여 회계처리하는가? *Note: 각 기업이 내부적으로 개발한 웹사이트는 일반적으로 성격상 독특하므로 웹사이트는 특정웹사이트에 대한 정상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른 대체적인 측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38I	SIC 32.10	웹사이트의 추정내용연수는 짧은가?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본 질문서는 금융상품의 측정과 인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IAS 39 에 따라 작성되었다.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 공시하는 것에 대한 요구사항은 IAS 32 와 IFRS 7 에 각각 설명되어 있다 본 질문서는 재무제표에 관련된 거래와 잔액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개별계약이 IAS 39 규정에 맞게 처리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본 체크리스트의 목적은 IAS 39 에 부합하지 않는 영역을 식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본 체크리스트가 IAS 39 의 세부규정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IAS 39 는 복잡하기 때문에 금융상품이나 거래의 실제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야하며, IAS 39 와 그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적용지침 뿐만 아니라 실무적용지침과 결론도출근거도 참고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으로도 특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소속 국가의 회계 및 감사 당국에 문의한다.* *적용지침 (이하 'AG 문단')은 IAS 39 의 일부이므로 AG 문단을 참고하여 IAS 39 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한다. 또한, AG 문단은 어떤 특정 상황이나 체크리스트상의 질문과 관련된 다수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체크리스트상의 질문이 근본적으로 기준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규정의 문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추가정보를 얻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 핵심 문단 도입부분에 참고해야할 AG 문단을 기술하고 있다.* *NOTE: IAS 32 의 금융상품 표시에 관한 규정과 IAS 39 의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관한 규정 사이의 상호관계의 정도에 따라 본 체크리스트 사용자는 IAS 32 의 금융상품 표시에 관한 규정과의 일치여부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D&T 의 "국제회계기준 표시와 공시에 관한 체크리스트" 내의 IAS 32 규정을 다루고 있는 section 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IAS 39.8	*IAS 39 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는 IAS 32 문단 11 에 정하고 있는 의미로 이 기준서에서 사용된다. IAS 32 는 다음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용어를 적용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상품*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32.13	*"이 기준서에서 '계약' 및 '계약상'은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고 있고,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러한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둘 이상의 당사자간 합의를 말한다. 금융상품을 포함하여 계약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류로 작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IAS 39 의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서 규정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정확히 식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별과 관련하여 본 체크리스트의 질문 중 일부는 IAS 32 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다른 기준서의 checklist 와 달리 본 checklist 는 추가 지침에서 바로 위에 있는 주요 질문의 구성 요소인 하위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경우 추가적인 YES/NO/N/A 행을 포함하고 있다. 추가지침과 하위질문을 보고자 한다면 worksheet 왼쪽의 '+' 표시를 누른다.* *관련 section 에 있는 질문이 특정 기업에 적용되는 상황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예비질문을 만들었다. 예비질문은 각 주제의 도입부에 위치하며 39A, 39B 등으로 표시된다. 개별 예비질문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된 모든 세부질문에 답해야 한다.*	
		예비질문 *아래 예비질문사항 중 하나라도 "Yes"라고 답할 경우, 해당 금융상품이 IAS 39 의 적용범위 배제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문인 39H 에 대한 대답이 "No"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하의 관련 세부준수질문에 대하여 답한다. 해당 금융상품 또는 내재된 금융상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 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39H 와 관련하여 부합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모두 답할 필요가 있다.*	
39A	IAS 32 AG3-12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계약인가?	
	IAS 32.11	현금인가?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인가? 여기서 지분상품이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이다.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있는가?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가 있는가?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하 '자기지분상품'이라 한다)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비파생상품인가?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하 '자기지분상품'이라 한다)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인가? (이 경우에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 자체는 자기지분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39B	IAS 32 AG3-12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계약인가?	
	IAS 32.11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가 있는가? 기업이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가 있는가?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비파생상품인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인가? (이 경우에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 자체는 자기지분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39C	IAS 32 AG15-19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계약인가?	
	IAS 39.9	IAS 39 에서 정의된 파생상품의 특성에 모두 부합되는 금융상품 또는 기타계약인가? 아래 문단에 있는 3 개의 질문은 파생상품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아래 질문에 모두 'YES'라고 답한다면 그 계약은 파생상품이다. 특정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기타변수 (기초변수라고 함)의 변동에 따라 금융상품 또는 기타계약의 가치가 변동하는가?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한가? 미래에 결제되는가?	
39D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인가?	
	IAS 39.10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합성)상품의 구성요소이며, 복합(합성)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유사하게 변동시킨다. 내재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현금흐름의 전부나 일부를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및 기타 변수에 따라 변경시킨다.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더라도 계약상 당해 금융상품과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당해 금융상품과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며 독립적인 금융상품이다.* *상기 질문을 고려함에 있어서 내재 특성이 독립적인 관점에서 파생상품의 정의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39C 의 질문 참고)*	
39E,F	IAS 39.9	이전에 인식하였던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일부)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였는가?	
	IAS 32.44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제거하는 것은 다르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면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상품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항목이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될 뿐만 아니라 손익도 발생할 수 있다.*	
39G	IAS 39.71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위험회피수단과 하나 이상의 위험회피대상항목 간에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였는가?	
39H		IAS 39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하나 이상의 항목이 계약 또는 계약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는가?	
		범위 (문단 2 내지 7)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IAS 39 는 동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되어야 하는 금융상품 중 일부에 대하여 특별히 적용을 배제한다. 일반적 규칙은 다른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 되는 금융상품의 경우 IAS 39 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IAS 39 는 계약의 일부인 금융상품 요소를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내재파생상품 및 제거와 관련된 것이다) 이 일반적 규칙은 항상 적용가능한 것은 아니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39 는 적용범위에서 특별히 배제되는 금융상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형태의 금융상품에 적용되어야 한다. 다음의 체크리스트는 특정 금융상품이 IAS 39 의 적용범위에서 배재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작성하였다.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IAS 39 AG1-AG4A	*아래 질문사항에 대해서 'Yes'라고 답한 경우, 해당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일부에 대하여 IAS 39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9H	IAS 39.2(a)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IAS 28 '관계기업 투자' 또는 IAS 31 '조인트벤처'에 따라 회계처리되지 아니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조인트벤처에 대한 지분 또는 그러한 지분에 대한 파생상품인가? 종속기업, 관계기업, 조인트벤처에 대한 지분이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 재무제표', IAS 28 '관계기업 투자' 및 IAS 31 '조인트벤처'에 따라 회계처리되는가?	
	IAS 27.37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IFRS 5 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은 (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지 않은)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는 원가법과 IAS 39 에 따른 방법 중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IAS 28.1 IAS 31.1	*그러나, 이 기준서는 벤처캐피털 투자기구 또는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 투자로서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거나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IAS 39.2(a)	금융상품이 IAS 3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파생상품으로서 동 금융상품이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조인트 벤처에 대한 지분에 대한 파생상품인가?	
	IAS 32. 16(b)(i)	*발행자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파생상품이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하여 결제된다면 자본의 정의를 충족한다.*	
39H	IAS 39.2(b)	IAS 17 '리스'가 적용되는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인가? 'Yes'라고 답한다면,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IAS 39 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IAS 39 의 제거, 손상 및 내재파생상품에 대한 규정은 리스계약에도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예비질문인 39D, 39E, 39F 도 작성하여야 한다.	
	IAS 39.2(b)	*IAS 17 '리스'가 적용되는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IAS 39 의 적용을 배제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리스제공자가 인식하는 리스채권의 제거와 손상* • *리스이용자가 인식하는 금융리스부채의 제거* • *리스에 내재된 파생상품*	
39H	IAS 39.2(c)	IAS 19 '종업원급여'가 적용되는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인가?	
	IAS 39.2(d)	IAS 32 의 지분상품(옵션과 주식매입권 포함)의 정의를 충족하는 발행자의 금융상품인가? *다만, 그 금융상품이 상기 IAS 39 문단 2(a)의 적용범위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당해 지분상품의 보유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IAS 39.2(e)	다음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인가? (1) IFRS 4 '보험계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험계약. 다만, IAS 39 문단 9 의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IAS 39 를 적용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2) 임의배당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IFRS 4 를 적용하는 계약	
		해당 계약이 IFRS 4 에서 규정하는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IAS 39 문단 9 의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아니하는가? 해당 계약이 IFRS 4 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임의배당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해당 계약이 IFRS 4 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가?	
	IAS 39.9	*금융보증계약이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계약이다.*	
	IAS 39.2(e)	*IFRS 4 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보험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이 IFRS 4 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계약이 아닌 경우, 보험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IAS 39 를 적용한다.*	
	IAS 39.2(e)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가 당해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사전에 명백히 하고 보험계약에 적용가능한 회계처리를 하였는가?	
	IAS 39.2(e)	*만약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가 당해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사전에 명백히 하고 보험계약에 적용가능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IAS 39 와 IFRS 4 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발행자는 각 계약별로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IAS 39 AG4 - AG4A	*금융보증계약은 보증, 신용장, 신용위험이전계약, 보험계약 등 다양한 법적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법적 형식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적용지침 사례 참조)*	
	IAS 39 AG4(b)	*신용관련 보증계약 중에는 보증대상자산에 관하여 지급기일에 채무자의 지급불이행으로 인한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는 것을 지급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계약도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의 변동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계약이다.*	
	IAS 39 AG4(c)	*재화의 판매와 관련하여 금융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발행자는 IAS 18 에 따라 재화의 판매와 보증에 따른 수익인식시기를 결정한다.*	
39H	IAS 39.2(f)	사업결합에서의 우발대가에 대한 계약 (IFRS 3 '사업결합' 참조)인가? *이러한 적용배제는 취득자에게만 해당됨에 유의하라.*	
39H	IAS 39.2(g)	미래에 피취득대상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하는 취득자와 매각자 사이의 사업결합 계약인가?	
39H	IAS 39.2(h)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된 대출약정, 현금으로 차액결제될 수 있는 대출약정, 또는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이 아닌 대출약정에 해당하는가? (이러한 대출약정에 대하여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채무' 를 적용한다)	
39H	IAS 39.2(h)	IAS 39 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약정에 대해 IAS 37 을 적용하지만, 대출약정의 제거에 대하여는 IAS 39 의 제거규정을 적용하는가?	
	IAS 39.4	IAS 39 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다음의 대출약정 이외의 대출약정이 있는가? (a) 해당 대출약정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하였는가? 대출약정에서 발생한 자산을 최초 발생 후 단기간 내에 매도한 과거 실무관행이 없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b) 현금으로 차액결제될 수 있거나 다른 금융상품을 인도하거나 발행하여 결제될 수 있는 대출약정인가? (c)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인가?	
	IAS 39.4	*대출약정에서 발생한 자산을 최초 발생 후 단기간 내에 매도한 과거 실무관행이 있는 경우 동일한 종류에 속하는 모든 대출약정에 IAS 39 를 적용한다.*	
	IAS 39.2(h)	*IAS 39 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출약정의 제공자는 당해 대출약정에 IAS 37 를 적용한다. IAS 39 는 IAS 39 문단 4 에서 규정하는 상기 3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대출약정에 적용한다.*	
	IAS 39.2(h)	*대출약정의 제거와 관련된 회계처리에는 IAS 39 의 제거규정을 적용한다.*	
	IAS 39.4(b)	*대여금이 분할하여 지급된다는 이유만으로 차액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예 : 공사진행률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되는 공사관련 담보부 대여금)*	
39H	IAS 39.4	IAS 39 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출약정을 보유하고 있는가?	
		다음의 대출약정은 IAS 39 의 적용범위에 포함한다. *(a)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대출약정* *(b) 현금으로 차액결제될 수 있거나 다른 금융상품을 인도하거나 발행하여 결제될 수 있는 대출약정* *(c)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39H	IAS 39.2(i)	해당 계약이 IFRS 2 '주식기준보상'이 적용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른 금융상품, 계약 및 의무이면서 동시에 IAS 39 문단 5 내지 7 에 해당되는 비금융상품의 매입이나 매도 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계약인가?	
	IAS 39.5 IFRS 2.6	*IAS 39 문단 5 내지 7 은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될 수 있는 비금융항목의 매입 또는 매도계약에 적용된다. 예를 들면, 기업의 지분상품 (주식이나 옵션 포함)을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수취하는 계약을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경우, 그러한 거래는 IAS 39 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기업의 지분 또는 다른 지분상품의 가격에 기초한 금액으로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는 경우 그러한 계약이현금으로 차액결제되고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또는 사용 요구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이 아닌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러한 계약은 IAS 39 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39H	IAS 39.5 IFRS 2.5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이면서 IAS 39 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계약인가?	
		다음 중 어떤 질문에 대하여 'No'라고 답하는 경우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은 IAS 39 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계약을 금융상품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또는 사용 요구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한가?	
	IAS 39.6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이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양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a) 계약조건상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경우 *b)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하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계약조건은 없지만, (계약상대방과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상 권리의 행사 또는 소멸 전에 계약을 매도하여) 기업이 유사한 계약을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하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한 실무관행이 있는 경우* *c) 유사한 계약에 대하여 단기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자산 인수 후 단기간 내에 그 자산을 매도한 실무관행이 있는 경우* *d) 계약의 대상인 비금융항목이 현금으로 용이하게 전환될 수 있는 경우*	
	IAS 39.7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매도옵션이 문단 6 의 (a) 또는 (d) 에 따라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IAS 39 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계약은 예상되는 비금융상품의 매입, 매도, 또는 사용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될 수 없다.*	
		내재파생상품 (문단 10 내지 13)	
	IAS 39.11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한 이후, 주계약이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주계약을 이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주계약이 금융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내재파생상품을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다루지 아니한다.*	
		Yes' 혹은 'N/A' 인 경우, 내재파생상품에 대한 IAS 39 의 규정을 준수한 것임.	
39A,39B,39D	IAS 39.11	IAS 39 의 분리요건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에서 분리하였는가? 다음 3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Yes' 인 경우 IAS 39 의 규정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에서 분리하여야 한다.	
	IAS 39.11(a)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는가?	
	IAS 39.11(b)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가?	
	IAS 39.11(c)	복합(합성)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는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한다)	
	IAS 39.11A *AG33A - AG33B*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경우, 복합(합성)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a)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해 변경되는 복합(합성)계약의 현금흐름의 변동이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 *(b) 유사한 복합(합성)계약을 고려할 때, 별도로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내재파생상품의 분리가 금지된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차입자가 상각후원가에 근사한 금액으로 중도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된 대출채권의 경우*	
39A,39B,39D	IAS 39.12	이 기준서에 따라 주계약과 분리되어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이나 취득시점이나 후속 재무보고기간말에 주계약과 분리하여 측정될 수 없는 경우, 복합(합성)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39.13	*계약조건에 기초하여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예: 공시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에 기초하는 내재파생상품)에는 복합(합성)상품의 공정가치와 주계약의 공정가치가 결정될 수 있다면 그 차이를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로 결정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합(합성)상품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다.*	
	IFRIC 9.7	*Note: 최초로 계약당사자가 되는 시점에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계약상 요구되었던 현금흐름이 중요하게 수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후속적인 재검토는 금지된다.*	
	IFRIC 9.8	*IFRS 최초채택기업은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초로 계약당사자가 된 시점과 문단 7 에 따라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 중 나중 시점에 존재하는 상황에 기초하여 검토한다.*	
		최초 인식 (문단 14, 문단 38)	
	IAS 39. AG34-35 IAS 39. AG53-56	*IAS 39 는 금융상품의 인식과 후속측정에 관한 적용지침을 포함한다. IAS 39 는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가 아닌 경우 모든 금융상품을 매매일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한다.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의 경우 결제일에 인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사용한 방법은 IAS 39 문단 9 에서 정의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금융자산의 매입이나 매도 모두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가치의 변동에 대하여 차액결제를 요구하거나 차액결제를 허용하는 계약은 정형화된 계약이 아니다. 그러한 계약은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Yes' 혹은 'N/A'인 경우, 금융상품의 최초인식에 대한 IAS 39 의 규정을 준수한 것임.	
39A,39B,39C,39D, 39E	IAS 39.14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가? (정형화된 매입의 경우 아래 질문 참조) 금융부채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가?	
	IAS 39.38	적용가능한 경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및 매도에 대하여 회계정책에 따라 매매일 또는 결제일 회계처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일관성있게 적용하였는가?	
	IAS 39.9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당해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건나 매도하는 것*	
		금융자산의 제거 (문단 15 내지 37)	
		IAS 39 는 금융자산의 제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을 삭제)여부를 판단할 때 충족해야 할 다수의 규정을 포함한다.	
	IAS 39.9	*제거는 이미 인식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IAS 39.15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제거는 연결관점에서 적용한다. 따라서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SIC-12 '연결: 특수목적기업'에 따라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한 후 당해 연결실체에 IAS 39 의 제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제거 관련 규정은 연결실체가 아닌 개별기업 수준에서 판단한다.*	
	IAS 39.16	*제거에서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일부(또는 유사한 금융자산 집합의 일부), 또는 금융자산 전체 (또는 유사항 금융자산의 집합)를 말한다. 제거 대상이 IAS 39 문단 16(1)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의 일부(또는 유사한 금융자산 집합의 일부)에 대하여 제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39.2(b) IAS 39.2(h)	*금융상품이 IAS 39 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IAS 39 의 제거 규정은 적용할 수 있다. (예: 리스제공자로부터 리스채권의 제거)*	
	IAS 39. AG36-52	*Yes' 혹은 'N/A'인 경우, 금융자산의 제거에 대한 IAS 39 의 규정을 준수한 것임.*	
39E	IAS 39.16	제거를 금융자산의 일부(또는 유사한 금융자산 일부의 집합) 또는 금융자산 전체(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에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하였는가?	
	IAS 39.16(a)	IAS 39 문단 16(a)의 세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의 일부에 제거 규정을 적용하였는가?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하나라도 'Yes'라고 답한다면 제거는 금융자산의 일부에 적용되어야만 한다.	
	IAS 39.16(a)(i)	제거 대상이 금융자산 (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현금흐름에서 식별된 특정 부분으로만 구성되는가?	
		예를 들어, 이자율스트립채권 계약에서 거래상대방이 채무상품의 현금흐름 중 원금에 대한 권리는 없고 이자부분에 대한 권리만 있는 경우에는 제거규정은 이자부분에 적용한다.	
	IAS 39.16(a)(ii)	제거 대상이 금융자산 (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현금흐름에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으로만 구성되는가?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이 채무상품의 현금흐름 중 90%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거규정을 현금흐름의 90%에 적용한다. 둘 이상의 거래상대방이 있는 경우라도 양도자가 현금흐름 중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거래상대방이 현금흐름 중 비례하는 부분을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IAS 39.16(a)(iii)	제거 대상이 금융자산 (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현금흐름에서 식별된 특정부분 중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으로만 구성되는가?	
		예를 들면, 거래상대방이 채무상품의 현금흐름 중 이자부분의 90%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거 규정을 당해 이자부분의 90%에 적용한다. 둘 이상의 거래상대방이 있는 경우라도 양도자가 현금흐름 중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거래상대방이 특정하여 식별된 현금흐름 중 비례하는 부분을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IAS 39.16(b)	금융자산의 일부에 제거규정을 적용하도록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거 규정을 금융자산 전체에 적용하였는가?	
		예를 들면, (1)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에서 회수되는 현금 중 처음이나 마지막 90%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2) 수취채권 집합의 현금흐름 중 90%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매입자에게 수취채권 원금의 8%까지 신용손실을 보상하기로 하는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 제거 규정은 당해 금융자산 (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 전체에 적용한다.	
39E	IAS 39.17(a)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을 제거하였는가?	
	IAS 39.17(b)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제거 조건을 적절하게 적용하였는가?	
	IAS 39.18	문단 18(1) 또는 18(2)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양도한 것이다.	
	IAS 39.18(a)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39.18(b)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당해 현금흐름을 문단 19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에 따라 하나 이상의 수취인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가?	
	IAS 39.19	금융자산(최초 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당해 현금흐름을 하나 이상의 수취인(최종 수취인)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다음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처리하였는가?	
	IAS 39.19(a)	최초자산에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상당액을 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가?	
		양도자가 그 상당액을 단기간 선급하면서 시장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상환받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이 조건은 충족된다.	
	IAS 39.19(b)	현금흐름을 지급할 의무의 이행을 위해 최종수취인에게 담보물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자는 양도계약의 조건으로 인하여 최초자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하지 못하는가?	
	IAS 39.19(c)	*양도자는 최종수취인을 대신해서 회수한 현금을 중요한 지체 없이 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또한 양도자는 현금 회수일부터 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하기까지의 단기결제유예기간 동안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 (IAS 7 '현금흐름표'에서 정의함) 에 투자하고 이러한 투자에서 발생한 이자를 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현금을 재투자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39E	IAS 39.20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 (문단 18 참조), 양도자는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보유 정도를 평가하였는가?	
	IAS 39.20(a)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였으며 금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였는가?	
	IAS 39.21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는 양도자산의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양도 전후 양도자의 노출정도를 비교하여 평가한다. 금융자산의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변동에 대한 양도자의 노출정도가 양도의 결과 중요하게 변하지 않는다면 (예: 양도자가 확정가격이나 매도가격에 대여자의 이자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재매입하기로 하고 금융자산을 매도한 경우), 양도자는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IAS 39.21	*금융자산의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변동에 대한 양도자의 노출정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면 (예: 재매입 시점의 공정가치로 재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면서 금융자산을 매도한 경우 또는 계약상 더 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을 양도(예: 대출채권의 공동인수 후 분할) 하되 그 거래가 문단 19 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자는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것이다.*	
	IAS 39.20(b)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하는가?	
	IAS 39.22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는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지가 명백하여 별도의 계산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다. 한편,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변동에 대한 양도 전후 양도자의 노출정도를 계산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IAS 39.22	*이때 적절한 현행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여 양도자의 노출정도를 계산하고 비교하며, 발생하리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모든 순현금흐름 변동을 고려하되 발생가능성이 더 높은 결과에 더 큰 비중을 둔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39.20(c)(i)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이전하지도 아니하면서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면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였는가?	
	IAS 39.20(c)(ii)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이전하지도 아니하면서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하였는가?	
	IAS 39.23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는 양수자가 그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양수자가 자산 전체를 독립된 제3 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양도에 대한 추가적인 제약 없이 그 능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면, 양도자는 양도자산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것이다. 이 경우 이외에는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39E		제거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적절하게 회계처리하였는가?	
	IAS 39.24	금융자산 전체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는 양도로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수수료를 대가로 당해 양도자산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한다면, 관리용역제공계약과 관련하여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였는가?	
	IAS 39.24	관리용역 수수료가 용역제공의 적절한 대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용역제공의무에 따른 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하였는가?	
	IAS 39.24	관리용역수수료가 용역제공의 적절한 대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전체 금융자산의 장부금액 중 문단 27 에 따라 배분된 금액으로 용역제공권리에 따른 자산을 인식하였는가?	
	IAS 39.25	양도의 결과로 금융자산 전체가 제거되지만 새로운 금융자산을 취득하거나 새로운 금융부채나 관리용역부채를 부담한다면, 그 새로운 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관리용역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하였는가?	
	IAS 39.26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1)수취한 대가 (새로 취득한 모든 자산에서 새로 부담하게 된 모든 부채를 차감한 금액 포함) (2)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의 합계액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IAS 39.27	양도자산이 더 큰 금융자산의 일부이고 양도한 부분 전체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양도에 대하여 적절히 회계처리하였는가?	
	IAS 39.27	양도자산이 더 큰 금융자산의 일부이고 (예: 채무상품의 현금흐름 중 이자부분의 양도) 양도한 부분 전체가 제거 조건을 충족한다면, 금융자산 전체의 장부금액은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제거되는 부분에 대해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였는가?	
	IAS 39.27	양도자산이 더 큰 금융자산의 일부이고, 양도한 부분 전체가 제거 조건을 충족한다면, 관리용역자산은 계속 인식되는 부분으로 처리하였는가?	
	IAS 39.27	양도자산이 더 큰 금융자산의 일부이고, 양도한 부분 전체가 제거 조건을 충족한다면,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1)수취한 대가 (새로 취득한 모든 자산에서 새로 부담하게 된 모든 부채를 차감한 금액 포함)와 (2)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중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금액의 합계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IAS 39.27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제거되는 부분에 대해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39.28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할 때, 계속 인식되는 부분의 공정가치를 결정해야 한다.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유사한 부분을 매도한 경험이 있거나 당해 부분을 거래하는 시장이 있는 경우, 최근의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가 된다. 계속 인식되는 부분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공시가격이나 최근 시장거래가 없는 경우, 금융자산 전체의 공정가치와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양수자에게서 수취한 대가의 차이가 계속 인식되는 부분의 공정가치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가 된다.*	
39E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양도에 대하여 적절하게 회계처리하였는가?	
	IAS 39.29	양도자가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자산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며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였는가?	
	IAS 39.29	양도자는 후속기간에 양도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인식하였는가?	
39E		양도자가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이전하지도 아니하였다면, 동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회계처리하였는가?	
	IAS 39.30	양도자가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이전하지도 아니하며,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 (양도자산의 가치 변동에 대하여 양도자가 부담하는 노출정도)까지 그 양도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하였는가?	
	IAS 39.30	양도자가 양도자산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속적 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속적 관여의 정도는 ㈎ 양도자산의 장부금액과 ㈏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보증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였는가?	
	IAS 39.30	양도자가 양도자산에 대한 옵션을 매도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또는 매입, 매도를 둘 다 하는 경우), 지속적 관여의 정도는 양도자산 중 양도자가 재매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결정하였는가?	
	IAS 39.30	그러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에 대하여 풋옵션을 발행하는 경우, 지속적 관여의 정도는 양도자산의 공정가치와 옵션의 행사가격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였는가?	
	IAS 39.30	양도자가 양도자산에 대하여 현금결제옵션이나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속적 관여의 정도는 위의 IAS 39 문단 30(2)에서 설명한 비현금결제옵션의 지속적 관여의 정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는가?	
	IAS 39.31	양도자가 지속적 관여의 정도까지 자산을 계속 인식하는 경우 관련 부채도 함께 인식하였는가?	
	IAS 39.31	양도자산과 관련부채는 (IAS 39 의 측정과 관련된 다른 요구사항에 관계없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하였는가?	
	IAS 39.31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였는가?	
	IAS 39.31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였는가?	
	IAS 39.32	양도자는 양도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속적 관여의 정도까지 계속 인식하며, 관련부채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인식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39.33	후속 측정시 양도자산과 관련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각각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하였는가?	
	IAS 39.33	후속 측정시 양도자산과 관련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액을 상계하지 아니하였는가?	
	IAS 39.34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일부에 대하여만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제거되는 부분에 대해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였는가?	
	IAS 39.34(a) IAS 39.34(b)	다음 ⑴과 ⑵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⑴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 ⑵ 다음의 합계액 (i)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 (ii)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 (문단 55⑵ 참조) 중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금액	
	IAS 39.34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제거되는 부분에 대해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였는가?	
	IAS 39.35	양도자산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경우, 관련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하지는 아니하였는가?	
39E	IAS 39.36	양도자산을 계속 인식하는 경우 그 양도자산과 관련 부채는 상계하지 아니하였는가?	
	IAS 39.36	양도자산에서 발생하는 어떤 수익과 관련 부채에서 발생하는 어떤 비용도 상계하지 아니하였는가?	
	IAS 39.37	양도자가 비현금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IAS 39 에 따라 담보물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였는가?	
	IAS 39.37	*담보물에 대한 양도자와 양수자의 회계처리는 양수자가 그 담보물을 매도하거나 다시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양도자의 채무불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IAS 39.37(a)	양수자가 계약이나 관행에 따라 담보물을 매도하거나 다시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담보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재분류(예: 대여자산, 담보제공지분상품 또는 재매입수취채권)하였는가?	
	IAS 39.37(b)	양수자가 담보물을 매도하면 그 담보물을 반환할 의무를 공정가치로 측정한 부채와 매도로 수취한 대가를 인식하였는가?	
	IAS 39.37(c)	양도자가 계약조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담보물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면 그 담보물을 제거하였는가?	
	IAS 39.37(c)	*양수자는 그 담보물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자산으로 인식하거나 담보물을 이미 매도하였다면 그 담보물을 반환할 의무를 제거한다.*	
	IAS 39.37(d)	양도자가 계약조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담보물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자는 담보물을 계속 자산으로 인식하였는가? (또한, 양수자는 당해 담보물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는가?)	
		금융부채의 제거 (문단 39 내지 42)	
		IAS 39 에는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삭제) 여부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다수의 규정이 있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39. AG57-AG63	*Yes' 혹은 'N/A'인 경우, 금융부채의 제거에 대한 IAS 39 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임.*	
39F	IAS 39.39	IAS 39 에 따라 금융부채를 제거하였는가?	
	IAS 39.39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삭제되었는가?	
	IAS 39.39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된다.*	
	IAS 39.40 IAS 39. AG62	차입자와 대출자가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순액을 포함하고, 현금흐름을 할인할 때에는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사용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재가치가 최초 금융부채의 잔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 차이가 나는가? 그러한 교환 또는 변경은 실질적으로 계약 조건이 달라진 것이다.	
	IAS 39.40-41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 제거와 관련된 손익을 손익계산서상에 반영하면서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가?	
	IAS 39.40	기존 금융부채 (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도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가?	
	IAS 39. AG62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한다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금융부채의 소멸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인식하는가?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며, 변경된 부채의 잔여기간에 상각하는가?	
	IAS 39. AG62	*문단 40 을 적용할 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잔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이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에는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이 포함되며, 현금흐름을 할인할 때에는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사용한다.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한다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금융부채의 소멸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인식한다.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며, 변경된 부채의 잔여기간에 상각한다.*	
	IAS 39.41	소멸하거나 제 3 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 (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 (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가?	
	IAS 39.42	금융부채의 일부를 재매입하는 경우,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제거되는 부분에 대해 재매입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는가?	
	IAS 39.42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 (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는가?	
		최초 측정 (문단 43 내지 44)	
		최초 인식은 재무상태표상의 금융상품의 인식에 대한 시기를 의미한다. 최초 인식은 거래원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특정 상황에서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가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액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정가치는 지급하거나 수취란 현금의 크기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며 특정 파생상품계약에서는 "0"이 될 수도 있다.	
	IAS 39. AG64-65	*Yes' 혹은 'N/A'인 경우, 최초 측정에 대한 IAS 39 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임.*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39A,39B,39C,39D	IAS 39.43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적절한 경우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였는가?	
	IAS 39.43	거래원가가 적절하게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았는가?	
	IAS 39.4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 (금융부채) 의 취득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 (차감) 하여 측정한다.*	
	IAS 39.4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관련한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IAS 39.9	*거래원가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취득, 발행 또는 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이다. 증분원가는 금융상품의 취득, 발행 또는 처분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를 말한다.*	
39A,39B,39C,39D	IAS 39.44	후속적으로 원가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에 대하여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최초 인식시 매매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는가?	
39A,39B,39C,39D	IAS 39. AG64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 중 일부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라면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였는가?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문단 45 내지 46)	
		금융자산의 후속측정은 해당 금융자산을 어떤 범주에 분류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상품의 성격, 기업의 의도 및 최초 취득시 기업의 지정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단기간의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특정 금융상품을 거래한다면, 그 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활성거래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는 채권과 같은 기타 금융상품은 기업의 보유의도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모든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점과 후속측정시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하며, 공정가치 변동분은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IAS 39.45	금융자산의 후속측정을 위하여 금융자산이 IAS 39 에서 정의한 다음 4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되었는가? (a)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b) 만기보유금융자산 (c) 대여금 및 수취채권 (d) 매도가능금융자산	
	IAS 39.46	*이러한 범주는 이 기준서에 따라 금융자산의 측정과 당기손익의 인식에 적용한다. 재무제표에 표시할 경우 위의 범주에 대하여 다른 계정과목을 사용하거나 위와 다르게 분류할 수 있다. IAS 39 와 IFRS 7 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주석에 공시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자산은 위험회피회계에 따라 측정한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검토를 한다.* *정의*	
	IAS 39.9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은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이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a)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다. *(i)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부담한다.* *(ii) 최초 인식시점에서 최근의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공동으로 관리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이다.* *(iii) 파생상품이다(다만,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한다).* *(b) 문단 11A 에서 허용하는 경우 또는 지정하는 것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최초 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i)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이나 측정상의 불일치 ('회계불일치'라 불리기도 한다)가 제거되거나 상당히 감소된다.*	
	IAS 39. AG4D - AG4G IAS 39. AG4H - AG4K	*(ii)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을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이사회, 대표이사 등 주요경영진에게 공정가치기준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제공한다.* *보유한 지분상품이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IAS 39. AG4C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선택과 유사하다. 그러나 유사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처리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면,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문단 14(2)에 따라,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려면 두 가지 상황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함을 제시하여야 한다.*	
	IAS 39.9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이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a)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b) 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경우* *(c) 금융자산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IAS 39.9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며 활성거래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이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a)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매각할 의도가 있는 금융자산 (이 경우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한다)과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b) 최초 인식시점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c) 채무자의 신용악화를 제외한 다른 이유 때문에 최초 투자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금융자산. 이 경우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 아닌 다른 종류의 자산으로 구성된 자산집합 (예: 뮤추얼펀드나 이와 유사한 펀드)에 대한 지분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IAS 39. AG26	*공시가격이 있는 채무상품과 같이 활성거래시장에서의 가격이 공시되는 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IAS 39.9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또는 (a) 대여금 및 수취채권, (b) 만기보유금융자산, (c)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이다.*	
	IAS 39. AG14-26, IAS 39. AG66-68	*Yes' 혹은 'N/A'인 경우, 금융자산의 후속측정에 대한 IAS 39 의 규정을 준수한 것임.*	
39A,39C,39D	IAS 39.46	금융자산의 후속 측정시 최초 인식시점 이후의 매도나 기타 처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원가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가?	
	IAS 39.46	최초 인식 후 '매도가능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에 대해 공정가치로 측정하는가?	
	IAS 39.9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이다.*	
39A,39C,39D	IAS 39.46	'대여금 및 수취채권' 또는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가?	
	IAS 39.9	*상각후원가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최초인식시점의 측정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이며, 손상차손이나 대손상각을 인식(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IAS 39.9	*유효이자율법이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집합)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 현금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이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당해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 (예: 중도상환옵션, 콜옵션 및 유사한 옵션)을 고려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래 신용위험에 따른 손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에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한함), 거래원가 및 기타의 할증액과 할인액 등을 반영한다 (IAS 18 참조).*	
	IAS 39.9	*일반적으로 유사한 금융상품 집합의 현금흐름과 예상만기는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금융상품(또는 유사한 금융상품의 집합)에 대한 현금흐름 또는 예상만기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에 걸친 계약상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유효이자율을 구한다.*	
39A,39C,39D	IAS 39. AG8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할 때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을 변경하는 경우 실제 현금흐름과 변경된 추정현금흐름을 반영하여 당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또는 금융상품의 집합)의 장부금액을 조정하는가? *이러한 조정금액은 수익 또는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에 인식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39. AG7	*시장이자율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부 금융자산이나 변동금리부 금융부채의 현금흐름을 주기적으로 재추정하는 경우 유효이자율은 변동한다. 최초 인식시 변동금리부 금융자산이나 변동금리부 금융부채가 만기에 수취할 원금 또는 지급할 원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된다면, 일반적으로 미래 이자지급액의 재추정이 당해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IAS 39. AG8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을 변경하는 경우 실제 현금흐름과 변경된 추정현금흐름을 반영하여 당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또는 금융상품의 집합)의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이때 당해 금융상품의 최초 유효이자율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장부금액을 재계산하며, 이러한 조정금액은 수익 또는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39A,39C,39D	IAS 39.46	최초인식 후 '매도가능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을 원가로 측정하는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예외사항에 적합한가?	
	IAS 39.46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과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원가로 측정한다. 이를 제외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이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39A,39C,39D	IAS 39.9	당 회계연도 또는 직전 2 개 회계연도에 만기보유금융자산에 대한 분류제한규정 (tainting rule)이 적용되어 모든 금융상품을 만기보유금융자산이 아닌 다른 범주의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한 사실이 있는가?	
	IAS 39.9	*당 회계연도 또는 직전 2 개 회계연도에 만기보유금융자산 중 중요하지 않은 금액 이상(만기보유금융자산 총액과 비교하여 판단한다)을 만기일 전에 매도하였거나 분류변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다만, 매도 또는 분류변경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i) 만기나 중도상환권 행사일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아니하여 (예: 만기 전 3 개월 이내) 시장이자율의 변동이 공정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시점에 그 금융자산을 매도하거나 분류변경하는 경우* *(ii) 금융자산의 원금의 대부분을 상환계획에 따라 또는 중도상환으로 회수한 이후에 남은 잔액을 매도하거나 분류변경하는 경우* *(iii)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고 비반복적이며 통제할 수 없는 별도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 금융자산을 매도하거나 분류변경 하는 경우*	
	IAS 39. AG22	*적용지침은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분류제한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만기전 매도의 경우에 대해 보다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금융부채의 후속 측정 (문단 47)	
		금융부채의 후속측정은 금융부채를 어떤 범주로 분류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금융자산과는 달리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구분한다.	
	IAS 39.47	*최초 인식 후 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인식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IAS 39.47(a)	*(a)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IAS 39.47(b)	*(b)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IAS 39.47(c)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39.47(d)	*(c) IAS 39 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금융보증계약* *(d)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IAS 39.47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문단 89~102 의 위험회피회계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IAS 39.47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부채는 문단 29, 31 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IAS 39.9	*<u>정의</u>*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부채이다.* *(a)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한다. 금융부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한다.* *(i) 주로 단기간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부담한다.* *(ii) 최근의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공동으로 관리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이다.* *(iii) 파생상품이다. (다만,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b)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다. 문단 11A 에서 허용하는 경우 또는 지정하는 것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IAS 39. AG4D - AG4G	*(i)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이나 측정상의 불일치(회계불일치)가 제거되거나 상당히 감소된다.*	
	IAS 39. AG4H - AG4K	*(ii)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을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주요경영진에게 공정가치기준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제공한다.*	
	IAS 39. AG4C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선택과 유사하다. 그러나 회계정책의 성택과는 달리 유사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처리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면,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문단 14(2)에 따라, 그 회계정책의 선택으로 인해 보다 신뢰성 있고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문단 9 의 두 가지 상황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함을 제시하여야 한다.*	
	IAS 39.9	*금융보증계약이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이다.*	
	IAS 39. AG14-AG15	*Yes' 혹은 'N/A'인 경우, 금융부채의 후속측정에 대한 IAS 39 의 규정을 준수한 것임.*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39B,39C,39D	IAS 39.47(a)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였다면 최초 인식 후 해당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가?	
	IAS 39.47(a)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부채은 최초 인식 후 원가로 측정하는가?	
	IAS 39.47(c)	IAS 39 의 적용대상인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최초 인식 후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 인식금액에서 IAS 18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는가?	
	IAS 39.47(d)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의 경우 최초 인식 후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 인식금액에서 IAS 18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는가?	
	IAS 39.47	IAS 39 의 문단 47 의 (1)~(4)를 제외한 모든 금융부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가?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고려할 사항 (문단 48 내지 49)	
		IAS 39 는 공정가치의 결정방법에 대하여 상세한 지침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IAS 39 는 평가기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와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요율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를 기술하고 있다. 만약 평가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IAS 39 는 가능하다면 활성거래시장에서 도출한 정보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AS 39. AG69-82	*Yes' 혹은 'N/A'인 경우,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IAS 39 의 규정을 준수한 것임.*	
39A,39B,39C,39D	IAS 39.48	IAS 39, IAS 32 또는 IFRS 7 을 적용하기 위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결정함에 있어 문단 48A 와 부록 A 의 AG69 내지 AG82 를 적용하였는가?	
	IAS 39.48A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거래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로서 적절한 공시가격을 사용하였는가? 활성거래시장이 없다면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기법을 사용하였는가? 시장참여자가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이 있으며, 그 평가기법이 실제 시장 거래가격에 대해 신뢰할 만한 추정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평가방법을 사용하였는가? 선택한 평가기법은 시장 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평가기법은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며,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제학적 방법론에 부합하는가?	
	IAS 39.48A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한다.*	
	IAS 39.48A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동일한 금융상품 (즉, 수정하거나 재구성하지 아니함)의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가격을 사용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가?	
	IAS 39. AG69	청산하거나, 사업규모를 중요하게 축소하거나 또는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의도나 필요가 없는 상태인 계속기업 가정을 전제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결정하고 있는가?	
	IAS 39. AG72	(i) 보유 중인 자산이나 발행할 부채에 대해 매입호가를, (ii) 취득할 자산이나 보유부채에 대해 매도호가를, (iii) 위험을 상쇄하는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는 경우 시장가격의 중간 값을 사용하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는 금융상품의 단위수량과 그 시장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되는가?	
		IAS 39 문단 AG72-73 의 기타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고있는가?	
	IAS 39. AG74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거래시장이 없다면,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되는가?	
	IAS 39. AG75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함에 있어 시장 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IAS 39. AG76	평가기법은 a)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며, b)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제학적 방법론에 부합하는가?	
	IAS 39. AG76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동일한 금융상품의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와의 비교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경우, 거래가격을 최초 인식시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로 사용하는가?	
	IAS 39. AG76A	IAS 39 문단 AG76 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인식 후 이 기준서에 따라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요소(시간 포함)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범위까지만 그 변동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는가?	
	IAS 39. AG76A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후속 측정과 손익의 후속 인식은 IAS 39 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문단 AG76 을 적용하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 손익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인식 후에는 IAS 39 에 따라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요소(시간 포함)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범위까지만 그 변동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한다.*	
	IAS 39. AG80	(i) 금융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공정가치 추정치 범위의 편차가 중요하지 않거나 (ii) 그 범위 내의 다양한 추정치의 발생확률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고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과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를 측정하는가?	
	IAS 39. AG82	특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평가기법은 시장상황에 대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그 밖의 요소를 반영하는가?	
	IAS 39. AG8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화폐의 시간가치, 신용위험, 환율, 일반상품가격, 주식가격, 변동성, 중도상환위험, 관리용역원가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기초하여 결정되는가? 이 외의 다른 요소도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기업의 환경과 관련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특정한 환경과 관련되어 고려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지침이 IAS 39 문단 AG69~AG82 에 언급되어 있다.	
39A,39B,39C,39D	IAS 39.49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 (예: 요구불예금)의 공정가치는 요구하면 지급할 금액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최초일로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인가?	
		분류변경 (문단 50 내지 54)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39 는 금융상품의 분류변경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에서 다른 범주의 금융상품 또는 다른 범주의 금융상품에서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의 분류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기보유금융자산의 경우 해당 범주 내의 어떤 금융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다른 범주의 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하여야 한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분류제한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의 분류변경에 따른 손익은 문단 55 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Yes' 혹은 'N/A'인 경우, 금융상품의 분류변경에 대한 IAS 39 의 규정을 준수한 것임.	
39A,39B,39C,39D	IAS 39.50	보유기간 또는 발행기간 중 금융상품을 다른 범주에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변경하거나 당기손익인식항목에서 다른 범주로 분류변경한 사실이 없는가?	
	IAS 39.51	해당 금융자산을 더 이상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하였는가? 그러한 경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IAS 39.52	중요하지 않은 금액 이상의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하거나 분류변경하는 경우, 보유중인 모든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하였는가? 그러한 경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IAS 39.53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이전에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었으나, 현재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된 경우, 당해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하였는가? 그러한 경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IAS 39 문단 55 에 따라 회계처리하였는가?	
	IAS 39.54	측정기준을 공정가치에서 원가나 상각후원가로 측정방법을 변경하였으며 그러한 변경과 후속측정은기업회계기준서 IAS 39 문단 55 에 부합한 것인가?	
	IAS 39.54	*보유 의도나 능력에 변화가 있거나 환경의 변화로 인해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문단 9 에서 언급한 2 회계연도가 경과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보다 원가나 상각후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이 새로운 원가나 상각후원가가 된다. 이때 문단 55(2) 에 따라 자본으로 인식된 해당 자산의 손익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IAS 39.54(a)	*(a) 그 손익은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잔여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만기금액과 새로운 상각후원가의 차이는 할인차금이나 할증차금의 상각과 마찬가지로 당해 금융자산의 잔여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한다. 금융자산이 후속적으로 손상되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손익은 문단 67 에 따라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IAS 39.54(b)	*(b) 고정된 만기가 없는 금융자산의 경우, 그 손익은 당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금융자산이 후속적으로 손상되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손익을 문단 67 에 따라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손익 (문단 55 내지 57)	
		후속측정의 경우 금융자산이나 부채의 특정 범주에 적용하는 측정 기준에 따른다. 손익의 측정은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특정 범주에 따라 유사하게 회계처리한다. 금융상품이 위험회피 관계로 지정된다면 해당 손익도 위험회피 관계에 대한 회계처리에 따라 처리된다.	
	IAS 39. AG83	*Yes' 혹은 'N/A'인 경우,손익에 대한 IAS 39 의 규정을 준수한 것임.*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39A,39B,39C,39D	IAS 39.55(a)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분류된 모든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가?	
	IAS 39.55(b)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모든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서 발생하는 손익 중 손상차손, 화폐성 항목의 외환손익,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한 이자수익을 조정한 후의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IAS 39.55(b)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한 모든 배당금은 지급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가?	
	IAS 39.56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손익은 당해 금융상품이 제거되거나 손상되었을 때 또는 상각과정을 통해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는가?	
	IAS 39.57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으로 인식하는 경우 매매일과 결제일 간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인식하지 아니하는가?	
	IAS 39.57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으로 인식하는 경우 IAS 39 문단 55 에 따라 매매일과 결제일 간의 공정가치 차이금액을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적절하게 인식하는가?	
		금융자산의 손상과 대손 (문단 58 내지 70)	
	IAS 39.58	*IAS 39 는 금융자산의 손상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손상검토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상검토에 대한 규정은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의 손상은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므로 즉시 당기손익에 포함된다.*	
	IAS 39. AG84-AG93	*Yes' 또는 'N/A'인 경우, 금융자산의 손상과 대손에 대한 IAS 39 의 규정을 준수한 것임.*	
39A	IAS 39.59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에 대한 IAS 39 의 손상규정을 적용하였는가?	
	IAS 39.59	*손상을 초래한 단일의 특정 사건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여러 사건의 복합적인 결과가 손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IAS 39.59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는 당해 금융자산 보유자의 주의를 끄는 다음의 손상사건에 대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포함된다.*	
	IAS 39.59(a)	*(a)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	
	IAS 39.59(b)	*(b)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IAS 39.59(c)	*(c)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IAS 39.59(d)	*(d)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	
	IAS 39.59(e)	*(e)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거래시장의 소멸*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39.59(f)	*(f)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미래예상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 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집합의 미래예상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 이러한 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다.*	
	IAS 39.59(f)(i)	*(i)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차입자의 지급능력의 악화. 예를 들면, 연체금액이 증가하거나, 신용한도에 도달하여 매월 최소금액을 상환하는 신용카드의 차입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IAS 39.59(f)(ii)	*(ii)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상황 (예: 차입자 거주 지역의 실업률 증가, 관련 지역에서 저당자산가격의 하락, 석유생산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의 경우 석유가격의 하락, 차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산업상황의 악화 등)*	
	IAS 39.60	*금융상품이 더 이상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아 정상거래시장이 소멸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손상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실 자체는 손상의 증거가 되지 않지만 다른 정보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에는 손상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원가나 상각후원가 이하로 하락한 사실이 반드시 손상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 무위험이자율의 상승으로 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하락한 경우)*	
	IAS 39.61	*문단 59 에서 예시한 사건의 유형 이외에 지분상품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발행자가 영업하는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에서 발생한 변화 중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지분상품의 원가가 회복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중요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	
39A	IAS 39.59	손상사건이 추정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가?	
	IAS 39.62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추정하는 데 필요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제한적이거나 현재의 상황에 더 이상 충분히 목적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차입자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유사한 차입자에 관한 이용가능한 과거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경험적 판단에 따라 손상차손을 추정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상황을 반영할 목적으로 금융자산의 집합에 대한 관측가능한 자료를 조정하는 데 기업의 경험적 판단을 사용한다(부록 A 의 문단 AG89 참조) 합리적인 추정치의 사용은 재무제표작성의 필수적 요소이며, 재무제표의 신뢰를 훼손하지 아니한다.*	
39A	IAS 39.59	예상 손실이나 미래 사건의 발생가능성과 관계없이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를 인식하지 아니하였는가?	
39A	IAS 39.63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회계처리하는가?	
	IAS 39.63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는가?	
	IAS 39.63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대손을 제외하고 있는가?	
	IAS 39.63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는가?	
	IAS 39.63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가?	
39A	IAS 39.64	개별 또는 집합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손상검토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IAS 39.64	손상에 대한 객관적 사건을 평가함에 있어 개별적으로 중요한 금융자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손상을 평가하거나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금융자산에 대해 개별적 또는 집합적인 평가를 수행하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39.64	개별적으로 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추가적으로 그 금융자산의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는가?	
	IAS 39.64	개별적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집합적인 손상검토에서 제외하는가?	
39A	IAS 39.65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적정하게 환입하고 있는가?	
	IAS 39.65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 (예를 들면, 채무자의 신용등급 상승 등)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가?	
	IAS 39.65	환입 시 장부금액에서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환입하는가?	
	IAS 39.65	회복 후 장부금액이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가?	
	IAS 39.65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서 환입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가?	
39A	IAS 39.66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하여 적정하게 측정하고 회계처리하였는가?	
	IAS 39.66	손상차손을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시장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로 측정하는가?	
	IAS 39.66	상기 방법으로 측정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아니하는가?	
	IFRIC 10.8	손상차손을 기말시점에 인식하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4 호의 문단 28 에 따라 중간보고기간에 인식하는지와 관계없이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의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하지 아니하는가?	
39A	IAS 39.67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적정하게 측정하고 회계처리 하는가?	
	IAS 39.67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 손실에 대해 손상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가?	
	IAS 39.68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누적 손실은 취득원가 (원금 상환액과 상각액 반영 후 순액)와 현재 공정가치와의 차액에서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는가?	
	IAS 39.69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아니하는가?	
	IAS 39.70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 이를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가?	
	IFRIC 10.8	손상차손을 기말시점에 인식하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4 호 문단 28 에 따라 중간보고기간에 인식하는지와 관계없이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의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하지 아니하는가?	
	IFRIC 10.10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삭제)	
39A	IAS 39. AG93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었다면 손상차손을 측정한 목적으로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할 때 사용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위험회피 (문단 71 내지 102)	
		IAS 39 의 위험회피회계는 경제적 위험회피와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개별적으로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특별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IAS 39.85	*위험회피회계에서는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에 대한 손익의 상쇄효과를 인식한다.*	
		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관계의 유형에 따라 회계처리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정의는 IAS 39 의 위험회피회계 중 핵심부분이다. 위험회피관계가 이 기준서에 기술된 특정 위험회피관계 유형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험회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없다. 또한, IAS 39 에서는 일부 위험회피거래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명하고 있다.	
		정의	
	IAS 39.9	*확정계약은 미래의 특정시기에 거래대상의 특정 수량을 특정 가격으로 교환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약정을 말한다.*	
	IAS 39.9	*예상거래는 이행해야 하는 구속력은 없으나,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를 말한다.*	
	IAS 39.9	*위험회피수단은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여 지정한 파생상품 또는 비파생금융자산(또는 비파생금융부채)을 말한다. 다만, 비파생금융자산 및 비파생금융부채는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IAS 39.9	*위험회피대상항목은 (a)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b)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 부채, 확정계약,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이다.*	
	IAS 39.9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으로 상쇄되는 정도이다.*	
	IAS 39.86	*위험회피관계는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IAS 39.86(a)	*공정가치위험회피: 특정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IAS 39.86(b)	*현금흐름위험회피: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예를 들어,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에서 발생한 미래이자지급액)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특정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IAS 39.86(c)	*IAS 21 "환율변동효과"에서 정의하는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IAS 39.71	*문단 85~88 과 부록 A 의 문단 AG102~AG104 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 사이에 위험회피관계가 지정된 경우,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은 문단 89~102 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IAS 39. AG94-AG132	*Yes' 혹은 'N/A'인 경우,위험회피회계에 대한 IAS 39 의 규정을 준수한 것임.*	
39G	IAS 39.72	위험회피수단이 IAS 39 에 적합한 위험회피수단에 해당되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39.72	위험회피수단이 매도옵션인 경우 IAS 39 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사항에 해당하는가?	
	IAS 39.72	위험회피수단이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비파생금융부채인 경우 오직 외화위험만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는가?	
	IAS 39.72	*IAS 39 문단 88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일부 매도옵션 (부록 A 의 문단 AG94 참조)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비파생금융부채는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IAS 39. AG94	*매도옵션의 잠재적 손실은 관련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잠재적 가치변동 이익보다 상당히 클 수 있다. 즉, 매도옵션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변동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따라서 매도옵션은 위험회피수단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매입옵션 (다른 금융상품에 내재된 매입옵션 포함)을 상쇄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예: 중도상환가능채무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된 매도콜옵션) 반면에 매입옵션은 손실 이상의 잠재적 이익을 가지므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으로 인한 손익변동위험을 감소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매입옵션은 위험회피수단의 조건을 충족함.*	
	IAS 39.73	위험회피수단이 보고기업의 외부당사자와 체결한 파생상품이나 이와 유사한 계약인가?	
	IAS 39.73	*연결실체 내의 개별기업이나 개별기업 내의 부문과 연결실체 내의 다른 개별기업이나 개별기업 내의 다른 부문 사이에 위험회피거래를 체결하더라도, 이러한 연결실체 내 거래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회피거래는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위험회피거래가 재무보고의 대상이 되는 개별기업 또는 부문의 외부당사자와 체결된 것이라면, 당해 위험회피거래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개별재무제표나 별도재무제표에서 또는 부문보고에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이 적정한가?	
	IAS 39.74	위험회피수단 전체에 대하여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였는가? 그렇지 아니하다면, 지정한 위험회피수단이 IAS 39 문단 74 의 예외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가?	
	IAS 39.75	위험회피수단의 비례적 부분을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는가?	
	IAS 39.75	위험회피수단의 잔여만기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는 아니하였는가?	
	IAS 39.74	*일반적으로 위험회피수단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공정가치가 존재하며, 당해 공정가치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위험회피수단 전체에 대하여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한다.*	
	IAS 39.74(a)	*(a) 옵션의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를 구분하여 내재가치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시간가치의 변동을 제외하는 경우*	
	IAS 39.74(b)	*(b) 선도계약의 현물가격과 이자요소를 구분하는 경우*	
	IAS 39.74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의 프리미엄과 옵션의 내재가치는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으므로, 위의 (a)와 (b)의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옵션의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를 모두 평가하는 동적위험회피전략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39.75	*위험회피수단의 비례적 부분 (예: 계약단위 수량의 50%)을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위험회피수단의 잔여만기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할 수 없다.*	
	IAS 39.76	복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하나의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하는 경우라면, (i) 회피대상위험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으며, (ii) 각 위험회피효과를 제시할 수 있고, (iii) 위험회피수단과 각 회피대상위험 사이의 구체적인 지정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가?	
	IAS 39.77	위험회피수단이 매도옵션과 매입옵션이 결합된 파생상품으로서 실질적으로 순매도옵션에 해당되지 않는가? 둘 이상의 파생상품의 결합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다면, 그러한 결합이 모두 매도옵션에 해당되지 않는가?	
	IAS 39.77	*둘 이상의 파생상품이나 이들 파생상품의 비례적 부분의 결합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떤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다른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상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환위험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파생상품, 이들 비파생상품의 비례적 부분의 결합 또는 파생상품과 비파생상품의 결합 또는 비례적 부분의 결합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옵션과 매입옵션이 결합된 이자율 칼라나 기타 파생상품이 실질적으로 순매도옵션이며 순프리미엄을 수취한다면, 당해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둘 이상의 금융상품이나 이들 금융상품의 비례적 부분의 결합이 모두 매도옵션이 아니거나 이들 결합이 순매도옵션이 아니라면, 당해 금융상품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IAS 39 에 적합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인가?	
	IAS 39.78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미인식 확정계약,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인가?	
	IAS 39.78	*위험회피대상항목은 (a) 하나의 자산, 부채, 확정계약,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 (b) 유사한 위험의 특성을 갖는 자산, 부채, 확정계약,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집합, (c)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서 회피대상위험 (이자율 위험만 가능)을 공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포트폴리오 중 일부일 수 있다.*	
	IAS 39.79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만기보유금융자산인 경우로서, 이자율위험이나 중도상환위험에 대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지정하지 아니하였는가?	
	IAS 39.80	연결재무제표에서 전부 제거되지 않는 연결실체 내의 화폐성항목의 외화위험이 아니라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기업의 외부당사자와 관련된 것인가?	
	IAS 39.80	예상거래가 당해 거래를 체결한 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되며 외화위험이 연결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면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연결재무제표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외화위험인가?	
	IAS 39. AG99A	*다음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결실체내 예상거래의 외화위험은 연결재무제표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a) 예상거래가 거래를 체결한 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되고,* *(b) 외화위험이 연결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친다.(그렇지 않다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연결실체내 거래는 일반적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거래의 예로는 관련된 외부거래가 없는 경우의 연결실체내 기업간 로열티, 이자 또는 경영자문수수료의 지급을 들 수 있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이러한 거래의 예로는 연결실체의 외부당사자에게 재고자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경우에 연결실체내 기업간 재고자산에 대한 예상매출이나 예상매입을 들 수 있다.	
	IAS 39. AG99B	연결실체내 예상거래에 대한 위험회피에 있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은 위험회피대상거래의 외화위험이 연결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였는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금융상품인 경우 IAS 39 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지정하였는가?	
	IAS 39.81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인 경우로서 당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일부에 관련된 위험에 대하여 위험회피로 지정된 경우 위험회피효과가 측정가능한가?	
		예를 들면, 이자부자산이나 이자부부채의 이자율위험 중 식별가능하고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예: 위험회피대상 금융상품의 전체 이자율위험 중 무위험이자율요소 또는 기준금리요소)	
	IAS 39.81A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서 공정가치위험회피대상이 개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특정 통화의 금액인 경우, 지정된 회피대상위험은 이자율위험인가?	
	IAS 39.81A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금액은 금융자산의 금액 또는 금융부채의 금액이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순액으로 지정하지 않았는가?	
	IAS 39.81A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포트폴리오를 이자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때, 이자율이 재조정되는 시점('계약상 재조정시점')이 아닌 이자율이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예상 재조정시점')을 기준으로 회피대상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였는가?	
	IAS 39.81A	중도상환이 가능한 금융자산이 포함된 포트폴리오를 중도상환을 할 수 없는 파생상품으로 위험회피하게 되면, 회피대상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항목의 예상중도상환일이 수정되거나, 실제 중도상환일이 예상 중도상환일과 다른 경우 비효과적인 부분이 발생한다.	
	IAS 39.82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라면, 외화위험 또는 전체위험에 대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였는가?	
	IAS 39.83	항목의 집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그러한 집합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가?	
	IAS 39.83	유사한 자산이나 부채의 집합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집합에 포함된 개별 자산이나 부채는 지정된 회피대상위험과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IAS 39.83	집합에 포함된 개별 항목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집합 전체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거의 비례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IAS 39.84	전체 순포지션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가?	
	IAS 39.84	*위험회피수단(또는 유사한 위험회피수단의 집합)과 위험회피대상항목(또는 유사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집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비교하여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여야 하므로, 위험회피수단을 특정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아닌 전체 순포지션 (예: 유사한 만기를 갖는 모든 고정금리부 금융자산과 고정금리부 금융부채의 순액)과 비교하는 것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IAS 39.86	위험회피관계가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에 해당되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39.87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에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IAS 39.88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가?	
	IAS 39.88(a)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하였는가?	
	IAS 39.88(a)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는가?	
	IAS 39.88(a)	문서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나 거래의 식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는가?	
	IAS 39.88(a)	문서에는 회피대상위험의 성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는가?	
	IAS 39.88(a)	문서에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였는가?	
	IAS 39.88(b)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 데 있어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대는 최초의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된 특정 위험회피관계의 위험관리전략과 일관성있는가?	
	IAS 39.88(c)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가?	
	IAS 39.88(c)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현금흐름 변동에 노출되어 있는가?	
	IAS 39.88(d)	위험회피효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가?	
	IAS 39.88(d)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가?	
	IAS 39. 88(e) IAS 39. AG105(2)	위험회피효과를 위험회피기간에 계속적으로 평가하며 (소급적 위험회피효과평가)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가? 즉, 80%~125%의 범위에 존재하는가?	
	IAS 39.89	위험회피관계가 공정가액위험회피인 경우,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IAS 39 에 따라 회계처리하였는가?	
	IAS 39. 89(a)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재측정에 따른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비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IAS 21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측정한 장부금액의 변동 중 외화요소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IAS 39. 89(b)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IAS 39. 89(b)	상기 조정이 없었다면 원가로 측정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우에도 장부금액 조정으로 인한 조정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IAS 39. 89(b)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매도가능금융자산인 경우에도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IAS 39.89A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포트폴리오 일부의 이자율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 한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은 다음 중 하나로 표시함으로써 문단 89(2)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39. 89A(a)	(a) 재조정기간 중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자산인 경우에는 하나의 별도 항목으로 자산에 표시한다.	
	IAS 39. 89A(b)	(b) 재조정기간 중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부채인 경우에는 하나의 별도 항목으로 부채에 표시한다.	
	IAS 39.89A	상기의 (a)와 (b)에 따른 별도 항목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다음에 표시한다. 별도 항목에 포함된 금액은 관련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IAS 39.90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특정위험만을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한 경우, 회피대상위험과 관련이 없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은 위험회피관계가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였는가?	
	IAS 39.91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절하게 공정가액위험회피를 전진적으로 중단하였는가?	
	IAS 39.91(a)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였는가? (a)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된 경우 (다만, 위험회피수단을 다른 위험회피수단으로 대체하거나 만기연장하는 것이 위험회피전략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위험회피수단의 대체나 만기연장은 소멸이나 청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IAS 39. 91(b)	(b)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IAS 39. 91(c)	(c)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IAS 39.92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에 따라 인식한 장부금액의 조정액(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포트폴리오의 이자율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인 경우, 별도의 재무상태표 항목)은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IAS 39.92	상각은 조정액이 발생한 직후 개시할 수 있으며, 늦어도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정을 중단하기 전에는 개시하여야 한다. 상각을 개시하는 시점에 다시 계산한 유효이자율에 기초하여 상각한다. 다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포트폴리오의 이자율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 한하여, 유효이자율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상각이 종료되는 시점은 당해 금융상품의 만기이거나 포트폴리오의 이자율위험회피의 경우 당해 재조정기간의 종료일이다.	
	IAS 39.93	미인식 확정계약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확정계약의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누적변동분은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IAS 39.94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는 확정계약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확정계약을 이행한 결과 인식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누적변동분을 포함하도록 조정하였는가?	
	IAS 39.95	위험회피관계가 현금흐름위험회피인 경우,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IAS 39 에 따라 회계처리하였는가?	
	IAS 39. 95(a)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IAS 39. 95(b)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39. 96(a)	자본 중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부분은 (i)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수단의 손익누계액과 (ii)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미래예상현금흐름의 공정가치(현재가치) 변동누계액 중 작은 금액으로 조정하였는가?	
	IAS 39. 96(b)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수단 중 위험회피가 지정된 부분의 잔여 손익(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IAS 39. 96(c)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된 특정 위험회피관계에 관한 위험회피전략이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이나 관련되는 현금흐름 중 특정 부분을 위험회피효과평가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손익 중 제외된 부분은 위험회피관계가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였는가?	
	IAS 39.97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한다면, 자본에 직접 인식된 관련 손익은 당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예: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이 인식되는 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었는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손실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미래 회계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였는가?	
	IAS 39.98 IAS 39.99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거나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에 대한 예상거래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되는 경우, 기업이 선택한 회계정책에 따라 관련 손익을 일관성있게 회계처리하였는가?	
	IAS 39. 98(a)	기업의 회계정책이 자본에 직접 인식한 관련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이라면, 당해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는가?	
	IAS 39. 98(a)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손실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미래 회계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금액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였는가?	
	IAS 39. 98(b)	기업의 회계정책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관련 손익을 제거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원가 또는 장부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라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취득원가나 장부금액에 이를 포함하였는가?	
	IAS 39.100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거나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가 아닌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관련 손익은 위험회피대상인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예: 예상매출이 발생한 때)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였는가?	
	IAS 39.101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절하게 공정가액위험회피를 전진적으로 중단하였는가?	
	IAS 39.101(a)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였는가? (a)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및 행사된 경우 (다만, 위험회피수단의 다른 위험회피수단으로 대체나 만기연장이 위험회피전략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위험회피수단의 대체나 만기연장은 소멸이나 청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IAS 39.101(b)	(b)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IAS 39.101(c)	(c)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더 이상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게 된 예상거래도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AS 39.101(d)	(d)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IAS 39.101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외에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기간부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관련 누적손익을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 문단 97, 98 또는 100 을 적용하여 인식하였는가?	
	IAS 39.101(c)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관련 누적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IAS 39.102	순투자의 일부로 회계처리하는 화폐성항목의 위험회피를 포함하여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를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하였는가?	
	IAS 21.8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는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에 대한 보고기업의 지분 해당 금액이다.*	
	IAS 21.15	*기업이 해외사업장에 지급하거나 수취할 화폐성항목을 보유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실질적으로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이다.*	
	IAS 39.102	(a)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b)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c)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였는가?	

IAS 40 투자부동산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본 질문서는 투자부동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는 IAS 40 을 다룬다. 동 기준서는 기업이 투자부동산 측정에 대하여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 중에서 선택하는 것을 허용한다. 주요 이슈들 중에서 하나는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 또는 부동산이 당해 기준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IAS 16 '유형자산' 또는 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적용범위	
		IAS 40 는 모든 투자부동산의 인식, 측정 및 주석공시에 적용된다. *동 기준서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a) *농립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 b) *석유, 천연가스, 이와 유사한 비재생 자원과 같은 매장광물과 광업권* c)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측정이나 운용리스로 리스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리스제공자의 투자부동산의 측정을 제외한 IAS 17 '리스'에서 다루는 사항*	
		예비질문	
		어떠한 예비질문에라도 "예"라고 답한 경우에는 관련 세부준수질문 (detailed compliance questions) 에 답하시오.	
40A		당기 중 기업은 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을 보유, 금융리스로 리스 또는 취득하였는가?	
40B		당기 중 기업은 IAS 40 에서 규정하는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을 보유, 금융리스로 리스 또는 취득하였는가?	
40C		당기 중 기업은 현존하는 투자부동산과 관련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였는가?	
40D		기업은 모든 투자부동산의 회계정책으로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하였는가?	
40E		기업은 모든 투자부동산의 회계정책으로 원가모형을 선택하였는가?	
40F		당기 중 투자부동산의 계정대체가 있었는가? *Note: 투자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 (예: 최초에는 투자부동산으로 보유했던 부동산이 현재는 자가사용부동산인 경우) 이 발생하는 경우 계정대체가 발생한다.*	
40G		당기 중 기업은 투자부동산을 처분 (매각 또는 금융리스 체결) 또는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였는가?	
40H		기업은 투자부동산으로 회계처리되는 운용리스에서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가?	
40I		기업은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투자부동산을 취득하였는가?	
40J		당기 중 기업은 투자부동산의 손상, 멸실 또는 포기로 제 3 자로부터 받은 보상이 있었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정의	
	IAS 40.5	***자가사용부동산****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또는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자나 금융리스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다.* ***원가*** *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 또는 경우에 따라서 다른 기준서 (예: IFRS 2 '주식기준보상') 의 특정 규정에 따라 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그 자산에 귀속된 금액이다.*	
		세부준수질문	
40A	IAS 40.5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나 금융리스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토지, 건물 – 또는 건물의 일부분 – 또는 두 가지 모두)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었는가?	
		Note: 다음은 투자부동산의 예이다. a)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 b) *장래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만약 토지를 자가사용할지 또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당해 토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c) *직접 소유 (또는 금융리스를 통해 보유) 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d)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e)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40H	IAS 40.6	기업이 운용리스에서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업은 그 리스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회계처리하였는가?	
		Notes:	
	IAS 40.6	*1) 해당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리스이용자가 인식된 동 자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선택적인 분류는 각 부동산 별로 적용될 수 있다.*	
	IAS 40.6	*2) 그러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 중 어느 하나라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었다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는 모든 부동산은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40A	IAS 40.9	다음의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가? a)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IAS 2 '재고자산' 참조). 예를 들면 가까운 장래에 판매하거나 개발하여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취득한 부동산이다. b) 제 3 자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IAS 11 '건설계약' 찬조) c) 자가사용부동산 (IAS 16 참조). 미래에 자가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미래에 개발 후 자가사용할 부동산,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종업원이 시장가격으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계없음), 처분예정인 자가사용부동산을 포함한다. d)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40A	IAS 40.10	부동산 중 일부분을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일부분을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또는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 또는 금융리스로 제공할 수 있으면 기업은 각 부분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였는가?	
40A	IAS 40.10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할 수 없다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또는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만 당해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는가?	
40A	IAS 40.11	기업이 부동산 사용자에게 부수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전체 계약에서 그러한 용역의 비중이 중요하지 않다면 당해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는가 (예를 들어 사무실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하는 리스이용자에게 보안과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반대로, 투숙객에게 제공되는 용역이 전체 계약에서 중요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는 호텔은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된다.)?	
40A	IAS 40.14	투자부동산의 정의 및 관련된 지침에 따라 일관성 있게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설정하였는가?	
40A	IAS 40.15	기업이 지배기업 또는 다른 종속기업에게 리스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으로 회계처리되였는가?	
40A	IAS 40.15	기업이 지배기업 또는 다른 종속기업에게 리스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이 IAS 40 문단 5 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그 부동산은 리스제공자의 개별재무제표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에서 투자부동산으로 회계처리되었는가?	
		인식	
40B, C	IAS 40.16	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투자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식하였는가? a)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b) 투자부동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40B, C	IAS 40.17	기업은 모든 투자부동산 원가가 발생한 시점에 당해 원가가 IAS 40 문단 16 (위 참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였는가? *Note: 이러한 원가는 투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생한 원가와 후속적으로 발생한 추가원가, 대체원가 또는 유지원가를 포함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40B, C	IAS 40.18	기업은 투자부동산과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방생하는 유지원가는 발생시점에 손익으로 인식하였는가?	
40B	IAS 40.19	기업이 투자부동산의 일부분을 대체를 통하여 취득하였다면 (예: 부동산의 인테리어 벽 대체), 기업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는가? a) IAS 40 문단 16 (위 참조)에서 규정하는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가발생 시점에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에 인식한다 b)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한다. ?	
		인식시점에서의 측정	
40B	IAS 40.20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측정되는가?	
40B	IAS 40.21	구입한 투자부동산의 원가는 구입금액과 구입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 구성하는가?	
40B	IAS 40.23	다음의 항목은 투자부동산의 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가? a)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이 없는 초기원가 b) 계획된 사용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발생하는 부동산의 운영손실 c) 건설이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인 원재료, 인력 및 기타 자원의 낭비 금액	
40B	IAS 40.24	투자부동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원가는 현금가격상당액인가?	
40B	IAS 40.24	투자부동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의 차액은 신용기간 동안의 이자비용으로 인식되었는가?	
40B, 40H	IAS 40.25-26	리스계약으로 보유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 경우에 기업은 다음과 같이 최초 인식시점에 인식하였는가? a) IAS 17 문단 20 에 따라 동 부동산의 공정가치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자산을 인식한다. b) 동일한 금액을 부채로 인식한다. 다만, 지급한 리스할증금은 최소리스료의 일부분이므로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나,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부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IAS 40.26	*Note: 리스계약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공정가치로 회계처리되는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닌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다.*	
40I	IAS 40.27	기업이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투자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기업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였는가? a)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다. b)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중 어느 자산에 대해서도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Note: 다음 (a) 또는 (b)에 해당하면서 (c)를 충족하는 경우에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 a) *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 (위험, 시기, 금액)이 제공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과 다르다.* b)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 일부의 기업특유가치가 교환거래의 결과로 변동한다.* c) *위 (a) 또는 (b)에서의 차이가 교환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하여 중요하다.*	
40I	IAS 40.29	기업이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이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당해 기업은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고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한 자산의 원가로 측정하였는가?	
40I	IAS 40.27	교환거래에 경제적 실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취득된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동 자산의 취득원가를 측정한다.	
		인식 후의 측정	
		회계정책의 선택	
40D, E	IAS 40.32A	기업은 다음 두 범주의 투자부동산을 각 범주 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는가? a) 투자부동산을 포함한 특정 자산군의 공정가치와 연동하는 수익 또는 그 자산에서 얻는 수익으로 상환하는 부채와 연계되어 있는 모든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모형 또는 원가모형을 선택하여 평가한다. b) 위 (a)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였는지 상관없이 그 밖의 모든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모형 또는 원가모형을 선택하여 평가한다.	
40D,E	IAS 40.32C	기업이 IAS 40 문단 32A (위 참조)에서 설명하는 두 범주의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하였는가? a) 두 범주의 투자부동산 사이에 부동산 매매는 공정가치로 특정되었다. b) 공정가치변동누계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다.	
40D,E	IAS 40.32C	기업이 IAS 40 문단 32A (위 참조)에서 설명하는 두 범주의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고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의 범주에서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의 범주로 투자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시점의 동 부동산 공정가치와 같은 간주원가로 새롭게 원가모형이 적용되는 투자부동산은 측정되었는가?	
40D, E	IAS 40.30	IAS 40 문단 32A (위 참조) 및 34 (아래 참조)에서 설명하는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기업은 투자부동산에 대한 회계정책으로 공정가치모형과 원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하였는가	
	IAS 40.31	*Note:* 선택된 회계정책은 매기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한 IAS 8 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IAS 40 에서 공정가치모형에서 원가모형으로의 변경이 동 요건을 충족시킬 것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언급하고 있는 사실에 주의하라.*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40H	IAS 40.34	운용리스에서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된 경우, 공정가치모형이 적용되었는가? *Note: 이러한 상황에서 IAS 40 문단 30 의 평가방법은 선택할 수 없다. 즉, 기업은 자동적으로 동 문단에 따라 허용되는 회계정책의 선택 권리를 상실하고 투자부동산으로 회계처리되는 모든 부동산은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공정가치모형	
40D	IAS 40.33	최초 인식후,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기업은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IAS 40 문단 53 – 아래 참조)하고는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였는가?	
40D	IAS 40.35	기업은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변동을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가?	
40D	IAS 40.36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동 자산이 교환될 수 있는 금액인가?	
40D	IAS 40.37	기업은 매각이나 다른 형태의 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원가를 차감하지 않은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산정하였는가?	
40D	IAS 40.38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시장상황을 반영하는가? *Note: IAS 40 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은 IAS 40 문단 39 ~ 44 에서 제시된다.*	
40D	IAS 40.45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같은 위치나 상태에 있으면서 리스 및 기타 계약조건이 유사한 부동산 활성거래시장의 현재가격에 근거하여 결정되었가? *Note: 기업은 부동산의 특성, 위치, 상태 등의 차이와 투자부동산과 관련된 리스 및 기타 계약의 계약조건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0D	IAS 40.46	IAS 40 문단 45 (위 참조)와 같은 종류의 부동산 활성거래시장의 현재가격을 구할 수 없다면,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기업은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원천에서 얻은 정보를 고려하는가? a) 특성, 상태, 위치 (또는 리스나 기타 계약)이 다른 부동산이 활발히 거래되는 시장의 현행가격. 이 경우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다. b) 유사한 부동산이지만 거래가 덜 활발한 시장의 최근가격. 이 경우 최근 거래일 이후에 달라진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다. c) 신뢰성 있는 추정치에 근거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Notes:* *1)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은 현존하는 리스 및 기타계약의 조건에 의해 확인 되거나, (가능한 경우) 같은 위치와 상태에 있는 유사한 부동산에 대한 현행 시장의 임대수익 등과 같은 외부 증거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적용되는 할인율은 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의 불확실성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다.* *2) IAS 40 문단 46 (위 참조)에서 예시한 여러 원천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면 각각 추정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가 다른 경우, 합리적인 공정가치 추정치 범위 내에서 가장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기업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고려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40D	IAS 40.50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별도로 분리하여 인식한 자산이나 부채이지만 투자부동산에 포함되는 자산 (예: 임차개량시설물, 승강기 또는 공기조절장치)의 가치를 제외하였는가	
40D	IAS 40.51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기업은 투자부동산을 개량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미래의 자본적 지출과 그 미래의 지출에서 기대되는 미래의 효익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는가?	
40D	IAS 40.52	투자부동산과 관련된 예상 현금유출액 (이미 인식된 부채 관련 지급액은 제외)의 현재가치가 예상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초과한다면, 기업은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부채를 인식하였는가? <u>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u>	
40D	IAS 40.53	기업이 처음으로 취득 (처음으로 투자부동산이 되거나, 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으로 처음으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계속하여 신뢰성 있게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은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가? *Note: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공정가치모형은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계속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가정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계속하여 신뢰성 있게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비교할 만한 시장거래의 발생빈도가 낮고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의 대체적 추정방법 (예를 들면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만 발생한다.*	
40D	IAS 40.53-54	최초 인식 시점에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계속회서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다고 평가된다면 기업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는가? a) IAS 16 에 따른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투자부동산을 측정한다. b) IAS 16 에 따른 회계처리 목적으로 투자부동산의 잔존가치는 영(0)으로 가정한다. c)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40D	IAS 40.55	기업이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해 온 경우라면 비교할만한 시장의 거래가 줄어들거나 시장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게 되더라도, 기업은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계속해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가? *Note: 이 문단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공정가치"의 예외는 공정가치로 측정해 온 투자부동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인식 시점 (또는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으로 최초로 회계처리되는 시점)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원가모형	
40E	IAS 40.56	최초 인식 이후, 원가모형을 선택한 기업은 다음 중 하나에 따라 모든 투자부동산을 측정하였는가? a) IAS 16 에 다른 원가모형 b) IFRS 5 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투자부동산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계정대체	
40F	IAS 40.57	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이 다음과 같은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되었는가? a) 자가사용의 개시. 이 경우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한다. b)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개발의 시작. 이 경우 투자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한다. c) 자사사용의 종료. 이 경우 자가사용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다. d) 제 3 자에게 운용리스 제공. 이 경우 재고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다.	
	IAS 40.58	*Note: 기업이 투자부동산을 개발하지 않고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제거될 때까지 당해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계속해서 분류한다. 이와 유사하게 기업이 현존하는 투자부동산을 재개발하여 미래에도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재개발기간동안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며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40E, F	IAS 40.59	기업이 투자부동산을 원가모형으로 평가하고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하였다면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은 승계되며 측정과 주석공시 목적 모두를 위해 변경되지 아니하였는가?	
40F	IAS 40.60	공정가치로 평가된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 사용목적 변경시점의 공정가치는 IAS 16 또는 IAS 2 에 따른 후속적인 회계를 위한 간주원가인가?	
40F	IAS 40.61	자가사용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기업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는가? a) 사용목적 변경시점까지 IAS 16 을 적용한다 b) 사용목적 변경시점의 IAS 16 에 의한 부동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은 IAS 16 에 따라 재평가회계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40F	IAS 40.63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는가?	
40F	IAS 40.65	건설이나 개발이 완료되어 건설중인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부동산의 장부금액과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가?	
		처분	
40G	IAS 40.66	투자부동산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 제거 (제무상태표에서 삭제)되는가? a) 처분 b)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40G	IAS 40.67	기업은 투자부동산의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 IAS 18 '수익' (또는 판매후리스계약 또는 금융리스계약으로 처분하는 경우 IAS 17)의 기준을 적용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40G	IAS 40.68	기업이 투자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대체되는 부분의 원가를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면, 당해 기업은 대체된 부분이 개별적으로 감가상각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을 제거하였는가?	
40E, G	IAS 40.68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의 경우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을 기업이 결정하기 어렵다면 기업은 대체하는 원가를 이용하여 대체되는 부분의 취득 또는 건설시점의 원가를 추정하였는가?	
40D, G	IAS 40.68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의 경우에는 대체되는 부분의 공정가치 감소액이 얼마인지 결정하기 어렵다면, 대체되는 부분의 공정가치 감소액을 결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기업은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에 대체되는 원가를 포함하여 공정가치를 재측정 (대체를 수반하지 않은 추가취득한 경우에 요구하는 것과 같이)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추정하였는가?	
40G	IAS 40.69	투자부동산의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되었가? a)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손익은 결정된다. b) 폐기나 처분이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 (IAS 17 에서 판매후리스계약에 대하여 다르게 요구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40G	IAS 40.70	투자부동산의 처분대가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는가?	
40G	IAS 40.70	지급이 이연되는 경우, 기업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는가? a) 수취하는 대가를 현금등가액으로 인식한다. b) 수령하는 명목금액과 현금등가액의 차액은 IAS 18 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40J	IAS 40.72	투자부동산의 손상, 멸실 또는 포기로 제 3 자에게서 받는 보상은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는가?	
40D, E	IAS 40.73	투자부동산의 손상이나 멸실, 이와 관련한 제 3 자에 대한 청구금액이나 제 3 자로부터의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 그리고 후속적인 대체자산의 취득이나 건설은 각각 별개의 경제적 사건으로 간주되고 다음과 같이 분리하여 회계처리되었는가? a) 투자부동산의 손상은 IAS 36 에 따라 인식한다. b) 투자부동산의 폐기나 처분은 IAS 40 문단 66 ~ 71 에 따라 인식한다. c) 투자부동산의 손상, 멸실 또는 포기로 제 3 자에게서 받는 보상은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d) 복구, 구입 또는 건설로 대체하는 자산의 원가는 IAS 40 문단 20 ~ 29 에 따라 결정한다.	

IAS 41 농림어업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본 질문서는 농림어업활동의 회계처리를 정하는 IAS 41 를 다룬다. 주요 문제는 기준서가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에 적용가능한지를 결정하고,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공정가치의 결정하는 것이다.	
		적용범위	
		IAS 41 는 다음 사항이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1)생물자산* *(2)수확시점의 수확물* *(3) IAS 41. 34~35 에서 규정하는 정부보조금* *IAS 41 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림어업활동에 관련된 토지(IAS 16 '유형자산', IAS 40 '투자부동산' 참조)* *·농림어업활동에 관련된 무형자산(IAS 38 '무형자산' 참조)* *IAS 41 는 수확시점에만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생산물인 수확물에 적용된다(예를 들어 수확준비가 되었으나 포장되거나 판매준비가 되지 않은 과일나무에 달린 과일).* *수확물이 수확되면 이것은 재고자산이고 IAS 2 재고자산에 따라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수확 후 수확물의 후속과정(예를 들어, 포도를 포도주로 만드는 과정)은 IAS 41 가 다루지 않고 IAS 2 가 다룬다.*	
		예비질문	
		아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 그와 관련있는 세부준수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41A		기업은 농림어업활동이나 식물 또는 동물과 관련한 농장활동과 관련되어 있거나 생물자산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가? *주: 농림어업활동은 판매목적으로 생물자산으로부터 수확물 또는 추가적인 생물자산을 얻기 위하여 생물자산에 생물적 변환을 가하는 관리활동이다. 생물적 변환은 생물자산을 수확물이나 추가적인 생물자산으로 질적 또는 양적 변화를 일으키는 성장, 퇴화, 생산 그리고 생식 과정으로 구성된다.*	
41B		기업은 최초인식시점에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가?	
41C		기업은 생물자산, 농림어업활동과 관련한 정부보조금(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요구하는 정부보조금 포함)을 수령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세부준수질문	
		인식과 측정	
41A	IAS 41.10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인식하는가? (1) 과거 사건의 결과로 자산을 통제한다. (2) 자산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3) 자산의 공정가치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41A	IAS 41.12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에서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는가?	
	IAS 41.14	*주: 매각부대원가는 중개인이나 판매상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규제 기관과 상품거래소에서 부과하는 금액, 양도시 세금을 포함하나 자산을 시장으로 운반하는 데 필요한 운반 및 기타 원가는 매각부대원가에서 제외한다.(운반원가는 이미 공정가치의 결정에서 차감하였다)*	
41A	IAS 41.13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은 수확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였는가?	
41A	IAS 41.13	기업은 수확한 수확물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하기를 멈추었는가?	
		주: IAS 2 는 수확후에 적용된다. 수확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추정 매각원가를 차감한 금액은 IAS 2 목적의 원가이다.	
41A	IAS 41.15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공정가치 산정목적으로 분류하는 경우, 그 특성(예: 연령, 품질등)은 시장에서 가격결정기준으로 사용하는 특성과 부합하는 특성인가?	
		공정가치의 결정	
41A	IAS 41.9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공정가치는 현재의 위치와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되는가?	
41A	IAS 41.16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미래 일정시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자산의 공정가치는 그러한 계약의 존재에 관계없이 결정되는가?	
		주: 공정가치는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하는 현행시장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계약가격이 공정가치의 산정에 반드시 적합한 것은 아니다.	
41A	IAS 41.16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의 판매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 경우, IAS 37 에 따라 회계처리하는가?	
		주: IAS 37 는 손실부담계약을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그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당해 계약으로 정의한다.	
41A	IAS 41.17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의 활성거래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의 공정가치를 그 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으로 결정하는가?	
		주: 다른 활성거래시장에도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는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의 가격에 근거해야 한다.	
41A	IAS 41.18	활성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업은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1) 가장 최근의 시장 거래일과 보고기간말 사이에 경제적 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시장 거래가격 (2)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된 유사한 자산의 시장가격 (3) 수출용 상자, 부셸이나 헥타르 단위로 표시되는 과수의 가치, 그리고 정육의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되는 소의 가치와 같이 부문별로 기준이 되는 가격	
	IAS 41.19	*주: IAS41.18 에 나열된 정보원천이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경우, 기업은 합리적인 추정치의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 가장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추정치를 구하기 위해 그러한 결론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고려한다.*	
41A	IAS 41.20	현재 상태에 있는 생물자산에 대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나 가치가 이용가능하지 않으면 기업은 공정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에 대한 기대 순현금흐름을 세전 현행시장결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사용하는가?	
41A	IAS 41.21 IAS 41.22 IAS 41.23	*주:* *1) 생물자산의 현재 상태는 추가적인 생물적 변환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증가와 미래의 활동 즉, 미래의 생물적 변환의 증진, 수확 및 판매와 관련된 미래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증가를 제외한다.* *2) 기업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금 조달, 세금 또는 수확 후 생물자산의 복구(예를 들어, 수확 후 조림지에 나무를 다시 심는 원가) 관련 현금흐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기업은 현금흐름의 변동 가능성을 기대 현금흐름 또는 할인율에 반영하거나 두 가지의 조합에 반영하여 고려한다. 할인율을 결정할 때에는 기대 현금흐름의 추정에 사용한 가정을 일관되게 사용하여 가정의 효과가 이중 계산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방지한다.*	
41A	IAS 41.25	생물자산이 물리적으로 토지에 부속된 경우(예: 조림지의 나무)와 토지에 부속된 생물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때, 기업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결합된 자산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가?	
		주: 예를 들어 결합된 자산에 대하여는 활성거래시장이 존재할 때, 토지와 토지개량자산의 공정가치는 결합된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차감하여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구할 수 있다.	
		평가손익	
41A	IAS 41.26	생물자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되는가?	
41A	IAS 41.26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되는가?	
		주: 포괄손익계산서에 공정가치변동의 인식은 손익이 자산이 매각되기 전에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생장주기를 가진 생물자산의 경우, 이것은 자산의 성장연수에 걸쳐 손익을 인식하도록 한다.	
41A	IAS 41.28	수확물의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하는가?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41B	IAS 41.30	생물자산의 공정가치측정의 가정이 부인될 때(즉, 최초 인식시점에, 시장결정가격이나 가치를 구할 수 없고, 공정가치의 대체적인 추정치를 명백히 신뢰성 없게 산정하는 경우) 생물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되는가?	
	IAS 41.33	*주: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은 IAS 2 '재고자산', IAS 16 '유형자산', IAS 36 '자산손상'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41B	IAS 41.30	이전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했던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후속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가?	
41B	IAS 41.30	이전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했던 비유동생물자산이 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른 매각예정 분류기준을 충족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기업은 생물자산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가?	
	IAS 41.31 IAS 41.30 IAS 41.32	*주:* *1) 모든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는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가정에 대해서는 최초의 인식시점에만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생물자산을 이전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였던 경우에는 처분시점까지 계속하여 당해 생물자산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2) 비유동생물자산이 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른 매각예정 분류기준을 충족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본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수확시점의 수확물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IAS 41 는 수확시점에는 수확물의 공정가치를 항상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보조금	
41C	IAS 41.34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만 수익으로 인식하는가?	
	IAS 41.37	*주: 원가기준으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는 IAS 20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41C	IAS 41.35	기업이 특정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만 수익으로 인식하는가?	

IFRIC 12 민간투자사업 [시행일 2008 년 1 월 1 일]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본 질문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적용해야 할 회계처리의 지침을 제공하는 IFRIC 12 를 다룬다. 주요 이슈는 본 해석서가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만일 그러한 경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절한 분류를 결정하는 것이다. *IFRIC 12 는 2008 년 1 월 1 일 또는 그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시행한다.* *민간투자사업을 맺은 기업은 SIC 29 의 공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자산을 인식하는 기업은 그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IFRS 7 의 공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적용범위	
	IFRIC 12.5	IFRIC 12 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a)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이용자 및 가격(사용료)을 사업허가자가 통제하거나 감독한다.* *b) 사업허가자가 소유권이나 수익권 등을 통하여 사업기간 말에 사회기반시설의 잔여지분의 중요부분을 통제한다.*	
	IFRIC 12.6	*민간투자사업에 사용되는 사회기반시설은 IFRIC 12. 5(a) 의 조건만 충족되면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IFRIC 12.2	*이 해석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될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거나 개량(예 : 수용 능력의 증가) 하며 일정기간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운영 및 유지 보수하는 민간부문기업(사업시행자)을 일반적으로 포함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에 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IFRIC 12.3	*민간투자사업의 특성 중 하나는 사업시행자가 가지는 의무가 공공서비스 성격이라는 것이다. 누가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느냐에 관계없이, 공공정책의 목적은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서비스가 일반대중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일반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민간투자사업의 다른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a) 민간투자사업을 허가하는 당사자(이하 '사업허가자'라 함)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b) 사업시행자는 최소한 사회기반시설의 경영의 일부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단순히 사업허가자를 대신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c)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가 부과하게 될 최초사용료를 결정하며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사용료의 조정방식을 규정한다.* *d)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 말에 특정한 조건에 따라 아주 작은 대가로 또는 대가없이 사업허가자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이전하여야 하는데, 이는 누가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자금을 부담하였느냐에 무관하다.* *IFRIC 12. AG1-AG8 은 민간투자사업이 IFRIC 12 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IFRIC 12.8	*IFRIC 12 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이전에 사업시행자가 유형자산으로 보유하고 인식하는 사회기반시설의 회계처리는 규정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사회기반시설의 제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6 호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IFRIC 12.9	*IFRIC 12 는 사업허가자의 회계처리를 규정하지 아니한다.*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예비질문	
		다음의 물음에 에 "예"라 답한 경우 관계된 세부준수질문에 답하시오.	
12A		기업은 IFRIC 12 의 적용범위인 민간투자사업의 상대방인 민간부문사업시행자인가?	
12B		기업은 IFRIC 12 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금융자산을 인식하였는가?	
12C		기업은 IFRIC 12 에 따라 민간투자산업에 대해 무형자산을 인식하였는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권리의 회계처리	
12A	IFRIC 12.11	이 해석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는가?	
	IFRIC 12.11	*Note: 민간투자사업에서 공공서비스에 사용될 사회기반시설의 통제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지 않는다.*	
		민간투자사업 시행대가의 인식과 측정	
12A	IFRIC 12.13	기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IAS 11 '건설계약'와 IAS 18 '수익'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측정하였는가?	
	IFRIC 12.13	*Note:* 사업시행자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IAS 11 '건설계약'와 IAS 18 '수익'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측정한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단일의 실시협약을 통하여 둘 이상의 서비스를 수행한다면 (즉, 건설서비스와 운영서비스 또는 개량서비스와 운영서비스), 사업시행자가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대가는 금액을 분리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제공된 서비스별 공정가치의 상대적 크기에 기초하여 배분한다. 그리고 대가의 성격에 따라 후속 회계처리가 결정된다.*	
		건설서비스 또는 개량서비스	
12A	IFRIC 12.14	기업은 IAS 11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용역과 관련된 수익 및 원가를 인식하였는가?	
12A	IFRIC 12.15	사업시행자가 건설서비스 또는 개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대가는 공정가치로 인식하였는가?	
		Note: 이 경우 대가는 금융자산 또는 무형자산일 수 있다.	
12B	IFRIC 12.16	기업은 건설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사업허가자로부터 또는 사업허가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받을 무조건부의 계약상 권리를 한도로 금융자산을 인식하였는가?	
		Note: 만약 사업허가자가 (a) 특정한 금액 또는 결정 가능한 금액이나 (b) 사업시행자가 공공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받게 되는 금액이 특정한 금액 또는 결정 가능한 금액에 미달하는 부족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것을 계약상 보장한다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특정한 품질과 효율성 요구조항을 사업시행자가 보증하는 조건부의 경우라도, 사업시행자는 현금을 지급받을 무조건부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12B	IFRIC 12.23	기업은 IAS 32와 IAS 39의 요구사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자산을 회계처리하였는가?	
12C	IFRIC 12.17	기업은 공공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라이선스)를 한도로 무형자산을 인식하였는가?	

TQ	Reference	Recognition/measurement requirement	Yes/No/N/A
12C	IFRIC 12.26	기업은 IAS 38의 요구사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회계처리하였는가?	
	IFRIC 12.26	*Note: IAS 38.45~47에서는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측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12B, I2C	IFRIC 12.18	만약 기업이 건설서비스의 대가를 일부는 금융자산으로 받고 일부는 무형자산으로 받는다면 각각을 분리**!식의 끝이 잘못되었습니다.**하여 회계처리하였는가?	
	IFRIC 12.27	*Note: 사업허가자는 사업시행자의 의도대로 보관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재화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한 자산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업허가자가 지급할 대가의 일부에 해당한다면, IAS 20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이 아니다. 그러한 자산은 사업시행자의 자산으로 인식되며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된다. 사업시행자는 그러한 자산에 대한 대가로 부담하게 된 미이행 의무에 대하여 부채를 인식한다.*	
		운영서비스	
12A	IFRIC 12.20	기업은 운영서비스에 따른 수익과 원가를 IAS 18에 따라 회계처리하는가?	
12A	IFRIC 12.21	기업은 개량서비스를 제외한 (IFRIC 12. 14참조)사회기반시설을 유지하고 복구하기 위한 계약상 의무를 인식하고 측정하였는가 ?	
		사업시행자의 차입원가	
12B	IFRIC 12.22	민간투자사업이 금융자산을 발생시키는 경우, 기업은 IAS 23에 따라 사업에 귀속되는 차입원가를 비용화하였는가?	
12C	IFRIC 12.23	민간투자사업이 무형자산을 발생시키는 경우, 기업은 IAS 23에 따라 사업에 귀속되는 차입원가를 자본화하였는가?	
		경과규정	
	IFRIC 12.28, 29 IFRIC 12.30	*Note: IFRIC 12는 2008년 1월1일 또는 그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에 시행하며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IFRIC 12. 30(아래참조)에 따라, 회계정책의 변경은 IAS 8에 따라 소급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사업시행자가 실무적으로 이 해석서를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a)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 초에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b)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의 종전 장부금액(어떻게 분류되었는지 불구하고)을 그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c) 그 시점에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의 손상여부를 검토한다. 다만 실무적으로 그 시점에 손상여부를 검토할 수 없다면, 당기 초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 2008 Deloitte Anjin LLC.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a Swiss Verein, and its network of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y.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 for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legal structu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and its member firms.

Deloitte provides audit, tax, consulting, and financial advisory services to public and private clients spanning multiple industries. With a globally connected network of member firms in 140 countries, Deloitte brings world-class capabilities and deep local expertise to help clients succeed wherever they operate. Deloitte's 165,000 professionals are committed to becoming the standard of excellence.

Deloitte's professionals are unified by a collaborative culture that fosters integrity, outstanding value to markets and clients, commitment to each other, and strength from cultural diversity. They enjoy an environment of continuous learning, challenging experiences, and enriching career opportunities. Deloitte's professionals are dedicated to strengthening corporate responsibility, building public trust, and making a positive impact in their communities.

This publ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its member firms, or its and their affiliates are, by means of this publication, rendering accounting, business, financial, investment, legal, tax,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This publication is not a substitute for such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nor should it be used as a basis for any decision or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Member of
Deloitte Touche Tohmatsu